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1994. 12

제 3 권

5. 품목별 시설현대화 (원예, 축산, 잠업, 특용작물)
6. 기술개발·보급

농림부 도서실



0001243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1994. 12

제 3 권

- 5. 품목별 시설현대화 (원예, 축산, 잠업, 특용작물)
- 6. 기술개발·보급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1243
등록일: 2004년 7월 21일
기증:

농림수산부

일 러 두 기

1.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수산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 1권의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에는 각종사업들의 절차와 방법이 2~4권에는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 해당 사업의 페이지를 확인하신 후 찾아보시면 됩니다.
3. 사업계획수립 안내기관은 농·어촌지도소, 시·군, 읍·면, 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농·수·축·임협으로 지정되었으니 가까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축산발전기금사업 등 '95년도 시도별 배분액이 일부사업은 잠정치로써 그 사실이 개별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 별	내 용
총 괄 편	제1권	1.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농림수산부훈령 제 801호) 2.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해설 3. 참고자료 (농어촌투융자계획, 정책자금대출안내, 농지전용안내등)
세 부 사 업 지 침	제2권	1. 정예농수산인력 육성 2. 농업생산기반정비 3. 경영규모확대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합사업) 4. 농업기계화
	제3권	5. 품목별시설 현대화 (원예, 축산, 잡업, 특용작물) 6. 기술개발·보급
	제4권	7.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 8. 소득원다양화 및 농촌생활환경개선 9. 임업·산촌지원사업
		10. 어업·어촌지원사업

목 차

〈총괄편〉

내 용	권	쪽
1.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농림수산부훈령 제801호)	제 1 권	17
2.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해설	"	67
3. 참고자료	"	97
① 농림수산사업 추진 흐름도	"	99
② 농어촌 투융자계획		
- 42조원 조기투융자계획	"	102
- 농어촌 특별세 투융자계획	"	107
③ 농림수산 정책자금대출 안내	"	110
④ 농지전용 허가·신고 안내	"	122
⑤ 농업용시설 건축 허가·신고 안내	제 1 권	127

〈세부사업별〉

※ 표시예) 농어민자율추진사업 : 자율
 공공계획추진사업 : 공공계획

세 부 사 업 명	권	쪽
1. 정예농수산인력육성	제 2 권	
○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자율)	〃	19
○ 전업농어가 육성(자율)	〃	62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 밭작물 ├ 과수 ├ 화훼 ├ 특작업 └ 어업 </div> <div>축산</div> </div>		
○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어가 교육훈련(공공계획) ...	〃	104
○ 선도농어가 지원(공공계획)	〃	107
○ 농업전문인력 양성(공공계획)	〃	116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공공계획)	〃	122
○ 농지관리위원 교육(공공계획)	〃	124
○ 농업전문대학 지원(공공계획)	〃	127
○ 농업기술전문학교설립 지원(공공계획)	〃	128
○ 농과대학 시설장비 지원(공공계획)	〃	130
○ 자영농수산고 육성지원(공공계획)	〃	133
○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공공계획)	〃	136
2. 농업생산기반정비	〃	
○ 10ha미만 농지개발사업(자율)	〃	141
○ 농지 생산기반종합정비 조사사업(공공계획) ...	〃	144
○ 농어촌용수개발 일반사항	〃	149
○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공공계획)	제 2 권	153

세 부 사 업 명	권	쪽
○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 (공공계획)	제 2 권	163
○ 보강(지표수)개발사업(공공계획)	"	168
○ 지하수개발사업(공공계획)	"	185
○ 지하수조사(수맥조사)사업(공공계획)	"	191
○ 제주도 지하수개발(공공계획)	"	195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계획)	"	201
○ 받기반정비사업(공공계획)	"	217
○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공공계획)	"	234
○ 방조제 개보수사업(공공계획)	"	240
○ 저수지준설사업(공공계획)	"	262
○ 수해복구사업(공공계획)	"	267
○ 경지정리사업(공공계획)	"	271
○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공공계획)	"	283
○ 배수개선사업(공공계획)	"	287
○ 서남해안간척사업(공공계획)	"	320
○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공공계획)	"	332
3. 경영규모확대	"	
○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자율)	"	343
{ 농지매매사업	"	
{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	
{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제 2 권	

세 부 사 업 명	권	쪽
4. 농업기계화	제 2 권	
○ 농기계구입자금지원(자율)	”	439
○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자율)	”	481
○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설치 지원(자율)	”	499
○ 농업기계 기술훈련(공공계획)	”	503
○ 농업기계 사후관리(공공계획)	”	511
○ 농기계수리 및 운전요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공공계획)	”	530
○ 시설농업기자재생산 지원(공공계획)	”	534
○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지원(공공계획)	제 2 권	536
5. 품목별 시설현대화	제 3 권	
(1) 원예작물생산·유통지원	”	
○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19
○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40
○ 고냉지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48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54
○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74
○ 고품질 우량채소종자 개발·보급지원(공공계획) ...	”	92
○ 채소 유통활성화사업(공공계획)	”	97
○ 화훼수출용 유통시설 지원(공공계획)	제 3 권	100

세 부 사 업 명	권	쪽
(2) 축산 경쟁력제고 지원	제 3 권	
○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자율)	〃	105
○ 한우 특화사업(자율)	〃	119
○ 경주마 생산지원 사업(자율)	〃	122
○ 젓소 경쟁력제고 사업(자율)	〃	126
○ 돼지 경쟁력제고 사업(자율)	〃	134
○ 닭 경쟁력제고 사업(자율)	〃	140
○ 축산단지조성 사업(자율)	〃	146
○ 기타 가축육성 사업(자율)	〃	153
○ 가축계열화 사업(공공계획)	〃	156
○ 축산농가 해외연수(공공계획)	〃	163
○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지원 사업(공공계획)	〃	173
○ 양돈 기술교육 시설지원(공공계획)	〃	177
○ 축산경영개선 상담 및 지도(공공계획)	〃	178
○ 축산경영진단 지도(공공계획)	〃	179
○ 축산물 생산비 조사(공공계획)	〃	180
○ 한우 개량단지 사업(공공계획)	〃	181
○ 강화도 한우육용화 사업(공공계획)	〃	194
○ 가축 인공수정 사업(공공계획)	〃	196
○ 학교 우유급식(공공계획)	〃	199
○ 사료제조시설 지원(공공계획)	〃	204
○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사업(공공계획) ...	〃	208
○ 국내산 및 수입축산물중 유해잔류물질 공동조사사업(공공계획)	제 3 권	216

세 부 사 업 명	권	쪽
○ 가축방역사업(공공계획)	제 3 권	218
○ 축산분뇨처리시설(공공계획)	"	264
○ 공수의 위축(공공계획)	"	274
○ 동물병원 시설개선자금 지원(공공계획)	"	279
(3) 경종농업지원	"	
○ 토량개량제 공급(자율)	"	282
○ 어린이 공동육묘장설치 지원(자율)	"	287
○ 공동 퇴비제조장설치 지원(자율)	"	292
○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 지원(자율)	"	298
○ 객토사업(자율)	"	304
○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자율)	"	308
○ 감자 원종 망실재배(자율)	"	314
○ 생산비 절감 및 농산시책 종합시장(공공계획).....	"	323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지원(공공계획)	"	328
○ 공동·항공방제(공공계획)	"	330
○ 유채 차액보상(공공계획)	"	337
(4) 잠업·특용작물 지원	"	
○ 잠업종합단지 조성(자율)	"	340
○ 잠종생산(자율)	"	345
○ 특작생산·유통사업 지원(자율)	"	348
○ 원잠종 생산(공공계획)	제 3 권	357

세 부 사 업 명	권	쪽
6. 기술개발·보급	제 3 권	
○ 현장애로 기술개발(공동계획)	”	363
○ 첨단기술 개발사업(공공계획)	”	368
○ 농림수산 정보화사업 지원(공공계획)	”	373
○ 농지전산화 사업(공공계획)	”	377
○ 농어촌개발 시험연구 사업(공공계획)	”	381
○ 축산종합개발센터 건립(공공계획)	”	383
○ 축산사업 교육·홍보(공공계획)	”	385
○ 축산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공공계획)	”	388
○ 세계축산학회개최 지원(공공계획)	”	401
○ 양계박람회개최 지원(공공계획)	”	403
○ 양돈박람회개최(공공계획)	”	404
○ 축산설계도 개발보급(공공계획)	”	405
○ 한우 능력검정 사업(공공계획)	”	406
○ 한우 고급육생산기술 개발시험(공공계획)	”	411
○ 한우 고급육생산사업 사후관리(공공계획)	”	413
○ 한우개량 추세조사(공공계획)	”	415
○ 젖소 후대검정 사업(공공계획)	”	416
○ 젖소 산유능력검정 사업(공공계획)	”	419
○ 돼지 능력검정 사업(공공계획)	”	422
○ 닭 능력검정 사업(공공계획)	”	424
○ 재래닭의 고품질 육용화사업(공공계획)	제 3 권	426

세 부 사 업 명	권	쪽
○ 국산종계 개발 지원사업 사후관리(공공계획) ...	제 3 권	428
○ 종축 등록사업(공공계획)	"	429
○ 가축개량 신기술보급 사업(공공계획)	"	431
○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공공계획)	"	436
○ 가축개량기관 전산망구축 사업(공공계획)	"	437
○ 유해잔류물질검사 장비지원(공공계획)	"	439
○ 축산물검사원 교육(공공계획)	"	440
○ 원유검사장비(세균수·체세포수검사기) 지원 (공공계획)	"	442
○ 원유검사장비 검증(공공계획)	"	443
○ 수의사 연수교육(공공계획)	"	445
○ 사료기술연구소 지원(공공계획)	"	446
○ 지역특화작목시험장 설치(공공계획)	"	447
○ 농업특정연구개발 사업(공공계획)	"	451
○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공공계획) ...	"	453
○ 지역특화 시범사업(공공계획)	"	456
○ 지도시설·장비 지원(공공계획)	"	460
○ 새기술보급 시범사업(공공계획)	"	464
○ 주요농작물 원원종 생산(공공계획)	"	468
○ 잠상지역 적응시험(공공계획)	"	470
○ 도농촌진흥원 연구기반조성(공공계획)	"	472
○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공공계획)	제 3 권	474

세 부 사 업 명	권	쪽
7.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	제 4 권	
(1) 유통구조개선	〃	
○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자율)	〃	19
○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자율)	〃	28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자율)	〃	38
○ 쌀 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공공계획)	〃	51
○ 농산물공판장 건설(공공계획)	〃	62
○ 청과물종합처리장 건설(공공계획)	〃	67
○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공공계획)	〃	79
○ 농수산물 포장센터 건설(공공계획)	〃	94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공공계획)	〃	108
○ 공동규격출하 촉진사업(공공계획)	〃	112
○ 매취사업 지원(공공계획)	〃	122
○ 농협 유통사업 지원(공공계획)	〃	124
○ 생산자(단체)출하조절 지원(공공계획)	〃	127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조직(공공계획)	〃	128
○ 출하촉진자금 지원(공동계획)	〃	130
○ 축산 관측사업(공공계획)	〃	132
○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공공계획)	〃	136
○ 기타가축 생산물 수매사업(공공계획)	〃	140
○ 축산업 자조금 지원사업(공공계획)	〃	142
○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공공계획)	제 4 권	143

세 부 사 업 명	권	쪽
○ 축산물공판장 건설(공공계획)	제 4 권	145
○ 위생도축시설 확충(공공계획)	"	146
○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사업(공공계획)	"	150
○ 냉장육 판매업소 시설개선 사업(공공계획)	"	162
○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공공계획)	"	164
○ 가축시장 정비(공공계획)	"	170
○ 축산물 등급제 판정(공공계획)	"	172
○ 축산물공판장 출하활성화 자금(공공계획)	"	175
○ 쇠고기 수입(공공계획)	"	176
○ 돼지고기 구매(공공계획)	"	177
○ 닭고기·계란 구매(공공계획)	"	179
○ 한우 유통활성화 자금(공공계획)	"	181
○ 군납 출하조절 작업(공공계획)	"	185
○ 축산물가격 및 유통량 조사(공공계획)	"	186
○ 소·돼지도체 및 부위별 수출조사(공공계획) ...	"	187
○ 축산물 가격안정대 자금(공공계획)	"	188
○ 부정축산물 유통지도 단속(공공계획)	"	189
○ 축산물 작업장지도 및 검사업무감독강화(공공계획)...	"	195
○ 원유위생관리 강화(공공계획)	"	197
○ 축산물위생용기 관리개선(공공계획)	제 4 권	199

세 부 사 업 명	권	쪽
(2) 가공지원	제 4 권	
○ 도계장 시설현대화 및 도축·도계부산물처리시설지원(자율)	〃	200
○ 임도정공장 통폐합(자율)	〃	202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공공계획)	〃	205
○ 유가공시설 지원사업(공공계획)	〃	263
○ 부분육 가공공장 건설(공공계획)	〃	266
○ 육가공시설 지원(공공계획)	〃	267
○ 계란가공·유통시설 지원(공공계획)	〃	269
(3) 수입관리 및 수출지원	〃	
○ 해외(싱가폴)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공공계획)	〃	270
○ 국제농산물박람회참가 지원(공공계획)	〃	273
○ 해외시장 정보사업(공공계획)	〃	277
○ 해외시장 개척사업(공공계획)	〃	282
○ 농산물 비축 및 수출수매지원(공공계획)	〃	286
○ 벌꿀 수입(공공계획)	〃	292
○ 과실·화훼 판매촉진 사업(공공계획)	〃	293
○ 과실수출업체 시설자금 지원(공공계획)	〃	297
○ 돼지고기 고급육생산 지원(공공계획)	제 4 권	299

세 부 사 업 명	권	쪽
8. 소득원다양화 및 농촌생활환경개선	제 4 권	
○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자율)	〃	317
○ 휴양단지개발 사업(자율)	〃	345
○ 관광농원개발 사업(자율)	〃	357
○ 농어촌 민박마을조성 사업(자율)	〃	386
○ 관광목장 조성(자율)	〃	395
○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자율)	〃	400
○ 농공단지 조성(공공계획)	〃	405
○ 농어촌 특산품판매장 설치(공공계획)	〃	415
○ 농업경영자금 지원(공공계획)	〃	418
○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공공계획)	〃	422
○ 일반정주권개발 사업(공공계획)	〃	434
○ 집단마을조성 사업(공공계획)	〃	450
○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공공계획) ...	〃	462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공공계획)	〃	470
○ 양축자금 지원(공공계획)	〃	474
○ 축산운영자금계정 지원(공공계획)	〃	478
○ 재해대책(공공계획)	제 4 권	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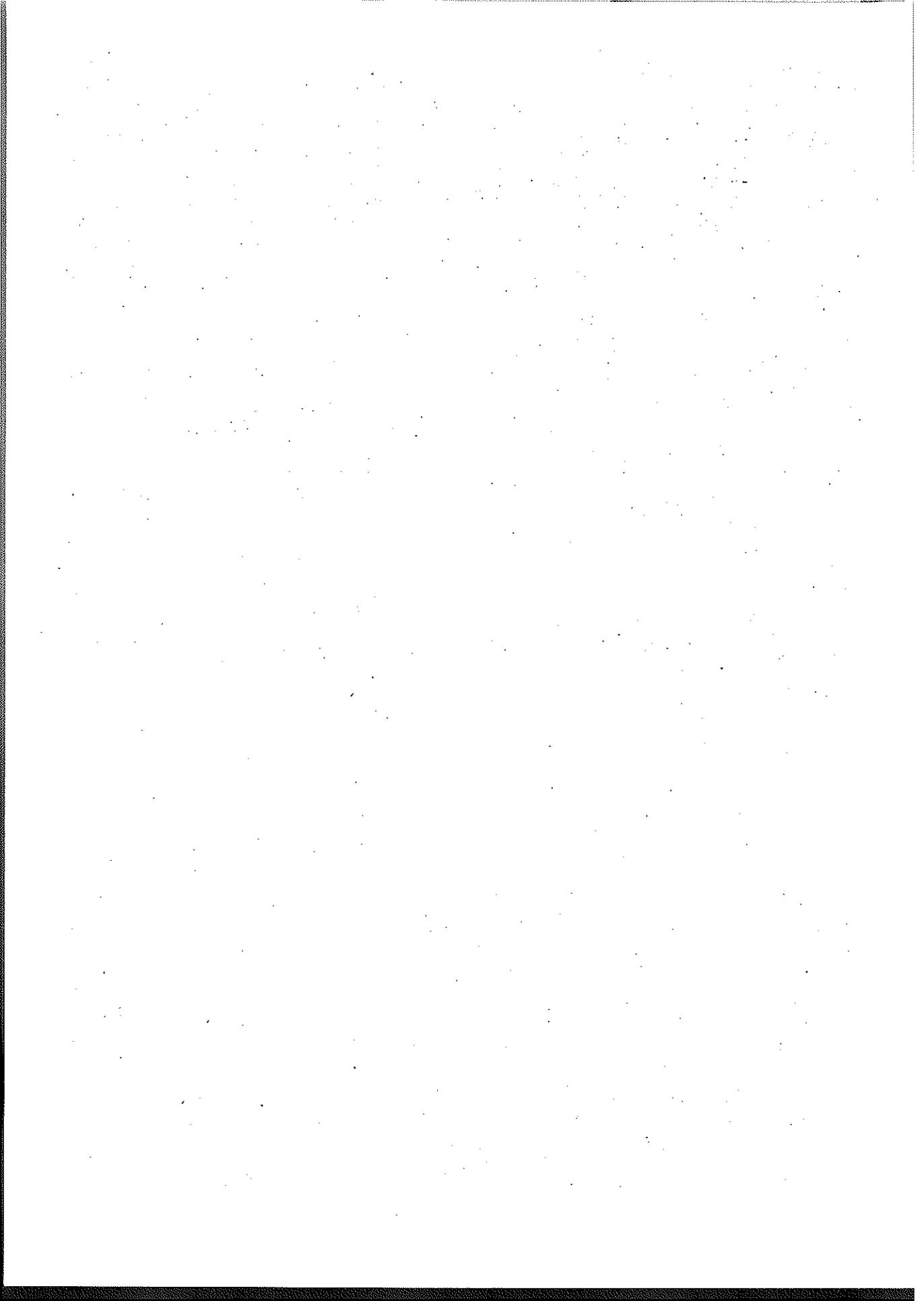
세 부 사 업 명	권	쪽
9. 임업·산촌지원사업	제 4 권	
(1) 임업인력 육성	"	
○ 임업후계자 육성(자율)	"	487
○ 산림개발사업단 및 작업단(공공계획)	"	491
○ 임업기능인 훈련(공공계획)	"	494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	"	
○ 민유림 조림사업(자율)	"	496
○ 민유림 육림사업(자율)	"	500
○ 간벌(자율)	"	504
○ 조림용 묘목생산(공공계획)	"	507
○ 산림 병해충방제(공공계획)	"	510
(3) 임업경영기반 확충 및 기계화	"	
○ 사유림 협업경영(자율)	"	514
○ 산림 경영장비지원(자율)	"	517
○ 임도시설(자율)	"	520
○ 국유림 확대 집단화(공공계획)	"	523
○ 영림계획(공공계획)	"	527
(4) 환경임업의 육성	"	
○ 사방사업(공공계획)	"	530
○ 산림환경기반조성(공공계획)	제 4 권	534

세 부 사 업 명	권	쪽
(5) 임산물생산·유통·가공	제 4 권	
○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및 시설(자율)	"	536
○ 조경수·분재 소재생산(자율)	"	539
○ 임목생산사업(자율)	"	542
○ 임산물가공이용시설 지원(자율)	"	543
○ 임산물이용 원자재구입 자금(자율)	"	545
○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자율)	"	547
○ 밤 저장시설(자율)	"	549
○ 평 이용가공시설(자율)	"	551
○ 임산물 유통구조개선(공공계획)	"	553
○ 임산물 포장개선(공공계획)	"	556
○ 표고 중군생산시설(공공계획)	"	558
○ 임산물종합처리장 설치(공공계획)	"	560
(6) 산지의 관광자원	"	
○ 자연휴양림 조성(자율)	"	562
○ 산림박물관 건립(공공계획)	"	565
○ 지방수목원 조성(공공계획)	"	567
○ 산촌종합개발(공공계획)	"	569
○ 산림종합전시관 건립(공공계획)	"	571
(7) 기타	"	
○ 산지이용체계 개편(공공계획)	"	573
○ 해외 산림개발(공공계획)	제 4 권	576

세 부 사 업 명	권	쪽
○ 임업기술지도(공공계획)	제 4 권	578
○ 임업기술개발(공공계획)	"	580
○ 임업협동조합 육성(공공계획)	"	582
○ 산불방지 대책(공공계획)	"	584
○ 헬기운영(공공계획)	"	586
○ 야생조수 보호(공공계획)	"	587
○ 산지정화(공공계획)	"	591
○ 간벌재(소경재)활용장비 지원(공공계획)	"	592
○ 다목적 산림경영 시범단지 조성(공공계획)	"	594
○ 임업통계조사(공공계획)	"	596
○ 특정연구개발(공공계획)	"	598
○ 임업기술전문학교 설립(공공계획)	"	599
10. 어업·어촌지원사업	"	
(1) 수산자원 조성	"	
○ 내수면 어업개발(자율)	"	603
○ 수산 양식사업(자율)	"	604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공공계획)	"	605
○ 어장 환경정화 사업(공공계획)	"	606
○ 어항조성(공공계획)	"	607
○ 수산자원 조성(공공계획)	"	608
○ 지도선 건조사업(공공계획)	"	609
○ 굴 패각처리공장 건립(공공계획)	제 4 권	610

세 부 사 업 명	권	쪽
(2) 기계화·시설현대화 및 기술개발	제 4 권	
○ 경제성 어선건조(자율)	"	611
○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자율)	"	612
○ 어선기관대체(자율)	"	613
○ 노후어선대체(자율)	"	614
○ 어선용 기계공급(자율)	"	615
○ 양식용 기자재공급(자율)	"	616
○ 어선용 기자재생산업체 지원(공공계획)	"	617
○ 수산기술개발 사업(공공계획)	"	618
(3) 수산물 유통 및 가공	"	
○ 수산물유통구조 개선(자율)	"	619
○ 수산물유통보급 시설(자율)	"	620
○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자율)	"	621
○ 수산물처리·저장 시설(자율)	"	622
○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조성(공공계획)	"	623
○ 수산물가공업체운영 자금(공공계획)	"	624
(4) 소득원다양화와 생활환경개선	"	
○ 어촌관광개발 사업(자율)	"	625
○ 어촌종합개발 사업(공공계획)	"	626
○ 어민복지회관 건립(공공계획)	제 4 권	627

5. 품목별 시설현대화
(원예, 축산, 잠업, 특용작물)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1. 목 적

- 첨단기술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고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개방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기술집약형 수출농업을 지향함과 아울러
- 유기농법을 통한 안전농산물의 생산을 적극 유도, 장려하므로써 외국산농산물과의 안전성 차별화를 통해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코자 함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기존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전업농으로 육성
- 수출 및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지원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 집단화, 현대화, 자동화된 시설채소 주산단지 조성으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나. 연차별 지원계획

구 분	'93까지	'94	'95	'96~'98	'99~2004	계
○ 사업량	개소	30	50	150	300	530
○ 사업비	백만원	100,648	167,750	503,250	1,006,500	1,778,148
- 국고보조	-	25,162	41,938	125,813	251,625	444,538
- 지방비보조	-	25,162	41,938	125,813	251,625	444,538
- 용자	-	30,195	50,325	150,975	301,950	533,445
- 자담	-	20,129	33,549	100,649	201,300	355,627

3. 사업신청자격

가. 대상지역 및 대상자

(1) 대상지역

- 채소재배면적이 200ha이상인 채소 주산단지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 시설채소 재배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
 - 지방비를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
 - 자연적, 지리적 조건이 시설채소 재배에 적합한 지역
 - 홍수, 산사태등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 수출단지 및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
 - 채소시설 현대화 사업지역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역
 - 계통출하 실적이 높고, 규격·포장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 ※ 채소공동육묘장은 집단화 대상에서 제외

(2) 대상자

- 시설채소 재배 경력 3년이상인 5농가 이상이 참여하여 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등 법인격을 갖춘 생산자조직을 이미 결성하였거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5개월이내에 생산자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자
 - 융자금 상환 및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농협장(불임양식1)이 인정한 자
- 단, 당해 시장·군수가 자부담 및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협장의 검토확인 생략 가능
 - 학교, 연구소, 행정 및 지도기관에서 3년이상 시설원예분야 업무에 종사한 자
 - 유기농산물 생산단지의 사업대상은 우수 유기농산물 생산자로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채소공동육묘장 및 유통시설은 단위농협도 사업참여 가능

나. 우선 지원대상

- 수출 및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 시설현대화에 대한 의욕이 높고 집단화가 가능한 단지
- 철골(유리, PET, PC)온실 시설설치 희망농가
- 전업농 규모(1,200~1,500평)시설 설치 희망농가
- 참여농가수가 많고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95예산 지원규모

- '95예산확보 내역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용자	자담
개소 50	백만원 167,750	41,937.5	41,937.5	50,325	33,550

※ '95사업 50개소중 수출단지 2개소, 유기농산 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 포함

- 개소당 지원내역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천원 3,355,000	838,750	838,750	1,006,500	671,000

○ 시·도별 지원계획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개소 50	백만원 167,750	41,938	41,938	50,325	33,549
경 기	3	10,065	2,516	2,516	3,020	2,013
강 원	4	13,420	3,355	3,355	4,026	2,684
충 북	1	3,355	839	839	1,006	671
충 남	9	30,195	7,549	7,549	9,058	6,039
전 북	7.5	25,163	6,291	6,291	7,549	5,032
전 남	10	33,550	8,388	8,388	10,065	6,709
경 북	7	23,485	5,871	5,871	7,046	4,697
경 남	7.5	25,162	6,291	6,291	7,549	5,032
제 주	1	3,355	839	839	1,006	671

(2) 사업실시

생산자조직 또는 대상농민이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부실시공 방지, 우수한 장비구입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설 계

○ 철골온실(유리, PET, PC), 채소공동육묘장

- 기준설계도 : 농진청 "농가보급형 자동화온실 표준설계도"

- 실시설계도 : 기준설계도를 기준하여 설계전문기관이 농가현장에 맞게 실시설계도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 설계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설계전문업체(건설업법에 의한 유자격업체)
 - 설계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처 공고) 준용
 - 설계계약 : 사업시행농민 또는 생산자조직대표와 설계기관이 시장.군수 입회 하에 설계계약 체결
 - 설계비 지급 : 시장.군수가 농민의 협조를 얻어 보조금에서 설계비를 설계 업체에 지급
- 파이프비닐온실
 - 기준설계도 : 농진청 "농가보급형 자동화온실 표준설계도"
 - 실시설계도 : 기준설계도를 기준하여 시공업체가 농가현장에 맞게 실시설계도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 예냉시설 : 농기연 및 한국식품개발연구소 "예냉시설 표준설계도"를 기준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도기술지원단과 협의 시공
 - 집하장 시설 : 농협의 "농산물 간이집하장 표본모델 설계도"를 참고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도기술지원단과 협의 시공
 - 모든 시설, 부대장치와 기기등은 표준설계도 및 사업지침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국산화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온실기자재 국산화 비율이(금액기준) 60% 이상이어야 함
 - 부대장치는 공인검사기관의 합격기증을 설치
 - 국산화가개발에 성공하여 국가기관의 공인(NT마크, KT마크등)을 받은제품 사용 권장

(나) 적격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시공업체 자격기준
 - 건설업법에 의거 온실 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진자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시행농민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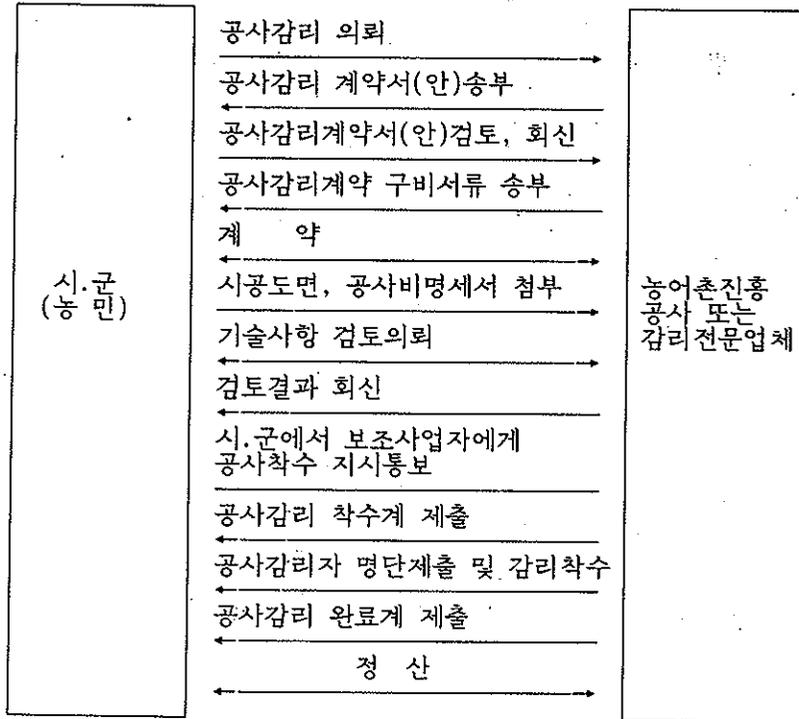
세부사업계획 확정 시달 후 5개월이내에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지 못하면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필요조치 강구시행

- (1단계) 세부사업계획 확정 시달후 3개월 : 농민이 행정.지도기관등의 협조를 얻어 자율적으로 시공업체 선정
- (2단계) 1단계이후 1개월 : 시장.군수가 농가와 협의하여 업체 선정
- (3단계) 2단계이후 1개월 : 시장.군수가 1~3개 우수 시공업체를 추천하여 농민에게 제시하고 업체선정토록 권유
- (4단계) 업체선정이 안될경우 :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필요조치 강구 시행

(다) 공사감리

- 감리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및 감리전문업체 (건설업법에 의한 유자격 업체)
- 감리대상 : 철골(유리,PET,PC)온실, 채소공동육묘장, 예냉시설
- 감리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처 공고) 준용
- 감리계약 : 사업시행 농민 또는 생산자조직대표와 감리기관이 시장.군수 입회하에 공사감리 계약체결
- 감리비지급 :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가 농민의 협조를 얻어 보조금에서 감리비를 감리업체에 지급

○ 공사감리 절차



(라) 관정개발

- 관정개발시는 지하수법 및 국무총리훈령 제304호('94.11.12) "관정의 개발. 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 및 유자격 민간 관정개발업체에 의뢰하여 기초 조사후 시추하여야 함
- 관정개발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작물재배에 적합한 양질의 용수를 확보
- 개별농가 단위에서는 "소형관정"을, 3농가이상 참여시는 암반(공동)관정을 개발
- 암반(공동)관정의 사업비는 개발심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사업비는 수혜농가 공동부담

(마)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사무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용자 및 자담사업비는 생산자 조직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예치하고 통장 및 도장은 시장.군수와 생산자조직 대표가 공동관리
 - 자담사업비는 공사 계약금으로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시공업체 등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농민대표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시공업체에게 지급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시행 농민 또는 생산자조직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 기계 및 장비구입도 통장입금을 유도하되, 구입영수증 확인으로도 정산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회의비, 유인비등)를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여 집행

다. 지원조건

(1) 재원별 지원기준 : 국고보조25%, 지방비보조25, 용자30, 자담20

(2) 용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 계정)
- 자금용도 : 채소시설.장비 현대화 및 자동화
- 용자대상자 : '94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대상농민 또는 생산자조직
- 용자기간
 - 철골(유리,PET,PC)온실, 채소공동육묘장, 예냉시설, 집하장 : 연리 5%,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파이프비닐온실, 관정, 선별기, 저온수송차량 : 연리 5%,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단위농협)
- 용자절차
 - ┌ 용자대상자 및 기성내역 통보 : 시장.군수가 농협장에게 통보
 - └ 용자조치 : 농협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용자조치후 시장.군수에게 통보

(3) 세부사업내역

(가) 개소당 표준사업비 내역

세부사업	단위	사업량	단가	사업비
계			백만원	백만원 4,195
○ 생산시설				3,876
- 유리온실	ha	0.5	1,200	600
- 철골PET(PC)온실	ha	2.0	750	1,500
- 파이프비닐온실	ha	3.2	282	902
- 채소공동육묘장	1,500평/개소	1	800	800
- 관정	공	2	37	74
○ 산지유통시설				319
- 예냉시설	50평/동	1	125	125
- 집하장	150평/동	1	120	120
- 선별기	대	2	17	34
- 저온수송차량	5.0톤/대	2	20	40

주) 1. 개소당 지원단가 : 3,355백만원 (표준사업비 4,195백만원의 80%적용)

2. 철골(유리.PET.PC)온실, 채소공동육묘장 및 예냉시설의 단가에는 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나) 단위사업내용 및 사업단가

○ 유리온실

구분	규격	기준	사업단가
계			400천원/평
○ 기본시설 - 기초, 철골, 알미늄 피복, 천, 축창개폐, 방충망, 강제환기장치 관비장치, 난방장치 복합환경제어장치	철골유리온실	0.2~0.5ha/호	
○ 부대장치 및 기기 - 무인방제기 - CO2발생기 - 토양소독기 (배지경 재배용) - 기화냉각장치 - 운반차 - 관리 및 부속작업기	농가 선택사양 입경 15U이하 LPG 증발량 200kg/hr이상 입경 15U이하	1대/호 1대/300평 1대/호 1대/900평 1대/호 1대/호	

○ 철골PET(PC)온실

구분	규격	기준	사업단가
계			250천원/평
○ 기본시설	철골PET(PC)	0.2~0.5ha/호	
○ 온실부대장치 - 집중컨트롤장치 - CO2발생기 - 온풍난방기 - 무인방제기 - 토양소독기 (배지경 재배용) - 관리기 및부속작업기 - 운반차	LPG 10만Kcal/hr 증발량200kg/hr이상	농가선택사양 1대/호 1대/300평 " 1대/호 " "	

○ 파이프비닐온실

구 분	규 격	기 준	사 업 단 가
계			94천원/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시설 ○ 온실부대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컨트롤장치 - CO2발생기 - 온풍난방기 - 무인방제기 - 토양소독기 (배지경재배용) - 관리기 및부속작업기 - 운반차 	파이프비닐온실 LPG 10만Kcal/hr 증발량200kg/hr이상	0.2~0.5ha/호 능가선택사양 1대/호 1대/300평 " 1대/호 " " "	

○ 채소공동육묘장

구 분	규 격	기 준	사 업 단 가
계			533천원/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묘장 ○ 상토혼합기 ○ 자동파종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토공급기 - 상토송전기 - 진압 및 파종기 - 복토기 - 관수기 - 콤프레사 ○ 운반대차 ○ 발아실 ○ 자동시비, 관수장치 ○ 환경제어장치 ○ 벤치시설 ○ 베드 자동이동라인 	철골유리온실 150대이상/ha 25단x2열 온습도, 광조절 가능 12평 자주식살수장치 복합환경조절 가능, 전기식 이동식	1,500평 1대 1set 40대 1실 1set 1set 920평 1대	360천원/평 8,500천원/대 36,500천원/set 350천원/대 22,000천원/실 25,000천원/set 32,000천원/set 100천원/set 15,000천원/대

○ 산지유통시설

구 분	규 격	기 준	사업단가	평당단가
○ 예냉시설 ○ 집하장 ○ 선별기 ○ 저온수송차량	차압식 인반식 전자식 5.0톤/대	50평/동	천원/평 125,000	2,500천원 800
		150평/동	120,000	
		1대	17,000	
		1대	20,000	

○ 관 정

구 분	시 설 규 모		채 수 량	관개면적	사업단가
	구 경	심 도			
압반관정 소형관정	mm 200 40	m내외 50~150 18	m ³ /1일이상 200 50	ha 3이상 0.5이상	천원/공 37,000 700

※ 해안.산간지의 압반관정 채수량은 100m³/1일 이상을 기준으로함

라. 사업추진 체계

(1) 기관별 업무분담 내용

- 농림수산부 : 시.도별 사업량 배정, 지침시달, 사업비 배정, 사업추진의 종합조정 및 총괄지도
- 농촌진흥청 :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온실설치 및 작물재배관련 기술지도, 농민 교육훈련, 사업성과(경영)분석
- 시 . 도 : 사업지구 타당성 검토 및 계획조정(변경), 시.군별 사업개소수배정, 사업비 배정, 사업추진 감독 및 상황보고
- 시 . 군 : 사업신청서 접수.심사.후보지구 선정보고, 사업대상자 확정, 세부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추진지도.감독 및 상황보고, 준공검사, 사업비 집행.정산, 사후관리
- 국립농산물검사소장 : 유기농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단지 추천 및 지도.관리 (품질인증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등 사업과 연계 추진)
- 농협중앙회 : 금융지원, 기자재공급, 계통출하 및 판매지원
- 농어촌진흥공사 : 용수개발, 공사감리, 실시설계, 시설운영 기술지도
- 농 민 : 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 경영기록장작성, 정책건의등

(2) 사업추진 체계도 : 붙임1

5.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가.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민 또는 생산자 조직이 통합지침 및 "나"항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

나.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

- 본 지침의 사업지역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후 정부가 제시한 표준 메뉴사업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 수립
 - 사업신청자는 자기가 시설설치코자 하는 메뉴사업에 대한 사유, 소요예산, 경제성 분석, 사업효과등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함
- 메뉴사업별 사업량은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나, 동 사업의 목적이 생산과 유통 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데 있으므로 생산 및 유통시설을 균형있게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별 농가당 온실 최소면적은 600평이상~1,500평이하여야 함
 - 표준메뉴 이외의 사업도 선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객관적인 단가와 사업의 필요성이 제시되어야 함
 - . 1개필지로 집단화된 사업지구는 비상용 발전시설 설치가능, 그러나 개별농가에 대한 비상용 발전시설은 불가
- 개소당 사업규모의 조정은 가능하나, 시·도 단위에서 사업비를 기준으로 개소단위로 사업이 확정되어야 함
 - 예) 경기도 : 3개소, 10,065백만원
 - 포천군 : 1개소, 3,200백만원
 - 파주군 : 1개소, 3,355백만원
 - 용인군 : 1개소, 3,510백만원
- 지역여건에 따라 1개소 사업비로 2개군 사업을 할수있으나, 가능하면 0.5개소 단위로의 사업신청 권장

- 생산·유통·판매·재배기술등 정보교환 및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은 가능한한 1개필지로 집단화하여야 함
 - 1개필지에 시설설치가 어려울 경우 최소한 사업대상지역이 3개읍·면이상 분산되지 않아야 하며, 읍·면단위에서는 반경 2km이내로 집단화가 되어야 함
 - 단, 수출 및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완화 가능
 - 집단화를 위한 토지임대의 경우에는 장기임대 조건으로 허용
 - 임대기간은 사업별로 용자금 상환기간(10-20년)이며, 장기임대시 공증계약등 법적 필요조치 강구
- 사업대상 농가는 공동생산, 공동출하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위탁 영농회사등을 사업계획 시달후 5개월이내에 설립하여야 함
- 사업신청시 지적도에 농가별 사업지역을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해야 함
- 채소공동육묘장은 도별 1개소씩 설치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로 토지구입은 할 수 없으며, 공동사업은 수혜농가 공동부담으로 함
 - 기반정비(농로개설, 발경지정리등)가 필요한 지역은 발경지 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연계 또는 병행하여 추진

다.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는 본 세부지침에 의거 변경되는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94.12.30까지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재작성 제출하여야 함
 - 변경내용

{	양액재배시설 지원을 중단하고 유리온실(단가 400천원/평)로 지원
	철골PET(PC)온실 단가하향조정 : 291 → 250천원/평
	채소공동육묘장 단가상향조정 : 775 → 800백만원/개소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종합하여 '94.1.15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6. 기 타

가. 사업계획의 변경

(1) 사업계획의 변경

-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변경절차
 - 사업시행 농민 또는 생산자조직이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 승인요청
 - 사업대상자 및 부대장치 변경은 시장·군수가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사업목적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지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 사업단가와 지원기준은 변경할 수 없으나, 온실부대장치 및 기계구입 단가는 선택 기종이나 옵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 #### (2)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을 감안, 도지사가 결정하여 시행

나. 보고사항

- 사업진도 보고 : 매분기 익월15일까지
- 보조금 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 : 사업익년도 3월 20일까지

다.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채소과 (02) 500~5726
- 시·도 : 도청 농산물유통과
- 시·군 : 군청 산업과

(양식1)

'95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자부담 및 용자능력 검토 확인서

- 1. 주 소 :
(사업지역 :)
- 2. 성 명 :
- 3. 주민등록번호 :
- 4. 사업계획

사업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원					

5. 자부담 및 용자금 상환능력 확인결과

	소재지(은행)	면적	감정결과 용자가 천원	예금액	비 고
부동산	.	m'			과부족금액 : 천원
예 금	.				
신용보증기금	.				
기 타	.				
합 계					

위의 사업자는 '95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부담 및 용자능력 검토 확인결과 능력자(또는 무능력자)임을 확인합니다.

1994 년 월 일

신청자 : 시장.군수(인)

확인자 : 농협장 직인

시 장 . 군 수 귀 하

(양식2)

'95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융자금지급 기성고 확인서
<여신관리자금 인출용>

1. 주 소 : (사업지역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원					

주) 세부사업명은 유리온실, 철골PET(PC)온실, 파이프비닐온실, 집하장, 예냉시설,
관정등으로 구분기업

5. 기성고('95. . 기준) : %
6. 융자금 지급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예산배정액	자 금 배 정 계 획			비 고
			기 배 정	금회배정	배정누계	
	원					

※ 동 자금은 수령후 7일이내에 시공업체등에 지급하여야 함
위의 사업자에 대하여 기성고에 따른 상기 융자금을 지급할 것을 확인 합니다.

1995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 직인

농 협 장 귀 하

(양식3)

()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사업대상 지역 : ○○도 □□군

2. 사업진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진도		사업비집행				
		주요추진내역	공정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담
가. 생산시설			%					
·								
·								
·								
나. 유통시설								
·								
·								
·								

주) 1. 주요추진내역 난은 부지확보, 건축허가, 착공, 건물공사 착수등 주요
작법실시 내용 및 일자 표시

2. 주요작업단계별 천연색 사진 첨부

3. 금후 사업추진일정

4.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5. 기타 참고사항

(양식4)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정산실적보고

(단위: 천원)

단지명	농가명	사업양				사업비								비고					
		세부사업명	계획 (A) (㎡)	실적 (B) (㎡)	대비 (B/A)	계획				집행실적(정산)				대비 (D/C)	차년도 이원액	비용액 확공일	준공일		
						계	보조 (C)	용자	지방비		계	보조 (D)	용자					지방비	
									도비	군비								도비	군비
합계			평·대 (㎡)	평·대 (㎡)	%														

(작성요령)

- 세부사업명 :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구분하고 각종 기계·장비로 사업량 및 사업비를 구분하여 작성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1. 목 적

- 양념채소류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 및 산지유통시설을 현대화 함으로써 양념채소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산자조직과 농민을 적극 지원하는 것임.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 집하, 선별, 가공, 저장시설등을 종합지원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할수 있도록 메뉴방식으로 사업추진
- 자율적인 사업추진과 시장·유통을 주도할 품목별 생산자 조직에 중점 지원
- 연차별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토록 기 지원했던 조직(지역)도 추가지원 가능

나. 연차별 지원계획

구 분	'93까지	'94실적	'95계획	'96-'98	'99-'2004	합 계
○ 사업량	개소 -	10	10	30	120	170
○ 사업비계	백만원 -	32,680	32,680	98,040	391,160	555,560
- 국고보조	-	8,170	8,170	24,510	98,040	138,890
- 지방비보조	-	8,170	8,170	24,510	98,040	138,890
- 융자	-	9,804	9,804	29,412	117,648	166,668
- 자담	-	6,536	6,536	19,608	78,432	111,112

3. 사업신청 자격

가. 대상지역 및 대상자

- 품목별 생산자조직에 가입한 양념채소류 주산지 농가 및 조직
 - 생산자조직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계획에서 정한 유형별 생산자조직
 - 주 산 지 :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주산단지(고추, 마늘, 양파, 파)와 읍·면당 30ha이상 재배지역(생강)

나. 지원 우선순위

(1) 생산자조직 가입 여부

(가) 광역조직 가입

(나) 기초조직 가입

(다) 조직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기간내에 조직결성이 가능한 지역(농가)

(2) 사업계획서 내용 : 공동사업, 공동시설 비율이 높은 대상자 우선 지원

(가) 생산·출하조절, 공동선별·저장·판매·가공등 공동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조직

(나) 전체사업비중 공동시설설치 사업 비중이 높은 조직

(다) 전업농규모 증가, 단지화·규모화가 우수한 조직(지역)

(3) 지방자치단체, 생산자조직에서 정한 우선순위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정한 우선순위

(나) 전국단위 생산자 조직이 품목특성을 감안 결정한 사업계획상 우선순위

(4) 사업집행 여건

- 부지, 사업자금(지방비, 자부담, 담보등) 적기확보등 원활한 사업집행 가능 순위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시장·군수

○ 사업시행 : 지원대상자 (품목별 생산자조직 회원 농협 및 농가)

- 품목별 생산자조직 결성을 추진중일 경우 추진중인 농협이 사업시행 가능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95예산 지원규모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개소 10	백만원 32,680	8,170	8,170	9,804	6,536

(2) 시·도별 지원계획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전 국	개소 10	백만원 32,680.0	8,170.0	8,170.0	9,804.0	6,536.0	
강 원 충 청 전 라 경 성	원	1	3,268.0	817.0	817.0	980.4	653.6
	부	1	3,268.0	817.0	817.0	980.4	653.6
	남	2	6,536.0	1,634.0	1,634.0	1,960.8	1,307.2
	남	2	6,536.0	1,634.0	1,634.0	1,960.8	1,307.2
	남	2	6,536.0	1,634.0	1,634.0	1,960.8	1,307.2
	남	1	3,268.0	817.0	817.0	980.4	653.6
	남	1	3,268.0	817.0	817.0	980.4	653.6

다. 지원조건

- (1) 재원별 지원기준 : 국고보조 25%, 지방비보조 25, 용자 30, 자담 20
- (2) 용자 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라. 개소당 단위사업내용 및 단가

세부 사업명	단 위	단 가	기준사업량		비 고
			사업량	사업비	
합 계		백만원		백만원 4,086	○ 1,000ha 기준
○ 생산시설 현대화				1,942	○ 지원한도 :
- 밭 정지사업	ha	15.0	10	150	3,268 백만원
- 관수시설	ha	7.0	40	280	
- 비가림재배시설	ha	55.0	20	1,100	○ 사업선택 방법 :
- 건가시설	개소(20평)	4.0	75	300	5.가항 참조
- 이식기(정식기)	대	2.5	8	20	
- 고추세척기	대	1.5	20	30	○ 사업별 시설기준:
- 고추건조기	대	2.5	25	62	5.나항 참조
- 기 타					
○ 공동시설				2,144	
- 공동육묘시설	개소(200평)	14.4	10	144	
- 종합처리시설	개소	1,000	1	1,000	
- 가공시설	개소	1,000	1	1,000	
- 기 타					

주) 기타사업은 품목별, 지역별 특성에따라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되, 사업단가는

객관적인 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산출근거 자료 첨부

5.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가.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

- 모든사업을 전량 실시할 경우 사업비 누계액은 4,086백만원이나, 기존에 일부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 누계액의 80% 수준인 3,268백만원을 개소당 지원 한도액으로 하였음
- 품목별 주산지에 필요성이 높은 세부사업 및 사업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정부보조, 용자 비율및 단가는 변경할 수 없으며, 생산·유통분야 균형 개발을 위해 가급적 특정사업 편중 신청 지양
 - 사업비 합계가 개소당 지원한도액이 되도록 사업량을 선택하되, 불가능할 경우 농특 보조및 용자금은 지원한도액이 되도록 하고, 부족금액은 지방비, 자담액을 조정
 - 시도별 사업신청 개소수가 지원계획 개소수를 초과할 경우 총사업비중 공동사업비 비중이 높은 지역 우선 지원 계획임
- 품목 또는 지역특성상 필요할 경우 4.라항의 사업내용에 예시되지 않은 사업도 신청할수 있으나; 이경우 객관적인 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사업단가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승인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주산지 군별 재배규모에 따라 1개사업 지원액을 2~3개군에 분할 지원 가능하나, 도별로는 예산상 개소 단위가 되도록 사업신청
 - 사업을 분할 지원할 경우 가급적 분할 개소당 사업비가 균등 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불가피할 경우 차등 지원 가능
- 가급적이면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시행을 지양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및 소기의 사업성과를 얻을 있도록 추진
 - 이 사업은 신농정 계획기간중 매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한번 지원된 조직(지역)도 추가지원 가능

나. 세부사업별 시설기준

(1) 기본지침

- 시설업체는 관련 면허소지자를 선정하고, 시설물은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는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건설 또는 설치해야 함

- 시설용 기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사업별 시설기준은 (2)항에 의하되, 품목 및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규격 또는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보조단가는 변경할 수 없음

(2) 세부사업별 시설기준(규격)

(가) 밭 정지사업

- 사업단가 : 시가(최고한도 30,000천원/ha)
- 시설기준 : 밭 경지정리사업에 준하여 구배정리등 비가림시설,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기술적인 사항, 경지여건별 사업단가 결정등을 시·군 건설과 또는 농지계량조합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나) 관수시설

- 사업단가 : 6,500 천원/ ha
- 시설내역 : 착정(관정), 양수시설(양수기와 모터 또는 엔진), 이용시설 (스프링클러 또는 점적)
- 시설기준
 - 지하수여건, 관개면적등을 감안 현지실정에 적합하게 설치하되, 가능한한 규모화가 되도록 인접 필지 소유농가와 공동으로 설치할것
 - 이용시설은 점적식 또는 스프링클러식, 고정식 또는 이동식중 현지여건을 감안 자율적으로 결정
 - 시설내역의 일부만 지원코자 할때는 세부단가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가(생산자조직)의 요청이 있을경우, 농어촌진흥공사(지사)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수시설 설계와 시공을 담당토록 할수 있음

(다) 비가림재배시설

- 사업단가 : 55,000천원/ha
- 농가별 지원한도 : 최하 300평, 최고 1,500 평
- 시설내역 : 펜타이트(파이프) 비닐온실, 측면개폐장치
- 시설기준 :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재배를 위한 하우스시설로서 시군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에 자문

(라) 건가시설

- 사업단가 : 4,000 천원/20평 개소
- 농가별 지원한도 : 20 평
- 시설기준 : 목조, 철골조 또는 브릭조 건물및 건조대

(마) 이식기, 건조기 등

- 사업단가 및 규격

기종	규격	사업단가	비고
이식기	독립형	2,500 ^{천원}	
세척기	시간당 500kg 처리	1,500	○ 고추 세척기
건조기	건조실 면적 2.0평	3,000	○ 고추 건조기
	" 1.5	2,500	
	" 0.8-1.0	2,200	

- 농가당 지원한도 : 기종별 1대

(바) 공동육묘시설

- 사업단가 : 72천원/평
- 작목반당 지원한도 : 1,500 평
- 용도 : 고추 육묘용
- 시설기준 : 비닐온실, 온풍난방기, 관수시설
- 농촌진흥청 농가보급형 자동화 하우스 표준모델 1-2W형을 준용하여 설치

(사) 산지 종합처리시설

- 개소당 지원한도액 : 1,000,000천원/ 개소
- 시설내역 : 선별,포장시설, 집하장등 산지유통시설과 지게차, 운반용기등 기자재(부지구입비 제외)
- 시설내역별 지원단가 및 설치기준
 - 시설규모는 품목별 지역별 여건을 감안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별장은 200평, 집하장은 150평을 표준규모로 함
 - 필요한 사업만 선택한 결과 사업비 누계액이 1,000,000천원에 미달할 경우 잔액으로 다른 세부사업을 실시 할수 있음

	사업단가	시설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장 - 건물 - 선별.포장기 	1,000천원/평 시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장건물및 선별. 포장 작업기 - 철근(철골) 라멘. 브릭조 또는 조립식 - 건축비의 1/2 한도내에서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하장 ○ 부대 기자재 - 지게차,수송차 - 팔레트,운반용기 	800천원/평 시 가 시 가 시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수집.판매장, 관리실등 ○ 시설 설치시만 선택 가능 - 저온저장고, 선별장, 집하장당 각1대 한도

(아) 양념채소 가공시설

- 사업단가 : 1,000,000천원/개소
- 용 도 : 양념채소류 가공 공장및 부대 기자재 (부지구입비 제외)
- 시설기준 : 가공원료및 제품에 맞게 지원대상자가 전문연구기관 또는 식품공학 전공 대학교수의 지도, 자문하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 공장 설계결과 사업비 누계액이 1,000,000천원에 미달할 경우 잔액으로 다른 세부사업을 실시 할수 있음

6. 기타

가. 사업계획의 변경등

(1)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 농민 또는 생산자조직이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 승인요청
- 도지사는 사업목적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지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2)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을 감안, 도지사가 결정하여 시행

나. 보고사항

- 사업진도 보고 : 매분기 익월15일까지
- 보조금 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 : 사업익년도 1월 20일까지

다. 사업안내기관

- 중 양 : 농림수산부 채소과 (02) 500~5726
- 시.도 : 도청 농산물유통과
- 시.군 : 군청 산업과

고랭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자율)

1. 목 적

- 고랭지 채소의 열악한 생산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 유통시설등을 종합지원하여 농가실질 소득증대와 자율적인 생산, 출하조절 기능강화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자조직 및 농민을 지원하는 사업임.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 시설과 산지유통 및 기계화에 필요한 장비등을 종합지원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메뉴방식으로 사업추진 체계 변환
- 농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 및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에 중점지원

나. 연차별 지원계획

	'93까지	'94	'95	'96~'98	'99~2004	계
○ 사업량	개소 -	20	20 (54)	60	180	280
○ 사업비	-	8,300	10,730 (2,430)	24,900	74,700	118,630
- 국고보조	-	2,075	3,776 (1,701)	6,225	18,675	30,751
- 지방비보조	-	2,075	2,561 (486)	6,225	18,675	29,536
- 용 자	-	2,490	2,490 (-)	7,470	22,410	34,860
- 자 담	-	1,660	1,903 (243)	4,980	14,940	23,483

※ 사업비 ()내서는 암반관정임

3. 사업신청자격

가. 대상지역 및 대상자

(1) 대상지역

- 고행지채소 주산지로서 동일 시.군내에 무, 배추등 고행지채소 재배면적이 5ha이상 재배되고 있는 지역

(2) 대상자

- 동일 시.군내에서 고행지채소를 생산하는 농가와 생산자단체등이 결성한 "생산자조직"
- <예시> "고행지채소 영농조합법인"(홍천군 내면 자운1리)

나. 지원우선 순위

(1) 생산자조직이 결성된 경우

(2) 생산자조직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기간내 조직결성이 가능한 지역

<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사항 >

- 지방비 및 사업비(농가) 부담능력
- 다른 사업과의 연계추진등으로 사업효과가 높은지역 우선선정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95예산지원 규모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개소 20 (54)	백만원 10,730 (2,430)	3,776 (1,701)	2,561 (486)	2,490 (-)	1,903 (243)

※ 사업비 ()내서는 암반관정임

(2) 시,도별 지원계획

	사업량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개소 20 (54)	백만원 10,730 (2,430)	3,776 (1,701)	2,561 (486)	2,490 (-)	1,903 (243)
강 원	14 (40)	7,610 (1,800)	2,712.5 (1,260)	1,812.5 (360)	1,743 (-)	1,342 (180)
전 북	3 (6)	1,515 (270)	500.25 (189)	365.25 (54)	373.5 (-)	276 (27)
경 북	2 (5)	1,055 (225)	365 (157.5)	252.5 (45)	249 (-)	188.5 (22.5)
경 남	1 (3)	550 (135)	198.25 (94.5)	130.75 (27)	124.5 (-)	96.5 (13.5)

※ 사업비 ()내서는 암반관정임

다. 지원조건

(1) 생산·유통종합지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415,000 천원/개소	103,750	103,750	124,500	83,000

- 재원별 지원비율 : 국고보조 25%, 지방비 25%, 용자 30%, 자담 20%
- 용자재원 및 조건 : 농특회계 용자계정, 연리 5%, 3년거치 7년균분상환

(2) 암반관정 관수시설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 담
45,000 천원/개소	31,500	9,000	4,500

- 재원별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지방비 20%, 자담 10%
- 시공조건
 - 시공업체 :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지하수법에의한 유자격 민간관정 개발업체
 - 시설기준 [구 경 : 200mm
채수량 : 200m³/일 이상(고지대등으로 수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경우 100m³까지 시장·군수가 하향조정가능)]
 - 지하수법 및 국무총리훈령 제304호('94.11.12)"관정의 개발 및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수
 - 관정개발에 앞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작물재배에 적합한 양질의 수원 확보

라. 개소당 단위사업내용 및 단가

세부사업	단 위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계			백만원	백만원 564
(1) 생산·유통 종합지원				519
< 생산기반조성 >				
○ 발정지사업	ha	5	30	150
○ 관수시설	ha	5	10	50
○ 반출도로 개설 및 보수	Km	2	90	180
○ 비가림재배시설	ha	2	55	110
○ 망사육묘장 설치	개소	5	3	15
< 산지유통 및 기계화 >				
○ 수송차량	대/4.5톤	1	10	10
○ 다목적관리기	대	1	1.5	1.5
○ 육묘이식기	대	1	2.5	2.5
(2) 암반관정 관수시설		1	45	45
○ 관정개발	개소	1	30	30
○ 이용시설	개소	1	15	15

주1) 개소당 지원단가 [생산유통종합지원 : 415백만원 (표준사업비의 80%)
 암반관정관수시설 : 45백만원

2) 발정지사업과 반출도로 개설 및 보수사업의 단가에는 설계비가 포함된 것임

마.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1) 발정지사업

- 급경사를 완경사로 변경 또는 구배를 정리하는 사업
- 기타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정지하는 사업

(2) 관수시설

- 소형관정,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집수장, 송수호스, 기타 관수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반출도로 개설 및 보수

- 고행지채소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
- 기존의 고행지채소 반출도로를 확장, 정비 또는 포장하는 사업

(4) 비가림재배시설

- 원예작물 표준하우스 모델을 참고로 현지실정에 맞게 설치
- 축창개폐장치와 시설내 관수시설 포함

(5) 망사육묘시설

- 해충의 침입방지를 망사가 부착된 비가림육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개소당 100평 기준 지역여건에 맞게 설치

(6) 수송차량

- 채소 및 영농자재 수송에 필요한 차량

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신청

가. 사업계획수립시 고려할 사항

- 생산·유통종합지원사업의 단위사업은 표준단위 사업중 3개이상을 균형있게 선택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특성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3개미만의 특정사업만 시행하거나 표준단위사업 이외의 사업도 추가할 수 있음
- 암반관정 관수시설은 생산·유통종합지원사업 시행지구내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실시 가능

6. 기 타

가. 사업계획의 변경등

(1)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할 사유발생시
- 변경정차
 - 사업시행 생산자조직이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사유 첨부 도지사에게 변경승인 요청
 - 도지사는 사업목적.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지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 (2)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을 감안, 도지사가 결정하여 시행

나. 보고사항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보조금정산 및 사업결과보고 : 익년 1월20일 까지
- 자체사업 평가보고 : 익년 3월말까지(차익년 사업계획서와 동시제출)

다.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채소과 (02-500-5726)
- 시.도 : 도청 농산물유통과
- 시.군 : 군청 산업과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1. 목적

- 과수 생산기반시설, 생력농기계 및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효율을 높혀 과수농가의 소득을 올리며
- 궁극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생산자조직 및 과수 농가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종합지원
- 사업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장기지원계획]

	'93까지	'94	'95	'96-'98	'99~2004	계
○ 사업량	개소	30	120	420	330	900
○ 사업비	백만원	77,880	138,000	630,000	495,000	1,440,231
- 국고보조	18,766	19,470	34,500	157,500	123,750	353,986
- 지방비보조	2,616	19,470	34,500	157,500	123,750	337,836
- 국고용자	49,196	23,364	41,400	189,000	148,500	451,460
- 자담	28,773	15,576	27,600	126,000	99,000	296,949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5%, 지방비보조 25%, 국고용자 30%, 자담 20%

나. '95 예산안 및 시·도별 지원계획

(1) '95예산(안)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	개소 120	138,000 (100%)	34,500 (25%)	34,500 (25%)	41,400 (30%)	27,600 (20%)
- 일반 과수	80	92,000	23,000	23,000	27,600	18,400
- 감 굴	40	46,000	11,500	11,500	13,800	9,200

※ 개소당 표준사업비는 일반과수 1,770백만원, 감굴 1,736백만원이나 예산단가는
기 설치된 시설을 고려하여 1,150백만원으로 계상

(2) '95 도별 예산배정계획(가내시)

(단위 : 백만원)

도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개소 120	138,000	34,500	34,500	41,400	27,600
<일반과수>	80	92,000	23,000	23,000	27,600	18,400
경 기	7	8,050	2,012.5	2,012.5	2,415	1,610
강 원	3	3,450	862.5	862.5	1,035	690
충 북	9	10,350	2,587.5	2,587.5	3,105	2,070
충 남	10	11,500	2,875	2,875	3,450	2,300
전 북	10	11,500	2,875	2,875	3,450	2,300
전 남	14	16,100	4,025	4,025	4,830	3,220
경 북	18	20,700	5,175	5,175	6,210	4,140
경 남	9	10,350	2,587.5	2,587.5	3,105	2,070
<감 굴>	40	46,000	11,500	11,500	13,800	9,200
제 주	40	46,000	11,500	11,500	13,800	9,200

3. 사업신청 자격

가. 지원대상과종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등 국내 주요과종에 대해 지원

나. 지원대상지역 및 대상자

- 동일과종의 재배면적이 50ha이상인 시.군 : 재배면적이 50ha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그 회원 농가
- 동일과종의 재배면적이 50ha이하인 시.군 : 재배면적이 20ha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그 회원 농가

다. 사업대상자 선정순위

공 통

- 사업 추진능력이 있는 법인화된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원칙으로 함
- 법인화되지 않은 조직은 사업추진 기간내에 법인화 추진

1 순 위

- 광역단위로 조직된 품목별 생산자조직
- 조직의 재배면적이 전국재배면적의 20%이상 되어야 함
- 『 과실수출단지 지정요령 』에 의거 지정된 수출단지

2 순 위

- 수개 시.군을 관할하는 품목별 생산자조직

3 순 위

- 과종별 재배면적이 50ha이상되는 품목별 생산자조직

4 순 위

- 과종별 재배면적이 50ha미만인 시.군에 위치한 품목별 생산자조직으로 재배면적이 20ha이상이며 재배지역이 인접한 1~2개 읍.면으로 집단화된 조직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실시자
 - 공동시설 : 품목별 생산자조직
 - 개별시설 :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회원농가(생산자조직이 사업추진 지도·관리)
- 정부가 제시한 표준사업을 기초로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조직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함
- 사업비는 재배면적 20ha기준으로 800~1,500백만원 범위내에서 생산자조직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재배규모가 큰 조직은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사업비의 증액이 가능함
 - 수출단지는 사업비의 규모에 관계없이 봉지 및 포장상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나. 지원조건

- 생산자조직이 선정한 사업의 사업비중 국고로 25%, 지방비로 25%를 보조지원하고 30%는 용자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사업실시자가 부담함
 - 세부사업별 사업비에 대한 지원비율은 조직실정에 맞게 공동시설 보조율 상향, 개별시설 보조율 하향 조정이 가능하나 자부담 비율은 20%이상이 되어야 함
- 용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용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5년상환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특수조합 포함)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을 실시하는 생산자조직이 희망하는 용자취급기관에 용자금을 대여함
 - 기타 사항은 『농특회계 용자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다. 개소당 표준사업 및 지원기준

(1) 일반 과수

세 부 사 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계			백만원 1,770	
< 공동시설 >			921	과실생산자조직에 지원
저온저장고	200 평	백만원 2.5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평 100-200평 ○ 저장실은 여건에 맞게 구획 ○ 콤프레서 : 저장실 평당 0.4마력이상 ○ 에어커튼 설치 ○ 응축기 : 콤프레서와 동일 마력 ○ 가습기 : 저온용(2-3대), 가습기용물 배관 1식(시간당 20ℓ 이상) ○ 메인덕트 : 1식 ○ 건물 : 완벽한 단열시공 ○ 전기자동제어시설 1식 ○ 화물차 적재함과 창고바닥의 높이가 같도록 시설(지게차로 상하차 실시)
선 과 장	1 동	2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평 150평규모 ○ 대형선과장 : 3조식 1대 (선과능력 : 3만개/시간) ○ 제합기, 테이핑기, 밴딩기, 전자저울각1대 ○ 벨트 로라, 무구동 로라, 작업대, 선반, 콘베어 각1식 ○ 화물차 적재함과 창고바닥의 높이가 같도록 시설(지게차로 상하차 실시)
집 하 장	200 평	0.3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평 200평 ○ 바닥 : 콘크리트 시공

세 부 사 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수송차량	1 대	10	10	○ 차종별 판매가격 기준
지 계 차	1 대	15	15	○ 기종별 판매가격 기준
콘 배 어	1 대	10	10	○ 기종별 판매가격 기준
파 레 트	400 개	0.03	12	○ 플라스틱 또는 목재 파레트
운반상자	10천개	2.5	25	○ 20kg들이 플라스틱 제품
인공수분기	1 조	4	4	○ 약채취기, 약정선기, 개약기, 약파기, 화분정선기 등 5종 1조 기준
굴 삭 기	1 대	13	13	○ 자체중량 1톤미만으로 버켓 산적 0.016루배 이상
SS 분무기	6 대	12	72	○ 물통 500 l 이상, 작업량 1.5ha/시간 이상
< 개별시설 >		-	702	과실생산자조직의 회원농가에 지원
신규개원	10 ha	5	50	○ 심경, 석회 및 유기물 사용, 배수(암거, 명거배수시설)
품종갱신	20 ha	4	80	○ 우량 신품종으로 개식 또는 고접갱신 - 사과 : 화홍, 추광, 감홍, 홍월 등 - 배 : 황금, 추황, 감천, 영산, 화산 등 ○ 수분수 부족포장 수분수 확보 : 주품종의 15-20%
배수시설	20 ha	3	60	○ 암거배수(배수로, 집수로 등) ○ 침수지역 배수로 공사
관 청	5 공	3	15	○ 지역실정에 따라 소형 또는 중형 선택
점적관수	10 ha	2	20	○ 점적관비 1식, 액비혼입기 1식

세 부 사 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다목적 스프링클러	10 ha	7.5	75	○ 노즐 : CAT900, NAAN525
모노레일	5 ha	10	50	○ 경사 : 30° 이상 ○ 등판능력 : 250kg이상/1회
과원내 운반차량	7 대	4	28	○ 기종별 판매가격 기준
가지절단기	10 대	2	20	○ 기종별 판매가격 기준
전정목 분쇄기	5 대	2	10	○ 파쇄능력 : 나무직경 7cm이상
토양개량	20 ha	0.1	2	○ 토양개량제 구입비
반사필름	20 ha	0.6	12	○ 반사필름 구입비
덕 시설	20 ha	4	80	○ 풍수피해가 예상되는 과종 우선 지원
비가림시설	10 ha	20	200	○ 하우스형 비가림시설
<수출용자재>			112	수출단지에 지원
봉 지	160만매	0.176	28	○ 수출단지의 계획물량에 의거 지원
포장상자	6만상자	14	84	○ 수입국의 요구에 맞는 포장 ○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
<묘목생산>			35	허가받은 과수묘목생산업자에 지원
묘목생산	70천주	0.5	35	○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우량품종 생산 지원

(2) 감 골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계			백만원 1,736	
< 공동시설 >			997	과실생산자조직에 지원
저온저장고	200 평	백만원 2.5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평 100-200평 ○ 저장실은 여건에 맞게 구획 ○ 콤프레서 : 저장실 평당 0.4마력이상 ○ 에어커튼 설치 ○ 응축기 : 콤프레서와 동일 마력 ○ 가습기 : 저온용(2-3대), 가습기용물 배관 1식(시간당 20ℓ 이상) ○ 메인닥트 : 1식 ○ 건물 : 완벽한 단열시공 ○ 전기자동제어시설 1식 ○ 화물차 적재함과 창고바닥의 높이가 같도록 시설(지게차로 상하차 실시)
상온저장고	200 평	0.7	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평 200평 ○ 바닥 : 콘크리트 시공 ○ 벽체 및 지붕:인슈판넬, 벽돌, 스티브등
선 과 장	1 동	2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평 150평규모 ○ 대형선과장 : 3조식 1대 (선과능력 : 3만개/시간) ○ 제함기, 테이핑기, 밴딩기, 전자저울각1대 ○ 벨트 로라, 무구동 로라, 작업대, 선반, 콘베어 각1식 ○ 화물차 적재함과 창고바닥의 높이가 같도록 시설(지게차로 상하차 실시)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지원기준
수송차량	1 대	10	10	○ 차종별 판매가격 기준
지게차	1 대	15	15	○ 기종별 판매가격 기준
콘베어	1 대	10	10	○ 기종별 판매가격 기준
파레트	400 개	0.03	12	○ 플라스틱 또는 목재 파레트
운반상자	10천개	2.5	25	○ 20kg들이 플라스틱 제품
굴삭기	1 대	13	13	○ 자체중량 1톤미만으로 버킷 산적 0.016루베 이상
SS 분무기	6 대	12	72	○ 물통 500 l 이상, 작업량 1.5ha/시간 이상
< 개별시설 >			625	과실생산자조직의 회원농가에 지원
품종갱신	20 ha	4	80	○ 우량 신품종으로 개식 또는 고접갱신
과원정비	5 ha	8.5	42.5	○ 작업로 개설
배수시설	20 ha	3	60	○ 암거배수(배수로, 집수로 등) ○ 침수지역 배수로 공사
관정	5 공	5	25	○ 지역실정에 따라 소형 또는 중형 선택
점적관수	10 ha	2	20	○ 점적관비 1식, 액비혼입기 1식
다목적 스포팅클러	10 ha	7.5	75	○ 노즐 : CAT900, NAAN525
모노레일	2 ha	10	20	○ 경사 : 30° 이상 ○ 등판능력 : 250kg이상/1회

세 부 사 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과원내운반차	7 대	4	28	○ 기종별 판매가격 기준
가지절단기	10 대	2	20	○ 기종별 판매가격 기준
토양피복재배	3 ha	7.5	22.5	○ 피복재 구입비
전정목분쇄기	5 대	2	10	○ 기종별 판매가격 기준
토양개량	20 ha	0.1	2	○ 토양개량제 구입비
간벌	10 ha	3	30	○ 밀식원에 대해 지원
예조시설	400 평	0.1	40	○ 간이 골조 건축물
시설재배	1 ha	150	150	○ 비닐하우스 기준으로 지원하되 개소당 사업량을 초과할 수 없음
<수출용자재>			112	수출단지에 지원
봉 지	160만매	0.176	28	○ 수출단지의 계획물량에 의거 지원
포장상자	6만개	14	84	○ 수입국의 요구에 맞는 포장 ○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
< 묘목생산 >			2	허가받은 과수묘목생산업자에 지원
묘목생산	4천주	0.5	2	○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우량품종 생산 지원

5.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

가. 사업계획수립 방법

- 품목별 생산자조직은 표준사업증에서 지역실정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자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함
 - 사업계획은 조직 공동시설과 회원농가 개별시설을 포함하여 조직단위로 일괄 작성함
 - SS 분무기는 공동시설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배면적 2ha 이상되는 농가에는 개별시설로도 지원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사업량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단가는 표준사업상의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가를 초과하는 기종 등을 선택할 경우 객관적인 단가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실제 사업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 표준사업으로 제시하지 않은 과수생산시설 및 산지유통시설도 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객관적인 단가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 단,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체계구축을 위해 소형 저온저장고, 선파기 등 농가용 유통시설은 신청할 수 없음
- 지방비 확보상황, 사업실시자의 연차별 계획 등으로 1개년에 필요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조직단위로 추진할 세부사업의 내용 및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재원조달 및 용자금 상환계획과 건축사업의 경우 부지확보계획
 - 앞으로 추진할 조직의 사업계획

나. 사업신청

- 품목별 생산자조직은 "붙임1" 양식에 따라 조직단위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신청함
- 회원농가의 개별시설사업은 생산자조직이 발부한 사업대상자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함
- 2개 시.군 이상을 관할하는 생산자조직은 전체 사업계획과 별도로 시.군단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각각 신청함

6.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시장·군수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시·군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도별로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라 시·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붙임 2"의 양식에 의거 '95.1월말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
- 사업계획 심의방법

심의기관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방법

-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사업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공개 심의

심의시 고려사항

- 조직의 활성화 정도

- 참여농가수, 조직의 규모 등 사업대상자 선정순위의 적합 여부
- 조직의 운영 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 사업비 조달 능력

- 지방비 확보 여부 및 자부담 능력
-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조직의 부지확보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 조직의 사업계획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지 여부
- 사업량 및 단가의 적정성
- 생산자조직의 저온저장고, 선과장 등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 가능성
-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여부

- 기타 필요한 사항

7. 보고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 : '95.1월말까지(보고양식 : 붙임2)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보고양식 : 붙임3)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익년도 1.20일까지
- 사업평가 결과 보고 : 익년 3월말까지

8. 기 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부 과수화훼과 ☎ (02) 503-7274
- 각도 농산물유통과 (경북 유통특작과, 제주 감귤진흥과)
- 각 시.군 산업과

<붙임1>

'95 과수(감귤) 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서

(1) 조직현황

조직명										
소재지	(주소)					(TEL)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설립일						설립법적근거				
회원수	농가			자산규모			백만원			
관할구역										
과수재배현황	계	사과	배							
	면적 생산량	ha 톤								
시설현황	공동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타			
		평	개소 (톤)	Set	(대 톤)	평				
	개별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타				
		관정 : 스프링 : 쿨러 :	ha 평	평	평	대 (톤)				
(주) : 1. 선과기 ()내는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 ()내는 보유대수에 대한 적재량을 기재										
기타사항										

(2) 사업 계획

○ '95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 담
계	-	-	-					
(1) 공동시설 ○○○○ ○○○○								
(2) 개별시설 ○○○○ ○○○○								

- 자부담조달 계획
- 건축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3) 향후사업계획

- 조직활성화 방안
- 생산기반시설 확충
- 공동출하 계획
- 기 타

붙임 : 회원농가별 사업대상자 추천서

사업대상자 추천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과수재배현황

	계	사과	배				
면적 생산량	ha 톤						

○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 담
○○○								
○○○								

위 사람은 (○○○ 조직)의 회원농가로서 조직의 사업계획에 따라 조직과 함께 생산·유통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므로 '95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조직) 대표

<붙임2>

'95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

(1) 도 집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					지 원 농가수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 담	
계		-						
(1) 공동시설								-
○○○○								-
○○○○								-
○○○○								-
(2) 개별시설								
○○○○								
○○○○								
○○○○								

※ 신규개원 사업은 사업완료시 2ha이상되는 농가수를 사업량에 () 표기

(2) 시.군별, 조직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군별	조직별	세부사업명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지 원 농가수
					계	국고	지방	용자	자담	
합 계	-	-		-						
○○ 군	-	계								
	○○조직 (과종명)	(소 계) (1)공동시설 ○○○○ ○○○○ ○○○○ (2)개별시설 ○○○○ ○○○○ ○○○○								- - -
○○ 군	-	계								
	○○조직 (과종명)	(소 계) (1)공동시설 ○○○○ ○○○○ ○○○○ (2)개별시설 ○○○○ ○○○○ ○○○○								- - -

<붙임3>

(분기) '95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상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 추진 상황					사업비 집행상황				
		진도 별 사업 량					종합 진도	국 고		용 자	
		20%	40	60	80	100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						%				
(1)공동시설 ○○○○ ○○○○ ○○○○											
(2)개별시설 ○○○○ ○○○○ ○○○○											

※ 주요사업별 공정별 진도 : 붙임참조

주요 사업별 공정별 진도

세부 사업별	공정별	진도	비고
저온저장고, 선과장 등 기계설치가 수반되는 건축물	대상자선정	10	
	부지확보	20	
	설계도작성	30	
	건축허가	40	
	업체선정	50	
	기초공사	60	
	골조공사	70	
	지붕공사	80	
기계설치가 수반되지 않는 건축물	대상자선정	10	
	부지확보	20	
	설계도작성	30	
	건축허가	40	
	업체선정	50	
	기초공사	60	
	골조공사	70	
	지붕공사	80	
관수시설	대상자선정	25	
	업체선정	50	
	착공	75	
	완공	100	
농기계구입	대상자선정	30	
	구입계약체결	70	
	기계인수	100	

(주) : 기타 사업은 상기유사한 사업에 준함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 (자율)

1. 사업목적

- 꽃 주산지에 현대화·자동화된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여 품질좋은 꽃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에서 부터 출하, 판매까지 일관성있는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생산자조직 단위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종합지원
- 기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시설을 현대화·자동화하고, 제반시설의 집단화 및 개별농가의 조직화로 사업효율성 극대화

[장기투자 계획]

	총 계	'93년까지	'94	'95	'96~'98	99~2004
○ 사업량	개소 235	-	10	15	90	120
○ 총사업비	백만원 917,370	9,800	38,620	57,930	347,580	463,440
- 국 고	229,833	2,940	9,655	14,483	86,895	115,860
- 지방비	229,833	2,940	9,655	14,482	86,895	115,860
- 용 자	275,211	2,840	11,586	17,379	104,274	139,032
- 자 담	182,494	980	7,724	11,586	69,516	92,688

나. '95 예산안 및 시·도별 지원계획

(1) '95 예산(안)

	사업량	단 가	총사업비	재 원 별			
				농특국고	지방비	농특용자	자 담
계	개소 15	백만원 3,862	57,930 (100%)	14,483 (25%)	14,483 (25%)	17,379 (30%)	11,586 (20%)

※ 예산단가는 개소당 표준사업비 4,827백만원의 80%로 계상 (3,862백만원)

(2) 시·도별 지원계획(가내시)

	사업량	단 가	총사업비	재 원 별			
				농특국고	지방비	농특용자	자 담
계	15 개소	3,862 백만원	57,930 (100%)	14,483 (25%)	14,483 (25%)	17,379 (30%)	11,586 (20%)
경 기	3	3,862	11,586	2,896.5	2,896.5	3,475.8	2,317.2
강 원	1	3,862	3,862	965.5	965.5	1,158.6	772.4
충 북	1	3,862	3,862	965.5	965.5	1,158.6	772.4
충 남	1	3,862	3,862	965.5	965.5	1,158.6	772.4
전 북	3	3,862	11,586	2,896.5	2,896.5	3,475.8	2,317.2
전 남	1	3,862	3,862	965.5	965.5	1,158.6	772.4
경 북	1	3,862	3,862	965.5	965.5	1,158.6	772.4
경 남	3	3,862	11,586	2,896.5	2,896.5	3,475.8	2,317.2
제 주	1	3,862	3,862	965.5	965.5	1,158.6	772.4

3. 사업신청자 자격

- 자기토지를 확보하고(집단화를 위해 20년 이상의 장기임대가능:임대계약서 법원공증) 자부담능력과 담보능력이 있는 자(농협장의 확인서 첨부)
- 화훼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자, 화훼재배 자격증 소지자
- 화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교, 연구소 및 행정.지도기관의 시설원예분야에 3년 이상인 자(증명서류첨부)
- 시장,군수가 사단법인 한국화훼협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단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자격을 갖춘 자로 생산자조직을 구성 사업신청

4. 사업대상자 및 사업지역 선정기준

가. 우선 지원대상자

- 조직의 참여농가수가 많고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 설치될 시설의 집단화(연접필지, 공동난방)가 잘된 조직
- 사업규모가 크고 생산시설중 유리온실, 경질판온실의 사업량이 많은 조직
- 재배예정작목의 단일화가 잘된 조직
- 백합, 장미, 서양난, 선인장 등 수출유망 작목재배로 수출하고자 하는 조직
- 재배기술 수준이 높고 조직운영이 잘되고 있는 조직

나. 대상지역

- 화훼재배 주산지 시.군으로서 지방비 확보에 문제점이 없는 지역
- 자연적, 지리적 조건이 화훼재배에 적합한 지역
- 홍수, 산사태, 침수 등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 기반정비가 용이한 지역

5.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및 개소당 지원규모

세부사업	단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주요시설내용
합 계	-	-	백만원 -	백만원 4,827	○사업비의 80%로 예산편성(3,862百萬元)
○ 생산시설					
- 유리온실	ha	1	1,200	1,200	철골구조, 관수시설, 자동액비시비장치, 2중커튼, 온수보일러, CO ₂ 발생기, 방제 살수기, 환풍기, 환경제어시설 등
- 경질판온실 (PET, PC, PVC 등)	ha	2	750	1,500	경량철골구조, 관수, 시비장치, 2중커튼, 강제환기장치, 온풍난방기, CO ₂ 발생기, 환풍기 등
- 비닐온실	"	2	282	564	파이프골조, 관수시설, 난방기, 커튼장치 등
- 조적배양실	평	50	2.5	125	브릭조 또는 조립식 건물, 향온·항습설비, 배양시설 등
- 관 정	공	2	37	74	암반관정(집단화 지역 한정)
- 비상발전기	대	3	8.3	25	상용전력용량 약3배 용량 수준 (집단화 지역 한정)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평	200	4.5 (2.5)	900 (500)	구근류 등 기타 화훼류
- 저온처리실	평	90	1.1	99	브릭조 또는 조립식건물, 냉동, 단열 등
- 집하장	평	200	0.8	160	평치콘크리트, 브릭조건물 등
- 선별처리장 등	"	200	0.4	80	단열철골유리온실 이상, 건물면적의 1/10 이상 저온저장고 건설가능)
- 수송차량	대	5	15	75	2.5톤이상 보냉 또는 냉동차 등
- 절화선별 결속기	"	5	5	25	선별, 절단, 결속장치 등

※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저온저장고 단가에는 감리비 포함
 암반관정 및 비상발전기는 집단화된 지역에 한해 사업가능
 저온저장고중 단가가 평당 4.5백만원은 백합등 구근류 재배지역에 한해 사업가능

다. 지원조건

- 재원별 지원비율 : 국고 25%, 지방비 25, 용자 30, 자담20
- 용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계정
 - 용자조건

시설종류	금리	상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조직배양실 ○ 저온저장고 ○ 집하장 ○ 선별처리장 ○ 저온처리실 	5%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온실 ○ 기타사업 	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단위농협, 특수농협)
- 용자절차
 - 용자대상자 및 공사기성고 통보 : 시장, 군수가 농협장에게 통보
 - 용자조치 : 농협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용자조치하고 시장, 군수에게 통보
- 담보실행 및 기타사항 : 통합지침에 따름

6.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

가. 사업계획 수립

- 자격을 갖춘 농민들로 구성된 생산자조직이 통합지침 및 "나"항의 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

나.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

- 정부가 제시한 표준단위사업내용에 의거 사업계획 수립 신청
(통합지침의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름)
- 표준단위사업이외(육종시설 등)의 사업도 가능하나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객관적인 단가와 사업 필요성 제시
- 개소당 단위사업량은 농민이 자율로 선택가능하나 기존시설을 고려 생산 및 유통시설을 균형되게 설치
(단, 비상발전기 및 암반관정은 집단화된 지역에만 설치가능)
- 개별시설 능가당 지원규모
 - 온실면적 : 600 - 1,500평이내
 - 기타세부사업 : 지역실정에 따라 선택조정가능
- 세부사업중 생산시설은 최소 1ha이상씩 집단화(공동난방)하되 관련 유통시설을 공동이용 할 수 있고 연접하고 있는 면단위내에서 2 - 3개소로 분산 집단화 가능
- 사업지역별로 유리온실, 경질판(PET, PC등)온실을 합하여 2ha이상과 단지당 10명이상 능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 동일 시.군단위 사업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연접한 2개 시.군을 묶어 1개사업단위로 사업시행 가능(예: 갑군+을군 → 1개소 3,862백만원)하나 각시.군 1개소로 집단화시켜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별 개소당 사업규모를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개소 사업비로 1개시.군 집단설치도 가능)하나, 시.도의 전체사업비는 기준사업비의 개소단위로 신청
예) ○○ 도 : 3개소 11,586백만원
갑군: 1개소 3,562백만원, 을군 : 1개소 4,162백만원, 병군 : 1개소 3,862백만원

다. 사업신청방법

- 신청방법 : 자격을 갖춘 농민들이 생산자조직(영농조합법인등)을 결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장,군수에게 신청
- 기타사항 : 통합지침에 따름

7. 사업시행

가.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 시장.군수는 화훼생산유통단지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구성 : 관계공무원(지도소 포함), 단지회장, 농어촌진흥공사 직원, 학계, 시공업체,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능 : 사업계획서, 분기별 사업추진평가, 사업대상자와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의 심의

나. 기관별 업무분담 내용

- 농림수산부 : 시.도별 사업개소수 배정, 지침시달, 사업비 배정, 사업추진의 종합조정 및 총괄지도
- 농촌진흥청 :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온실설치 및 작물재배관련 기술지도, 농민 교육훈련, 사업성과분석
- 시 . 도 : 사업지구 타당성 검토 및 계획조정(변경), 시.군별 사업개소수배정, 사업비 배정, 사업추진 감독 및 상황보고
- 시 . 군 : 사업신청서 접수.심사.후보지구 선정보고, 사업대상자 확정(변경), 사업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사업추진지도.감독 및 상황보고, 준공검사,사업비 집행.정산,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 : 금융지원, 기자재공급, 계통출하 및 판매지원
- 농어촌진흥공사 : 용수개발, 공사감리, 안전시공기술개발, 시설자재 산업육성
- 농 민 : 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 경영분석, 정책건의등

다. 설계, 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

1) 설계

- 온실은 농진청 "농가보급형 온실 표준설계서" 대로 시공하거나 또는 "농가보급형 온실 표준설계서"를 참고하여 사업대상자가 실시 설계도서(시방서가 포함된 기초, 건축, 전기, 기계등 완성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농어촌진흥공사의 설계심의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공
 - 농어촌진흥공사는 온실설치부지의 입지조건, 재배작목, 기후조건, 농가의 수요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의 적정성을 검토함.
 - 설계심의 및 승인된 설계도서를 시공업체 선정후 변경코자 할때는 재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유통시설과 조직배양실은 사업시행자가 지역여건에 맞게 시공업체와 협의 설계 시공
- 모든 시설, 부대장치 및 기기 등은 농진청 표준설계도 및 지침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 되도록 설치(국산자재 사용비율은 사업비 기준 50%이상 되도록 지도)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검사기관의 합격기준 설치 권장

2) 시공업체 선정

- 농어촌진흥공사의 설계심의 및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업체 선정
- 시공업체 자격기준 : 건설업법에 의한 온실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 시공업체 선정방법 : 농가대표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
- 계약체결 : 시장.군수 승인을 받은 후 시공계약을 일괄체결하되 사업의 공종별로 별개의 시공업체와 계약하지 않도록 함
- 세부사업계획 확정시달후 5개월 이내에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5개월 이후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농가가 이에 불응할시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반납 조치, 계약완료 후 1개월내에 사업을 착공하여야 함

라. 공사감리

- 감리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 감리대상 :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저온저장고(설계서 검토부터 준공검사까지)
- 감리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과학기술처공고) 준용
- 감리계약 : 시장, 군수입회하여 사업시행 농민대표와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이 계약

마. 사업비 관리 및 집행,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사무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 시장, 군수는 용자 및 자담사업비는 생산자조직 명의로 된 은행구좌에 예치토록하고 수시로 용자금 및 자담분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
- 시장, 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된 보조금은 교부 목적대로 즉시 시공업체에 지급하여야함
 - .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 농민대표 입회하여 농어촌진흥공사 공사 감리자가 확인한 공사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를 시공업체에게 지급
 - 시장,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정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시도지사(시장, 군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회의, 유인비 등)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을 다음분기 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사항 : 통합지침에 따름

바.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사항 : 통합지침에 따름

사. 교육 및 경영지도

- 단지별 참여농가 1인 이상 기설치된 유리온실에서 1개월 이상 실습교육토록 유도
- 시·도지사는 농어촌진흥공사의 광양유리온실 증장기교육 및 해외연수 주선
- 농촌진흥청장은 농민훈련과정에 사업대상자 전원을 소집 교육 실시
- 농촌진흥청장은 전담지도사를 지정 지도
 - 재배작물 입식, 재배관리, 경영지도
 -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사업대상자의 영농일지 작성을 확인, 지도
 - 작목입식일부터 1년간의 경영분석 결과를 보고할 것.

8. 사업안내

화훼 생산·유통지원사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부 과수화훼과 ☎ (02) 503-7274
- 각 시도 농산물 유통과 원예계(특작계)
- 각 시군 산업과 농사계(유통계, 특작계, 농산계)

〈참고자료〉

세부사업별 시설내역

※ 시설은 작물·지역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음

가) 유리및 비닐온실

유 리 온 실	비 닐 온 실
<p>1. 기본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기반조성 <input type="radio"/> 기초 콘크리트 (외부: 줄기초, 내부: 독립기초) <input type="radio"/> 철재구조물및 알루미늄 부재 <input type="radio"/> 천창및 축창개폐 자동장치 <input type="radio"/> 전기시설 	<p>1. 기본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기반조성 <input type="radio"/> 독립기초 <input type="radio"/> 아연도 강관 <input type="radio"/> 천창및 축창 개폐장치
<p>2. 피복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지붕 : 유리 <input type="radio"/> 측면 : 유리 또는 경질판 	<p>2. 피복자재 (다음중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PE (Polyethylene) <input type="radio"/> PVC (Polyvinyl chloride) <input type="radio"/> EVA (Ethylenevinyl acetate) <input type="radio"/> PC (Poly carbonate)
<p>3. 내부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관수시설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형관정 나. 점적관수 (장수형) (여과기, 압력조정장치, 모타포함) 다. 점적관수 (보통형) (비닐, 여과기, 모타포함) 라. 스프링클러 관수 (스프링클러, 여과기, 모타 포함) 마. 베드 침적관수 <input type="radio"/> 분화재배시는 분화 받침대 <input type="radio"/> 자동액비 시비장치 (EC, PH조정, 액비혼합기, 탱크포함) <input type="radio"/> 이중커튼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직포, 차광막등(2중 커튼) - 알루미늄축차 차광·보온자재 <input type="radio"/> 지붕 스프링클러 장치 	<p>3. 내부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관수시설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형관정 나. 점적관수 (보통형, 비닐, 여과기, 모타 포함) 다. 스프링클러 관수(스프링클러, 여과기, 모타 포함) <input type="radio"/> 이중커튼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직포, 차광막등

유 리 온 실	비 닐 온 실
<p>4. 부대장치 및 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수보일러 ○ 이산화탄소 발생기 ○ 연무식 분무기 또는 방제 살수기 (전자동) ○ 환풍기 ○ 공기 유통팬 ○ 작업용 배터리카 	<p>4. 부대장치 및 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풍난방기 ○ 이산화탄소 발생기 ○ 환풍기 ○ 방제기 등
<p>5. 환경제어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제어용 컴퓨터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등) ○ 환경측정용 센서 (온도, 습도, 광도, 이산화탄소 등) ○ 기후측정용 센서 (온도, 습도, 풍속, 풍향, 일조량, 강우, 강설 등) ○ 내부전기시설 안전장치 (차단기, 변압기 등) 	<p>5. 환경제어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자비 건설가능)
<p>6. 부속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실겸 컴퓨터실 ○ 작업실 ○ 보일러실 ○ 양액조제실 	<p>6. 부속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실 ○ 작업실

나) 경질판온실

1. 기본시설

- 기반조성
- 기초 콘크리트
(외부 : 줄기초 또는 독립기초, 내부 : 독립기초)
- 철재구조물및 알미늄 부재
- 천창 및 측창 개폐 자동장치
- 전기시설

2. 피복자재 (다음중 선택)

- PC (Poly carbonate)
- PVC (Polyvinyl chloride)
-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 FRP (Glassfiber reinforced plastics)
- 기타 경질필름

3. 내부시설

- 관수시설 (나,다,라중 1가지 선택)
 - 가. 소형관정
 - 나. 점적관수
(여과기, 압력조정장치, 모타포함)
 - 다. 스프링클러 관수
(스프링클러, 여과기, 모타포함)
 - 라. 베드 침적관수
(여과기, 모타, 수위조절기포함)
- 자동액비 시비장치
(EC, pH조정, 액비혼합기, 탱크포함)
- 이중 커튼 장치
 - 부직포, 차광막등(2중 커튼)
 - 알미늄증착 차광·보온자재

4. 농기계

- 온수 보일러 또는 온풍난방기
- 연무식 분무기 또는 방제 살수기 (전자동)
- 환풍기
- 공기 유동팬

5. 환경제어 시설

- 환경제어용 컴퓨터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등)
- 환경측정용 센서 (온도, 습도, 광도등)
- 기후측정용 센서 (온도, 습도, 풍속, 풍향, 일조량, 강우, 강설등)
- 내부전기시설 안전장치 (차단기, 변압기등)

6. 부속시설

- 관리실겸 컴퓨터실
- 작업실
- 보일러실

다) 조직배양실 및 저온처리실

조 직 배 양 실	저 온 처 리 실
1. 기본시설 (배양실 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조성 및 기초 콘크리트 ○ 블록조 또는 조립식 건물 + 단열재 ○ 전기시설 	1. 기본시설 (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조성 및 기초 콘크리트 ○ 블록조 또는 조립식 건물 + 단열재 ○ 전기시설
2. 내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가스시설 (작업실) ○ 작업대, 시약선반 (작업실) ○ 온·습도 조절 시설 (배양실) ○ 다단식 선반 (배양실) ○ 조명시설 	2. 내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설비 ○ 조명시설 ○ 전기제어 시설 ○ 자동 출입문 및 에어 커튼
3. 필요설비 (작업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균기 (Autoclave) ○ 멸균작업대 (Cleanbench) ○ 진탕기 ○ 시료 보관용 생육상 (Growth chamber) ○ pH 메타, 냉장고, 증류수 재취기, 저울 	
4. 부속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실 ○ 작업실 	4. 부속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실 ○ 작업실

라) 저온저장고

일반 저온저장고	구근용 저온저장고
<p>1. 기본시설 (본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조성 및 기초 콘크리트 ○ 건물 : 완벽한 단열시공 ○ 콤프레서 : 저장실 평당 0.4마력이상 ○ 에어컨 ○ 가습기 : 저온용(2-3대), 가습기용물 배관 1식(시간당 20ℓ 이상) ○ 응축기 : 평당 0.4마력이상 ○ 메인다트 : 1식 ○ 전기자동제어시설 1식 	<p>1. 기본시설 (저온저장고 본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조성 ○ 바닥 콘크리트 스크라브 마감 (지게차 운영) ○ 구근과 절화저장 가능시설 (필요에 따른 칸막이 필요) ○ 전기시설 (변압기 등 포함)
<p>2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차 작업의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화물차 적재함과 창고바닥의 높이를 가능하면 같도록 설치 ○ 관리실 	<p>2. 지붕, 벽면, 천정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량판넬 ○ 자동개폐 감응장치 (OVER HEAD DOOR, SLIDING DOOR)
	<p>3. 내부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도조절범위: $-5^{\circ}\text{C} \sim +40^{\circ}\text{C}$ (냉동기) ○ 온도편차 : $\pm 0.5^{\circ}\text{C}$ 이내 ○ 천정높이 : 5m 이상 ○ 항온항습장치 ○ 공기순환장치 (상, 중, 하단이 $\pm 0.5^{\circ}\text{C}$ 이내 편차) ○ 온도, 습도 감지 컴퓨터 ○ 절화수명 연장장치(에틸렌 가스 발생 억제 장치)
	<p>4. 부속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운반기구 (무공해 기구) ○ 관리실

마) 선별처리장 및 집하장

선 별 처 리 장	집 하 장
<p>1. 기본시설 (본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조성 ○ 기초 콘크리트 ○ 철제하우스 이상 + 단열재 ○ 전기시설 : 설치예정 설비 이상의 전기 용량 	<p>1. 기본시설 (본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조성 ○ 기초 콘크리트 ○ 평지 콘크리트, 간이건물 ○ 전기시설
<p>2. 내부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시설 ○ 선택 : 건물면적의 1/10 이상 저운 저장고 건설 가능 	<p>2. 내부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시설 ○ 작업대
<p>3. 능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기 ○ 지게차 	<p>3. 필요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 보관상자및 받침
<p>4. 부속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실 (샤워장, 화장실등) 	<p>4. 부속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실 ○ 휴게실 (샤워장, 화장실 등)

(양식1)

'95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용자금지급 기성고 확인서

<여신관리자금 인출용>

1. 주 소 :

(사업지역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원					

주) 세부사업명은 유리온실, 철골PET(PC)온실, 파이프비닐온실, 집하장, 예냉시설, 관정등으로 구분기입

5. 기성고('95. . 기준) : %

6. 용자금 지급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예산배정액	자 금 배 정 계 획			비 고
			기 배 정	금회배정	배정누계	
	원					

※ 동 자금은 수령후 7일이내에 시공업체등에 지급하여야 함

위의 사업자에 대하여 기성고에 따른 상기 용자금을 지급할 것을 확인 합니다.

1995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 직인

농 협 장 귀 하

고품질 우량채소종자개발·보급 지원(공공계획)

1. 목 적

-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 채소종자의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신품종육종 개발을 위하여 정부에서 중요업체의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므로써 중요산업을 육성,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우량한 채소종자 신품종 육성개발을 위하여 채소종자의 생산 보관시설 및 육종 자금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므로써 채소생산기반 구축

나. 연차별 지원계획

	'93까지	'94	'95	'96~'98	'99~2004	계
○ 사업량	141천평 (40품종)	4.5 (54)	3.9 (21)	9.0 (300)	18.0 (600)	176.4 (1,015)
○ 사업비	15,439백만원	3,577	2,428	27,600	55,200	104,244
- 용 자	10,421	2,500	1,700	18,320	38,640	72,581
- 자 담	5,018	1,077	728	8,280	16,560	31,663

3. 사업신청자격

가. 대상자

- 종묘생산자로서 사단법인 한국종묘협회에 가입한 종묘생산 업체
- 사단법인 한국종묘협회장이 추천한 중요업체로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하여 생산능력, 수출실적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확정

나. 사업대상시설 및 품목

- 채소종자 육채종생산.보관에 필요한 시설
 -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실험실, 온실, 망실 및 비닐하우스등
- 종묘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한 14개(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채소종자의 육종개발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95예산지원 규모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용자	자담
고품질우량채소종자개발		백만원		
		2,429	1,700	729
- 육채종시설 (평)	3,972	1,379	965	414
- 신품종육종 (품종)	21	1,050	735	315

※ 용자 사업으로서 국고.지방비보조는 없음.

(2) 시도별 지원계획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용 자	자 담	
계	35	2,429	1,700	729	
	개소				
경기	16	926	648	278	
강원	1	57	40	17	
충북	2	290	203	87	
충남	1	59	41	18	
전북	1	57	40	17	
경북	5	520	364	156	
경남	9	520	364	156	

다. 지원조건

(1) 재원별 지원비율 : 농특회계 용자 70%, 자담 30%

(2) 용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3) 용자요령

○ 자금용도

- 육채종 시설자금 :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실험실, 온실, 망실 및 비닐
- 육종자금 : 채소종자 신품종개발

○ 용자대상자 : 종묘업 허가를 득한 한국종묘협회 회원사

○ 채권보전 :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계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기 타

- 용자취급 사업소의 장은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본 사업자금 용자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대표자에게 통보
- 용자시에는 이자선취, 공제금, 기타부금을 징수해서는 아니됨

- 자금은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신품종육종자금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미리 지원할 수 있음)
- 시설물이 수반되는 육채종시설은 후취담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또한 농지도 담보로 하고, 담보능력이 영세한 업체는 담보여력이 있는 1개업체의 연대보증으로 신용대출도 가능토록하여 육채종 개발사업 용자지원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기 바람.
-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에 배정된 사업물량을 시.도별로 배정시달하고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용자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이를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라. 개소당 단위사업 내용 및 단가

세 부 사 업	단 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채소종자육채종개발				백만원 2,429
○ 시설자금	평	3,972		1,379
- 저온저장고	"	200	2,000	400
- 일반창고	"	400	700	280
- 실험실	"	100	1,600	160
- 온실	"	300	1,300	390
- 망실 및 비닐하우스	"	2,972	50	149
○ 신품종육종	품종	21	50,000	1,050

5.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가.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 한국종묘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종묘업체의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사업확정자가 중도에 포기하므로써 자금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 철저

- 육채종시설 : 육채종시설 허가가능여부 및 담보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 채소종자 신품종육종 : 한국종묘협회장이 추천한 업체의 신품종육종에 필요한 육종 시설, 관리장비, 기술자 보유유무, 담보능력등 제반사항을 검토, 지원대상자를 선정
- 시.도지사 : 각 시장.군수의 사업신청내역을 면밀히 검토후 사업성파가 낮은 업체는 제외하고 농림수산부에 보고
- 농림수산부 : 각 시.도지사의 사업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종자생산실적, 수출실적, 연간 종자매출실적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계획을 확정, 각 시.도에 계획시달

6. 기 타

가. 사업계획의 변경 등

(1)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할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 변경절차
 - 사업시행 생산자조직이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사유첨부 도지사에게 변경승인 요청
 - 도지사는 사업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2)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성격을 감안, 도지사가 결정하여 시행

나.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채소과 (02~500~5726)
- 시.도 : 도청 농산물유통과
- 시.군 : 군청 산업과

채소유통활성화 사업 (공공계획)

1. 사업목적

- 정부와 농협(생산자단체)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
- 생산자조직의 자율적인 유통사업활성화로 정부의 참여를 점진적 축소
- 생산자 조직이 산지시장을 주도하여 중간상인 견제 및 시장교섭력 강화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생산자단체가 채소유통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생산농민의 시장교섭력 강화와 유통 구조개선을 통한 채소류의 경쟁력 확보

나. 자금조성 계획

	계	'95	'96	'97
계	3,000 억원	625	1,000	1,375
국 고 용 자	2,400	500	800	1,100
농 협	600	125	200	275

※ 분담비율 : 정부 80%, 농협20%

3. 사업운용

가. 사업대상자

- 품목별 주산지 농협중 사업참여 희망농협(영농조합법인등 생산자조직 포함)
 - 사업대상 생산자 조직에 대하여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집중 지원
 - 공동출하촉진자금등 유통관련사업 집중 지원

나. 사업대상 지역 및 품목

- 지역 : 채소류 주산단지
- 품목 : 무, 배추, 대파, 마늘, 양파, 고추등
 - '95 : 배추

다. 사업방식

- 계약재배등 생산자단체 자율방식

4. 사업내용

가. 사업주관 : 농협중앙회

나. '95예산 및 자금운용

- '95예산

	대상품목	계	국고(용자)	농협자금
채소유통활성화 지원사업	배추	625 백만원	500	125

- 자금운용 : 사업자금 80%, 손실보상을 위한 운용자금 20% 기준
- 용자조건 : 무이자, 10년거치

다. 출하 및 판매

- 출하조정 : 시기별, 출하처별 출하조정 실시
- 출하처 : 대도시 도매시장, 집배센터, 판매장, 기타 대량수요처등
- 직거래 확대 : 산지포장, 규격출하로 상품성 제고 및 연계공급확대
- 판매방법 : 농협 계통출하 원칙

라. 계약재배

- 계약가격 : 품목별 하한가격(경영비+자가노력비) + 적정이윤(α)
- 계약물량 : 농진청 발표 "농축산물 표준소득"상의 도별(면별) 단수기준
- 품위기준 : 상품성이 있는 출하 가능한 품위 이상
- 대금지급 : 계약금, 중도금, 출하후 잔금지급은 조합 실정을 감안 지급

마. 이익 및 손실처리 : 사업참여농협 귀속

- 단위조직별 개별정산제
-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 참여농민에게 일정 지분 배분

바. 사업물량배정

- 참여 농협의 신청을 받아 전년도 재배실적 기준하여 중앙회가 배정

5. 기 타

-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 및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
- 사업보고
 - 사업추진상황보고 : 반기 익월 10일까지
 - 자체사업평가 결과보고 : 익년 3월말까지(차익년 사업계획서 동시 제출)
- 사업안내기관
 - 농림수산부 채소과 (02) 500~2669
 - 농협중앙회 채소과 (02) 397~5732

'95 화훼수출용 유통시설지원 (공공계획)

1. 목 적

- 화훼류 수출에 필요한 저온저장고, 선별처리장, 저온수송차량 등 제반 유통시설을 수출업체에 지원하여 수출물류비용 절감과 수출품의 상품성제고 및 수출물량조절로 수출확대도모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꽃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등급별 선별, 포장, 운반, 보관 및 신선도유지에 필요한 유통시설을 화훼 수출전문업체에 설치토록 용자지원
- 공항주변 꽃재배 주산지 또는 항구주변 주산지에 화훼수출 유통터미널 설치로 수송, 선별, 포장, 검역등을 일괄처리로 수출시간 단축

※ '97년 이후 수출물량 증가추세를 보아 1개소 추가건설 검토

나. '95 예산(안)

사업량	단 가	총 사업비	재 원 별	
			농특용자	자 답
1 개소	백만원 2,000	2,000 (100%)	1,400 (70%)	600 (30%)

3. 사업신청자격

- 화훼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자부담 능력과 담보능력이 있고 관련 유통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화훼수출전문업체

4. 선정기준

- 화훼수출실적이 많고 대농민 기술지도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업체
- 김포 또는 김해공항 인근지역에 시설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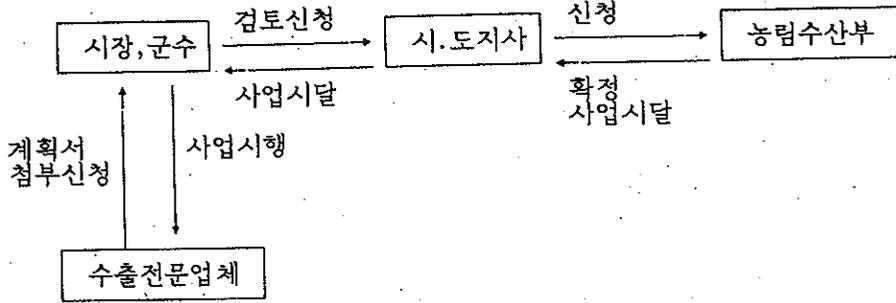
5.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시장, 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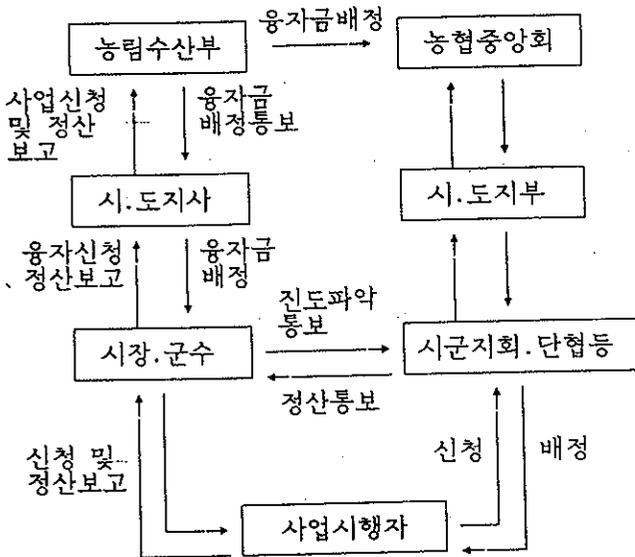
나.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선별처리장, 작업장, 저온수송차량, 관리실 등 꽃수출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조건 : 총사업비 20억
 - 용자 70%, 자담 30%
 - 용자 70% → 년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다. 사업추진체계도



- 용자금 집행 및 정산



5.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

가. 사업계획수립

- 화훼 수출전문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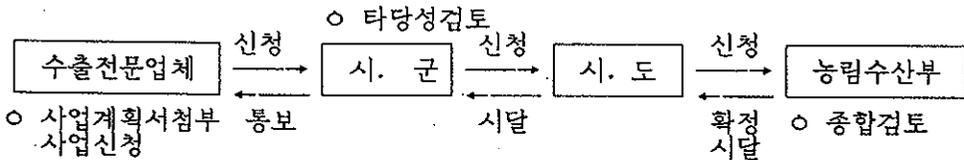
나. 사업계획수립시 고려사항

- 수출에 필요한 메뉴사업 검토
- 수출전망, 경제성 분석, 소요예산, 사업효과 및 장기활용계획 수립 등

다. 사업신청

- 시기 : '94.12~'95.1월말
- 신청기관 : 사업지역 시.군 (읍.면 경유)
- 사업계획서, 토지확보, 사업여건상 법적제한 여부와 담보능력 및 자부담 능력등을 증빙하는 서류첨부

6.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7. 담 보

- 통합지침 따름

8. 사후관리

- 통합지침에 따름

9. 사업효과

- 수출품의 품질향상과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확보로 수출확대효과
- 집하, 선별포장, 보관, 검역등 일괄 신속처리 가능

10. 사업안내

- 중앙 : 농림수산부 유통국 과수화훼과 (503-7274, 500-2670)
- 시.도 : 농정국 농산물 유통과 원예계

< 참고 >

< 화훼수출유통시설 기준 >

시설명	사업량	단가	총사업비	재원별 지원	
				용자 (70%)	자담 (30%)
계		만원	백만원 2,000	1,400	600
○ 저온저장고	400 평	450	1,800	1,260	540
○ 선별처리장	100 평	40	40	14	6
○ 작업장	100 평	40	40	14	6
○ 저온수송차량	4 대	2,250	90	63	27
○ 관리실 및 기타	80 평	87.5	70	49	21

※ 세부사업의 사업량은 변경할 수 있으며, 화훼수출과 관련된 기타 유통시설설치 가능

한우경쟁력제고사업(자율)

1. 목 적

-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한우사육에 적합한 입지확보 및 경쟁력있는 전업농 육성지원
- 한우사육기반의 적정 유지 및 양축농가 소득안정
- 한우고기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제고

2. 전업농 육성 목표

○ 목표 ('95) 2,000 → ('96-'98) 6,000 → ('99-2004) 12,000호
(누계) (8,000) (14,000) (26,000)

* ()내의 수치는 '94년까지 기육성된 전업농을 포함한 것임

3. 사업신청자격

- 사업대상자 : 한우사육농가, 농발법에 의해 설립된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사육농가들이 조직한 협업체·상법인 및 축협조합등
- 사업대상자 구비요건
< 한우전업농 >
- 3년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 영농조합법인등 협업체 >

-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협업체는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5인 이상의 농가가 회칙(운영규정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모임
- 한우사육농가들이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

o 사업대상자중 우선순위

< 한우전업농 >

- 번식사업의 비율이 높은 자(일관사육농가 포함)
- 평야지등 일반지역보다는 산간지대등 한우사육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사육하는 자
- 번식우 5두이상 또는 비육우 5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향후 2년 이내에 번식우 30두이상, 비육우 100두이상을 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 자
- 농과계학교졸업생 또는 농민후계자로서 3년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 초지·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과 가축운동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
- 1년이상 경영일지를 기장하고 있는 자
- 현장훈련실시, 시범농장으로의 개방등 다른 한우사육농가를 선도할 수 있는 자
- 위탁사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등 협업체 >

- 번식사업의 비중이 높은 단체
- 한우사육 여건이 좋은 지역에 위치한 단체
- 공동출하·공동구매등 조직의 응집력이 좋은 단체(법인 또는 협업체)
- 초지등 조사료자원 또는 부지를 많이 확보한 단체

- 공동 또는 개별기장을 하고 있는 단체
- 상표의 유명도 또는 소비처에의 납품실적이 많은 단체
(상표등록증 사본과 대형 소비처와의 계약서 사본등 검증자료 제시)
- * 협업체의 구성능가가 개별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개인사업자에 우선하여 지원하되 「한우전업농」의 대상자 구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등

- o 사업주체 : 시장·군수(도지사)
- o 협조기관 : 농촌지도소, 축협등 생산자단체

나. 사업내용

- o 사업개요
 - 진입로·목로개설·전력·용수개발등 사육기반시설, 축사·창고등 사육시설, 초지조성·사료작물재배·볏짚암모니아처리·조사료생산용기계등 조사료생산기반조성 및 장비구입등 한우사육에 필요한 모든사업 지원가능.
 - 단, 부지 및 가축구입비, 사료구입비등 운영비는 제외
- o 지원비율 : 별첨 「사업별 지원기준」에 의함
- o 지원규모 : 사업비의 편중지원 및 과도한 투자방지를 위하여 기 지원분을 포함한 지원액은 다음과 같음
 - 개인 : 1인당 2억원이내
 - 영농조합법인 : 자기자본의 200%이내(법인 소속 개인에 대한 지원은 별도)
 - 축협 : 자기자본의 400%이내
- o 지방비를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지방비가 포함되어야 함.
- o 세부실시요령 : 별첨 「사업별 세부실시요령」참고

다. 지원조건

○용자조건

- 용자기간 :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 * 단, 조사료생산장비, 기타기구·장비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금리 : 연리 5%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정과(02-503-7281, 500-2672-3)
- 도 : 농정국 축산과
- 시·군 : 시·군 산업과(축산과) 축산계, 농촌지도소 축산계, 축협조합 지도계

○ 붙임 : 1. 도별 사업비 내역

2. 사업별 지원기준

3. 초지·조사료분야의 사업별 세부실시요령

< 붙임 1 >

도별 지원 계획

	총사업비	능 특 회 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보 조	용 자		
경 기	백만원 13,536	10,152	677	9,475	677	2,707
강 원	8,928	6,696	446	6,250	446	1,786
충 북	9,792	7,344	490	6,854	490	1,958
충 남	19,584	14,688	979	13,709	979	3,917
전 북	12,096	9,072	605	8,467	605	2,419
전 남	25,488	19,116	1,274	17,842	1,274	5,098
경 북	28,080	21,060	1,404	19,656	1,404	5,616
경 남	20,736	15,552	1,037	14,515	1,037	4,147
제 주	5,760	4,320	288	4,032	288	1,152
계	144,000	108,000	7,200	100,800	7,200	28,800

< 붙임 2 >

사업별 지원기준

사업별		재원별				비고
		지방비	보조	용자	자담	
기반 시설	진입로 개설	20	70 (50)	- (20)	10	사육장 10ha당 0.5km지원, km당 100백만원, 선별적으로 지원(노폭 4m, 포장 3m)
	목로개설					사육장 10ha당 0.5km지원, km당 45백만원(노폭 4m)
	용수개발 전 력					공당 30백만원 사육장 10ha당 1공 km당 5,500천원, 사육장 10ha 당 0.5km지원
사육 시설	축사 축사부지정지 자동급이급수 시설 창고 사이로시설 관리사 운동장	-	-	70	30	두당 3평, 평당 400천원 평당 400천원 기당 3,000천원(30t) 평당400천원, 개별능가 불인정 선별적으로 지원
	조사료 생산					
조사료 생산	초지조성	-	50	50	-	ha당 단비: 경운 2,660천원, 불경운1,985, 임간초지1,675
	기성초지보완	-	50	50	-	ha당 870천원
	목책시설	-	-	70	30	ha당 500천원(5ha이상 지원)
	사료작물재배	20	50	-	30	종자·비료대 ha당 302천원 부지정지 ha당 5,000천원
	벼질암모니아 처리	-	80	-	20	기당 80천원

사 업 별		재 원 별				비 고
		지방비	보조	용자	자담	
조사료 생산 장비등	조사료생산장 비(트랙터, 부속작업기, 벼짚수거기등)	20 (20)	30 (10)	40 (60)	10	
기타	수송차량	-	-	70	30	
	우형기등	-	-	70	30	

(주)

1. ()내는 개별농가 및 협업체중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 비율
2. 상기 사업내용이외에도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제주도의 경우 교잡우대체 입식비(용자 70%)인정
3. 지원단가등은 정부지원시의 상한개념이며, 그 이상분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추진가능

초지·조사료분야의 사업별 세부실시요령

1. 기반시설

가. 진입로·목로개설, 전력인입

○ 지원기준 : 사육장 10ha당 0.5Km(노폭 4M, 포장 3M)

- 사육장 : 초지 및 사료포, 목로, 축사부지등 가축사육에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토지를 말하며, 가축사육 주사업장과 떨어져 있는 초지 및 사료포등은 제외

※ 진입로는 간선도로 또는 기존 마을에서 사무실, 창고까지를 말함.

○ 사육장 규모에 상응하는 기준사육두수 : 한우는 사육장 1ha당 암소 10두 또는 수소 30두이상, 젖소는 사육장 1ha당 암소 4두이상

- 사육두수는 성우기준이며, 육성우는 2두를 성우 1두로 봄
- 암소와 수소를 같이 사육하는 경우는 암소의 3배를 수소로 환산 또는 수소의 1/3을 암소로 환산함.
- 사업비는 사육장규모에 따라 비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육장규모에 상응하는 사육두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차감.

° (예1) 사육장규모가 7ha, 한우 암소사육두수가 75두인 경우의 지원기준
 $0.5\text{Km} \times 7 \div 10 = 0.35 \text{ Km}$

° (예2) 사육장규모가 7ha, 한우 암소사육두수가 50두인 경우의 지원기준
 $(0.5\text{Km} \times 7\text{ha} \div 10\text{ha}) \times (50\text{두} \div 70\text{두}) = 0.25 \text{ Km}$

° (예3) 사육장규모가 7ha, 젖소 암소사육두수가 30두인 경우의 지원기준
 $(0.5\text{Km} \times 7\text{ha} \div 10\text{ha}) \times (30\text{두} \div 40\text{두}) = 0.26 \text{ Km}$

나. 용수개발

- 지원기준 : 사육장 10ha를 기준으로 1공의 개발비지원, 10ha이상은 초과 사육장 10ha당 1공 추가지원 가능(예 : 15ha의 경우 2개공 지원)
- 1공당 사업비 30백만원은 착정개발(찬공, 우물설치, 양수시험등), 이용시설(양수장, 송수주관, 양수기, 전기시설 등)이 포함된 금액임.

2. 조사료생산

가. 신규 초지조성

- 초지법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 적지로 판정된 곳으로 1ha이상의 경우에만 지원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 방법 및 지원단가
 - 경운 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 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 초지조성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 사 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 심
1급지	20° 이하	100cm이상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30	99~50	6~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35	49~30	21~30	사토, 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cm이하	31%이상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 잡목등은 축사, 목책등 부대시설로 활용하고 타처반출 제한

○ 자재공급

- 목초종자

- 시장,군수는 농촌지도기관에서 제시하는 목초종자 소요량(신규조성 및 기성초지 보완등으로 구분)을 조사하여 축협중앙회장에게 공급요청
- 축협중앙회장은 우량한 종자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목초종자 수급계획을 수립
- 축협에서 공급하는 목초종자는 국립농산물검사소의 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함.

- 석회비료

- 농촌지도기관의 토양조사결과등을 참고하여 사용량을 결정하고 비료는 초지 조성용 복합비료를 기준하되, 가격이나 비효등을 감안하여 유리한 비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축협을 통한 일괄구매 또는 구매처 알선

○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구별 초지조성을 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작성,지도

○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용자금을 집행하여야 함(용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 초지조성 ha당 단비중 비목별 내역을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가능
- 초지조성 규정에 의한 목도, 축사부지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하되 개간이나 파종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장애물 제거비를 제외한 종자, 비료등 자재비와 개간비등 인건비는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나. 기성초지보완

- 하급초지에 한하여 지원
- 유희초지의 대리관리자 지정과 연계 추진
- 지원단가 : ha당 870천원.

다. 사료작물재배

- 종자와 비료는 같은 농가에 함께 지원되어야 함.
- 종자공급
 - 지원단가 : ha당 104천원
 - 시장·군수는 작목별 재배계획에 따른 종자 소요량을 조사하고 농가의 신청을 받아 축협조합을 통하여 공급요청
 - 축협중앙회장은 종자 소요량과 공급량을 감안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
 - 축협중앙회장은 동 수급계획에 의거 종자를 구매하여 조합을 통해 농가에 현물 공급
- 비료공급
 - 지원단가 : ha당 198천원
 - 시장·군수는 재배농가별 비료소요량을 조사하여 농협조합을 통하여 재배농가에 공급 단, 공급할 수 있는 비료는 비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생산업허가(또는 등록)를 받은 자가 생산한 비료에 한함.
 - 보조금은 농협조합에 직접 지급토록 하며, 농가에게는 현물로 보조
 - 사료작물용 비료를 일반 농사용등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실시
 - 사료작물재배용 비료소요량 : 시장·군수가 사업비 범위내에서 농촌지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시장·군수는 농촌지도소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료작물재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지도 및 연시회등을 개최
- 주요 사료작물의 파종량 및 시비량(예시)

(단위 :Kg/ha)

작 물 명	파 종 량	시비량(질소-인산-가리)
호 맥	200	200 - 120 - 120
이탈리안라이그라스	40	200 - 150 - 150
수 수	40	200 - 150 - 150
연 맥	120	200 - 150 - 150
유 채	30	200 - 150 - 150
옥 수	40	200 - 150 - 150

라. 조사료생산용 부지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영세토지 분합, 구릉지의 정지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 지원기준 : 대상토지면적이 3ha이상인 곳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우선순위 : 대상면적이 넓고, 참여능가가 많은 지역을 우선지원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것

마. 볏짚암모니아처리

- 처리규격 : 1기단위 3톤기준
- 1기당 소사육두수기준 : 4두(성우기준)
- 자재지원 :
 - 볏짚(보리짚)과 비닐은 농가에서 준비
 - 암모니아가스 및 주입비등은 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역별 일정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축협등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추진
- 축협중앙회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준비사항 : 비닐 및 볏짚준비량 등
 - 암모니아가스 및 처리비 단가결정(일괄계약체결)
 - 일괄계약에 의한 사업단가가 지원단가 이상일 경우 자부담으로 함.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

3. 조사료생산장비

가. 조사료 생산장비 공동활용

-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농가들이 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으로 조사료 생산장비를 구입 활용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대상지역(대상자) 선정조건
 -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가 단지화되고 전업규모 이상의 소사육농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조사료생산단지를 구성하여 농기계의 공동구입, 보관이 가능하고 전생산의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
 - 신규초지의 조성 또는 기성초지의 대리관리자 지정등에 의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유희(한계) 농지를 활용하여 초지나 사료작물의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
- 단지 및 사업규모
 -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 : 20ha이상
 - 소사육농가 : 5농가 이상
 - 농기계 구입
 - 기본장비(동력원) : 중대형 트랙터
 - 부속작업기 : 사료작물재배, 수확(이용), 운반등에 필요한 작업기 일체
 - 농기계 보관창고 : 농기계 공동보관용 창고 50평내외
 - 지원규모 : 단지별 실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되 단지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 단지조성 및 정관작성
 -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의 합의에 의한 단지의 구성 및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단지운영 정관에는 임원의 선정, 임무, 기계의 구입, 보관, 수선, 교체, 이용 및 회원의 임무, 책임등 단지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함.

○ 기계구입

- 기계구입시에는 단지회원등으로 하여금 구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방법, 절차, 가격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개입찰방법등에 의한 공정한 방법으로 구입
- 단지의 실정에 적합토록 구입기종 및 기종별 구입량은 구입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
- 기계는 단지공동소유로 하며 성능이 보장된 우량품을 구입하되 부품의 교환과 사후봉사가 용이한 제품을 구입

○ 단지운영요령

- 농기계의 보관은 회원공동의 창고를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 기계의 이용은 사업목적대로 조사료생산 작업에 한하여 사용하고 일반 농사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농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별 이용료 규정과 이용방법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운영하고 단지운영에 필요한 기본장부는 도에서 일괄 제작하여 배부하고 단지별로 비치 기재토록 하고 기초성된 단지를 포함한 모든 단지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분석
- 농기계 사용료는 단지운영비와 기계의 감가상각에 따른 기계대체를 위한 기금적립등 단지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조사료생산장비의 운영에 여유가 있을 경우 인근농가의 조사료생산을 위탁작업실시

나. 기타 조사료생산장비

- 조사료생산 장비는 공동활용분이나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등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개인은 예산의 여분이 있는 경우에 활용도를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초지나 사료작물재배지가 3ha이상일 것
- 공동활용하는 장비의 이용은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운영요령에 준함.
- 조사료생산장비 구분
 - 생산장비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등
 - 처리장비 : 곤포기, 포장기, 집초기,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등

한우특화사업(자율)

1. 목 적

-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적정한 한우사육기반의 유지 및 양축농가 소득안정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한우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유도를 통하여 경쟁력있는 전업농 육성 지원

2. 추진방향

-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의 지원내용중 번식기반 확충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지방비 보조 확대(30%이상)시 동일 비율의 촉발기금 보조

3. 사업신청자격

- 한우경쟁력제고사업과 동일함
 -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축협조합, 공동목장, 개별농가등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등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협조기관 : 시군, 농촌지도소, 축협등 생산자 단체

나.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진입로·목로개설·전력·용수개발등 사육기반시설, 축사·창고등 사육시설, 초지조성·사료작물재배·벼짚암모니아처리·조사료생산용기계등 조사료생산기반조성 및 장비구입등 한우사육에 필요한 모든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나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은 필수적으로 포함

단, 부지 및 가축구입비, 사료구입비등 운영비는 제외

○ 지원비율 : 기금보조, 지방비 각 30%이상, 기금용자 40%이하

(기금보조는 지방비 보조비율과 동일)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한우경쟁력제고사업지원 기준에 준함

다. 지원조건

○ 용자조건

- 금리 : 연리 5%

- 용자기간 :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 단, 조사료생산장비, 기타기구·장비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정과(02-503-7281, 500-2672-3)

- 도 : 농정국 축산과

- 시·군 : 시·군 산업과(축산과) 축산계, 농촌지도소 축산계, 축협조합 지도계

○ 불 임 : 도별 사업비 내역

< 붙임 >

도별 지원 계획

	총사업비	촉 발 기 금			지 방 비
		소 계	보 조	용 자	
경 기	백만원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경주마생산 지원 사업(자율)

1. 목 적

- 경주마 생산기반을 확대 조성하므로 외화절약과 양축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주마 도입자금, 시설개선, 장비, 기구등을 양축농가,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것임.

2. 국산 경주마 공급 계획

구 분	'94	'95	2003
○ 경주마 소요량(두)	1,450	1,450	2,450
○ 경주마 갱신(A)	435	435	735
- 도입경주마	371	287	188
- 국산경주마(B)	64	148	547
○ 자급율(% , B/A)	14.7	34.0	74.4

3. 사업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 경주마 생산(희망)농가
- 사업 대상자 선정조건
 - 한국마사회와 연계하여 경주마(망아지)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농가
 - 관광목장, 승마장등을 조성하려는 농가
 - 초지 또는 방목장등 충분한 조사료 자원을 확보한 농가(구분방목 기준 : 두당 700평<

- 우선 순위
 - 지역단위로 집단화, 협업화하여 생산하려는 농가
 - 5두이상 규모화된 농가
 - 초지, 방목장을 많이 확보한 농가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시장·군수

- 협조기관 : 농촌지도소, 축협, 한국마사회, 경주마생산자협회

나.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사업량	지원 단가	사업비					비고
			기금용자	기금보조	지방비	자담	계	
○ 종마도입	179두	백만원 7	1,253 (100)	-	-	-	1,253 (100%)	제주174, 충북 5두
○ 경주마 생산단지	1개소	1,500	1,050 (70)	75 (5)	75 (5)	300 (20)	1,500 (100%)	제주
○ 사육시설· 장비등			1,000 (70)	-	-	429 (30)	1,429 (100%)	제주

- 경주마 생산 단지 :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생산장비, 조사료생산지원등의 사업을 종합지원하고 단지당 5호이상의 사육농가가 정관을 작성하여 협업체로 추진
- 사육시설·장비, 조사료생산장비등은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의 지원조건에 의거 지원

다. 지원조건

- 종마구입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연리 5%
- 경주마 생산 단지조성, 사육시설 : 3년거치 7년 균분 상환, 연리 5%
- 조사료생산장비, 기타장비·기구 :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연리 5%

5. 사후관리

- 일반사항은 공통지침에 의거 추진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 능가가 사업의 일부를 변경희망 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가 변경승인 조치, 사안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 변경사항은 직상위 기관에 보고
- 추진실적 보고
 - 사업종료(2개월이내), 연말실적(차년도 2월말까지) : 도지사 → 농림수산부장관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측정과(전화 02-500-2672-3, FAX 02-507-3966)
 - 도 : 농정국 측산과
 - 시·군 : 측산(산업)과, 농촌지도소, 축협조합

지 원 기 준

구 분	재 원 별 투 자 비 율					비 고
	보 조		용 자	자 담	계	
	지방비	기 금				
○ 종마도입	%	%	% 100	%	% 100	
○ 기반조성						
- 목도개설	20	70 (50)	- (20)	10	100	○ 사육장 10ha당 0.5km 지원(km당 45백만원)
- 용수개발	20	70 (50)	- (20)	10	100	- 노폭 4m ○ 1개공당 30백만원 사육장 10ha당 1공
- 전 력	20	70 (50)	- (20)	10	100	○ km당 5,500천원 - 사육장 10ha당 0.5km 지원
○ 사육장시설]	한우 경쟁력제고사업	기준과	같음		
○ 조사료생산시설						
○ 조사료생산장비						
○ 기타시설장비등						

젖소경쟁력제고사업(자율)

1. 목적

- 낙농업을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 국내 낙농기반의 유지로 원유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2. 전업농 육성목표

- 목표 : $\frac{('95) 500}{(누계) (5,600)} \rightarrow \frac{('96-'98) 1,800}{(7,400)} \rightarrow \frac{('99-2004) 4,600호}{(12,000호)}$

* ()내의 수치는 기록성된 전업농을 포함한 것임

3. 기본방향

- 낙농의 경영규모 확대와 시설자동화등을 통한 전업농 집중 육성
- 종합지원체제를 도입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농가편의 도모
 -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가에 사육기반시설, 조사료생산, 장비등 종합지원
- 원유의 위생적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사양·환경등 낙농여건 개선

4. 사업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가. 사업대상자

- 낙농가·낙농가들이 조직한 협업체·젖소영농조합법인
- 지역축협·낙농(우유)협동조합

※ 단, '95년 사업대상자는 '94.6.25시달한 '95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지침에 의거 이미 사업신청을 한 자(법인·조합 포함)

나. 사업대상자 요건

《 낙농가 》

- 젖소를 3년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
- 낙농전문헬퍼요원으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협업체·영농조합법인·지역축협·낙협 》

- 협업체는 동일사업을 위하여 5인이상의 능가가 자생적으로 조직하여 회칙(운영규정등)을 갖추어 운영하는 협업체
- 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한 젓소영농조합법인
- 지역축협·낙농(우유)협동조합

다.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낙농가 》

- 가족노동력에 의하여 착유우를 1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로서 2년이내 착유우 30두이상 사육할 수 있는 자 (전업농 대상자에 우선 지원)
- 농과계학교 졸업자·농어민후계자로서 3년이상 낙농업에 경험이 있는 자
- 초지·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하고 있거나 낙농경영일지를 1년 이상 성실히 기록유지하고 있는 자
- 목장개방을 통하여 다른 낙농가에 대한 현장훈련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자
- 초자원이 풍부한 산간지대의 젓소사육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낙농을 하는 자
- 1등급의 원유 생산비율이 높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

《 협업체·영농조합법인·지역축협·낙협 》

- 낙농전문헬파사업 또는 젓소육성우위탁사육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 초지·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협업체·법인 및 조합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협업체·법인 및 조합
 - 시설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한 경영기법과 기술수준이 높은 협업체·법인 및 조합
 - 낙농여건이 좋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협업체·법인 및 조합
- ※ 조합·법인·협업체는 개별 낙농가에 우선하여 지원하되, 협업체는 지원 대상자의 낙농가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5.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주체 : 시장·군수

- * 단, 낙농전문헬파·젖소육성우위탁사육사업은 축협중앙회장이 해당 도지사와 협의 추진

나. 사업기간 : 매년 1-12월

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사업 : < 별표1 >의 세부사업별 지원내역과 같음
 - 낙농 기반조성, 사육시설, 조사료생산·장비, 낙농전문헬파·육성우위탁사육사업등
- 도별 자금지원계획(배정) : < 별표 2 >와 같음
- 지원규모 : 자금의 편중지원과 과다 투자방지를 위하여 다음 한도범위내에서 지원
 - 개별 낙농가(협업체 포함) : 개인(농가)당 2억원이내
 - 영농조합법인 : 자기자본의 200%이내
 - 축협 및 낙협 : 자가자본의 400%이내

라. 세부사업별 실시방법

○ 사육시설·기타사업

- 축사시설은 젖소 두당 3평기준으로 하고, 축사부지정지는 신축의 경우 축사시설비에 포함 지원(가급적 축사표준설계도서를 활용)
- 관리사는 주거용이 아닌 젖소 관리사시설의 경우에만 인정

○ 기반조성·조사료생산·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

- 초지·조사료분야의 『사업별 세부실시요령』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의 <붙임3>]에 의함
- 이 사업은 중앙·도·시군의 초지·사료업무 담당부서에서 관장하여 추진

○ 낙농전문헬퍼·젖소육성우위탁사육사업

- 도지사는 사업희망조합이 시·군을 통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축협중앙회장에 통보
- 축협중앙회장은 해당 도지사와 협의하여 < 별표1 >의 지원기준 범위에서 신청조합의 사업내용을 확정하여 추진
- '95년사업은 대상조합이 이미 사업신청을 도 또는 시군에 하였으므로 자금 배정 이전에 축협중앙회장이 이를 파악하여 해당도시사와 협의 추진

마. 지원조건

○ 용자조건

- 용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균분 상환)
 - * 단, <별표1>의 조사료생산장비, 기타의 장비·기구는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금 리 : 연리 5%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세부사업별 보조 및 용자 지원비율 : < 별표1 > 과 같음

바. 사업추진체계도 : 본 공동지침의 『축산발전기금(축협)』의 체계도 참조

- * 단, 낙농전문헬퍼·젖소육성우위탁사육사업은 『유가공시설지원사업』의 추진 체계도 참고

6.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도지사는 각도에 배정된 본 사업자금을 도의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한 대상자 및 투자 우선순위와 지역별 축산여건등을 고려하여 각 시군에 자금 재배정

※ 단, 축협중앙회장이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낙농전문헬퍼 및 젖소육성우위탁사육사업의 소요자금은 최우선적으로 확보·배정하여 차질없이 사업추진

-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자금의 범위내에서 시·군의 농어촌발전심의회(축산분과위)에서 정한 대상자 및 투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 추진
 - 특히, 본 자금은 종합지원체계에 의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대상자에게 소액 분산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여 추진
- 보조금 및 융자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정, 축협 여신규정 및 본 공동지침등에 의거 집행

7. 사후관리

- 도지사는 본 사업의 사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 통보(축협중앙회장은 해당 지침을 사업조합에 통보)하고, 사후관리 실시
- 도지사 및 축협중앙회장은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타용도로 전용시 지원자금 회수조치)
- 농촌진흥청은 낙농가가 원유의 위생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젖소사양관리 기술지도지침』을 세워 각 도·시군·농촌지도기관 및 축협에 시달
- 도지사 및 축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농림수신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젖소경쟁력제고사업 계획(확정)	도	매년 3. 31한	서식2
젖소경쟁력제고사업추진실적(중간·최종)	도	매년6.31,12.10	서식1
낙농전문헬파·젖소육성우위탁사육사업실적	축협중앙회	매년6.31,12.10	기존서식

* 보고 서식 1·2는 축영51521-219('94.7.8)호 참조

8.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674),
축협중앙회 낙농사업부(전화 02-485-3141)
- 도 : 농정국 축산과, 축협중앙회 도지회
- 시·군 : 축산과(산업과), 지역축협·낙협

< 별표1 >

젖소경쟁력제고사업의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세부사업별		재원별				비고	
		지방비	보조	용자	자담		
기 반 조 성	진입로개설	20 %	70 (50)	(20)	10	사육장 10ha당 0.5km지원, km당 100백만원, 선별적으로 지원(노퍽 4m, 포창 3m) * 사육장 : 초지 및 사료포, 목도및 축사부지등 가축사육 에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토 지로서 1ha당 젖소 4두이상 사육해야 함.	
	목로 개설						사육장 10ha당 0.5km지원, km당 45백만원(노퍽 4m)
	용수 개발 전 력						공당 30백만원 사육장 10ha당 1공 km당 5,500천원, 사육장 10ha 당 0.5km지원
사 육 시 설	축 사 축사부지정지 자동급이· 급수시설 착유 시설 창 고 사일로시설 관 리 사 운 등 장			70	30	두당 3평, 평당 400천원 평당 400천원 기당 3,000천원(30톤) 평당400천원, 개별능가 불인정 선별적으로 지원	
조 사 료 생 산	초지 조성		50	50		ha당 단비 : 경운 2,660천원, 불경운 1,985천원, 임간초지 1,675천원 ha당 870천원 ha당 500천원(5ha이상 지원) 종자·비료대 ha당 302천원 부지정지 ha당 5,000천원 기당 80천원	
	기성초지보완		50	50			
	초지목책시설			70	30		
	사료작물재배	20	50		30		
	벼짚암모니아 처리		80		20		

세부사업별		재원별				비고
		지방비	보조	용자	자담	
조사료 생산비	조사료생산 장비등	20 (20)	30 (10)	40 (60)	10	
기 타	수송 차량			70	30	
	낙농용기구			70	30	
	낙농전문헬퍼 (파출)사업					1년차(헬퍼 2인1조) : 개소당 18백만원 - 인건비·지도차량·점검장비 를 50%수준 보조지원
	- 신규사업		50		50	
	- 기존사업		25		75	2-3년차 : 개소당 6백만원 - 인건비를 25%수준(헬퍼 1인당 월 25만원) 보조지원
젖소육성우 위탁사육사 업				60	40	4년차 : 개소당 120백만원 한도 범위에서 용자 - 헬퍼 운영비조성등 용자지원
기 타						개소당규모 : 육성우 200두수준 (초지 40ha이상) 사업비는 본 세부사업별 지원 기준에 의함
기 타				70	30	기타 젖소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사업

※ ① ()내는 개별농가 및 협업체중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비율임.

② 위 사업내용이외에도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단, 유제품의 가공·유통 및 판매시설은 제외).

③ 보조·용자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비율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추가 부담은 지방비 또는 자담으로 추진함(보조·용자금은 축산발전기금임).

④ 낙농전문헬퍼 및 젖소육성우위탁사육사업은 지역축협 또는 낙협(우유협동조합)에 지원함.

< 별표2 >

젓소경쟁력제고사업의 도별 자금지원 계획(배정)

(단위 : 천원)

도 별	축 산 발 전 기 금			비 고
	보 조 액	용 자 액	계	
경 기	1,525,000 (477,000)	18,515,000 (1,540,000)	20,040,000 (2,017,000)	낙농헬퍼·육성우 위탁사업 포함
강 원	327,000 (18,000)	5,063,000	5,390,000 (18,000)	낙농헬퍼 포함
충 북	320,000 (6,000)	5,025,000	5,345,000 (6,000)	낙농헬퍼 포함
충 남	707,000 (42,000)	10,728,000	11,435,000 (42,000)	낙농헬퍼 포함
전 북	477,000	6,315,000	6,792,000	
전 남	427,000 (6,000)	6,179,000	6,606,000 (6,000)	낙농헬퍼 포함
경 북	586,000 (42,000)	8,827,000	9,413,000 (42,000)	낙농헬퍼 포함
경 남	512,000 (42,000)	7,605,000	8,117,000 (42,000)	낙농헬퍼 포함
제 주	79,000	1,184,000	1,263,000	
계	4,960,000 (633,000)	69,441,000 (1,540,000)	74,401,000 (2,173,000)	

※ ()내는 낙농전문헬퍼 및 젓소육성우위탁사업의 자금배정분임.

돼지경쟁력 제고사업(자율)

1. 목적

돼지고기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사육규모의 전업화, 시설의 자동화등을 위하여 농가가 필요로하는 사업자금을 종합지원

2. 전업농 육성목표

○ 목표 : ('95)400 → ('96-'98) 900 → ('99-2004) 800호
(누계) (3,300) (4,200) (5,000)

* ()내의 수치는 '94년까지 가육성된 전업농을 포함한 것임

3. 사업신청자격

가. 사업대상자

- 돼지사육농가 또는 종돈업 경영자
- 영농조합법인, 축협, 자생적인 협업체등

나. 대상자 구비조건

< 전업농, 종돈업 >

- 3년이상 양돈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종돈업은 시·도지사에 종돈업 등록이 되어 있는자로서 종돈분양 실적이 있는 자

< 축협·법인, 협업체등 >

- 축협, 영농조합법인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등기를한 법인
- 양돈사업을 목적으로 5호이상 농가가 정관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

다. 대상자선정 우선 순위

< 양돈(종돈)농가 >

- 종돈장 경영자, 돼지계열화사업 참여농가, 돼지고기 수출단지 참여 농가
- 자금 지원후 2년이내에 500두 이상을 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술과 재력이 있는 자
- 농과계학교 졸업자, 농민후계자로서 3년이상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자
- 농가 현장교육등 시범농장으로 활용하는등 선도양육을 할 수 있는 자
- 전산관리등 경영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기할 수 있는 자
- 도지사가 시범농가육성 교육장화하고자하는 대상자

< 조합·법인·협업체 >

- 공동구매, 공동출하, 공동방역등 조직의 응집력이 큰 조직
 - 공해문제등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적은 지역에 양돈업을 하고자하는 조직
 - 기술수준이 높고 경영관리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조직
- ※ 조합, 법인, 협업체등의 구성 농가는 개별농가에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1.1 - 12.31(1년간)
- 지원금액
 - 농가호당 2억원, 법인은 자기자본금의 200%, 축협, 공공기관은 400%한도 이상 증액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기반시설, 축사시설, 급이·급수시설,환경개선시설, 각종기구, 기계등 종합 지원(부지 및 가축구입비등 경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별도의 축산공해방지시설 사업으로 지원

다. 사업비 : 84,714백만원 (용자)

○ 도별 배정내역(잠정)

(단위:백만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5,248	4,914	4,744	14,062	7,709	9,488	14,401	11,606	2,542	84,714

라. 지원조건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3년거치 7년균분상환(금리 5%)
- 지원비율 : 용자 70%이내, 자담 30%이상(세부사업별 지원비율 : 별첨 참조)
- * 단, 관리용 기구·장비 구입비는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5.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 돼지경쟁력제고사업계획 (확정)	도	'95. 3. 31한	별첨
○ 돼지경쟁력제고사업실적	도	'96. 1. 20	"

6. 기타 참고 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674, 503-7282)
- 도 : 농정국 축산과, 축협중앙회 도지회
- 시·군 : 산업(축산)과, 농촌지도소, 축협조합

< 별첨 1 >

지 원 기 준

	사 업 비					비 고
	보 조		용자	자담	계	
	지방비	기 금				
< 기반시설 >	%	%	%	%	%	
○ 용수개발, 부지정지, 도로 개설, 전기인입	-	-	이내 70	30	10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년리 5%
< 사육시설 >						
○ 축사신축·증·개축	-	-				
○ 급이·급수시설	-	-				
○ 자동환기, 열풍기등	-	-				
○ 축사내부 각종시설	-	-				
○ 기타 필요한 시설	-	-				
○ 관리용 기계, 기구·장비	-	-	70	30	100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 기 타 >						
○ 돼지고기 즉석가공판매 시설	-	-	70	30	100	3년거치 7년 상환년리 5%

* 기구·장비의 예 : 트랙타, 로다, 살포기, 소독장비등

< 별첨 2 >

'95 돼지 경쟁력제고사업 대상자선정 내역

	지원대상자수 (농가, 업체수)	사 업 비			비 고
		합 계	기금용자	자 담	
		천원			
○ 개별농가	호				
- 전업농가					
- 종돈업					
- 계열화 참여농가					
- 돼지고기 수출단지 참여농가					
○ 영농법인	개소				
○ 생산자 단체	조합				
합 계					

※ 기재요령 : 참여농가수는 농가(업체) 개념으로 기재

(2 ~ 3개세부사업에 지원 받더라도 1농가로 기재)

< 별 표 3 >

돼지 경쟁력제고사업 세부사업별내역

단 위 : 천 원

		단 위	사 업 량		투 자 계 획		
			농가수	사 업 량	합 계	기금용자	자 담
합 계							
기 반 시 설	소 계						
	- 진입로 개설 - 부지정리 - 용수개발 - 전기인입	▣ 평 공 ▣					
사 육 시 설	소 계						
	- 축사신축 - 축사증.개축 - 급이.급수시설 - 환기.보온기등 - 내부자동화시설 - 창고신축 - 부대시설신축 - 기타시설	평 평 두분 " " 평 평 평					
기 타 기 계 · 장 비	소 계						
	- 관리용 기계 - 관리용 장비 - 기타기구	대 대					

※ 기재요령:농가수는 1농가(업체)가 2개 이상사업에 대상이될경우 각기 해당란에기재할것

다. 대상자선정 우선 순위

< 전업농, 종계업 >

- 종계업, 부화업, 닭계열화사업 계약농가
- 자금지원후 2년이내에 3만수 이상을 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술과 재력이 있는 자
- 농과계 졸업자 또는 농민후계자로서 3년이상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는자
- 농가 현장교육등 시범농장으로 활용하는등 선도양축을 할 수 있는 자
- 전산관리등 경영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기할 수 있는 자
- 도지사가 시범농가육성 교육장화하고자하는 대상자

< 조합·법인·협업체 >

- 공동구매, 공동출하, 공동방역등 조직의 응집력이 큰 조직
- 공해문제등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적은 지역에 양돈업을 하고자하는 조직
- 기술수준이 높고 경영관리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조직
- ※ 조합, 법인, 협업체등의 구성 농가는 개별농가에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1 - 12(1년간)
- 지원금액
 - 농가호당 2억원,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 축협, 공공기관은 400%이내
 - 단, 종계장, 부화장시설은 사업규모, 생산능력등을 감안하여 한도이상 증액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기반시설, 축사시설, 급이·급수시설, 환경개선시설, 각종기계기구등 종합지원
(부지구입 및 가축구입비등 경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별도의 축산공해방지시설 사업으로 지원

다. 사업비 : 49,642백만원(용자)

○ 도별 사업비

(단위:백만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8,936	3,326	3,822	6,900	4,567	6,007	8,936	6,255	893	49,642

라. 지원조건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금리 5%)
- 지원비율 : 용자 70%이내, 자담 30%이상(세부사업별 지원비율 : 별첨 참조)
- * 단, 관리용 기구·장비 구입비는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5.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 닭 경쟁력제고사업 계획 (확정)	도	'95. 3. 31한	별첨
○ 닭 경쟁력제고사업 실적	도	'96. 1. 20	"

6. 기타 참고 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674, 503-7282)
- 도 : 농정국 축산과, 축협중앙회 도지회
- 시·군 : 산업(축산)과, 농촌지도소, 축협(양계)조합

< 별첨 1 >

지 원 기 준

	재원별투자비율					비 고
	보 조		용자	자담	계	
	지방비	기 금				
< 기반시설 > ○ 용수개발, 부지정지, 도로 개설, 전기인입시설	%	%	%	%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년리 5%
	-	-	이내 70	30	100	
< 사육시설 > ○ 축사신축·증·개축 ○ 급이·급수시설 ○ 환경개선시설(자동환기, 열풍기 온도조절기등) ○ 축사내부 각종시설 ○ 계란집하장시설 및 계란저온저장시설 - 계란집하장시설 : 건물, 운반장비, 계란선별기 시설등 - 계란저장시설 : 건물, 냉장시설등	-	-				
	-	-				
	-	-				
	-	-				
○ 관리용 기계, 기구, 장비	-	-	70	30	100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 기구·장비의 예 : 트랙타, 로다, 소독장비등

< 별첨 2 >

'95 달 경쟁력제고사업 대상자선정 및 지원계획

	지원대상자수 (농가, 업체수)	투 자 계 획			비 고
		합 계	기금용자	자 담	
개별농가 -전업농가 -종 계 업 -부 화 업 -계열화 참여농가	호	천원			
영농법인	개소				
생산자단체	조합				
합 계					

※ 기재요령 : 참여농가수는 농가(업체) 개념으로기재

(1개농가(업체)가 2 ~ 3개세부사업에 지원 받더라도 1농가로 기재)

< 별표3 >

닭 경쟁력제고사업 세부사업별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량		투 자 계 획		
			농가수	사 업 량	합 계	기금용자	자 담
합 계							
기 반 시 설	소 계						
	- 진입도로	㎡					
	- 부지정리	평					
	- 용수개발	공					
	- 전기인입시설	㎡					
사 육 시 설	소 계						
	- 축사신축	평					
	- 축사증.개축	평					
	- 급이.급수시설	두분					
	- 환경개선시설 (환기,온풍기등)	"					
	- 내부자동화시설	"					
	- 창고신축	평					
	- 부대시설신축	평					
- 기타시설	평						
유통 시설	- 계란집하장	개소					
	- 계란저장지설	"					
기 타 기 계 · 장 비	소 계						
	- 관리용 기계	대					
	- 관리용 장비	대					
	- 기타기구	대					

※ 기재요령:농가수는 1농가(업체)가 2개이상사업에 대상이될경우 각기 해당란에기재할것

축산단지조성사업(자율)

1. 목적

가축사육시설을 단지화 하므로써 기자재의 구매, 생산물의 판매, 방역 및 분뇨처리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2. 육성목표

○ ('94현재) 73 → (2004) 210개소

3. 사업신청 자격

가. 대상축종 및 사업대상자

- 대상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 대상부지를 자체에서 확보하고 기존의 축산업을 이전하기 위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
- 기 조성된 단지중 사업보완을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단지
- 기존의 가축사육지역을 단지화하고자 하는 지역

나. 대상자 구비조건

- 가족노동력을 이용하여 축산농가로 단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 한우, 젖소는 3호이상, 돼지, 닭은 5호이상의 전업양축농가가 참여할 것
- 단지 참여농가는 과거 5년간 동일 축종을 전업규모 이상으로 사육한 경험자일 것
- 축종별로 사육입지 조건이 좋은단지(한우, 젖소는 사육장 및 조사료생산기반 규모가 크고 용수개발등의 경비가 적게 소요되고 양돈, 양계의 경우에는 분뇨처리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부지를 기 확보한 단지)
- 기반시설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한 지역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1-'96.12(2년)

○ 지원규모

- 1인당 3억원이내, 법인은 자본금의 200%, 축협등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00% 한도내

다. 사업비 : 64,934백만원('94계속사업, '95신규사업, 기존사업보완 포함)

○ 도별 배정내역(잠정)

(단위:백만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2,993	5,815	2,801	5,682	7,346	5,101	8,825	5,353	11,018	64,934

라.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기반시설(진입도로, 목도, 용수원, 전기시설) : 보조 90%, 자부담 10%
- 사료생산기계 : 보조 50(지방비 20, 축발기금 30), 용자 40, 자부담 10%
- 축사등 부대시설 : 용자 70%, 자부담 30%(별첨 지원기준 참조)

○ 지원조건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리 5%

* 단, 조사료생산장비, 기타 기구·장비 구입비는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마. 사업추진상 유의할 사항

- 축산단지조성 부지는 타법상 제한사유가 없는 지역으로서 자체자금으로 사전 확보 하여야 함
- 축산단지조성은 자금능력 및 지역적 특성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투자가 되지 아니 하도록 참여농가수, 시설투자계획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기관에 검토의뢰하여 작성 한다.
- 참여농가는 기존양축가중 전업규모로서 재력이 충분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단지조성 후 기존시설은 폐지하고 이전하여야 함

- 기반시설은(진입로, 전기인입, 용수개발) 일정비율의 지방비를 부담
- 축사등 사육시설은 값비싼 수입품등의 과잉투자를 억제하고 사육규모에 적합한 시설의 자동화로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 분뇨처리시설은 지원한도(1인당 3억원)에 제한없이 축산공해방지시설 사업으로 실제 소요되는 자금을 별도 지원
- 사업계획 수립시 항목별 소요자금은 공사비의 산출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거 수립·시행하고 사업시행시에는 사업설계를 하여 추진할것

바. 대상자 확정

- 농림수산부는 도지사가 제출한 대상지구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비 확정

5.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 축산단지 조성사업 계획 (확정)	도	'95. 3. 31한	별첨
○ " 실적	도	'97. 1. 20	"

6. 기타 참고 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674, 503-7282)
 - 도 : 농정국 축산과, 축협중앙회 도지회
 - 시·군 : 산업(축산)과, 축협조합

○ '94년도 신규 축산단지 2년차 사업비(용자)

단위 : 백만원

도명	단지내역		단지별 지원계획(축발기금)					
	대표자	단지위치	'94기지원실적			'95 계 획 (용자)	합계	비 고
			보 조	용 자	소 계			
합계	30개소		2233.95	15 19304.	10 21538.	21,826	10 43364.	
		<젖소단지>						
경기	정승훈	안성 서운 신기	74	253	327	326	653	
	이관선	파주 파평 장파	88	282	370	370	740	
		<젖소단지>						
	조한구	양주 남면 경신	63	527	590	587	1,177.	
	권오상	여주 북내 증암	93	561	654	654	1,308	
	김광환	포천 창수 주언	36	543	579	579	1,158	
	임정수	양주 회천 옥정	53	601	654	601	1,255	
		<양계단지>						
	임용택	파주 교하 목동	93	492	585	585	1,170	
		<한우단지>						
충북	이선희	증원 신리 문락	87	113	200	277	477	
		<양계단지>						
	백승진	증원 양성 중전	44	556	600	598	1,198	
	서승희	증원 산척 송강	44	356	400	366	766	
		<양돈단지>						
	임종만	당진 고대 당진	93	1,707	1,800	1,935	3,735	
		<한우단지>						
충남	김홍선	김제 금구 용지	59	163	222	222	444	
		<양돈단지>						
전북	전장수	진안 마령 덕천	93	1,898	1,991	1,990	3,981	
	윤어용	고창 심원 도천	31	451	482	481	963	
	최석산	완주 비봉 봉산	24	815	839	838	1,677	

단위 : 백만원

도명	단 지 내 역		단지별 지원계획(추발기금)					
	대표자	단 지 위 치	'94기지원실적			'95 계 획 (용자)	합계	비 고
			보 조	용 자	소 계			
전남	임정균	<한우단지> 영암 신북 행정	80	440.6	520.6	521	1,041.6	
	오재일	<양돈단지> 고흥 포두 상포	110	400	510	575	1,085	
	박춘삼	<양계단지> 나주 문평 옥당	115.85	698.55	805.40	800	1,605.4	
경북	전명수	<한우단지> 경주 서면 아화	70	30	100	109	209	
	김 균	<양돈단지> 영풍 장수 갈산	57	543	600	634	1,234	
	홍재하	성주 선남 용신	94	1,106	1,200	1,203	2,403	
	이재훈	<양계단지> 의성 가음 장리	151	849	1,000	1,019	2,019	
	김윤득	경주 내남 명계	58.10	628	700	708	1396.10	
경남	김영홍	<한우단지> 합천 삼가 학리	12	97	109	108	217	
	정진성	남해 이동 다정	77	308	385	385	770	
	진빈현	하동 북천 직전	152	384	536	535	1,071	
	조운운	<양돈단지> 합안 가야 산서	47	729	776	776	1,552	
	성기호	창녕 대지 본초	33	694	727	727	1,454	
	이상환	김해 상동 우계	70	1,474	1,544	1,544	3,088	
	제주	김창우	<양돈단지> 남제 대정 동일	132	1,614	1,746	1,721	3,467

< 참 고 >

축산단지조성 계획서

가. 단지명 : (위치 :)

나. 대표자 및 구성원 내역

	성 명	연 령	현양축규모	현농장위치	주요경력
대 표 자					
구 성 원					

다. 단지조성계획

○ 대상지의 입지조건

- 위치, 면적, 인·허가 연건등(시장·군수, 도지사 검토의견 및 지도계획 첨부)

○ 투자계획

- 사육규모(총규모, 농가당규모)
- 토지분할시 농가당 지분과 축사등 시설면적
- 투자계획(공동투자분, 농가당 사업별, 자원별, 년도별로 구분표시)
- 시설배치도(공동시설, 농가별 시설 구분)
- 추진일정

○ 경영계획

- 단지경영방법
- 생산비절감 계획, 생산물판매계획, 단지소득 추계
- 용자금 상환계획

○ 기 타

- 기타참고 증빙자료
- 투자 및 경영계획은 5년간 계획수립('95-'99, 단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은 2년)
- ※ 기존단지 추가지원 사업은 당초계획을 대비하여 수립할 것(도지사 검토의견 첨부)

지 원 기 준

	재원별 투자비율						
	보 조		용 차	자 담		계	
	지방비	기 금					
○기반조성							
- 진입도로	20	70 (50)	(20)	10	100	○사육장 10ha당 소는 0.5km, 돼지, 닭은 1km지원, km당 1억원을 선별적으로 지원 (노퍽 4m, 포장3m) * 사육장 : 초지 및 사료포, 목도, 축사부지등 가축사육에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토지 10ha당 한우암소 100수소300두, 젖소40두, 돼지 15천두, 닭15만수이상 사육	
- 목도	20	70 (50)	(20)	10	100		○사육장 10ha당 0.5km - km당 45백만원이내 (노퍽 4m, 한우, 젖소)
- 용수개발	20	70 (50)	(20)	10	100		○1개공당 30백만원이내 - 사육장 10ha당 1공 (한우, 젖소, 돼지, 닭)
- 전 력	20	70 (50)	(20)	10	100		○km당 5,500천원이내 - 사육장 10ha당 0.5km지원 (한우, 젖소, 돼지, 닭)
- 부지정지			70	30	100		
○사육장시설						"해당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지원기준과 동일	
○조사료생산시설							
○조사료생산장비							
○분뇨처리시설 장비							
○기타시설장비							

* ()내는 개별농가의 경우 지원 비율

기타가축 육성사업(지육)

1. 목 적

특수가축에대한 사육시설, 가공 및 유통시설 개선등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임

2. 사업신청자격

○ 사업대상자

- 특수가축(오리, 양, 사슴, 꿀벌등)을 전업으로 사육하는 농가
- 영농조합법인, 축협 및 자생적인 협업체

○ 대상자 선정조건 및 우선순위

- 축협(업종조합포함), 영농조합법인등 협업체로서 해당 축종이 전문화되어 있는 조직
- 3년이상 해당 축종을 전업으로 사육하고 있는 자
- 농과계 졸업생 또는 후계자는 3년이상 해당 축종을 사육하고 있는 자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1 - 12 (1년간)

○ 지원규모 및 내용

- 개인은 1인당 50백만원(혹염소 가공시설은 14백만원), 법인은 자기자본금의200%, 축협등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00% 한도내에서 지원
- 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 저장시설, 혹염소가공(중탕)시설

다. 사업비 : 12,763 백만원(용자)

○ 기타가축육성 지원사업

(단위:백만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860	1,033	1,238	1,399	430	1,818	1,259	1,528	198	10,763

○ 흑염소 가공시설사업

(단위:백만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사업량	12	12	10	14	10	14	13	13	2	100
사업비	168	168	140	196	140	196	182	182	28	1,400

라. 지원조건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금리 5%)

* 가공장비(흑염소 가공시설포함) 구입비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지원비율 : 용자 70%, 자담 30%

4. 사업추진유의 사항

- 흑염소 가공시설의 경우 100두이상 사육하는 자로서 (사)한국흑염소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군에 신청

5. 보고 : 돼지·닭 경쟁력제고사업 참조

6. 기타 참고 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674, 503-7282)

- 도 : 농정국 축산과, 축협중앙회 도지회

- 시·군 : 산업(축산)과, 축협조합

기타축육성사업 지원기준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지 원 비 율 (%)		
		가금용자	자 담	비 고
사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신축, 증개축 ○ 목책시설 ○ 급이·급수시설 ○ 절각장 시설 ○ 풀벌사육시설 ○ 저온·저장시설 ○ 채밀시설 ○ 기타시설등 	70	3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년리 5%
가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 동 기 ○ 건 조 기 ○ 농축기계 ○ 유압시설 ○ 포 장 기 ○ 예 열 기 ○ 흑염소가공시설 	70	30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년리 5%

가축계열화사업(공공계획)

1. 목적

전문경영주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통합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일정소득을 보장 생산에만 전념하여 생산비절감과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2. 육성목표

○ ('94현재) 25개소 → (2004) 53개소

3. 사업신청 자격

가. 대상축종 : 한우, 돼지, 닭

나. 사업대상자

- 도축, 부화, 사료제조업, 종축업등 축산관련 사업을 하는자로서 신규로 가축계열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생산자단체
- 기존 계열화사업체중 닭고기 정육을 수출하기 위한 사육환경개선을 하고자 하거나 기타 시설의 보완을 하고자 하는 업체

다. 대상자 구비조건

- 계열주체는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축산관련시설을 자체 확보하거나 임차계약 또는 계열화에 참여시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 자부담에 능력이 있고 용자금에 대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
- 계약생산된 축산물의 가공, 유통능력이 있는 자
-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능력이 있는 자
-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등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나.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1 - '96.12(2개년간)
- 지원규모
 - 사업계획에서 의거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원
 - 시설비의 70%이내 용자(2개년간 분할 지원)

다. 사업비 : 20,200백만원(용자)

- 도별 사업비(1년차 지원분, 잠정)

(단위:백만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보	계
1,441	-	350	1,290	2,354	4,515	3,500	-	1,750	5,000	20,200

라. 지원조건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3년거치 7년균분상환(년리 8%)
- 지원비율 : 용자 70%이내 자담 30%이상

5.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가. 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희망자는 불임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군수를 경유 도지사에 신청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 제출
- 농림수산부는 사업계획에 의한 소요자금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비 확정

나. 사업추진상 유의사항

- 사업승인후 5년이내에 한우는 3천두이상, 돼지 3만두이상, 닭 100만수 이상 규모로 각각 계열 조직화 함
-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자재는 계열주체가 확보하거나 기존시설을 임대 또는 계열조직화하여 사용
 - 기반시설 : 도축장, 종축생산시설, 가공시설, 판매시설등
 - 자 재 : 사료, 어린가축(병아리, 자돈, 송아지), 약품등
- 한우계열화를 위한 비육용 밀소 확보 방안 강구
 - 번식능가(조합, 축산단지, 자생조직등)와 계약생산하는 방법
 - 비육능가와 직접 계약하여 송아지공급을 생략하는 방안
 - 시중에서 구입하여 위탁 또는 계약사육하는 방안등을 강구

6. 보고

- 도지사는 사업추진 계획을 별첨양식에 의거 보고
 - 신규계열화 지원업체 사업추진 상황 : 별첨 1서식
 - ° 보고일

{	'94사업 : '95.7.10, '95.12.10(완료시)
}	'95사업 : '95.12.10, '96.7.10, '96.12.10(완료시)
 - 계열사업 추진실적(기존+신규) : 별첨 2서식
 - ° 보고일

{	'95상반기 실적 : '95.7.20까지
}	'95하반기 실적 : '96.1.20까지

7. 기타 참고 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674, 503-7282)
 - 도 : 농정국 축산과, 축협중앙회 도지회
 - 시·군 : 산업(축산)과, 축협조합

[부 록 1]

계열화 사업추진 상황

○ 업체명 :

○ 축 종 :

○ 지원년도 구분 : '94계속, '95신규

○ 세부추진상황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계 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진도
		용 자	자 담	계		용 자	자 담	계	

* 사업실적이 부진시에는 사유 및 대책을 기재

[부 록 2]

계열화업체별 생산사업 추진실적 보고

○ 업체명 :

○ 축 종 :

○ 추진실적 :

	상·하반기			누 계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열농가(호)						
○자축입식(두수)						
○사료공급(톤)						
○생 산 량(두수)						
○수 집 량(두수)						
○도 축 량(두수)						
○가 공 량(두수)						
- 생 축						
- 가 공						
○판 매 량						
- 국 내						
- 수 출						

- ※ 1. 보고대상 : 기존업체(지원 또는 지정), 신규업체
 2. 사업부진시 사유 및 대책을 기재

< 참 고 >

계열화 생산사업계획 작성요령

가. 계열화 사업자 현황

- 회사연혁 (소재지, 대표자, 경력등)
- 최근 3년간 사업실적
- 인력 및 자산, 시설보유 현황(구체적으로 명기)

나. 계열화생산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신규시설 확보 및 기존시설 보완계획(지원사업비 투자계획은 2년)
- 계약생산방법
 - 생산자재 공급방법(자축, 사료, 약품등)
 - 농가와외 계약내용
 - 농가확보 방법
 - 농가지도 계획
- 생산물수집·가공 및 판매방법(년차별)
 - 수집(수매)
 - 도축
 - 가공
 - 판매

-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 세부사업별, 재원별 용자, 자담으로 구분표시
 - 지원사업비의 투자계획은 2년간(1년차, 2년차)
- 자금상환 계획
- 추정 손익분석(사업개시년도부터 5개년간)
- 계열참여농가 생산비절감 효과(생산비절감 효과) 및 소득추정
- 사업추진 체계도(자축생산→자재공급→수집→도축→가공→유통까지 흐름도)

다. 기타 첨부서류

- 농가와 계열주체간의 계약서 사본(1농가분 건본 첨부)
 - 단, 개별 농가간의 계약서 사본은 도지사가 확인비치하고 총계약 농가 실적은 내역요약 첨부
- 자축(병아리, 자돈, 송아지), 사료, 기타생산자재등 공급계약서 사본
- 판매조직 확보 현황등 증빙서류
- 도지사 검토의견서 및 지도계획서
- 닭고기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육계사육환경개선 사업의 경우에 해당함)

'95 축산농가 해외연수(공공계획)

1. 목 적

- 전문 축산농가의 새로운 경영능력 배양과 양축의욕 고취
- 선진 축산국의 축산기술 도입·활용으로 생산비 절감
-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양축농가 해외연수』 실시를 당초계획('90-'94실시)보다 연장 추진
- WTO 출범 초기('95-'96)까지로 연장
- 전문분야별(축종별)로 양축농가등을 엄선하여 해외연수 실시
- 육우(한우), 낙농, 양돈, 양계, 유통등
- 연수효과 증대를 위해 가급적 현지 교육기간 위탁 및 농가입주를 통한 현장 실습 추진 및 연수기간을 연장 추진
- 연수기간 : (기존) 10일 → (개선) 12-15일

나. 연수방법

- 연수대상국의 축산관련 업계(농가, 시험연구기관, 생산자단체등) 현장견학 실시 및 축산전문가와의 면담 추진
- 일정기간 연수국의 전문 교육기간 위탁 또는 농가민박(Home stay) 연수등

다. 분야별 연수대상국 및 계획인원

분야별	연수대상국	연수계획인원	연수시기	연수기간	연수대상자
육우 1반 (한우) 2반 3반	일 본	18 명	5 월	12 일간	한우사육농가
	일 본	18	6	12	"
	미 국	18	7	15	"
낙 농	이스라엘	18	6	15	젖소사육농가
양돈 1반 2반	일 본	17	7	12	양돈 농가
	덴마크, 네덜란드	17	8	15	"
산 란 계	일본, 네덜란드	17	8	15	산란계 농가
유 통 반	일본, 덴마크	17	7	15	유통 종사자
계		140			

주 1. 대상국 및 연수시기는 현지사정등에 의하여 변경 가능

3. 연수대상자 자격요건

- 양축농가 : 연수분야의 축종을 직접 자영하는 전업농
 - 한 우 : 번식우(10두이상) 또는 비육우(50두이상)
 - 젖 소 : 착유우 30두이상
 - 양 돈 : 번식돈 50두이상, 비육돈 500두이상
 - 산란계 : 산란계 20천수 이상
- * 27세이상 50세 미만으로, '94.12말 현재 5년이상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가
- 유통종사자(유통분야) :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관리자, 도축장 경영자(지육관의 반출 도축장 경영자 우선)등
- 인솔자, 통역 : 반당 2명 (인솔자 1명, 통역 1명)
 - 농림수산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축협 임직원등
- 기 타
 - 각도별 공무원 2명씩 각반에 포함

4. '95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주관

- 농림수산부 : 기본계획수립, 대상자 확정등
- 축협중앙회 : 세부 실천계획 수립추진, 세부 연수일정 수립, 현지연수 실시, 사전·사후교육, 사후관리 및 예산집행, 결과보고서 작성등
- * 안내기관 : 농림수산부(측정과, 503-7281), 축협중앙회(중소가축부, 485-3141).

나. 연수대상자 후보 추천

- (1) 축산농가 : 각도에 구성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후보농가를 선발,
'95. 2. 28까지 농림수산부로 추천
 - 도는 각도에 배정된 연수분야별 추천계획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연수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시·군 및 생산자단체(축협, 업종조합등)로 부터 추천받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도별 연수대상자를 선정
 - 각도는 해당도의 생산자단체에게 연수 후보자 추천을 의뢰(50% 내외) 하여야 함.
 - 축산단지·영농조합법인·협업체등 전문생산자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을 우선 선정
- (2) 유통중사자 : 축산물유통과에서 적격후보자를 선정하여 '95.2.28일까지 측정과로 추천
- (3) 축산시책 유공 공무원
 - 시·도는 축산담당 공무원 1-2명을 '95. 2. 28까지 농림수산부로 해외연수추천
 - 각 도별로 배정된 연수반에 추천(별첨1)
 - 단, 해외경비는 소속기관에서 부담
- (4) 농림수산부는 각도에서 추천받은 후보자를 연수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여 연수단을 편성하고, 각도 및 축협중앙회에 통보(3월중) 하여 연수 추진
- (5) 추천배정인원 : 별첨 1

다. 인솔책임자 및 전문통역원 : 농림수산부장관이 당해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라. 사전 국내교육 실시

- 주 관 : 축협중앙회
- 교육장소 : 축협중앙회 대회의실
- 교육시기 : 출국 4주 이전 ('95. 4월중 잠정)
- 교육대상 : 인솔자, 전문통역원, 연수대상자 전원
- 교육내용
 - 해외연수일정 설명 및 여행안내
 - '94 해외연수 결과 설명
 - 연수대상국의 축산업 소개
 - UR결과 및 수입개방대응대책, '95주요 축산시책
 - 연수후 축산경영개선 설계작성 및 연수결과 발표회 개최요령
 - 연수후 귀국보고서 작성 안내등

마. 해외연수 출국준비

- 축협은 단체 해외여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행사 지정 활용 및 재외 공관에 협조 요청
- 축협 및 인솔책임자는 연수단원에 대한 여권수속 및 출국준비 상황등을 수시 확인

바. 자치회 구성

- 단체 해외연수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솔책임자는 자치회를 구성운영 (사전 국내교육후)
 - 해외연수시 단체 활동상의 업무분담을 위해 총무, 간사등 필요한 임원을 선출

사. 귀국후 조치사항

- 인솔책임자는 귀국후 각반의 연수자별 개인 귀국보고서를 취합, 정리하여 "공무원 국외여행허가업무 처리지침(농림수산부 총무·01112-3690, '90.7.5)"에 의거 소속 연수단의 귀국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에 제출
 - * 축협중앙회에서 연수자별 개인 귀국보고서 양식을 준비
- 각도는 연수성과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수자로 하여금 농민교육, 직장교육 또는 반상회등을 통해 해외연수결과 발표내용을 취합하여 농림수산부에 보고 ('95. 9. 30까지)

아. 소요예산 및 경비지급

(1) 여행경비 지급기준

- 연수에 소요되는 직접연수비와 행정비를 지급
 - 직접연수비 : 숙박비, 항공료, 현지교통비, 교육등록비 및 안내비등
 - 행정비 : 현지업무 추진비(인솔자경비, 통역원 경비)
- 예산집행은 현행 관계법, 규정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집행

(2) 경비부담

- 축산농가, 유통증사자 : 축산발전기금 70%, 자부담30%
 - 여권발급수수료 비용과 준비금은 전액 자부담
- 각도 공무원 : 소속기관에서 전액 부담
- 인솔책임자, 전문통역원 : 축산발전기금에서 전액 부담

(3) '95 소요예산액 : (278백만원, 잠정)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자. 기타사항

- 각도는 해당 도별로 확정된 연수대상자가 증도에 연수를 포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각 반별로 연수 예비자(1인이상)를 선정·확보

(서식1)

축산농가등 해외연수 후보자 추천 보고

- 도별 총괄표 -

(○○ 도)

인 적 사 항			주민등록 번 호	연수 분야	영농 경력	지방비 확 보 여 부	비 고 (해외여행 여부등)
주소(소속)	직위(직급)	성 명					
							* 반드시 명기

- 첨부 : 1. 축산농가등 해외연수 신청서(서식2) 1부.
2. 축산농가등 해외연수 추천서(서식3) (추천기관 : 축산과장) 1부.
3. 도 『심사위원회』의 후보자 심사의결서(자체서식/축산농가에 한함) 1부.
4. 국·영문 이력서 각 1부.
5. 서약서(서식 4) 1부. "끝"

(서식2)

축산농가등 해외연수 신청서

인 적 사 항			주민등록 번호	연수 희망 분야	연수 희망 시기	영농 경력	자부 담 등 부 가 여	비 고
주 소	목장명	성명						

위와 같이 축산농가등 해외연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서식3)

축산농가등 해외연수 추천서

1. 인적사항					
성명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연수분야		연수대상국	
주소				전화번호	(지역번호)
최종출신학교		축산업종		축산경력	
2. 축산경영규모					
경지규모		축종	사육두수	축사	기타
논	평	한·육우	두	평	
밭	평	젖소	두		
사료포	ha	돼지	두		
초지	ha	닭	천수		
3. 현지조사 결과					
조사자 소속			직성명	(인)	
피추천자	품행				
	지역사회 기여도				
	종합 의견				
<p>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위와 같이 연수 후보자를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추천관 도 축산과장 성명 (인)</p> <p>농림수산부장관 귀하</p>					

(서식4)

서 약 서

주소(소속) :

주민등록번호 :

직 성 명 :

위 본인은 '95 축산농가등 해외연수 사업의 연수자로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해외연수자 준수사항(별첨)을 완전 숙지하여 여행시 철저히 준수하고, 귀국시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2. 해외연수자의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여행중 불미스런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위반통보가 있을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농 립 수 산 부 장 관 귀하

< 별첨 1 >

'95 분야별 해외연수 후보자 배정계획

	육 우			낙농	양 돈		신란계	계
	1 반	2 반	3 반		1 반	2 반		
경 기	1	2(1)	1	3	1	2(1)	1	11(2)
강 원	2	1	2(1)	1	1	2	1(1)	10(2)
충 북	1(1)	2	1	1(1)	1	1	3	10(2)
충 남	2	1(1)	2	1	3(1)	1	1	11(2)
전 북	1(1)	2	1	1(1)	1	1	3	10(2)
전 남	2	1	2(1)	1	3	1(1)	1	11(2)
경 북	1	2(1)	1	1	1(1)	3	1	10(2)
경 남	2(1)	1	2	3(1)	1	1	1	11(2)
제주	1	1	1(1)	1	1	1	1(1)	7(2)
계	13(3)	13(3)	13(3)	13(3)	13(2)	13(2)	13(2)	91(18)
인솔책임자 ·통역요원	2	2	2	2	2	2	2	14
소 계	15(3)	15(3)	15(3)	15(3)	15(2)	15(2)	15(2)	105(18)
총 계	18	18	18	18	17	17	17	123

주 1. ()내 인원은 도 공무원 배정 사항임.

주 2. 유봉반 (17명)

- 유봉종사자 (13명) : 도매시장관리자 5명, 도축장경영자 8명
- 시·도 공무원(2명) : 서울특별시 1명, 부산직할시 1명
- 인솔·통역 (2명) : 농림수산부에서 선정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지원 사업(공공계획)

1. 목적

- 사육규모의 전업화, 축사시설의 자동화에 따른 축산기자재의 원활한 공급으로 경쟁력향상 제고

2. 사업신청 자격

- 대상자 : 축산기자재 생산업자
- 대상자 구비조건
 - 기자재 생산공장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문화된 특정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계획이 있는 자
 - 연구개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술 축적이 가능하고 제품의 규격화 및 A/S가 양호한 자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주관 기관 : 농림수산부

나. 사업량 및 사업비 : 10개소 3,500백만원

다. 사업내용 : 축산기자재(자동급이·급수, 착유기, 파이프라인, 자동환기시설, 케이지, 축분처리기등) 생산을 위한 기계, 시설자금

라. 지원조건 : 융자 70%, 자담 30%,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8%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4.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한국축산기자재협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 한국축산기자재협회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에 제출
- 농림수산부에서는 사업계획 및 사업비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확정

5. 사업추진 유의사항

- 표준축사설계도에 적합한 축산시설 및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
- 기존 공장을 활용한 자동화설비에 의한 생산성제고에 필요한 자금 사용

6. 보고

- 대상자 선정보고 : '95.2.10일까지(한국기자재 협회장 → 농림수산부장관)
- 사업완료보고 : '96.2.10일까지 (" ")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02-503-7282)
 - 한국축산기자재협회(02-790-0360)

< 참 고 >

축산기자재 생산시설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가. 회사현황

- (1) 회사연혁(소재지, 대표자, 경력등)
-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 (3) 인력 및 자산, 시설보유 현황(구체적으로 명기)
- (4) 축산기자재 생산종료명

나. 축산기자재 생산시설 사업계획

- (1) 사업개요
- (2) 신규시설, 보완, 장비등 세부사업별 용자, 자담등 투자계획
- (3) 기자재생산 및 판매방법(년차별)
- (4) 추진일정(세부사업별)
- (5) 상환계획(상환기간까지)
- (6) 시설배치도(공장시설)
- (7) 사업기대효과
- (8) 기타(관련증빙서류등)

측산기자재생산시설 지원사업 완료보고

○ 지원업체명(대표자) :

○ 사업장 위치 :

사업내용	계 획				실 적			
	사업량	용 자	자 담	계	사업량	용 자	자 담	계

양돈기술교육시설지원 (공공계획)

1. 목적

돼지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양돈경영관리기술 습득과 현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양돈인을 양성하므로써 양돈업의 국제경쟁력제고와 수출산업으로 육성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 농림수산부

나. 시행기간 : '95.1-12

다. 사업대상 : (주)도드람(돼지계열화주체)에 대하여 시험적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양계분야등 타 축종으로 확대

라. 사업내용

○ 기술교육을 위한 시설비(50%보조) : 강의실, 휴게실 및 식당, 자료 및 전산실, 사무실, 준비실, 강사실, 기숙사, 전시설등

○ 지원금액 : 300백만원(축산발전기금)

마.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과정 : 장기(1년이상) 중기(3-6개월) 단기(1개월이내)

○ 교육대상

- 전업양돈농가
- 양돈단지 또는 양돈계열화사업 참여농가
- 농업계 고등학교학생, 농어민후계자 양돈관련단체등의 종사자

3. 기타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02-500-2674, 503-7282)

축산경영개선상담 및 지도(공공계획)

1. 목적

축산업이 단지화, 계열조직화되고 사육규모가 전업화되는게 필요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경영과 기술을 보급하고 가축분뇨처리기술 지도로 공해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개선 도모

2. 사업내용

가. 시행주체 : 농림수산부

나. 시행기간 : '95.1-12

다. 사업대상 : 축산경영 전문민간연구소, 축산관련대학, 축협등 생산자단체

라. 사업내용

○ 경영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

- 축종별(한우,젓소,돼지,닭), 기능별(사양기술, 경영관리시설, 질병등) 전문인력
으로 팀을 구성

○ 지도방법

- 농가순회 상담지도

- 경영내용의 컴퓨터 입력 및 분석방법의 활용

- 노가교육, 세미나, 연찬회등 개최

마. 지원내용 : 경영진단 및 지도에 소요되는 인건비, 여비, 회의비등의 일정비율 보조

바. 지원금액 : 250백만원(축산발전기금)

3. 사업추진요령

○ 세부추진요령은 별도로 정함

4. 기타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02-500-2674, 503-7282)

축산경영진단지도 (공공계획)

1. 목적

축산농가의 경영관리 및 수익성분석을 통하여 경영지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지표에 의한 기술지도로 경영개선 도모

2. 사업내용

가. 시행주체 : 축협중앙회

나. 시행기간 : '95

다. 사업내용

- 양축농가의 축산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기장하는 습관과 요령습득을 위하여 양축 경영일지(번식우, 비육우, 낙농, 양돈, 육계, 산란계) 제작 배포
- 경영일지 기장 요령 교육
- 도별 경영진단협의회를 구성하여 경영성과 분석

라. 지원내용 : 경영일지 제작 및 농가교육, 협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마. 지원금액 : 60백만원

3. 기타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02-500-2674, 503-7282)

축산물생산비조사(공공계획)

1. 목적

축산물수급 및 가격등 축산시책의 수립과 양축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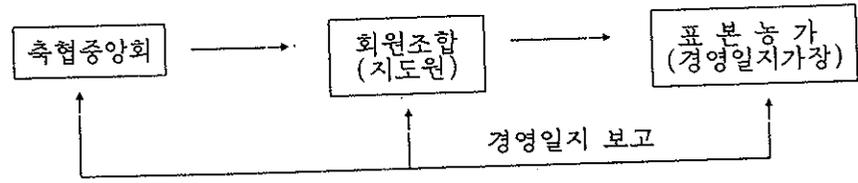
2. 사업내용

가. 시행주체 : 축협중앙회

나. 시행기간 : '95(매년조사)

다. 사업내용

- 조사축종 : 우유, 송아지, 비육우, 비육돈, 자돈, 산란계, 육계
- 조사규모 : 81개지역 810호
- 조사체계



○ 조사방법 : 기장 조사

라. 지원내용 : 생산비조사 및 분석에 소요되는 인건비, 여비등의 조사 비용

마. 지원금액 : 260백만원(축산발전기금)

3.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02-500-2674, 503-7282)

한우개량단지사업 (공공계획)

1. 목 적

- 순수개량 방법에 의한 한우능력 향상
- 우량증우 생산기반 구축
- 우량한우보호 및 순수혈통 보전

2. 추진방향

- 지역중심의 "개량단지"와 농가중심의 "개량농가" 병행 추진
- 참여농가의 규모화 및 정예화로 개량 촉진
- 정확한 개체 능력 조사 및 기록유지
- 한우능력검정사업과 연계 추진

3.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
- 대 상 : 지역조합 및 참여농가
- 사업기간 : '79-영구
- 사업량

	단지(농가)운영	등록우관리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한우개량단지	250 개소	120 천두	120	80
한우개량농가	10 천호	80	80	-
계		200	200	80

- 사업비(축산발전기금)

	보조사업	기금사업	용 자	합 계
사 업 비	백만원 6,870	73	5,000	11,943

4. 세부추진요령

가. 한우개량기반확충

○ 신규개량단지 선정 : 50개소(총 250개소 운용)

- '95신규단지 도별 배정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개소								

- 선정방법

- 도지사는 축협도지회장과 협의하여 '95년 2월말까지 신규개량단지를 선정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장(국립중축원)에게 추천
-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선정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농림수산부, 각 도지사 및 축협중앙회에 통보

- 선정요건

- 풀자원이 풍부한 산간오지의 소득수준이 낮은 면단위 지역으로서
- 총 소사육두수중 한우암소 사육비율이 60% 이상이고, 젖소암소 사육비율이 15% 이하인 지역이며
- 단지내 한우암소를 외모심사하여 200두 이상(농가당 2두이상) 기초등록이 가능하고
- 장기적으로 젖소 및 비육우 사육확대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
- 가급적 기존단지와 인접하여 선정하되 단지의 지역범위는 1개 면으로 함

○ 한우개량단지 이외지역의 희망농가를 『한우개량농가』로 선정

- 선정방법

- 지역축협장은 개량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한우사육농가중 선정요건에 적합한 농가를 조사하여 별지 1의 서식에 의거 '95년 3월말까지 도지회장을 경유하여 축협중앙회장에게 보고

- 축협중앙회장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장과 협의하여 심사·등록을 실시한후 5두이상 등록된 농가를 "한우개량농가"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도지사 및 가축개량총괄 기관장에게 보고

- 선정요건

- 1세이상 한우암소를 1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로서
- 외모심사를 하여 5두이상 등록이 가능한 농가, 단 다음의 농가는 제외함
 - 총 소사육두수중 비육우 비율이 50%이상인 농가
 - 젖소암소를 사육중인 농가

나. 등록우에 대한 계획교배

○ 개량단지

-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근친교배 방지 및 등록우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모우 3두를 지정하여 축협중앙회장에게 통보.
단, 고등등록우는 개체별 최적종모우 지정

○ 한우개량농가

-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심사결과 등록우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종모우를 개체별로 지정하여 축협중앙회장에게 통보

○ 기 타

- 단지관리조합 및 한우개량농가는 지정종모우에 의한 계획교배 실시
- 철저한 수정기록 유지로 정확한 혈통관리

다. 농가지원

○ 개량자료 조사사례비

- 지역축협장은 별지 2의 서식에 의한 개량자료 조사표를 등록우 관리두수에 해당하는 수량 만큼 참여농가에 배부
- 참여농가는 등록우가 송아지를 생산하였을 경우 본 조사표를 정확히 작성하여 관할축협에 제출
- 축협담당자는 조사표가 지정종모우 교배등 정확히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한후 해당농가에 인공유 100Kg을 지급. 단, 후대검정을 위하여 생산된 송아지에 대하여는 10천원 해당액 어미소 사료를 추가로 지원

○ 종축등록비

-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농가에 무료로 등록을 실시하고 등록실적에 의거 축협 중앙회장과 정산
- 등록단계별 등록료

기초등록우	혈통등록우	보통등록우	고등등록우
2천원/두당	3	4	7

○ 가축인공수정료

- 지역축협장은 관내 희망수정사로 부터 신청을 받아 참여농가에 대한 전담 인공수정사로 지정
- 지역축협장은 전담수정사와 수정차순별(1차, 2차, 3차등) 수정료 계약
- 농가는 전담수정사에게만 수정 신청
- 전담수정사는 수정신청 농가에 수정을 실시하고 농가가 보유중인 "개량자료 조사표"의 증부사항난에 수정기록을 기재한후 1차 수정인 경우에는 계약된 수정료에서 12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농가로 부터 받음
- 전담수정사는 수정결과를 축협에 매월 통보하고 1차수정 해당농가로 부터의 미징수 해당액을(두당 12천원) 지역축협과 정산

라. 단지 및 개량농가 관리

- 단지지도원이 담당하던 송아지생산 농가에 대한 사료공급 업무는 관할축협 사료 판매조직으로 이관하고 단지지도원은 심사·등록, 농가의 등록우에 대한 발육 및 번식능력 조사지도, 기록유지등 개량업무에만 전념
- 농가별, 개체별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월령별, 세대별, 등록단계별로 번식 및 발육능력에 대한 기록 유지
- 지역축협은 등록우의 이동방지와 세대 축진을 위하여 노력
- 지역축협은 행정기관, 도립종축장 및 한국종축개량협회등의 협조를 받아 년 1회 이상 단지내 농가 및 한우개량농가에 대한 사양 및 개량관련 교육실시

- 개량농가는 기존 개량단지 지도원들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단, 개량단지가 없거나 여유 지도원이 없는 경우에는 본소 지도요원중 1인을 개량
농가 담당자로 지정·운영하여야 함
- 지역축협장은 개량농가에 대하여 매년 6월중에 선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여 부적합농가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 축협중앙회장은 참여농가의 개량자료 조사편의를 위하여 리·동단위에 배치되는
우형기 및 체척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작성하여 시달

마. 참여농가의 규모화 및 정예화 예시

- 소규모 사육농가의 년차별 지원제외로 규모화 촉진

	'96	'98	2000	2002
지원제외규모	1두사육농가	2두사육농가	3두사육농가	4두사육농가

- 개량정도가 낮은 기초등록우의 년차별 지원제외로 개량촉진(단지조성 6년차부터)

	'95	'96	'97	'98	2001
제외 단지	'89조성단지 (32개소)	'90조성단지 (36개소)	'91조성단지 (21개소)	'92조성단지 (79개소)	'95조성단지 (50개소)

- 혈통등록우중 보통등록심사에서 탈락된 개체와 심사기피 개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바. 지역축협 경제활성화 자금지원

- 대 상 : 한우개량단지관리조합
- 지도원배치 : 단지당 1 ~ 2명(기존단지 2명, 신규 1명)
- 지 원 액 : 지도원 1인배치 기준 100백만원
- 용 도 : 구·판매, 계통출하사업, 군납사업등 조합경제사업 자금으로
활용하여 그 수익금을 지도원 인건비 재원으로 사용

- 용자조건 : 무이자, 1년거치후 일시상환(3년까지 연장사용 가능)
단, (7)항의 평가에서 지정해제된 단지는 즉시 회수조치하고
합격된 단지는 3년간 연장조치 함

사. 평가등

-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개량전문가들로 한우개량단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 간격으로 단지별 사업실적 및 개량도를 평가하고 부실단지는 지정해제
단, 최초 평가는 '95년 하반기에 실시
- 단지지정 10년이상된 단지는 『우수개량단지』로 승격시켜 지역 축협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개량 사업이 지속되도록 지도('96년부터 실시)
-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축협(봉사조합)에 대한 보조폐지
 ○ 여비, 수용비, 장비운영비등

아. 보고등(축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세부사업추진계획('95.2.15일까지)
- 사업추진실적(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자. 기 타

- 한우개량농가 희망 조사표 : <별지 1>
- 개량자료 조사표 : <별지 2>
- 사업추진 체계도 : <참고 1>
- 한우개량단지조성 현황 : <참고 2>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02-500-2674, 503-7282)
국립축육원 증축관리과(0417-581-2081)
축협중앙회 한우사업부(02-485-3141)
- 도 : 농정국 축산과, 축협도지회
- 군 : 축산(산업)과, 축협조합

< 별지 1 >

한우개량농가 희망 조사표

관리 축협	희 망 농 가		소 사 육 현 황						
	주 소	성 명	구분	계	번 식 우		비 육 우		젖소
					1 세 이 상	1 세 이 하	우	송	
			두수						
			비율	()	()	()	()	()	()

< 별지 2 >

개량자료 조사표

가. 번식능력

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사육농가	주소								성명			
종부사항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일자	종모우명	일자	종모우명	일자	종모우명	일자	종모우명	일자	종모우명		
분만상황	분만일자			성별			산차			분만난이도		

나. 발육능력

(단위:kg, cm)

	분 만 우								송 아 지	
	이유시	6개월령	12개월령	18개월령	24개월령	36개월령	48개월령	60개월령	생시	생시
조사일(예정일)		()	()	()	()	()	()	()		
체중										
체고										
십자부고										
체장										
흉폭										
흉심										
요각폭										
근폭										
좌골폭										
고장										
흉위										
전관위(우측)										

※ 소를 판매시는 본 조사표를 구매자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 등록번호 : 종축개량협회 등록번호로써 해당개체의 관리카드에서 확인하여 기재
- 관리번호 : 단지관리조합에서 부여한 번호로써 이표를 확인하여 기재
- 생년월일 : 해당개체의 관리카드에서 확인하여 기재
- 증부상황 : 처녀우는 최초 증부부터, 경산우는 최종 분만이후 금번 분만까지의 기간중 증부상황 기재
- 성 별 : 암수로 구분기재하되 쌍태일 경우는 암2, 수2, 암·수 중 선택 기재
- 산 차 : 분만한 횟수를 기재 예) 초산, 2산, 3산,
- 분만난이도 : 정상분만, 조력분만, 난산, 유산, 사산중 선택 기재
- 조사일자 : 체중 및 체위를 측정한 년월일을 기재
(예정일) : 본 조사표 배부시 해당 등록우에 대하여 농가에서 조사하여야 할 일자를 지역축협에서 기재
- 체중 및 체위측정 : 유형기, 체척기, 캘리퍼, 줄자를 이용한 측정치를 기재
 - 초산우 : 이유시부터 분만시 월령까지 해당하는 월령의 측정치를 기재
예) 26개월령에 분만했을 경우 이유시, 6개월령, 12개월령, 18개월령 24개월의 측정치가 기재되어야 함
 - 경산우 : 전번 분만부터 금번분만까지 해당하는 월령의 측정치를 기재
예) 26개월령에 초산을 하고 38개월령에 2산을 한 경우 :
36개월령 측정치만 기재
26개월령에 초산을 하고 35개월령에 2산을 한 경우 :
분만직후 측정치를 36개월령에 기재
 - 송아지 : 분만된 송아지의 측정치를 기재하되 단태일 경우는 1칸만, 쌍태일 경우는 2칸 모두에 기재

〈참 고 2〉

<참고 2>

		년 도 별			
		'79	'87	'88	'89
개소 도별	200	8	4	20	32
경 기	8	양동군 양동		포천군 창수 가평군 신석악	
강 원	21	양양군 강현	춘성군 동면 신북	홍천군 서석 정선군 임계	평창군 대화 횡성군 갑천·청일
충 북	19	청원군 오창		옥천군 청산 충원군 대강	괴산군 청천 진천군 청초
충 남	27	공주군 이인	예산군 산양	공주군 의당 청양군 정산	부여군 내산 홍성군 갈매 영양군 옥동 청양군 천의
전 북	20	장수군 천천		남원군 보절 진안군 부귀 순창군 창치	완주군 화산 정읍군 산외
전 남	33	고흥군 두원	보성군 울어 겸백	해남군 삼산 승주군 황전	강진군 평지 신안군 동천 장흥군 양영 곡성군 간현 구례군 간현 진안군 회수 장흥군 회부
경 북	36	의성군 금성		상주군 사벌 영주군 보북 예천군 경동 문안	문성군 남양 속초군 수산 고령군 추곡 영양군 추곡 영양군 화주 영양군 화주 영양군 화주 영양군 화주
경 남	36	울주군 상북	합천군 합천	남해군 남면 밀양군 단장	하진군 의신 고성군 사거 합천군 의신 고성군 사거 합천군 의신 고성군 사거 합천군 의신 고성군 사거

강화도 한우육용화사업(공공계획)

1. 목적

- 한우와 샤로레 교잡에 의한 한우의 육용화 및 농가소득 증대

2. 추진방향

- 교배체계에 의한 교잡종생산 및 세대별 교잡종 종우 확보
- 세대별 교잡종의 능력검정실시
- 소요정액의 자체확보

3. 사업계획

- 사업주체 : 축산시험장
- 대 상 : 강화축협 및 참여농가
- 사업기간 : '78 - 2005('96년부터 축산시험장 및 강화축협 자체사업 전환)
- 사업량

인 공 수 정	교잡종 암송아지 생산	암송아지 사료지원
1,880 두	935 두	180

- 사업비 : 26백만원(축산발전기금 보조)
 - 지원내역 : 3회이상 교잡종암송아지 생산농가 사료 및 사업관리비용

4. 세부추진요령

- 축산시험장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통보)
- 교잡종 암소의 타지 반출억제
- 생산 암송아지에 대한 사료비지원
 - 3회이상 교잡종암송아지 생산 : 100천원/두
- 축협중앙회장은 '96년도에 강화축협에 지원된 지역축협경제활성화자금(2억원)을 회수하여 축산발전기금에 납입
- 보고등(축산시험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사업추진 계획 보고('95. 2.15일까지)
 - 사업추진실적보고(매분기 익월 20일까지)
 - 교잡우 능력시험결과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종료후 20일 이내)
- ※ 축산시험장장은 각종 보고시 경기도지사에게도 보고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02-500-2674, 503-7282)
 - 국립종축원 종축관리과(0417-581-2081)
 -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0331-292-4511)

가축인공수정사업 (공공계획)

1. 목적

- 우량종축의 능력확산
- 가축능력향상으로 경제성 제고

2. 추진방향

- 우량종모우 확보 및 활용체계 확립
- 정액생산 공급의 원활화
- 축협 인공수정사에 대한 인건비 일부 보조

3. 사업계획

- 사업량

	한 육 우	젖 소	계
축 협	180 천두	40	220
민 간	930	350	1,280
계	1,110	390	1,500

※ 산출근거

- 년초사육두수 추정(한육우 2,370천두, 젖소 557천두)
- 한육우증 암소비율 : 67%(1,558천두)
- 년초수 대비 인공수정비율(한육우 70%, 젖소 70%)
- 사업비 : 306백만원(축산발전기금보조)
 - 지역축협 수정사 : 299백만원(83명)
 - 울릉군 가축인공수정사 : 7백만원(1명)
- 시·도지사는 관내 가축인공수정사업을 총괄, 조정, 지도함

4. 세부실시요령

- 가. 축협중앙회장은 인공수정용 정액의 수요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증모우 확보 및 정액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역축협 소속 수정사인건비 지원액에 대한 세부집행 요령을 작성하여 관련조합에 통보함
- 나. 정액생산
 - 축협중앙회(한우개량사업소, 유우개량사업소), 정액등처리업자
- 다. 정액공급
 - 축협유우개량사업소, 제주축산진흥원(제주도), 정액등처리업자
- 라. 인공수정 실시
 - 소 개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근친교배를 방지하고 암소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액 선정 시술
 - 정액·인공수정증명서 발급 철저
 - 교잡우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은 제주도와 강화지구(사로레 교잡)에 한함
다만, 학술연구기관자체보유 축군에 대한 시험연구용 및 육우순종번식시는 예외
 - 축협 및 민간수정소는 월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시·군에 제출
 - 시·도(시군)에서는 가축인공수정소 지도감독과 함께 수정실적을 파악하여 소 사육조절과 가격안정대책 수립등 시책자료로 활용
- 마. 인공수정사 및 보조원 인건비 지원
 -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
 - 대상 : 지역축협소속 가축인공수정사(성장, 자주조합)
 - 지급항목 : 본봉, 직책수당, 협동수당, 특수업무수당, 가족수당, 년월차수당
정기 및 특별 상여금, 보건단련비, 중식비
 - 조합자립도별 보조비율
 - 자주 10%이내, 성장 40%이내

바. 보고등(해당기관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세부사업추진계획보고('95. 2.15이내) : 축협중앙회장
- 가축인공수정실적보고(1.20일 정기보고) : 시·도지사
- 자금집행 실적보고(매분기 익월20일이내) : 축협중앙회장
- 정액생산·공급실적 보고(7.20일 및 1.20일 정기보고) : 축협중앙회장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674, 503-7282)
국립종축원 종축관리과(0417-581-2081)
축협중앙회 한우사업부(02-485-3141)
- 도 : 농정국 축산과, 축협중앙회 도지회
- 시·군 : 산업(축산)과, 축협조합

학교우유급식사업(공공계획)

1. 목 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국민 식생활개선 및 체위향상
- 우유소비기반을 저변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2. 추진방향

- 초·중·고등학생 중심으로 학교우유급식 확대 추진
 - 국민 국민학생은 급식비를 전액 보조지원하고, 일반학생은 자부담 원칙으로 급식
- 학교우유급식은 학교와 업체간의 직접 계약에 의한 자율급식으로 점차 전환
- 급식품목은 백색우유(시유)로 공장도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3. 급식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가. 급식신청 자격

- 보조급식 : 국민학생중 극빈학생 또는 도시벽지의 불우학생
- 일반급식 : 보조급식을 제외한 일반 초·중·고등학생

나. 급식대상자 선정

- 보조급식
 - 읍·면·동장이 증명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의 국민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
 -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도시벽지의 불우 국민학생을 추가 선정 가능
- 일반급식
 - 학교장이 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중 자부담이 능력이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유업체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정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주체 : 시·도지사

나. 급식기간 : 연간 200일 기준(개학기간중에 급식)

다. 급식계획(일평균) : 6,000 천명(보조급식 200천명, 일반급식 5,800천명)

라. 사업실시방법

○ 보조급식 : 대상학생에 지정품목의 우유를 급식하고, 급식유업체에 보조금 지급

○ 일반급식 : 대상학생에 지정품목의 우유를 자부담으로 급식

마. 보조 사업비('95) : 6,800백만원(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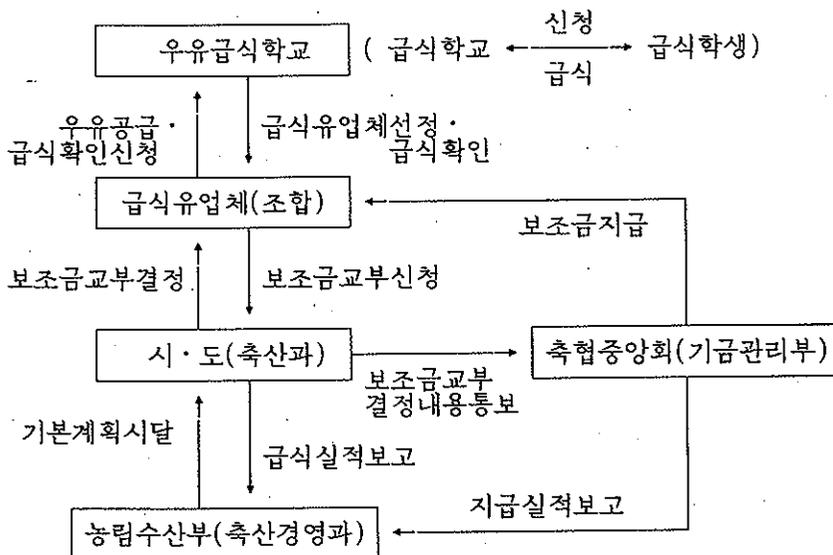
※ 시·도별 급식계획 및 보조금 배정내역 : < 별표1 >과 같음

바. 급식지정품목 및 공급단가

○ 급식품목은 원칙적으로 백색시유(200ml)로 하되, 도서벽지는 분유 급식도 가능

급식품목	백색시유	분 유	비 고
규 격	카톤 200ml	22 g	단, 백색시유의 포장용기가 병 또는 수지포장인 경우 공급단가는 200ml당 160원임.
공급단가	170 원	100 원	

사. 사업추진체계도



5. 급식학교 및 급식유업체 선정

- 급식학교 : 시·도지사가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선정
- 급식유업체 :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시·도에서는 급식유업체등 안내)

6. 보조금 교부등 절차

- 보조신청(보조사업자) : 급식유업체(대표)
- 보조금 교부결정자 : 시·도지사
- 보조금 지급기관 : 축협중앙회장
- 보조금 신청·교부 및 지급절차등 : 『학교우유급식보조금지급지침』
(축영51541-264, '94.8.2)에 의함.

7.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급식유업체가 급식중단 및 급식품목 변경등을 하지 않도록 지도 확인 실시
 - 급식유업체가 임의로 급식을 중단하거나 가공유·발효유등으로 급식품목을 변경할 경우 급식학교장과 협의하여 필요시 급식유업체 변경등 시정조치
- 시·도지사는 급식유업체가 제출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류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그 내용을 축협중앙회장에 통보
- 축협중앙회장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보조금교부결정내역에 의하여 급식유업체의 제출서류에 대한 허위·오류·착오등 확인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조치
- 시·도 및 축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농림수산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학교우유급식실적보고(월보)	시·도	매익월 20일한	서식1
학교우유급식보조금지급실적보고(월보)	축협중앙회	매익월 20일한	서식2

8.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674)
- 시·도 : 농정국 축산과(시는 농정과), 축협중앙회 시·도지회
- 시·군 : 축산과(산업과)

<서식1>

학교우유급식실적보고(월)

00시·도

구 분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당월	국민학생	개소	천명	천원				
	중고등학생							
	계							
누계	국민학생							
	중고등학생							
	계							

※ 보조금액은 교부결정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방비 보조등을 일반급식란에 기재

<서식2>

학교우유급식 보조금지급실적보고(월)

1. 시·도별 보조금 지급실적

시도별	당 월			누 계			비 고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개교	천명	천원				

2. 급식유업체별 보조금 지급실적

유업체별	당 월			누 계			비 고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개교	천명	천원				

< 별표1 >

시·도별 급식계획 및 보조금 배정내역

시·도별	'95 급 식 계 획			보조금배정액
	보조급식	일반급식	계(전체급식)	
	천명			천원
서울	15.8	1,376.2	1,392	537,200
부산	7.2	526.8	534	244,800
대구	7.8	316.2	324	265,200
인천	1.6	280.4	282	54,400
광주	5.2	180.8	186	176,800
대전	3.3	176.7	180	112,200
경기	9.6	878.4	888	326,400
강원	11.1	198.9	210	377,400
충북	13.6	178.4	192	462,400
충남	23.2	228.8	252	788,800
전북	35.8	246.2	282	1,217,200
전남	30.2	275.8	306	1,026,800
경북	24.8	347.2	372	843,200
경남	8.8	519.2	528	299,200
제주	2.0	70.0	72	68,000
계	200	5,800	6,000	6,800,000

※ ① 전체 급식계획은 시·도별 초·중·고등학생수 비율에 의해 배정함.

('94 교육통계연보 : 교육부)

② 보조급식계획은 '94.9월까지 누계실적 비율에 의해 배정함.

③ 보조금의 재원은 축산발전기금임.

사료제조시설지원(공공계획)

1. 목적

- 사료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사료가격안정도모 및 품질향상 도모

2. 추진방향

- 생산시설의 자동화 추진으로 인력 및 생산비절감 유도
- 한우·젖소에 대하여는 현행 농후사료위주 급여체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질의 조사료공급체계로 유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4	'95	'96	'97	'98	99~2000	계
사업량	22	10	15	15	15	90	167
사업비	17,616	8,810	15,000	15,000	15,000	90,000	160,243
- 축 발	12,135	4,405	10,500	10,500	10,500	63,000	111,040
- 자부담	5,481	4,405	4,500	4,500	4,500	27,000	49,203

3. 사업신청자격

구 분	종 별	지 원 대 상 요 건
신규시설지원	혼합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농(우유)조합중 조사료생산 사업단 설치조합 우선 ○ 농산부산물·조사료등을 이용한 젖소용 혼합사료를 생산하여 회원낙농가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조합으로서 사료 원료공급 여건이 확실한 조합 <p>※ 사료관리법이 개정된 후 지원대상자 선정</p>
기존시설개선 지원	배합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합사료 제조업허가를 받은 축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시설의 교체 또는 새로운 기계설치 - 생산시설의 자동화
	단미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업체로서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교체가 필요한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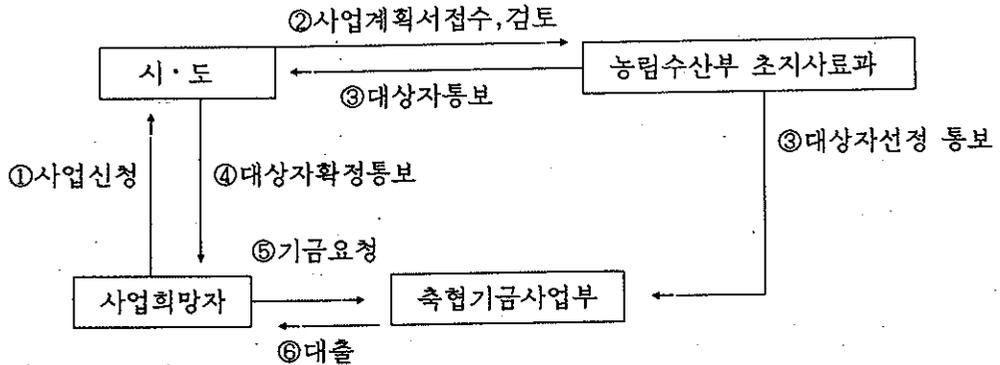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부
- 사업시행주관 : 시·도지사
-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안)

	사업내역		비 고
	사업량	사업비	
- 배합사료	5개소	백만원 2,336	
- 혼합·단미사료	5	2,069	
계	10	4,405	

- 지원조건
 - 재 원 : 축산발전기금(용자50%)
 - 용자조건 : 3년거치 5년상환
 - 금 리 : 연리 8%

○ 사업추진 체계도



5.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 사업희망자는 시·도에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수립시 고려할 주요사항)
 - 목적, 사업내용, 사료생산 및 판매계획
 - 추진계획(투자시설, 재원별 투자액등)
 - 사업효과
 - 원료확보대책(단미사료 및 혼합사료의 경우에 한함)
 - 기 타

-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제조허가(등록)된 경우에는 허가(등록)증 사본
 - 자부담 확보방법 및 용자금에 대한 담보능력 확인서
 - 축발기금 대출한도 규정에 의한 대출가능여부 확인서(자기자본의 400%이내)
- 도지사는 자체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추천
- 농림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대상자를 자체 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의 타당성 여부, 수행능력, 자부담능력, 사업효과 등
 - 신규사업의 경우 : 원료확보대책
 - 혼합사료의 경우 : 사료관리법의 개정 지연으로 지원이 유보된 전년도 신청 대상자중 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우선 선정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기관 안내
 - 중 앙 : 농림수산부 축산국 초지사료과(Tel 02- 503-7284, 500-2676)
 - 시·도 : 시(산업과)
도(축산과)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사업(공공계획)

1. 목 적

-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축산업발전 및 공중보건향상 도모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정착으로 양축농가 소득보호
- 잔류원인 분석을 통한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 강구·추진
- 국내산 육류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경쟁력 제고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

2. 추진 방향

- 축산물내 항균제·합성항균제, 농약등 유해잔류물질 검사강화
- 동 검사결과 잔류물질 검출시 잔류방지 계도 및 규제강화 병행등 특별관리 실시
- 유해잔류물질 검사실시 재료비 및 검사장비등 검사기반 구축 지원

3. 사업 내용

- 실시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서울시, 직할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도는 축산진흥원)
- 사업기간 : '95. 1 - 12월
- 사업량 : 45,000건

소	돼 지	닭	계	비 고
11,000건	23,000	11,000	45,000	

○ 검사대상

- 대상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대상물질 :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설파제), 농약등 유해잔류물질

○ 검사방법

- 축산물작업장에서 채취된 수축의 근육시료에 대해 유해물질 잔류여부 판정(스크리닝 검사 : EEC 4-plate method 적용실시)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보건사회부 고시)중 "식육중 잔류물질 허용기준 및 축산식품중 잔류물질 시험법"에 의거 정량분석등 검사 실시
- 농약의 검사방법은 보건사회부에서 제정되는대로 추후통보 예정임

○ 검사결과 조치

- 검사결과 유해잔류물질 검출시 해당가축 출하농장에 대한 잔류방지 제도 및 규제검사 강화등 특별관리, 허용기준 초과육에 대한 폐기처분 등 제재조치

- 유해물질 잔류여부 검사(1차검사)결과 잔류(양성)판정시 : 해당가축 출하농장 추적에 의한 특별관리 실시 → 가축 사양관리 실태점검등 잔류원인 분석을 통한 농가제도 및 가축 재출하시 2차검사(규제검사) 실시
- 2차검사 : 특별관리 대상농장의 재출하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 실시 (검사완료시까지 출고보류등 유통 제한)

- 잔류검사 결과를 분석,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 강구·추진

○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계	
유해잔류물질검사 - 검사재료비	45,000건	40,500천원 (47%)	45,000 (53%)	85,500 (100%)	국비예산중 축산물내 잔류물질 검사 기술교육 실시 예산 3,000천원 포함

4. 세부실시요령

내	용	주관(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잔류물질검사 세부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능력 및 월별, 축종별 도축두수 등을 감안 실시계획 수립(별지 시·도별 사업량 참조) - 시·도지사는 세부계획 수립후 '95.1.25일까지 당부에 보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검사 기술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잔류물질검사 요원의 HPLC 및 GC등 정밀검사장비 운용 및 관리요령등에 관한 기술 교육계획 수립 - 가축위생연구소장은 세부계획 수립후 '95. 2. 30일까지 당부에 보고 		가축위생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잔류물질검사장비(HPLC) 정밀도 확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배치된 잔류물질검사 장비(HPLC)의 정밀도 확인검사 실시로 첨단검사 장비 운영관리 적정 및 검사요원의 자질향상 도모 - 확인주관기관 : 가축위생연구소 - 실시방법 및 회수 : Blind Test - 확인결과 조치 : 분석방법 지도 및 관리강화 		가축위생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PLC등 첨단기기의 사용확대로 기술숙련등 장비활용 극대화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EC4 plate 검사결과에 따른 정밀검사외에 돈육에 대한 설파메타진 잔류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HPLC등 직접 활용검사(월20건 이상)체제로 전환하여 검사결과를 매월 당부에 보고하고 검사결과 양성판정시 특별관리 		가축위생시험소

내 용	주관(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관리 대상농장에 대한 내역등이 통보된 경우 당해 농장에 대한 잔류방지 계도 및 2차검사(규제검사) 실시 등 특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 : 해당가축 출하농장 특별관리 실시조치 철저(대장 작성 관리) • 가축 사양관리 실태점검등 잔류원인 분석을 통한 당해 농장계도 실시 • 특별관리 대상농장의 재출하 가축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강화(2차검사 실시) : 도축전 특별관리 대상여부 확인철저 → 검사 완료시까지 출고보류등 유통제한 * 2차검사(규제검사)실시결과 잔류물질 미검출(음성 판정)시 특별관리 해제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월별 검사실적(별지 보고서식 1참조)을 다음달 10일까지 당부에 보고할 것(HPLC검사기기를 활용한 검사결과 포함) - 시·도지사는 '95 잔류물질검사사업 특별관리 실적(별지 보고서식 2참조)을 '96.1.30일 까지 당부에 보고 할것. - 시·도지사는 양축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 지도·홍보등을 적극 실시토록 할 것. - 잔류물질 검사결과에 대한 불신 및 민원야기 방지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 수시실시등 검사능력 배양 및 숙련도 제고방안 지속 강구·추진 • 검사성적의 기록유지등 동사업 실시와 관련된 대장의 작성 및 관리 철저 • 검사실시에 필요한 재료비 및 장비의 확보·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p>시·도 (가축위생시험소)</p>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 02-503-7285, 500-2677)
- 시·도 : 농림수산국 축산과, 가축위생시험소

< 보고서식 2 >

잔류물질검사사업결과 특별관리실적

1. 잔류물질검사 결과 조치

검사시도	검사일자	축종 (성별)	양성 건수	해당가축 출하농가		타 시·도 통보상황		비고
				축주명	농가 소재지(주소)	통보 일자	관련 공문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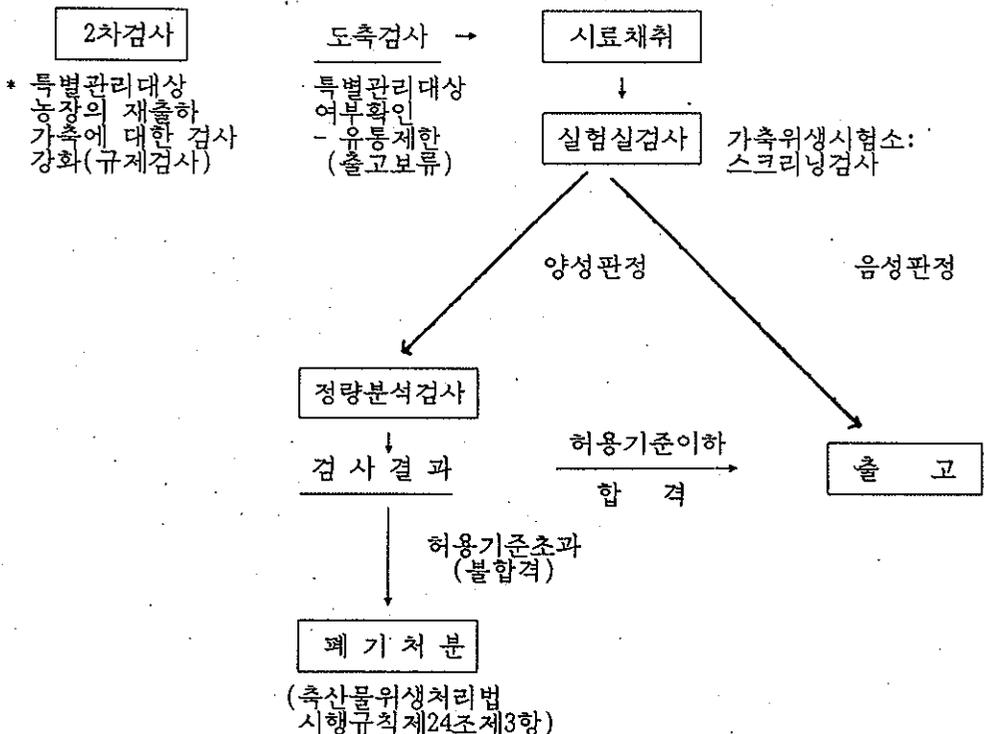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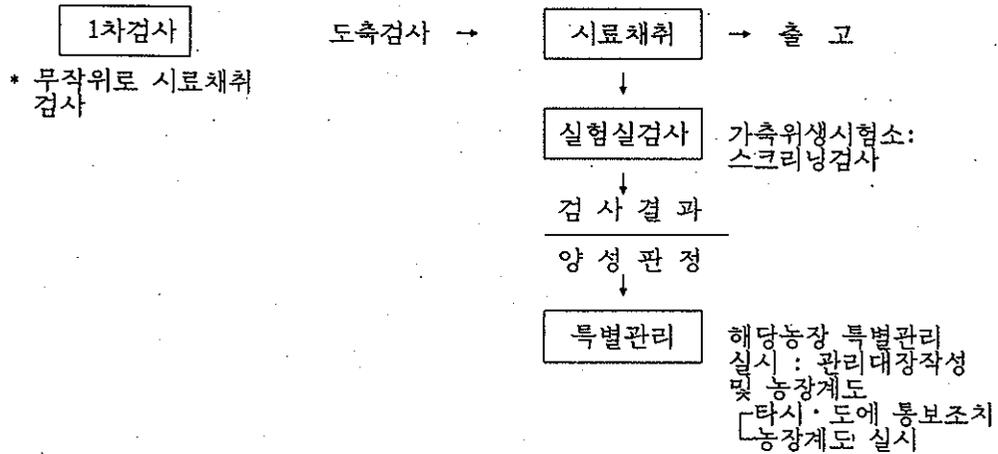
2. 특별관리실적

특별관리 대상 농가현황						당해농가 특별관리실적			
검사 시도	검사 일자	축종 (성별)	양성 건수	축주명	농가 소재지 (주소)	실시 일자	사육 현황	잔류 원인	농가계도 및 2차검사결과

3. 잔류방지 홍보실적

실시일자	실시방법	실시대상	물량(인원, 횟수, 교재부수등)	비고

검사체계도



국내산 및 수입 축산물중 유해잔류물질 공동조사사업 (공공계획)

1. 목 적

- 국내산 및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축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 보호
- 축산식품에 잔류가능한 동물약품, 농약 및 환경오염물질의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잔류물질별 최대 잔류 허용한계치 설정으로 사용규제 및 감시강화등 잔류방지대책 수립

2. 추진방향

- 국내산 및 수입 축산물의 잔류물질 규제검사 및 모니터링
 - 농림수산부 : 잔류물질 조사결과 평가 및 잔류방지대책 수립
 - 국립동물검역소 : 수출입 축산물 잔류 유해물질 검사 및 결과 보고
 -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 잔류물질 조사(모니터링)계획 수립, 정밀조사 및 결과 종합보고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국내산 축산물중 항균물질 1차 스크리닝, 설파제검사 및 2차 정밀조사시료 발송
- 유해잔류물질 최대 잔류허용한계치 설정 및 규제검사 강화
 - 허용한계 위반에 따른 원인조사 및 지도·홍보
 - 동물약품등 잔류가능한 화학물질 사용규제 및 검사강화

3. 추진계획

- 실시기관 : 국립동물검역소,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서울시 및 직할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도는 축산진흥원)
- 사업기간 : '95. 1 - '95. 12월

4. 세부실시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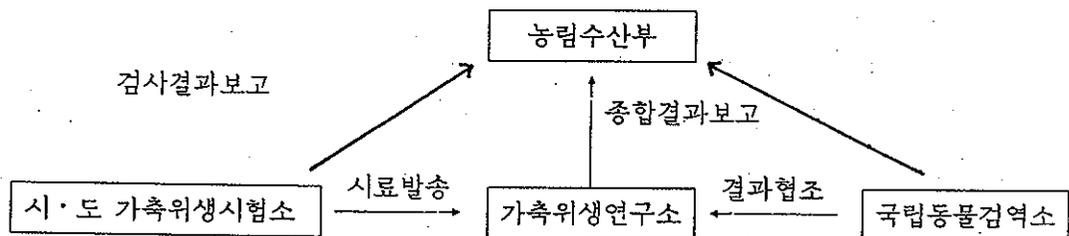
내	용	주관 (협조)
○ 국내산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 - '95 유해잔류물질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수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하고 가축위생연구소장에게 통보		시·도(가축위생시험소)
○ 국내산 축산물 잔류조사 시료 송부 - 시료발송시기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 1/4분기와 3/4분기에 1/2물량씩 발송 · 기타 시·도 : 2/4분기 전량 발송 ※ 1차 양성시료의 정밀분석 의뢰는 수시로 함. ※ 기타 시료발송요령은 '93 잔류조사시료 발송요령 참조		가축위생시험소
○ 수출입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 - 검사결과는 분기별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국립동물검역소
○ 국내산 축산물 유해물질 잔류분포조사 - 잔류물질별 최대 잔류허용한계치(MRL) 추가 설정검토 자료화 - 잔류조사계획 수립 및 결과종합보고 - 안전사용기준 홍보		가축위생연구소
○ 사용규제 및 감시강화등 잔류방지대책 수립		농림수산부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 02-503-7285, 500-2677)
- 시·도 : 농림수산국 축산과

< 협조체계도 >



(국내 축산물 규제검사)

(잔류분포조사 및 기술지원)

(수출입축산물 규제검사)

가축방역사업(공공계획)

1. 목 적

- 가축전염병의 발생·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 가축혈청검사사업 강화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사전예방
- 우수동물용예방약의 생산·공급으로 전염병발생 방지
- 인수공통전염병·기생충병등의 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

2. 추진방향

- 만성·경제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발생억제정책 추진
 - 가축전염병의 혈청검사 및 검진·도태사업 확대
- 국가방역체제에서 자율방역체제로 점차 유도
 - 예방주사사업은 점차 축소하고 혈청검사사업 강화
 - 인수공통전염병 및 종식단계전염병에 대한 사업 확대 실시
-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활성화 방안 추진
 - 방역요원에 대한 의식전환, 사명감 고취로 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 년차별 시도시험소 기술인력 양성과 정밀검사장비 확보
 - 해외 선진국의 가축위생분야 견학 확대 추진
- 가축위생검사와 가축방역사업의 연계추진
 - 도축장, 도계장 출하가축의 혈청검사에 의한 가축질병의 추적조사로 양성축 출하능장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
- 관내 증돈장·종계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가축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찰업무강화로 선진방역 대책 강구
 - 가축질병예찰업무의 활성화 강력 추진
 - 관내 공수의의 적극 활용으로 예찰업무의 활성화 추진
- 가축전염병 예방약 개발보급 및 품질향상으로 가축방역 효과 거양
 - 동물약품제조업의 약사감시 및 품질관리 강화

3.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

가. 가축방역사업 총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예방주사	7,230천두	2,968,000	1,582,550	1,385,450	
검진	958	153,440	76,720	76,720	
진단액구입	(280)	90,800	90,800	-	
기생충구제	3,750	540,000	330,000	210,000	
혈청검사사업	684천건	330,292	330,292	-	
오제스키병근절	100천두	180,000	160,000	20,000	
유방염 방제사업등	90	474,638	474,638	-	
계	12,812	4,737,170	3,045,000	1,692,170	
진도견방역	24천두	30,000	21,000	9,000	
가축위생시험소장비지원	12대	343,000	171,500	171,500	
살처분보상	3,500두	1,160,000	1,160,000	-	
제주도 부루세라병 특별검진	70천두	420,000	140,000	280,000	
합 계		6,690,170	4,537,500	2,152,670	

나. 예방주사 검진 및 구제사업

(1) '95 예방주사 검진 및 구제

(단위 : 천두, 천수, 천원)

구분	축종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예방주사	우	탄저·기증저(혼합)	1,200	144,000	58,800	85,200
		전염성 비기관염	200	310,000	210,000	100,000
		소 유행열	120	276,000	135,000	141,000
		소 야까바네병	60	243,000	120,000	123,000
	돈	돼지콜레라	1,500	165,000	63,000	102,000
		일본뇌염	1,350	540,000	330,750	209,250
		돼지전염성위장염	1,000	450,000	200,000	250,000
		돼지유행성설사증	300	315,000	150,000	165,000
	견	광견병	1,500	525,000	315,000	210,000
	소 계			7,230	2,968,000	1,582,550
검진및 진단액 구입	우	우 결핵	360	72,000	36,000	36,000
		부루세라(MRT)	126	12,600	6,300	6,300
		부루세라(Plate)	30	6,000	3,000	3,000
		우 간질 진단액구입	300 (280)	60,000 90,800	30,000 90,800	30,000 -
	계	추백리	142	2,840	1,420	1,420
소 계			958	244,240	167,520	76,720
기생충 구제	우	진드기	3,000	150,000	105,000	45,000
		간질	150	150,000	105,000	45,000
	꿀벌	응애류	600	240,000	120,000	120,000
가축혈청검사사업			684	330,292	330,292	-
오제스키병 근절사업			100	180,000	160,000	20,000
유방염 방제사업등			90	474,638	474,638	-
합 계			12,812	4,737,170	3,045,000	1,692,170

(가) 시·도별 예방주사·접진 및 구제사업량(총량)

(단위: 천두)

구분	총계	예 방 주 사						검 진						구 계			유방계 예방사업	오계 예방사업			
		소계	만지 기종지 (혼합)	수염 정비 기관	소 유염	소 아까 바내 병	돼지 클레라	돼지 일본 뇌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	돼지 유형성 철사증	방 견	우 결핵	우 새라 (MRT)	우 새라 (Plate)	수 백 리	우 간 질			진 드 기	간 질 중	공민 용액
서울	171.1	135.4	0.4	-	-	1	2	2	-	130	2.9	0.3	2.5	0.1	-	-	-	27	1.8	-	4
부산	81.2	61	1	-	-	6	18	6	-	30	3.4	1.2	2	0.2	-	-	13	1.8	-	2	
대구	75.6	49.5	2.5	-	-	6	15	6	-	20	4.7	1.5	1.5	0.2	1.5	-	17	1.8	0.5	2.1	
인천	182	152	18	1	1	28	28	20	5	50	19	8	4	0.5	0.5	6	3	1.8	1.5	2.7	
광주	51.3	32.7	4.7	2	1	4	10	4	-	6	6.1	2	2	0.1	-	2	7	1.8	0.5	2.2	
대전	53.4	27.4	1.4	2	-	5	13	2	-	4	8.1	1	2	0.1	1	4	13	1.8	-	2.1	
경기	1894.1	1489	237	24	17	375	187	260	55	325	280.3	133	44	6.8	56.5	40	20	44	10.8	24	26
강원	1077.7	413	80	15	10	50	40	40	20	150	52.5	20	8	3	1.5	20	28	69	7.2	5	3
충북	501.2	382	80	20	8	50	60	40	20	100	58	22	6	1	9	20	5	40	7.2	5	4
충남	1604.3	1359	180	30	20	350	330	200	60	180	141.5	45	20	2.5	34	40	10	47	10.8	15	21
전북	819.5	655	80	20	14	150	120	80	25	160	82.5	22	6	2.5	22	30	13	49	9	7	4
전남	1962.2	758	120	25	17	160	170	120	35	105	84	22	6	2	4	50	37	56	9	6	12.2
경북	1061	822	250	30	20	150	127	100	35	100	104	42	11	3	8	40	10	100	9	10	6
경남	1491.5	759	110	26	12	150	200	100	35	120	97	38	11	2	3	43	20	90	9	10	6.5
제주	1183.3	135	35	5	-	15	30	20	10	20	14	2	-	6	1	5	3	25	3.6	0.5	2.2
가위연 (중앙)	11	-	-	-	-	-	-	-	-	-	-	-	-	-	-	-	-	-	6	5	-
계	12220.4	7250	1200	200	120	1500	1350	1000	300	1500	958	360	126	30	142	300	150	600	92.4	90	100

(다) 시·도별 예방주사 검진 및 구제사업 지방비예산

(단위: 원)

구분	총계		예방				주사				검진				구제			유방암검사업	가검속사업	요구제사업
	소계	기종거(혼합)	소진성비기관염	소유행열	소아까바병	패지플래라	패지본원염	패지진염성위장염	패지유형성실사증	광진병	소계	우월핵	부독새라(MRT)	부독새라(Plate)	추배라	우간질	진드기			
서울	25471.4	19106.4	28.4	-	-	68	310	500	-	18200	165	30	125	10	-	-	-	5400	-	800
부산	12209	8969	71	-	-	408	2790	1500	-	4200	240	120	100	20	-	-	-	2600	-	400
대구	11290.5	7210.5	177.5	-	-	408	2325	1500	-	2800	260	150	75	20	15	-	-	3400	-	420
인천	29392	25997	1278	500	1175	1904	4340	5000	2750	7000	1655	800	200	50	5	600	600	600	600	540
광주	10870.7	8220.7	333.7	1000	1175	272	1550	1000	-	840	510	200	100	10	200	300	1400	300	440	
대전	8454.4	4514.4	99.4	1000	-	340	2015	500	-	560	620	100	100	10	400	300	2600	6000	420	
경기도	303232	262487	16827	12000	19975	25500	28985	65000	30250	45500	20745	13300	2200	680	565	4000	6000	8800	5200	
경기도	127945	92930	5680	7500	11750	3400	6200	10000	11000	21000	4715	2000	400	300	15	2000	8400	13800	600	
충북	95970	80980	5680	10000	9400	3400	9300	10000	11000	14000	4690	2200	300	100	90	2000	1500	8000	800	
충남	279570	252880	12780	15000	23500	23800	51150	50000	33000	25200	10090	4500	1000	250	340	4000	3000	9400	4200	
전북	149850	129380	5680	10000	16450	10200	18600	20000	13750	22400	5970	2200	300	250	220	3000	3900	9800	800	
전남	201955	154475	8520	12500	19975	10800	26350	30000	19250	14700	7740	2200	300	200	40	5000	15000	11100	2440	
경북	198215	164885	17750	15000	23500	10200	19685	25000	19250	14000	9130	4200	550	300	80	4000	3000	20000	1200	
경남	191140	149460	7810	13000	14100	10200	31000	25000	19250	16800	8880	3800	550	200	30	4300	7500	6000	1300	
제주	46605	23955	2485	2500	-	1020	4650	5000	5500	2800	1310	200	-	600	10	500	15000	900	440	
가위연(중앙)	1692170	1385450	85200	100000	141000	102000	209230	250000	165000	210000	76720	36000	6300	3000	1420	30000	45000	120000	20000	
계																				

(라) '95 민수진단에 등 원별 구입계획(가축위생연구소)

월별 \ 진단액명	'94 이월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95 구입분		비 고
														구입량 (축마)	소요액 (축마)	
음경액 (PPD)	240,000							150,000						390,000	150,000	구입비 (부담)
부후세라 (BRT)	50,000				40,000					40,000				130,000	80,000	· PPD 400원
부후세라 (Plate)	30,000				20,000					30,000				50,000	20,000	· MRT260원
부후세라 (Rose-Bengal)	50,000									30,000				80,800	30,000	· Plate200
오제스키병 간이진단세트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80,000	· Rose-Ben gal 200원 · KIT
계	390,000			20,000		80,000		170,000		90,000				750,000	360,000	250,800

(단위 : 두, 천원)

(마) '95 가축열성질서용 진단액류 월별 생산내역(가축위생연구소)

진단액명	'94생산 이월분	'95 생산량	정 장 완 료 일 기 준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늑속화중	23,000	38,100				19,100											19,000	o 診断液生産費 (国货100%)
신안진화중	23,000	38,100				19,100											19,000	
감포로병	23,000	38,100				19,100											19,000	
마이코플라즈마	23,000	38,100				19,100											19,000	
추염성기각지염	23,000	38,100				19,100											19,000	
담배척수염	23,000	38,100				19,100											19,000	
폐지단독	23,000	38,100				19,100											11,600	
위속성비염	23,000	11,600				17,300											17,300	
인분지인	23,000	34,600				17,300											17,300	
돼지안지마아포프라즈	23,000	34,600				17,300											11,600	
마병	23,000	11,600				-											1,800	
돼지파보	4,000	1,800				-											6,700	
돼지PRRS	13,000	6,700				-											80,000	
요네병	150,000	150,000				70,000											3,500	
우간질	6,500	3,500				-											-	
부후세라병CF형원						-											-	
계	449,500	532,700				238,300											294,400	

(단위 : 두, 수분)

(바) '95 원수예방약류 일별 생산내역 (가축위생연구소)

(단위 : 두·수분)

에 방 약 류	생 산 량	검 정 기 준 완 료 일 기 준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우역백신	10,000				5,000							10,000				
우질핵 진단액(PPD)	5,000					5,000								5,000		
부루세라진단액(Tube)	15,000		5,000													
요닝(ELISA용)	10,000			3,000												
요네병 항원	10,000			3,000												
만저침강소혈청	2,000			1,500												
렙토스파이라항원	3,000			70,000												
추백리진단액	150,000											80,000				
돼지콜레라형광항체	2,500				2,500											
광견병 형광항체	500										500					
살모넬라 그룹혈청(0형)	2,000									2,000						
살모넬라 그룹혈청(H형)	2,000									2,000						
아나프라즈마 항원	1,500									1,000						
계	213,500		5,000	77,500	7,500	20,000	500	80,000	10,000	13,000						

① 예방주사

○ 탄저·기증저 혼합 예방주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요경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0.4	19.6	28.4	48	○ 실시대상 : 6개월 미만의 송아지와 임신말기의 소를 제외한 각종 우 전두수
부산	1	49	71	120	
대구	2.5	122.5	177.5	300	○ 실시기간 : 2-4월 ○ 소요경비
인천	18	882	1,278	2,160	
광주	4.7	230.3	333.7	564	- 약품비 : 두당 70원
대전	1.4	68.6	99.4	168	· 국비 : 70%
경기	237	11,613	16,827	28,440	· 지방비 : 30%
강원	80	3,920	5,680	9,60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충북	80	3,920	5,680	9,600	· 지방비 : 100%
충남	180	8,820	12,780	21,600	○ 기 타
전북	80	3,920	5,680	9,600	- 농번기를 피하여 2월부터 조기 실시토록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전남	120	5,880	8,520	14,400	- 종식단계에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예방접종을 철저히 할 것.
경북	250	12,250	17,750	30,000	- 충남, 경북은 '94년 발생지역에 집중 실시
경남	110	5,390	7,810	13,200	
제주	35	1,715	2,485	4,200	
계	1,200	58,800	85,200	144,000	

○ 소 전염성비기관염 예방주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실시대상 : 영세양축가 우선실시 - 전기업 양축농가 및 낙농가 제외 (자율방역유도) ○ 실시기간 : 9-10월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1,500원 · 국 비 : 70% · 지방비 : 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기 타 - 소 전염성비기관염 : 바이러스성 설사(BVD) 및 파라인푸루엔자 (PI ₃) 혼합백신을 사용할 것.
부산					
대구					
인천	1	1,050	500	1,550	
광주	2	2,100	1,000	3,100	
대전	2	2,100	1,000	3,100	
경기	24	25,200	12,000	37,200	
강원	15	15,750	7,500	23,250	
충북	20	21,000	10,000	31,000	
충남	30	31,500	15,000	46,500	
전북	20	21,000	10,000	31,000	
전남	25	26,250	12,500	28,750	
경북	30	31,500	15,000	46,500	
경남	26	27,300	13,000	40,300	
제주	5	5,250	2,500	7,750	
계	200	210,000	100,000	310,000	

○ 소 유행열 예방주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실시대상 : 영세양축가의 사육우 - '94 감염우 제외 ○ 실시기간 : 4- 5월 - 모기 출현전에 실시 완료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2,250원 · 국 비 : 50% · 지방비 : 5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기 타 - 대양축농가 홍보지도를 강화하여 사업계획 대상이외 우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적극 유도
부산					
대구					
인천	1	1,125	1,175	2,300	
광주	1	1,125	1,175	2,300	
대전					
경기	17	19,125	19,975	39,100	
강원	10	11,250	11,750	23,000	
충북	8	9,000	9,400	18,400	
충남	20	22,500	23,500	46,000	
전북	14	15,750	16,450	32,200	
전남	17	19,125	19,975	39,100	
경북	20	22,500	23,500	46,000	
경남	12	13,500	14,100	27,600	
제주					
계	120	135,000	141,000	276,000	

○ 소 아까바네병 예방주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실시대상 : 영세양축가의 사육우 - '94 감염우 제외 ○ 실시기간 : 4- 5월 - 모기 출현전에 실시 완료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4,000원 · 국 비 : 50% · 지방비 : 5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기 타 - 대양축능가 홍보지도를 강화하여 사업계획 대상이외 우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적극 유도
부산					
대구					
인천	1	2,000	2,050	4,050	
광주	1	2,000	2,050	4,050	
대전					
경기	9	18,000	18,450	36,450	
강원	8	16,000	16,400	32,400	
충북	4	8,000	8,200	16,200	
충남	9	18,000	18,450	36,450	
전북	6	12,000	12,300	24,300	
전남	6	12,000	12,300	24,300	
경북	10	20,000	20,500	40,500	
경남	6	12,000	12,300	24,300	
제주					
계	60	120,000	123,000	243,000	

○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요 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1	42	68	110	○ 실시대상 : 영세 양축농가 우선 실시 ○ 실시기간 - 1차(춘계) 3-5월 - 2차(추계) 9-11월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60원 · 국 비 : 70% · 지방비 : 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기 타 - 다두사육양돈장은 자율방역토록 계도 - 종돈 및 자돈거래시에는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토록 적극계도
부산	6	252	408	660	
대구	6	252	408	660	
인천	28	1,176	1,904	3,080	
광주	4	168	272	440	
대전	5	210	340	550	
경기	375	15,750	25,500	41,250	
강원	50	2,100	3,400	5,500	
충북	50	2,100	3,400	5,500	
충남	350	14,700	23,800	38,500	
전북	150	6,300	10,200	16,500	
전남	160	6,720	10,880	17,600	
경북	150	6,300	10,200	16,500	
경남	150	6,300	10,200	16,500	
제주	15	630	1,020	1,650	
계	1,500	63,000	102,000	165,000	

○ 돼지일본뇌염 예방주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요 경비			비 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2	490	310	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대상 : 인구조밀지역 및 뇌염 발생상재지, 도시인근 양돈장을 위주로 실시 ○ 실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돈 우선실시 - '94년 여름을 경과한 돼지는 1회접종하고, 기타는 건강돈에 1차접종하고 3주후에 2차접종 ○ 실시기간 : 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출현전에 실시완료 ○ 소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품비 : 두당 350원 (국비70%, 지방비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비 : 100% ○ 사람의 뇌염예방을 위하여 추가 증량접종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조치할 것.
부산	18	4,410	2,790	7,200	
대구	15	3,675	2,325	6,000	
인천	28	6,860	4,340	11,200	
광주	10	2,450	1,550	4,000	
대전	13	3,185	2,015	5,200	
경기	187	45,815	28,985	74,800	
강원	40	9,800	6,200	16,000	
충북	60	14,700	9,300	24,000	
충남	330	80,850	51,150	132,000	
전북	120	29,400	18,600	48,000	
전남	170	41,650	26,350	68,000	
경북	127	31,115	19,685	50,800	
경남	200	49,000	31,000	80,000	
제주	30	7,350	4,650	12,000	
계	1,350	330,750	209,250	540,000	

○ 돼지전염성위장염(TGE) 예방주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요 경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2	400	500	900	○ 실시대상 : 모든 전두수
부산	6	1,200	1,500	2,700	
대구	6	1,200	1,500	2,700	○ 실시기간 : 9-11월 - 모든에 2회접종(분만 4주전에 1차, 2주전에 2차접종)
인천	20	4,000	5,000	9,000	
광주	4	800	1,000	1,800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400원 (국비50%, 지방비5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대전	2	400	500	900	
경기	260	52,000	65,000	117,000	○ 기타 - 일제방역누락 모든은 자율방역 토록 적극 유도
강원	40	8,000	10,000	18,000	
충북	40	8,000	10,000	18,000	
충남	200	40,000	50,000	90,000	
전북	80	16,000	20,000	36,000	
전남	120	24,000	30,000	54,000	
경북	100	20,000	25,000	45,000	
경남	100	20,000	25,000	45,000	
제주	20	4,000	5,000	9,000	
계	1,000	200,000	250,000	450,000	

○ 돼지유행성설사증(PED) 예방주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실시대상 : 영세 양축농가 우선실시 ○ 실시기간 : 9-11월
부산					
대구					
인천	5	2,500	2,750	5,250	
광주					
대전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1,000원 (국비50%, 지방비5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기 타 - PED 예방접종을 적극 유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
경기	55	27,500	30,250	57,750	
강원	20	10,000	11,000	21,000	
충북	20	10,000	11,000	21,000	
충남	60	30,000	33,000	63,000	
전북	25	12,500	13,750	26,250	
전남	35	17,500	19,250	36,750	
경북	35	17,500	19,250	36,750	
경남	35	17,500	19,250	36,750	
제주	10	5,000	5,500	10,500	
계	300	150,000	165,000	315,000	

○ 광견병 예방주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130	27,300	18,200	45,500	○ 실시대상 : 경기, 강원외 휴전선 인근지역 및 인구조밀지역 집중실시 ○ 실시기간 - 1차(춘계 : 3-5월) : 70% - 2차(추계 : 9-11월) : 30%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여건을 감안 년중 실시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300원 (국비70%, 지방비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기 타 - 예방주사 접종증명서 발급 및 표찰부착 철저이행 - 예방주사 일제접종기간을 설정, 공고하고 반상회등을 통하여 홍보
부산	30	6,300	4,200	10,500	
대구	20	4,200	2,800	7,000	
인천	50	10,500	7,000	17,500	
광주	6	1,260	840	2,100	
대전	4	840	560	1,400	
경기	325	68,250	45,500	113,750	
강원	150	31,500	21,000	52,500	
충북	100	21,000	14,000	35,000	
충남	180	37,800	25,200	63,000	
전북	160	33,600	22,400	56,000	
전남	105	22,050	14,700	36,750	
경북	100	21,000	14,000	35,000	
경남	120	25,200	16,800	42,000	
제주	20	4,200	2,800	7,000	
계	1,500	315,000	210,000	525,000	

② 전염병 검진

○ 우결핵 검진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요 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0.3	30	30	60	○ 실시대상 : 유우 1세이상 전두수 - 경기도는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상 두수에 대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되, 발생하였던 농장에 대하여는 매년 실시할 것. ○ 실시기간 : 2-11월 ○ 소요경비 - 실시재료비 : 두당 200원 (국비50%, 지방비50%) ○ 기 타 - 전년도의 검진누락우에 대하여 우선실시할 것. - 경기도는 격년제 실시를 지양하고 점차로 전수검진할수 있도록 기술 인력 및 장비확보에 노력할 것.
부산	1.2	120	120	240	
대구	1.5	150	150	300	
인천	8	800	800	1,600	
광주	2	200	200	400	
대전	1	100	100	200	
경기	133	13,300	13,300	26,600	
강원	20	2,000	2,000	4,000	
충북	22	2,200	2,200	4,400	
충남	45	4,500	4,500	9,000	
전북	22	2,200	2,200	4,400	
전남	22	2,200	2,200	4,400	
경북	42	4,200	4,200	8,400	
경남	38	3,800	3,800	7,600	
제주	2	200	200	400	
계	360	36,000	36,000	72,000	

○ 부루세라(M.R.T) 검진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2.5	125	125	250	○ 실시대상 : 관내집유장에 납유하는 목장의 착유우 ○ 실시기간 - 1차 : 2-3월 - 2차 : 6-7월 - 3차 : 10-11월 ○ 소요경비 : 건당 100원 (국비50%, 지방비50%) ○ 실시요령 - 실시회수 : 3회 - 건당 10두이하의 우군원유로 검진 (목장당 시료1건 채취 지양) - 유처리장, 집유장의 집유시 시료 채취 - 양성 및 의양성에 대한 개체별 추적 검사를 혈청응집반응검사(Plate)로 최종판정 - 타시도 소재 목장에서 양성 및 의양성우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시도에 통보 - 보고받은 시도에서는 추적검사 실시 ○ 기 타 - 파스퇴르유업(주)에서 검사의뢰된 가검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할 것.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MRT 검사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 목장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의거(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전두수 이동제한 조치하고 신속히 개체별 검사 실시
부산	2	100	100	200	
대구	1.5	75	75	150	
인천	4	200	200	400	
광주	2	100	100	200	
대전	2	100	100	200	
경기	44	2,200	2,200	4,400	
강원	8	400	400	800	
충북	6	300	300	600	
충남	20	1,000	1,000	2,000	
전북	6	300	300	600	
전남	6	300	300	600	
경북	11	550	550	1,100	
경남	11	550	550	1,100	
제주					
계	126	6,300	6,300	12,600	

○ 부루세라(Plate) 검진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0.1	10	10	20	○ 실시대상 : M.R.T 검진결과 및 타시·도 검진결과 통보된 양성 또는 의양성 목장의 천두수
부산	0.2	20	20	40	
대구	0.2	20	20	40	○ 소요경비 - 실시재료비 : 두당 200원 (국비50%, 지방비50%)
인천	0.5	50	50	100	○ 실시요령 - M.R.T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우에 대하여는 추적조사하고, 동거가축 또는 인근지역에 대하여는 개체별 (한육우 포함)검사를 실시
광주	0.1	10	10	20	- 유산등 부루세라병의 의심우군에 대하여도 개체별로 검사 실시
대전	0.1	10	10	20	
경기	6.8	680	680	1,360	- 제주도는 육지반출우 및 양성우 동거가축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우에 한하여 반출용 검사증명서 발급 (제주도고시 제1654호)
강원	3	300	300	600	○ 기 타 - 파스퇴르유업(주)에서 검사의뢰된 가검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할 것(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충북	1	100	100	200	
충남	2.5	250	250	500	
전북	2.5	250	250	500	
전남	2	200	200	400	
경북	3	300	300	600	
경남	2	200	200	400	
제주	6	600	600	1,200	
계	30	3,000	3,000	6,000	

○ 우간질 검진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요경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 실시대상 : 영세양축농가 사육우 우선 실시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사육우 ○ 실시요령 - 시도가 축위생시험소장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우간질 검진을 위하여 관내공수의와 합동으로 검사할 것. - 검진결과 양성우에는 구제약품 우선 배정 ○ 실시기간 : 4-10월 ○ 소요경비 - 실시재료비 : 두당 200원 (국비 50%, 지방비50%)
부산					
대구					
인천	6	600	600	1,200	
광주	2	200	200	400	
대전	4	400	400	800	
경기	40	4,000	4,000	8,000	
강원	20	2,000	2,000	4,000	
충북	20	2,000	2,000	4,000	
충남	40	4,000	4,000	8,000	
전북	30	3,000	3,000	6,000	
전남	50	5,000	5,000	10,000	
경북	40	4,000	4,000	8,000	
경남	43	4,300	4,300	8,600	
제주	5	500	500	1,000	
계	300	30,000	30,000	60,000	

○ 추백리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요경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 실시대상 : 관내 자체검진완료 종계장의 증계(사육마리수의 5%) ○ 실시기간 : 3-11월 ○ 소요경비 : 수당 20원 (국비50%, 지방비50%) ○ 기타 - 시도지사는 매월 검진실적을 익월 5일까지 당부에 보고할 것. - 추백리 방역실시요령의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미 실시 종계장 은 고발, 증계사용을 금지하는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것. · 진단액구입상황 점검 철저 - 시·도지사는 위생시험소의 확인 검사상황을 수시 점검할 것.
부산					
대구	1.5	15	15	30	
인천	0.5	5	5	10	
광주	-	-	-	-	
대전	1	10	10	20	
경기	56.5	565	565	1,130	
강원	1.5	15	15	30	
충북	9	90	90	180	
충남	34	340	340	680	
전북	22	220	220	440	
전남	4	40	40	80	
경북	8	80	80	160	
경남	3	30	30	60	
제주	1	10	10	20	
계	142	1,420	1,420	2,840	

③ 기생충 구제

○ 소진드기 구제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계획량	소요 경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 실시대상 : 진드기 서식지의 사육우 (전기업양축농가제외) ○ 실시기간 : 4-10월 ○ 실시요령 - 진드기 서식지 및 바베시아병, 타일레리아병 다발지역 우선 실시 - 진드기 출현시기에 맞춰 시·도 단위로 구제일정을 정하여 일제히 실시 - 실시간격 : 10-20일 - 축체에 분무 또는 약욕 실시 - 특히, 제주도는 전기업농장에 대하여 진드기구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강화 ○ 소요경비 : 두당 50원 (국비70%, 지방비30%) ○ 도지사는 타이레리아병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계도할 것.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500	17,500	7,500	25,00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1,000	35,000	15,000	50,000	
경북					
경남	500	17,500	7,500	25,000	
제주	1,000	35,000	15,000	50,000	
계	3,000	105,000	45,000	150,000	

○ 우간질 구제

(단위 : 천두, 천원)

구제	계획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실시대상 - 소간질검진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 우선지급 ○ 실시기간 : 4-10월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1,000원 (국비70%, 지방비30%)
부산					
대구					
인천	2	1,400	600	2,000	
광주	1	700	300	1,000	
대전	1	700	300	1,000	
경기	20	14,000	6,000	20,000	
강원	28	19,600	8,400	28,000	
충북	5	3,500	1,500	5,000	
충남	10	7,000	3,000	10,000	
전북	13	9,100	3,900	13,000	
전남	37	25,900	11,100	37,000	
경북	10	7,000	3,000	10,000	
경남	20	14,000	6,000	20,000	
제주	3	2,100	900	3,000	
계	150	105,000	45,000	150,000	

○ 꿀벌응애류 구제

(단위 : 천군, 천원)

구분	계획량	소요 경비			비 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27	5,400	5,400	10,800	○ 실시대상 - 개량양봉농가의 봉군 ○ 실시기간 - 1차 : 2-3월 - 2차 : 10-11월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200원 (국비50%, 지방비50%) ○ 기타 - 시도지사는 대한양봉협회(도지부)와 지역양봉축협과 협의하여 약품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 꿀벌응애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구제이외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시도·계몽을 강화할 것. - 월동직전·직후에는 반드시 구제 토록 할 것. - 약품사용전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
부산	13	2,600	2,600	5,200	
대구	17	3,400	3,400	6,800	
인천	3	600	600	1,200	
광주	7	1,400	1,400	2,800	
대전	13	2,600	2,600	5,200	
경기	44	8,800	8,800	17,600	
강원	69	13,800	13,800	27,200	
충북	40	8,000	8,000	16,000	
충남	47	9,400	9,400	18,800	
전북	49	9,800	9,800	19,600	
전남	56	11,200	11,200	22,400	
경북	100	20,000	20,000	40,000	
경남	90	18,000	18,000	36,000	
제주	25	5,000	5,000	10,000	
계	600	120,000	120,000	240,000	

다. 가축혈청검사사업

(1) 목적 및 필요성

-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역대책수립을 목적으로 시·도 가축 위생시험소에서 가축의 혈청을 검사하여 면역항체가와 질병감염여부, 및 질병발생동향을 파악하고
- 검사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시기지도 및 질병방제와 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양축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

(2) 사업시행기관

- 가축위생연구소 : 진단액등 생산 및 기술지도
- 가축위생시험소 : 혈청검사실시 및 결과통보와 양축농가 지도

(3) 검사대상질병 : 19종

- 닭 : 뉴캐슬병(ND) · 산란저하증(EDS'76) · 감보로병(IBD) · 전염성기관지염(IB) · 추백리(SP) · 마이코플라즈마병(MG) · 닭 뇌척수염(AE)(7종)
- 돼지 : 단독(SE) · 위축성비염(AR) · 일본뇌염(JE) · 마이코플라즈마병(MG) · 돼지파보(SP) · 돼지생식호흡증후군(PRRS)(6종)
- 소 : 요네병(JD) · 유행열(EF) · 아까바네(AD) · 이바라기(ID) · 추산병(CD) · 우간질 (6종)

(4) 실시방법

① 닭 혈청검사

○ 검사대상선정

- 증계장에서 직접채혈 또는 이곳으로부터 도계장에 출하된 닭을 선정 채혈하되 1개농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 가검물채취 : 관내 양계농가에서 검사요청시 진단액 부족으로 인한 검사거부사례가 없도록 매월 균분 실시

② 돼지 혈청검사

○ 검사대상선정

- 종돈장이나 검사필요성이 있는 양돈장에서 직접 採血 또는 이곳으로부터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중에서 채혈하되 1개 농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 가검물채취 : 매털 균분 실시

③ 소질병 역학조사

○ 요네병의 국내 분포조사를 실시

- 관내 유우를 대상으로 분포조사 실시

(5) 사업량 : 연 684,200건(종계장·종돈장 사업량, 207000건 포함)

○ 닭 : 427,700건

- 연구소 : $4,500\text{수} \times 7\text{종} = 31,500\text{건}$
- 시험소 : $33,600\text{수} \times 7\text{종} = 235,200$
 $23,000\text{수} \times 7\text{종} = 161,000$

○ 돼지 : 223,800건

- 연구소 : $1,000\text{두} \times 6\text{종} = 6,000\text{건}$
- 시험소 : $33,600\text{두} \times 5\text{종} + 4,800\text{두} \times 1\text{종} = 172,800\text{건}$
 $23,000\text{두} \times 2\text{종} = 46,000\text{건}$

○ 소 : 31,700건

- 연구소 : $500\text{두} \times 1\text{종} = 500\text{건}$
 $3,000\text{두} \times 4\text{종} = 12,000\text{건}$
- 시험소 : $19,200\text{두} \times 1\text{종} = 19,200\text{건}$

(6) 소요예산 (330,292천원)

① 진단액등 생산 : 가축위생연구소 : 180,852천원

○ 닭 : 7종 각 38,100수분 99,822천원

- 연구소용 11,790천원

· 6종(ND.EDS.IBD.IB.MG.AE) : $4,500 \times 2,600\text{원} = 11,700$

· 1종(SP) : $4,500 \times 20\text{원} = 90$

- 시험소용 88,032천원

$33,600\text{수} \times 2,620\text{원} = 88,032$

○ 돼 지 54,900천원

< PRRS > : 13,300천원

- 연구소용

· $1,000\text{두} \times 3,500 = 3,500$

- 시험소용

· $800\text{두} \times 3,500 = 2,800$

- 검역소용

· $2,000\text{두} \times 3,500 = 7,000$

2종 (AR.MG.) : 27,680천원

- 연구소용

· $1,000\text{두} \times 800\text{원} = 800$

- 시험소용

· $33,600\text{두} \times 800\text{원} = 26,880$

3종 (SE.JE.SP) : 13,920천원

- 연구소용

· $1,000\text{두} \times 1,200\text{원} = 1,200$

- 시험소용

· $10,600\text{두} \times 1,200\text{원} = 12,720$

○ 소 : 26,130천원

- 요네병 : 3,350천원

· 연구소용 : $500\text{두} \times 500\text{원} = 250$

· 시험소용 : $6,200\text{두} \times 500\text{원} = 3,100$

- 우간질 : 22,500천원

· $150\text{원} \times 150\text{천두} = 22,500$

- 부루세라용 CF 항원 : 280천원

· $80\text{원} \times 3,500\text{두} = 280$

② 실시재료비 : 149,440천원

○ 닭 : 85,540천원

· 연구소 : $200\text{원} \times 7\text{종} \times 4,500 = 6,300$

· 시험소 : $200\text{원} \times 7\text{종} \times 33,600 = 47,040$

$200\text{원} \times 7\text{종} \times 23,000 = 32,200$

○ 돼지 : 44,960천원

· 연구소 : $200\text{원} \times 6\text{종} \times 1,000\text{두} = 1,200$

· 시험소 : $200\text{원} \times 5\text{종} \times 33,600 = 33,600$

$200\text{원} \times 1\text{종(PRRS)} \times 4,800 = 960$

$200\text{원} \times 2\text{종} \times 23,000 = 9,200$

○ 소 : 18,940천원

- < 요 네 병 > : 3,940천원

· 연구소 : $200\text{원} \times 500\text{두} = 100$

· 시험소 : $200\text{원} \times 19,200 = 3,840$

- < 4종 : EF, Ibaraki, Chusan D, Akabane > : 15,000천원

· 연구소 : $1,250\text{원} \times 3,000\text{두} \times 4\text{종} = 15,000$

(7) 검사결과 조치사항

- 혈청검사성적을 조사분석하여 면역역가·백신접종 적기여부·접종방법의 개선등 방역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 농장에 즉시 통보하여 자율방역에 활용토록 할 것.
- 도축장과 도계장에서 채혈한 혈청의 검사 및 분석결과는 출하농장이 타 시·도일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해당 시·도에서 방역지도 및 예찰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
- 타 시·도로부터 출하가축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가 통보될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지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요네병 양성우에 대하여는 동질병의 특성을 홍보, 자진 도태토록 유도

(8) 모기매개질병

- 가축위생연구소장은 전남북, 경남북등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 시험소별 시료채취 건수를 조정하여 '95. 3. 15까지 해당 시험소에 통보'
- 해당 시험소장은 시료를 채취하여 '95. 3말까지 가축위생연구소에 송부할 것.
- 가축위생연구소장은 소유행열등 모기매개질병 4종에 대한 항체가를 검사하여 '95. 4. 30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할 것.

(9) 기 타

- 각 시·도지사는 관내 가축위생시험소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양축농가에 대한 홍보강화 및 동사업의 이용도 제고를 위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혈청검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
- 가축위생시험소별로 전문인력에 대한 진단기술 배양에 주력토록 조치하고, 검사실시에 필요한 장비등을 년차적으로 보강토록 할 것.
 - 실험실 상시인원을 필히 배치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을 기할 것.(실험실요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 강구 추진)
- 가축위생연구소장은 부루세라병 검사용 CF항원을 생산하고, 당부에 생산 보고할 것.

(10) 보 고

- 별지 서식에 의거 검사결과를 익월 5일까지 당부에 보고할 것.

가축혈청검사사업

(단위 : 수, 두, 천원)

구분	가축 위험 시험소	사업량				사업비(국비)			비고
		닭	돼지	소	계	진단액 생산비	재료비	계	
서울	1개소	700	700	400	1,800		1,780	1,780	○ 연구소 사업량 - 닭 : 4,500 - 돼지: 1,000 - 소:500
부산	1	700	700	400	1,800		1,780	1,780	
대구	1	700	700	400	1,800		1,780	1,780	
인천	1	700	700	400	1,800		1,780	1,780	
광주	1	700	700	400	1,800		1,780	1,780	○ 시험소별 사업량 - 닭: 700 - 돼지:700 (PRRS는 100두) - 소:400
대전	1	700	700	400	1,800		1,780	1,780	
경기	6	4,200	4,200	2,400	10,800		10,680	10,680	
강원	4	2,800	2,800	1,600	7,200		7,120	7,120	
충북	4	2,800	2,800	1,600	7,200		7,120	7,120	○ 실시재료비 (두당) - 닭: 각 200원 1,400원 - 돼지: 각 200원 1,200원 - 소 · 요네병 : 200원 · 유행열 아까바네 이바라기 출산병 : 각 1,250 원
충남	6	4,200	4,200	2,400	10,800		10,680	10,680	
전북	5	3,500	3,500	2,000	9,000		8,900	8,900	
전남	5	3,500	3,500	2,000	9,000		8,900	8,900	
경북	5	3,500	3,500	2,000	9,000		8,900	8,900	
경남	5	3,500	3,500	2,000	9,000		8,900	8,900	
제주	2	1,400	1,400	800	3,600		3,560	3,560	
가위연		4,500	1,000	500	6,000	180,852	22,600	203,452	
계	48	38,100	34,600	19,700	92,400	180,852	108,040	288,892	

○ 증돈장·증계장용 진단액

(단위 : 수·두·천원)

구 분	가축 위생 시험소	사 업 량			사 업 비 (국비)			비 고
		닭	돼지	계	진단액 생산비	재료비	계	
인 천	개소 1	300	100	400		460	460	○ 실시재료비 - 닭 : 각 200원 1,400원 - 돼지 : 각 200원 400원
경 기	6	6,700	7,500	14,200		12,380	12,380	
강 원	4	500	200	700		780	780	
충 북	4	1,500	1,100	2,600		2,540	2,540	
충 남	6	7,000	4,000	11,000		11,400	11,400	
전 북	5	3,900	1,000	4,900		5,860	5,860	
전 남	5	1,000	4,500	5,500		3,200	3,200	
경 북	5	1,000	1,500	2,500		2,000	2,000	
경 남	5	1,000	2,500	3,500		2,400	2,400	
제 주	2	100	600	700		380	380	
계	43	23,000	23,000	46,000		41,400	41,400	

'95. ()월 가축 혈청검사 결과보고

(도)

축종	병류별	년간계획 두수	검사실적		검사결과			검사방법	비고
			농장수	검사두수	양성	음성	계		
									* 비교판 은 양성 판정항 체 기록

라. 돼지오제스키병 근절사업

(1) 검진사업

① 목 적

-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종돈장 및 허가·등록된 양돈장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여 오제스키병 감염축을 색출·도태하고,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전국적인 오제스키병 발생상황 조사와 출하농장 추적조사로 조기근절을 위한 방역대책을 수립·추진코자 함.

② 사업실시기관

- 진단키트 구입배정기관 : 가축위생연구소
 - 가축위생연구소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진단키트를 구입할 것.
- 검사기관 : 가축위생시험소(본소, 지소 포함)
- 기술지도기관 : 가축위생연구소
 - 가축위생연구소는 검진에 따른 기술지도 실시

③ 검사대상

- 종돈장 및 허가·등록된 양돈장과 검사필요성이 있는 양돈장의 돼지

④ 검사실시방법

- 종돈장 :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종돈장별 검사대상 두수를 선정하여 년2회 검사실시(상반기 : 5-6월, 하반기 : 9-10월)
- 허가·등록된 양돈장 : 허가 또는 등록된 양돈장 또는 기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년 2회 검사실시

⑤ 검사대상두수

- 종돈장 : 43,400두
- 허가·등록 양돈장 및 추적조사 : 42,600두
- 도축장 출하돼지 일제조사 : 14,000두
- 계 : 100,000두

⑥ 검사결과 조치

- 각 시도지사는 종돈장과 양돈장에 대한 검사실시결과 양성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즉시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규정된 긴급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발생농장 인근지역과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동 질병방역에 대한 지도·계몽을 강화할 것.
-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검사는 매분기별 서울시는 1,000두, 직할시는 500두씩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대상축은 출하농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확인·선정토록 할 것이며, 각 시장은 검사결과를 분기종료 익월 5일 이내에 다음 양식1에 의거 집계 보고하고
- 종돈장과 양돈장 검사실시결과는 분기종료 익월 5일 이내에 다음양식 2에 의거 보고할 것이며, 양성축 판정시에는 즉시 보고할 것.

⑦ 기 타

- 시도지사는 기 시달한 바와 같이 도축검사 신청서상의 출하농장에 대한 기재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도축업무와 연계하여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 검사결과 보고서식 1 >

도축장 출하돈 일제 검사결과

{ 시)
 도}

검사기관 (시험소별)	출하지역 (시·군별)	검사두수	검 사 결 과			비 고
			양 성	음 성	계	

주 : 양성축에 대하여 농장명, 사육자명, 소재지, 사육두수, 양성두수를
 별도 명기할 것.

< 검사결과 보고서식 2 >

() 분기 종돈장·양돈장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 시 }
{ 도 }

종돈장 (양돈장)	성 명	주 소	사육두수	검사두수	검사일자	검사결과	
						양성	음성

돼지오제스키병 검색사업

(단위 : 두, 천원)

구 분	계획량	검 사 대 상			사 업 비			비 고
		종돈장	양돈장및 추적조사	도 축 장 일제조사	국 고	지방비	계	
서 울	4,000			4,000		800	800	○진단키트 구입비(두당) : 2,000원 (국비) ○실시재료비 (두당): 200원(지방비)
부 산	2,000			2,000		400	400	
대 구	2,100		100	2,000		420	420	
인 천	2,700	200	500	2,000		540	540	
광 주	2,200		200	2,000		440	440	
대 전	2,100		100	2,000		420	420	
경 기	26,000	15,000	11,000			5,200	5,200	
강 원	3,000	200	2,800			600	600	
충 북	4,000	2,000	2,000			800	800	
충 남	21,000	8,000	13,000			4,200	4,200	
전 북	4,000	2,000	2,000			800	800	
전 남	12,200	8,000	4,200			2,440	2,440	
경 북	6,000	3,000	3,000			1,200	1,200	
경 남	6,500	4,000	2,500			1,300	1,300	
제 주	2,200	1,000	1,200			440	440	
계	100,000	43,400	42,600	14,000		20,000	20,000	

마. 유방염 방제사업

(1) 목 적

- 유대지급 차등가격제(세균 및 체세포수) 적용이 실시됨에 따라 유방염에 대한 예방 및 치료대책 추진으로 각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적 우유 생산 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2) 실시기간 : '95. 1 - 12월

(3) 실시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4)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두,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90,000	270,000	○ 실시재료비(CMT시약등): 두당 3,000원

(5) 대상농가 : 집유장의 체세포수 검사결과 등외(75만이상/㎖당)판정농가

- 시도지사는 등외판정 농가를 파악하여 가축위생시험소 본·지소별로 사업물량 조정

(6) 세부 실시요령

- 체세포수 등외판정 농가의 착유우에 대한 개체별, 분방별로 CMT 및 체세포수 검사 실시
 - 체세포수 50만개/㎖이상을 유방염 감염 의심우로 판정
- 개체별 검사결과 유방염 의심우에 대한 분방별로 원인균 분리
- 원인균에 대한 약제감수성시험 실시
- 유방염 감염우, 감염분방, 원인균 및 약제시험결과를 해당농가에 통보하여 자가치료토록 지도

(7) 표준화 사업

- 원유중 세균수 및 체세포수검사장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가축위생연구소등의 연구결과에 대한 표준화검증 및 체세포수측정기기 표준화용 세포표준용액(standard cell sol.)제조
- 사업주체 : 가축위생연구소
- 소요예산 : 10,000천원

(8) 기 타

- 시도지사는 전월 실적을 익월 5일까지 별지서식에 의거 당부에 보고할 것.
- 체세포검사기기 미확보 시험소는 집유장 장비를 활용할 것.
- 유업체에서 유방염 원인균 및 감수성 시험을 실시하는 농가는 제외

(9) 사업계획

(단위 : 두, 천원)

구 분	방 제 사 업		표준화 사업	계
	사업량	소요액		
서울	-	-	-	-
부산	-	-	-	-
대구	500	1,500	-	1,500
인천	1,500	4,500	-	4,500
광주	500	1,500	-	1,500
대전	-	-	-	-
경기	24,000	72,000	-	72,000
강원	5,000	15,000	-	15,000
충북	5,000	15,000	-	15,000
충남	15,000	45,000	-	45,000
전북	7,000	21,000	-	21,000
전남	6,000	18,000	-	18,000
경북	10,000	30,000	-	30,000
경남	10,000	30,000	-	30,000
제주	500	1,500	-	1,500
연구소	5,000	15,000	10,000	25,000
계	90,000	270,000	10,000	280,000

95. 일 유방염 예방법 강제시행 결과 보고

시험소별	통외판정		검 사 사 결 과				감 염 율 (%)			년간검사 두수누계 (%)	비고		
	농기수	사투	검목정수	질투	사수	양투 (%)	정양분수 (%)	두 수	분 방 수			준임상	
			검목정수	질투	사수	양투 (%)	정양분수 (%)	임 상	준임상	임 상	준임상		
총 계													
전월실적 (월)													

바. 진도전 방역사업

(1) 목 적

-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도전 특별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순종번식과 보호에 기여

(2)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국 비	지 방 비	계
DHPPL 예방약	12,000두	12,600	5,400	18,000
기생충구제	12,000	8,400	3,600	12,000
계	24,000	21,000	9,000	30,000

- 국비70%, 지방비30%
- 사업량 : 6,000두x2회

(3) 사업시행 : 전라남도

(4) 실시시기 : '95.4 - 11월

(5) 사후관리 및 감독 : 전라남도지사

(6) 기 타

- 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개체별 건강진단을 위한 혈청검사를 병행 실시
-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이외에 질병발생등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
- 사업완료후 결과보고

사. 살처분 보상

(1) 목 적

- 가축전염병(우결핵, 부루세라병, 돼지오제스키병, 30두미만 사육농가의 돼지콜레라)에 이환된 양성축을 조기 식출, 살처분하여 전염병의 만연을 방지
- 전염병 발생시 조기신고를 유도하여 피해방지
-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으로 축산의욕 고취

(2) 지급계획물량 : 3,500두

- 소 : 500두(젖소 100두, 한육우 400두)
- 돼지 : 3,000두

(3) 재 원 : 1,160,000천원(국비)

(4) 사업주관 : 농림수산부 및 시·도

(5) 지급대상

- 전염병 발생시 가축방역관의 명령에 의하여 살처분된 소, 돼지에 한하여 지급

(6) 지급기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농림수산부 고시 제89-46호에 의거 지급

(7) 기 타

- 살처분실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인건비, 소득비, 매몰비등은 필히 지방비로 확보할 것.
- 평가액 산정은 평가인이 상호비밀 유지하여 평가하고 당부에서 정한 평가액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아. 가축위생시험소 지원

(1) 목 적

- 새로운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발생증가로 인한 양축가의 손실방지
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공급과 유해물질 잔류방지로 국민보건 향상 도모
- 신속한 질병감정 및 원인분석으로 방역대책 수립

(2)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시 도 별	사 업 량	소 요 액			비 고
		국 비	지 방 비	계	
서울	1 대	14,300	14,300	28,600	○ 혈액분석기 구입비임.
부산	-	-	-	-	
대구	1	14,300	14,300	28,600	
인천	1	14,300	14,300	28,600	
광주	1	14,300	14,300	28,600	
대전	-	-	-	-	
경기	1	14,300	14,300	28,600	
강원	1	14,300	14,300	28,600	
충북	1	14,300	14,300	28,600	
충남	1	14,300	14,300	28,600	
전북	1	14,300	14,300	28,600	
전남	1	14,300	14,300	28,600	
경북	1	14,300	14,300	28,600	
경남	1	14,200	14,200	28,400	
제주	-	-	-	-	
계	12	171,500	171,500	343,000	

- (3) 사업시행자
 - 가축위생시험소장
- (4) 사업감독 및 사후감독
 - 해당 도지사
- (5) 정산보고 : '95. 6. 30 한

자. 제주도 부루세라병 특별검진사업

- (1) 목 적
 - 제주도 사육우등에 대한 부루세라병 특별검진실시로 양성축을
 살처분하여 동질병의 조기근절 및 전국확산방지로 양축농가 보호와
 국민보건위생의 향상에 기여

(2) 실시 시기 : '95.2 - 11월

- (3) 실시대상 : 소(70천두)
 - 1회 : 40,000두 ○ 2회 : 10,000
 - 3회 : 10,000 ○ 4회 : 10,000

- (4) 사업내용
 - 검진방법

구 분	1 차 검 사	2 차 검 사
1-4회	Rose Bengal Test	Tube Test 또는 CF Test

- 실시기관 : 제주도지사
 - 공개업 수의사를 동원하여 검진실시
- 사업비 : 420백만원
 - 국비 140백만원, 지방비 280백만원
- 부루세라병 근절 5개년 계획에 의거 '94부루세라병 검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당부에 보고하고 추진할 것.

- (5) 기 타
 - 의양성우에 대하여는 자진도태토록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

차. 가축질병예찰업무 강화

(1) 목적 및 필요성

- 가축질병의 조기검색과 예방 및 가축방역에 관한 조치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예찰업무를 강화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

(2) 사업수행기관

- 중앙 : 가축위생연구소
- 지방 : 시도가축위생시험소

(3) 실시요령

-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규정(농림수산부훈령 제649호)에 의한 예찰업무 지도·감독 철저
- 예찰협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대양축가 홍보·지도강화
- TV, 축산전문지, 라디오등을 통한 홍보실시

(4) 기 타

- 예찰요원을 지역분담제로 지정하고 예찰요원의 예찰업무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성실하거나 소홀한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 (공수의의 경우는 해촉 및 공무원은 징계조치)
- 종돈장, 종계장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예찰실시
- 시도지사는 지역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조치등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

축산분뇨 처리시설(공공계획)

1. 목적

-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
- 축산공해방지시설 자금 지원으로 축산경영비 절감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도모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1) 가축분뇨의 자원화(퇴비·액비) 처리 중점 지원
- (2) 축산경쟁력이 없고 축산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부업규모의 영세농가에 대하여는 간이정화시설등의 지원물량을 점차 축소하는 반면, 농림수산부 및 환경처에서 설치하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유도

나.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1) 사업목표

- '95까지 : 신고대상(전업규모) 농가의 정화시설 설치 완료
- '96이후 : 규제미만(부업규모) 농가의 간이정화시설 설치 및 신고대상농가의 시설 개보수·신규축산시설에 대한 정화시설비 지원

(2) 장기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95		'96		'97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특보조 농특용자		531 564		425 499		390 459		1,346 1,522
계	10,681	1,095	8,400	924	7,361	849	26,442	2,868

3. 사업신청 자격

가. 신청자격

(1) 개별 농가시설

- 간이정화시설 : 법 규제 미만 농가
- 정화시설 : 신고대상 농가(시설 개보수 농가 포함)
-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비 : 신고·허가대상농가
- ※

{	신고대상 : 소사육시설 350-900㎡미만, 돼지사육시설 250-1000㎡미만, 닭사육시설 500㎡이상
	허가대상 : 신고대상 이상
	규제미만 : 소사육시설 120-350㎡미만, 돼지사육시설 70-250㎡미만, 닭사육시설 150-500㎡미만
- ※ 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과거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농가에 대하여도 정화시설비 지원 허용

(2) 단체 공동시설

- 지역축협, 축산단지, 계열주체, 영농조합법인등 협업체 및 정착촌

나. 우선순위

(1) 개별농가시설

- 상수보호구역내 농가
- 자원화(퇴비·액비)시설 설치농가
- 축산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농가

(2) 단체공동시설

- 축산단지를 기 조성하였거나 시설부지를 확보한 단체
- 경영구조가 양호한 단체
- 공동시설설치와 관련 농지전용, 비료제조업허가, 액비살포지 확보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단체

※ 축분발효시설의 경우 톱밥을 사용하지 않는 발효공법 설치 단체 우선

다. 사업 최종선정권자

- (1) 개별농가시설 : 시장, 군수
- (2) 단체공동시설 : 장관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1) 농가개별사업(지방사업) : 시장, 군수
- (2) 단체공동사업(중앙사업) : 시도지사

나. 사업내용

(1) 농가 개별사업

- (간이)정화시설 : 저장액비화, 퇴비사, 톱밥발효촉사, 톱밥토양여과상, KDST등 정확효율이 높은 정확조
- 비료화시설 : 통풍식·교반식·건조식 축분발효시설 및 화력건조시설등
- 퇴비처리장비 : 고액분리기, 스킨드로드, 소형톱밥제조기, 분뇨건조기, 왕겨분쇄기등

(2) 단체 공동사업

- 축분발효시설 : 가축분뇨를 이용한 부산물 비료제조업 시설 및 장비
- 분뇨공동저장탱크 : 가축분뇨 공동저장시설 설치비
- 분뇨운반장비 : 바큇카(Vacuum Car), 살포차량, 교반기등
- 정착촌 구조개선 : 축분발효시설, 공동저장탱크, 공동퇴비사등

다. 지원조건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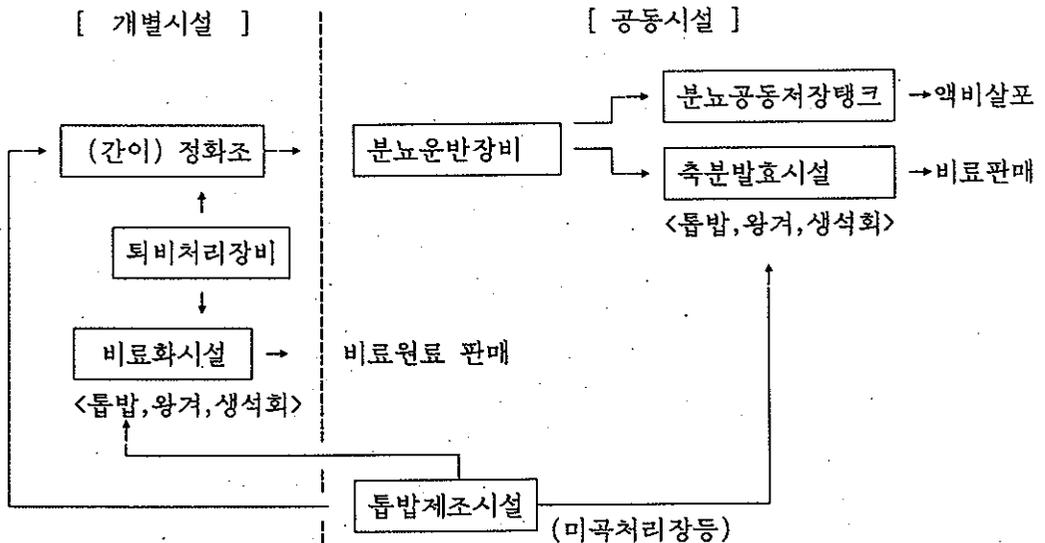
구	분	개소당 사업비	지 원 율(%)			용자 조건
			보조	용자	자담	
개 별 시 설	간이정화시설(법규제이하)	4.2	50	50	-	3년거치 7년
	정화시설(신고대상)	10	50	50	-	균분상환
	비료화시설①	100	-	70	30	연리 3%
	비료화시설②	50	-	70	30	
	퇴비처리장비	10	-	100	-	
공 동 시 설	축분발효시설	1,000	50	20	30	3년거치 7년
	분뇨운반장비	30	50	20	30	균분상환
	분뇨공동저장탱크	50	50	20	30	연리 3%
	정착촌구조개선	300	100	-	-	

라. 지원규모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총계	농특회계(국고)			지방비 보조	자담
			계	보조	용자		
간이정화시설	5,000	21,000	21,000	10,500	10,500	-	-
정화시설	5,000	50,000	50,000	25,000	25,000	-	-
개별농가비료시설①	100	10,000	7,000	-	7,000	-	3,000
개별농가비료시설②	100	5,000	3,500	-	3,500	-	1,500
개별농가퇴비 처리장비	400	4,000	4,000	-	4,000	-	-
가축분뇨운반장비	30	900	630	450	180	-	270
축분발효시설	30	30,000	21,000	15,000	6,000	-	9,000
분뇨공동저장 탱크	15	750	525	375	150	-	225
정착촌구조개선	6	1,800	1,800	1,800	-	-	-
계	10,681	123,450	109,455	53,125	56,330	-	13,995

마. 지원사업 시설별 연계



바. 시도별 사업비 배정(안)

(단위 : 천원)

시·도명	사 업 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용자금	수익자부담
전국계	10,681	123,450,000	53,125,000	-	56,330,000	13,995,000
서울	-					
부산	-					
대구	16	102,000	46,000		56,000	
인천	11	81,000	35,500		45,500	
광주	26	144,000	67,000		77,000	
대전	11	81,000	35,500		45,500	
경기	2,321	24,450,000	10,395,000		11,256,000	2,799,000
강원	546	6,620,000	2,885,000		2,877,000	858,000
충북	381	4,638,000	1,794,000		2,319,000	525,000
충남	2,002	20,640,000	8,895,000		9,780,000	1,965,000
전북	1,268	14,440,000	6,420,000		6,628,000	1,392,000
전남	1,215	14,411,000	6,168,000		6,714,500	1,528,500
경북	1,428	17,246,000	7,473,000		7,808,000	1,965,000
경남	1,290	15,527,000	6,851,000		6,871,500	1,804,500
제주	166	5,070,000	2,060,000		1,852,000	1,158,000

※ 예산항목

소 관	관	세 항	사업명(세세항)	비 목
농림수산부	농어촌구조개선	축산사업육성	축산공해방지 시설	자치단체에대한 자본보조
21	411	1713	218	412

5.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

가. 사업계획 수립 주체

- (1) 농가 개별사업 : 농민(시장, 군수 협조)
- (2) 단체 공동사업 : 단체(시·도지사 협조)

나. 사업신청기관

- (1) 개별농가시설 : 시군
- (2) 단체공동시설 : 시군경유 시도

다. 사업신청서식

- (1) 간이정화시설 및 정화시설

(단위 : 천원)

구 분	요 청 물 량			축 종 별		요 청 금 액		
	상수보호구역	기타지역	계			용자	보조	계
간이저장조 (저장액비화등)			개소	한우 젖소 돼지	개소 개소 개소			
톱밥발효축사 (톱밥발효돈사, 톱밥우사등)			개소	한우 젖소 돼지	개소 개소 개소			
톱밥토양여과상			개소	돼지	개소			
KDST등방류정화 조			개소	한우 젖소 돼지	개소 개소 개소			
건조장(퇴비사)			개소	한우 젖소 돼지 닭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계			개소	한우 젖소 돼지 닭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톱밥우사의 경우 개폐식 톱밥우사를 포함
○ 상수보호구역은 취수원 상류 10km이내의 농가를 기재

(2) 개별농가 비료시설

(단위 : 백만원)

대상자		축종	① 축사 면적	축사 부지 면적	사육 두수	② 적용 기준	③ 처리 방법	사업비		
성명	농장소재지							계	용자	자담
			m'	m'						

- 주) ① 가축사육시설 면적
 ② 허가대상, 신고대상으로 구분 기재
 ③ 교반식, 통풍식등 퇴비화방법명을 기재

※ 첨부서류 : 대상자별 사업계획서 1-2매 (A4 용지 세로 작성)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 설치장소, 저장·발효·퇴적조등 시설별
 면적, 구입장비명, 자원별 투자계획

(3) 퇴비처리장비

(단위 : 백만원)

장비명	수량	사업비			비고
		용자	자담	계	
스키드로다(일반)					
스키드로다(트렉타부착용)					
소형톱밥제조기					
고액분리기					
분뇨건조기					
왕겨분쇄기					
계					

(4) 가축분뇨운반장비 및 분뇨공동저장탱크

(단위 : 백만원)

지역	대상자	사업량	사업비				시설장비 운영여건 *
			계	용자	보조	자담	
		개소					

※ 운반장비 및 저장탱크 상호 연계실태 또는 액비살포지 확보 여부등을 기재

(5) 축분발효시설 및 정착촌구조개선

(단위 : 백만원)

지 역	대상자(단체)	사업주체	사 업 비			
			보 조	용 자	자 담	계

※ 첨부서류

- 시도지사 의견서(정착촌은 한성협동회 의견서 포함)
- 사업계획서
 -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 분뇨발생량, 분뇨처리공법, 구입장비명, 분뇨처리능력, 수거지역축산현황, 자원별 투자 및 상환계획, 사업수익성분석, 시설운영계획등
- 시설설치 부지 등기부등본

6. 기타 참고사항

가. 시설의 설치

(1) 간이정화시설 및 정화시설

- 개정되는 오·폐수법령에 의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퇴비화 시설(톱밥발효축사, 개폐식 톱밥우사, 퇴비사, 저장액비화)의 설치 권장. 단, 저장액비화시설의 경우에는 액비조에서 부속된 액비를 살포할 농경지 등을 확보한 농가에 한하여 설치 지도
- 축사구조 및 농가여건상 축산폐수를 정화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하는 농가의 경우 축산폐수 정화시설 표준설계도서(환경처 고시 제88-21호 및 '92년 7월 농림수산부, 환경처 공동제작 축산폐수퇴비화방법)외의 방법으로 정화시설을 설치코자 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화시설 시공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시공토록 하되 개정되는 오폐수법의 기준에 맞도록 처리용량을 설계, 시공토록 현장 입회등 지도감독 과 아울러 정화효율이 낮은 불량정화조의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전 환경처 공인기관에서 검사한 시험성적을 확인후 설치 허용

※ 방류수 BOD 수질기준 : 간이정화조 1,500ppm 정화조 350-500ppm 이하

- 간이정화시설 및 정화시설 설치비가 지원단가에 미달되는 정화방류조의 경우 지원잔액을 퇴비사 또는 정화조 배수로등 부대시설 설치비로 지원 허용

(2) 비료화 시설

- 교반식·통풍식·건조식 발효설비로 하되 허가대상 농가의 경우 건조식 설비는 가급적 제한
- 톱밥의 공급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은 "석회처리 화학반응방식"등 톱밥을 이용하지 않는 설비 권장
- 분뇨혼합처리공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별도 뇨·오수처리비용 절감 유도

(3) 퇴비처리장비

- 스키드로다는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동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 농가에 지원 하되 구입기종은 가급적 중기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중량 1톤 미만의 장비를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다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
- 소형톱밥제조기 및 왕겨분쇄기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등 장비의 가동 동력을 보유하고 톱밥 원료목 또는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농가에 지원
- 고액분리기는 분리된 뇨를 2차처리(정화후 방류 또는 저장후 액비살포)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농경지를 보유한 농가에 한하여 지원
- 분뇨건조기는 톱밥등 수분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 건조가 용이한 닭사육 농가에 지원

(4) 분뇨공동저장탱크

- 축협중앙회에서 제작한 분뇨공동저장탱크 설계도서 활용

(5) 축분발효시설

- 교반식·통풍식·건조식 발효설비로 하되 분뇨혼합처리공법을 권장하며 톱밥의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은 "석회처리화학반응식"등 톱밥을 이용하지 않거나 톱밥의 사용량이 적은 처리공법을 선택하도록 할 것
 - 수거대상 농가의 시설이 슬러리방식 축사일 경우 톱밥을 이용한 발효공법의 설비는 가급적 제한할 것

○ 대체농지조성비 면제

- 축분발효시설(부산물비료제조업)의 설치부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5,000㎡까지 농지조성비의 납부가 면제됨

나. (간이)정화시설 설계·시공 절차

(1) 허가대상 : 배출시설 설치허가(시도) → 정화시설 설계 시공(정화시설 시공 등록업체등) → 시공 → 설치신고 완료 → 준공검사 신청 → 가동

(2) 신고대상 : 배출시설 설치신고(시군) → 위탁설계 시공(정화시설 업체) → 자가설계 시공(표준설계도서) → 설치신고 → 시공 → 준공검사 → 가동

(3) 법규제미만 간이정화시설 :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자가설계 시공 또는 정화시설 업체 의뢰 시공 → 시군(축산부서)확인 → 가동

다. (간이)정화시설 표준설계도 제작·배포 내역

(1) 환경처('88. 6)

- 종 류 : 저장액비화, 매립처분, 퇴비화, 토양침투, 살수여상, 산화구
- 배부처 : 일선 시군 및 읍면 사무소

(2) 농림수산부, 환경처 합동('92. 7)

- 종 류 : 톱밥발효우사, 톱밥발효돈사, 건조식·통풍식·교반식 톱밥발효시설
- 배부처 : 일선 시군 및 읍면, 축산단체등

(3) 축협중앙회('91. 5)

- 종 류 : 간이정화조(저장액비화, 퇴비사)
- 배부처 : 지역 축협 및 시군청

(4) 농진청 축산시험장('92. 11)

- 종 류 : 톱밥토양여과법

라.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 02-503-7285, 500-2677)
- 도 : 농정국 축산과
- 군 : 산업과(축산과)

마. 가축분뇨 지도단속 기관

- 중앙 : 환경처 생활오수과 (☎ 02-504-9255, 500-4296)
- 도 : 환경관리과
- 군 : 환경보호과

공수의 위촉(공공계획)

1. 목 적

가축질병진료, 예방주사, 검진 및 예찰 등 가축방역사업에 공수의 활용으로 축산발전 및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2. 도별 공수의 정원 (국비)

(단위 : 명)

구 분	정 원				비 고
	계	갑 지	을 지	병 지	
계	360	221	134	5	
경 기	48	31	16	1	
강 원	34	17	17	-	
충 북	28	18	10	-	
충 남	45	30	15	-	
전 북	39	22	17	-	
전 남	52	35	14	3	
경 북	58	38	19	1	
경 남	49	25	24	-	
제 주	7	5	2	-	

3. 배치기준 및 월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배 치 기 준	월 수 당		
		계	국 비	지 방 비
갑 지	읍·면 소재지이상	300	150	150
을 지	벽 지	350	175	175
병 지	도서 및 특수오지	400	200	200

※ 지방비 추가확보 가능 도는 위 기준에 불구 수당증액 가능

4. 도별 공수의 수당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비 고
계	1,382,400	691,200	691,200	
경 기	183,600	91,800	91,800	
강 원	132,600	66,300	66,300	
충 북	106,800	53,400	53,400	
충 남	171,000	85,500	85,500	
전 북	150,600	75,300	75,300	
전 남	199,200	99,600	99,600	
경 북	221,400	110,700	110,700	
경 남	190,800	95,400	95,400	
계 주	26,400	13,200	13,200	

5. 공수의선정 및 배치

- 가축밀집사육지역으로서 개업 수의사가 경합되지 않는 지역에 우선 배치
- 사육가축두수를 감안하여 수의사가 없는 지역에 중점배치
- 매년 12월에 공수의 업무평정을 실시하여 당해년도 업무수행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후 위촉
- 업무에 충실하고 진료등에 능동적인 자를 우선배치(노약자 제외)
- 선정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특정인에 대한 반복위촉 지양(주기적으로 교체)
- 대한수의사회의 추천(시·도지부 또는 시·군·구 분회)을 받아 위촉

6. 업무감독

- 공수의 준수사항(수의사법시행규칙 제25조)에 대한 지휘·감독

7. 행정사항

- 배치지연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1월전에 전원 위촉배치하고 결과를 1월 30일까지 보고
- 공수의에 대한 변동사항은 수시로 보고(해촉과 동시 위촉할 것)
- 매월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공수의 업무보고사항을 취합하여 익년도 1월30일까지 보고
- ※ 배치완료 보고서식 및 공수의 업무수행상황 보고서식(별첨)

8.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 02-503-7285, 500-2677)
 - 도 : 농정국 축산과
 - 군 : 산업과(축산과)

(서식 1)

공수의 배치완료 보고

군 별	해 속			위 속						비고	
	성 명	등병 명칭	배치지 (읍면)	면허 번호	성 명	등병 명칭	배치지 (읍면)	지역 · 수당			위촉 일자
								지역	수당		
계	국비 : 갑지 을 병지 계			명 명	지방비 : 갑지 을 병지 계			명 명			

※ 지역란에 갑·을·병지 및 비고란에 국비·지방비 구분기재

(서식 2)

공수의 업무수행상황 보고

동물병원칭	공수의명	면허번호	배치지역	예찰 실시회수	사업실적	업무보고 적정여부	업무평정 실시결과	비고

동물병원 시설개선 자금지원(공공계획)

1. 목 적

-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가축질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 인수공통전염병의 적절한 방역등 국민보건향상에 기여
- 가축방역에 능동적 대처로 축산발전에 기여

2. 추진방향

- 대 상 : 소, 돼지등 산업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으로서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자 하는 자
- 사업내용 :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자금 지원(용자 70% , 자담 30%)
 - 시설개선 : 동물병원 증·개축 및 구조변경
 - 장비구입
 - 혈액분석기, 혈구카운터, 초음파진단기, 외과수술기, 삭제장비, 이물탐지기, 이물적출기, X-Ray기, 컴퓨터, 진료차량, 기타 필요한 장비중에서 구입
- 지원조건
 - 용자금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자기자본 부담 가능자
 - 용자재원 : 축산발전기금(년리 8%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기 타 : 농촌지역을 우선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자선정
 - 사업희망자는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기간 : '95. 1월 ~ 12월
- 사 업 비 : 개소당 40백만원(축산발전기금 용자 : 28백만원)

○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재 원	
			촉발기금융자	자 담
60 개소	40	2,400	1,680	720

○ 시·도별 배정 : 추후시달

○ 행정사항

- 도지사는 축산업협동조합과 협의하여 사업실시 및 사업완료후 '95.12.31일한 결과 보고(서식 별첨)
- '95년도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지원계획 수립·보고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02-503-7285, 500-2677)
- 도 : 농정국 축산과
- 군 : 산업과(축산과)

(서식 3)

동물병원 자금지원결과보고

(단위:원)

동물병원명	면허 번호	수의사명	소재지	장비구입 및 시설개선내역	소요액		비고
					기	금 자 담	

토양개량제 공급 (자율)

1. 목적

- 산성토양 및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병해충, 냉해 등 각종 재해로부터 견디는 힘을 높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농민에게 석회와 규산질비료의 구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임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지속적인 토양개량사업으로 토양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나.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4	'95	'96	'97	'98
사업량(천톤)	317	319	350	350	350
사업비계	18,061	17,880	24,500	24,500	24,500
-국 고보조(25%)	4,515	4,470	6,125	6,125	6,125
-지방비보조(25%)	4,515	4,470	6,125	6,125	6,125
-자담(50%)	9,031	8,940	12,250	12,250	12,250

3.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

가. 공급대상농경지 및 대상자

- 농촌지도기관의 토양검정결과에 따라
 - 석회 : 산도(pH) 6.5 미만의 산성 밭
 - 규산 : 유효규산함량 130ppm 미만의 규산부족 논
- 4년1기 시용기준하에 공급대상농경지의 희망농가

나. 공급 우선순위

- 신청량이 많을 경우 소농(1정보미만)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누락농가는 다음년도에 공급
- 석 회
 - ① pH가 낮은 농경지에 우선공급
 - ② 폐광산, 제련소인근등 중금속 오염 농경지
- 규 산
 - ① 유효규산함량이 130ppm 미만으로 규산함량이 적은 논
 - ② 병해충, 냉해, 도복등 재해 상습지 및 중금속오염지역

다.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라. '95 사업비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100%)	국고보조 (25%)	지방비보조 (25%)	용 자	자 담 (50%)
계	319 ^{천본}	17,882	4,470	4,470		8,942
석 회	201	10,613	2,653	2,653		5,307
규 산	118	7,269	1,817	1,817		3,635

4. 농가희망물량신청 및 토양검정 실시

가. 농가희망 물량신청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별첨 사업계획서 서식에 따라 농가별 신청량 제출

나. 토양검정실시

- 농촌지도기관은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필지별 토양검정 실시
- 농촌지도소장은 토양검정결과를 해당농가에 통보하고 부락별로 10a당 시용기준량을 산출하여 농가 배정자료로 활용

5. 구매공급방법 및 공급기간

가. 구매공급방법

- 석 회 : 시·도지사책임하에 구매공급
- 농협 시·도지회장이 구매대행
- 규 산 : 농협중앙회장 책임하에 구매공급

나. 공급기간

- 춘 기 : 전년 11.1 ~ 3.31 (제주도 : 전년 11.1 ~ 5.31)
- 추 기 : 8.1 ~ 10.31

다. 물량인수 인계

- 현지부락에 수송된 물량은 단협장 책임하에 인수하여 리·동장, 영농회장, 새마을지도자에게 인계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추진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산국 자재과
 - 도 : 농정국 농산과
 - 군 : 산업과, 읍면, 농촌지도소, 단위농협

7. '95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단위 : 톤, 천원)

	계		석 회		규 산	
	사업량	국 고	사업량	국 고	사업량	국 고
계	319,000	4,470,400	201,000	2,653,200	118,000	1,817,200
서울	213	2,534	181	2,041	32	493
부산	1,220	18,555	932	14,120	288	4,435
대구	359	4,370	279	3,138	80	1,232
인천	578	9,031	372	5,859	206	3,172
광주	3,681	49,608	2,956	38,443	725	11,165
대전	1,316	15,933	1,009	11,205	307	4,728
경기	28,901	368,927	12,213	111,932	16,688	256,995
강원	27,523	395,972	12,761	168,637	14,762	227,335
충북	18,872	259,567	14,862	197,813	4,010	61,754
충남	28,823	380,810	18,686	224,700	10,137	156,110
전북	33,504	423,453	16,774	165,811	16,730	257,642
전남	81,077	1,141,972	49,802	660,337	31,275	481,635
경북	43,985	520,937	32,590	345,454	11,395	175,483
경남	30,527	511,601	19,162	336,580	11,365	175,021
제주	18,421	367,130	18,421	367,130	-	-

<종합지침상의 사업계획 및 신청서의 별첨서식임>

【 별 첨 】: 사업계획서

1. 토양개량제 희망량 신청

(포 = 20kg)

경 작 자				시 면 용 적	10a 당 기 준 량	비 종 명	신 청 량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춘기	추기	계
			a	a	kg	석회고토분말 소 석 회 규 산	포	포	포

※ 10a당 시용기준량은 농촌지도소의 토양검정결과통보서를 참고하여 작성

2.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비 종 별	신 청 량	단 가	사 업 비			
			계	국 고 (25%)	지 방 비 (25%)	자 담 (50%)
석회고토분말 소 석 회 규 산	포	원/포				

※ 단가는 전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

어린모공동육묘장 설치지원 (자율)

1. 목 적

어린모 기계이앙 확대를 위한 공동육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노동력과 자재비 절감, 기계화에 의한 생산비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어린모공동육묘장 설치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임

2. 추진방향

- 가. 과학영농단지를 중심으로 기계이앙이 가능한 농지면적을 대상으로 하되 진흥지역에 우선 지원 설치
- 나. 기계이앙 확대보급으로 생산비절감을 통한 쌀경쟁력 제고
- 다. 공동육묘장의 운영은 마을대표, 쌀작목반장, 기계화영농단 대표, 영농회사대표, 영농회장, 쌀전업농 등 (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책임하에 운영

3. 사업신청자격

자연 마을단위로서 본답 10ha이상 기계이앙 가능지역, 쌀작목반, 기계화영농단, 위탁영농회사, 영농법인, 공동이용이 가능한 2농가이상의 쌀 전업농 등 집단영농을 할 수 있는 단체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가. 선정권자 : 시.도지사(시장.군수)
- 나. 사업비 지원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3,600 개소	백만원 10,080 (100%)	3,024 (30%)	3,024 (30%)	3,024 (30%)	1,080 (10%)

다. 개소당 시설규모 : 50평 (25평, 100평)

- 시설규모는 옥묘용 하우스 골재, 옥묘선반, 옥묘틀 등을 설치하여 1회 옥묘에 본답 10ha 이양이 가능한 규모
- 시설면적은 50평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25평, 100평 규모로 조정하여 지원 가능

라. 지원단가

개소당설치규모	재 원				
	지원단가	국 고	지 방 비	용 자	자 담
50 평	2,800 ^{천원} (100%)	840 (30)	840 (30)	840 (30)	280 (10)

* 용자조건 : 년리 5%,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5. 공동옥묘장 설치요령

- 기본설계도 : '94사업요령에 첨부된 설계도를 참고하여 지역실정을 감안 설치함

6. 준공 검사

- 시장·군수는 공동옥묘장 시설완료후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등을 확인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함

7. 공동옥묘장 관리 및 운영

- 가. 시·도지사는 옥묘장 시설을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함
- 나.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옥묘장 시설지역에 대하여 전담지도사를 지정하여 옥묘장 설치 및 옥묘기술등을 지도
- 다. 시·도지사는 동 시설물의 설치운영 및 옥묘관리와 이용등을 지도감독하고, 시장·군수는 벼 옥묘기간동안 관내 농촌지도소와 합동으로 기술지도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중점 감독

8. 사업효과

항 목	관 행 (중요기계)	어 린 모 기계이양	효 과
육 묘 일 수 (일)	35	8-10	25-27일 단축
자재절감 (천원/10a)	23	10.5	12.5천원 절약 (54%)
노력절감 (시간/10a)	106	61	45시간절감 (43%)
육묘비용 (천원/ha)	265	123	142천원 (54% 절감)

9. 사업기관안내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산국 농산과
- 도 : 농정국 농산과(특, 직할시 : 농정과)
- 군 : 산업과, 지도소

10. '95 어린이 공동육묘장 설치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사업비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용자금	자부담기타
전국계	3,600	10,080,000	3,024,000	3,024,000	3,024,000	1,008,000
광 주	107	299,600	89,880	89,880	89,880	29,960
대 전	7	19,600	5,880	5,880	5,880	1,960
경 기	214	599,200	179,760	179,760	179,760	59,920
강 원	198	554,400	166,320	166,320	166,320	55,440
충 북	243	680,400	204,120	204,120	204,120	68,040
충 남	700	1,960,000	588,000	588,000	588,000	196,000
전 북	540	1,512,000	453,600	453,600	453,600	151,200
전 남	970	2,716,000	814,800	814,800	814,800	271,600
경 북	320	896,000	268,800	268,800	268,800	89,600
경 남	301	842,800	252,840	252,840	252,840	84,280

공동육묘장 관리카드

1. 일반현황

일련 번호		지원 년도		대표 전화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학력		주민등록번호
공동이용자	명		경작규모		

2. 시설 설치 내역

시설 내역	투자 규모	비 고
○ 설치 면적 : 평	○ 계	
○ 육묘 상자수 : 개	- 국고 -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3. 년도별 이양면적

'94	'95	'96	'97	'98	'99
평					

4. 특기사항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지원 (자율)

1. 목 적

농촌 노동력부족에 의한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에 따른 지력저하를 방지하고 양질의 안전성있는 농산물 생산과 수질오염 원인인 축산분뇨의 재활용 및 축산농가의 정화처리 비용을 절감토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 단체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추진방향

- 년차별 계획에 의거 시·군단위 1개소 이상을 설치지원하되 농업진흥지역에 우선지원
- 생산된 퇴비는 생산비 수준으로 대농민 원가 공급
- 미곡종합처리장 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퇴비화로 사업추진효과 제고

3. 사업 신청자격

- 공동퇴비제조장은 농협단위조합, 기계화영농단, 위탁영농회사, 유기농업단체, 시설채소단지, 원예시설단지, 축산단지등 집단영농체제가 갖추어진 단체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선정권자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지원규모

구 분	재 원 별				
	계	국고 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총 사업비	백만원 48,200	14,460	14,460	14,460	4,820
개소당 단가	482.0	144.6	144.6	144.6	48.2
(지원비율)	(100%)	(30)	(30)	(30)	(10)

- 용 자 : 년리 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다. 생산규모 : 2,500톤 이상/년(300일 가동)

라. 시설규모

부 지	건 물				
	계	퇴비제조장	제품창고	원료창고	관리동
3,000 m ²	1,650	1,000	400	150	100

* 부지의 형태, 입지조건, 퇴비제조방식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는 시설규모(부지포함)를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전체 사업규모를 1/2로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이때는 사업자금도 1/2로 축소 조정하여 지원

마. 시설 및 기구

○ 분쇄기(원료분쇄기 또는 톱밥제조기등), 발효시설 (발효조, 송풍기등), 원료혼합 및 이송설비 (혼합기, 컨베이어벨트등), 동력설비(내외부) 및 제품포장시설등, 운반시설(포크레인, 페이로다, 지게차, 분뇨운반차등)등 필요시설 및 장비를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설치

5. 시설의 설치

- 관리동 : 퇴비제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0m²내외의 규모로 설치
- 창 고
 - 원료창고는 150m²내외, 제품창고는 400m²내외의 규모로 설치
 - 원료창고는 원료의 제조시스템에 따라 창고 또는 저장조 (축뇨경우)형태로 설치하고 제품창고는 제품의 안전보관이 가능하도록 견고한 시설로 설치
- 퇴비제조장
 - 퇴비제조장은 1,000m²내외의 규모로 설치하되 환기등 퇴비제조과정을 고려하여 철골조의 개방형건물로 설치(발효방식은 자연발효방식 이용)
- ※ 시설설치시 유의사항

발효시설과 건축공사를 분리시공할 경우 시공자 상호 공사한계가 불분명하여 하자 발생시 상호책임회피, 공사기간 지연등을 유발할 우려 있어 가급적 발효시설과 건축공사를 같이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

6. 퇴비제조 및 공급

가. 원료

- 소, 돼지 등 축산분뇨 및 왕겨, 톱밥, 볏짚 등
- 공장폐수, 생활하수 기타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원료

나. 퇴비품질관리제도

- 사업자는 비료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비료생산업허가를 받아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퇴비제조장을 1/2로 사업을 축소 조정한 사업자는 공동으로 원료를 구입하고 생산된 퇴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판매하지 않을 경우 비료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공동퇴비제조장 사업자는 생산된 퇴비를 관할 농촌지도소에 정기적(분기1회이상)으로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지도를 받아야 함
 - 지도항목 : 퇴비부속도, 주요성분함량, 유해성분 함유량 등
 - * 농촌진흥청에서 기 시달된 세부 품질관리기준 및 요령을 별도시달

다. 퇴비공급

- 공급대상
 - 공동퇴비제조장은 설치조합 및 단체의 공동이용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회원농가에 우선공급하되 생산능력에 여유가 있을 경우 비회원 농가에도 퇴비공급
- 공급방법
 - 퇴비공급시는 시제품을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농가에 공급 (비료공정규격 농림수산부고시 제93-29호)
 - 생산된 퇴비는 비포장상태인 산물형태로 농가 작업현장까지 직접공급을 원칙으로하고 소량구입농가의 편의등 필요한 경우 포장상태로 공급

7.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요령

- 기본설계도 : '94사업요령에 첨부된 설계도를 참고하여 지역실정을 감안 설치함

8.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공동퇴비제조장 시설 완료후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

9. 사업의 효과

- 양질의 안전성 있는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UR에 대비한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
- 공동으로 퇴비제조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생산비용절감 및 농촌인력 부족에 적극 대처하고 지력증진, 수질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기여

10. 사업기관안내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산국 농산과
- 도 : 농정국 농산과(특, 직할시 : 농정과)
- 군 : 산업과, 지도소

11. '95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사업비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용자금	자부담기타
전국계	100	48,200,000	14,460,000	14,460,000	14,460,000	4,820,000
광 주	2	964,000	289,200	289,200	289,200	96,400
경 기	10	4,820,000	1,446,000	1,446,000	1,446,000	482,000
강 원	9	4,338,000	1,301,400	1,301,400	1,301,400	433,800
충 북	4	1,928,000	578,400	578,400	578,400	192,800
충 남	11	5,302,000	1,590,600	1,590,600	1,590,600	530,200
전 북	15	7,230,000	2,169,000	2,169,000	2,169,000	723,000
전 남	16	7,712,000	2,313,600	2,313,600	2,313,600	771,200
경 북	13	8,676,000	2,602,800	2,602,800	2,602,800	867,600
경 남	15	7,230,000	2,169,000	2,169,000	2,169,000	723,000

6미산.예산-6

공동퇴비장 관리카드

1. 일반현황

일련 번호		지원 년도		대표 전화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명		시공업체	건물		발효시설

2. 시설 설치 내역

면 적	시설·기자재 구입내역	비 고
○ 대지면적 : ㎡	- 발효시설 : 페이로다 :	총사업비 : 천원
○ 건축면적 :	- 분쇄기 : 원료혼합기 :	국 고 :
- 발효시설 :	- 지게차 : 분뇨운반 :	지방비 :
- 원료창고 :	- 동력설비 :	용 자 :
- 제품창고 :		자부담 :
- 관리동 :		

3. 연도별 생산 및 판매실적

년 도 별	생 산 량	소 비 량		평 균 판 매 가 격
		자 가	판 매	
	톤			원/kg

4. 특기사항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자율)

1. 목 적

-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에 의거 규모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남게되는 중소농가에 품질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유기·자연·토종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임

2. 추진방향

- 유기·자연농업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유도
- 1.0ha 이하 규모의 중소농을 대상으로 10ha 이상의 단지를 조성·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
- 경영의 복합화로 경지이용도 제고와 농가소득증대
- 상수원 보호지역 및 중산간지를 중심으로 유기·자연농업 확대하여 수질·토양오염 방지
- 연차별 투자계획

	'95 ~ '98				계	'99 ~ 2004
	'95	'96	'97	'98		
사업비계	백만원 25,000	25,000	25,000	25,000	100,000	150,000
(투융자)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120,000)
-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지원						
사업량(개소)	100	100	100	100	400	600
사업비계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60,000
- 예냉시설, 유기·자연농업식 축사·온실 등						
사업량(개소)	100	100	100	100	400	600
사업비계	15,000	15,000	15,000	15,000	60,000	90,000

3. 사업자 신청자격

- 지원대상 작물
 - 벼를 기본작물로 하여 일반밭작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등 전작목

○ 지원대상 단지

- 유기.자연.토종농업 단지의 농가(양축농가 포함)로서 벼농사를 포함하여 밭작물 등 1.0ha 이하 농가 또는 벼농사 등 경종농업에 축산 포함시 경종농가 1.0ha 기준농가 소득 이하의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 (유기.자연농업 조직, 우수농산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복합경영 농가조직)
- * 현재 유기.자연농업을 성공하여 지역의 선도농가로서 역할을 하고있는 1ha이상 농가는 '95년 사업 대상농가로 선정 가능함.
- 가급적 상수원 보호구역 및 증산간지를 중심으로 단지조성 지원
- 유기.자연.토종농업 농가로 구성하여 유기.자연.토종농업 지역조직이 결성된 단지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선정권자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지원규모

사업량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부담
100 개소	25,000 (100%)	12,500 (50%)	5,000 (20%)	2,500 (10%)	5,000 (20%)

* 용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다. 개소당 지원내역(단지당)

- 공동시설 : 토착미생물생산시설(100), 예냉시설(30), 냉장차(20백만원)등
- 개별지원 : 유기.자연농업식 축사(60), 유기.자연농업식 비닐하우스(40백만원)등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단지당 총사업비 안에서 사업의 규모 및 사업내용의 조정이 가능

5. 사업계획 수립

- 상수원보호구역 및 중산간지의 중소농을 중심으로 10ha규모의 유기·자연농업을 단지를 대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 계획수립

6.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희망 조직의 대표는 농촌지도소, 농산물검사소, 농협, 유기·자연농업협회 등 환경보전형 농업협의회 산하 조직인 각 단체의 지도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상기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군은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가급적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유기·자연농업 선도농가 참여토록 조치)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공 통

- 사업 수행능력, 유기·자연·토종농업 지도자가 있는 지역

1 순위

- 상수원 보호구역, 중산간지 등으로 유기·자연·토종농업 선도농가가 있고 단지화가 된 영농단체 또는 농협의 유기농산물 품질인증 영농단체

2 순위

- 농협이 주도하여 유기·자연농업(우수농산물 작목반)을 하고있는 작목반이 있고 자체 직거래 사업이 되고 있는 단체
- 유기·자연농업 선도농가가 있고 단지화가 된 영농단체로서 유기·자연농업협회 등 환경보전형 농업협의회 산하단체의 추천을 받은 단지중 협업영농체제가 갖추어진 단체

3 순위

- 유기·자연·토종농업 교육을 받고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영농단체

7. 품질관리

- 사업자는 농산물검사소, 농촌지도소, 환경보전형 농업협의회 산하조직인 유기·자연농업협회등의 지도를 받아 제품의 품질관리를 함
- 생산된 토착미생물은 자가소비를 원칙으로 하고 판매시는 비료관리법 제11조에 의한 판매 허가를 받아서 판매
- 단지별로 생산된 농산물을 전량 수집하여 선별, 소포장 후 농산물 검사소 및 농협, 유기·자연농업협회 등의 품질인증을 받아 출하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

8. 설치요령

- 설 계 도 : 지역실정을 고려한 자체 설계도 작성 시공

9. 준공검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시설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함.

10. 사업효과

1ha이하의 영세한 중소농에 유기·자연·토종 농산물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대외경쟁력확보와 농가소득증대 기여

11. 사업기관안내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산국 농산과
- 도 : 농정국 농산과(특, 직할시 : 농정과)
- 군 : 산업과, 지도소

12. '95 중소농 고품질농업 생산지원 시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사업비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전국계	100	25,000,000	12,500,000	5,000,000	2,500,000	5,000,000
경 기	14	3,500,000	1,750,000	700,000	350,000	700,000
강 원	15	3,750,000	1,875,000	750,000	375,000	750,000
충 북	9	2,250,000	1,125,000	450,000	225,000	450,000
충 남	10	2,500,000	1,250,000	500,000	250,000	500,000
전 북	8	2,000,000	1,000,000	400,000	200,000	400,000
전 남	17	4,250,000	2,125,000	850,000	425,000	850,000
경 북	16	4,000,000	2,000,000	800,000	400,000	800,000
경 남	9	2,250,000	1,125,000	450,000	225,000	450,000
제 주	2	500,000	250,000	100,000	50,000	100,000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1. 일반현황

일련 번호		지원 년도		대표 전화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학력		주민등록번호
단지명		농가수		면적	

2. 시설 설치 내역

면적	시설·기자재 구입내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착미생물생산시설 ○ 예냉시설 : ○ 축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사 : - 돈사 : - 우사 : ○ 비닐하우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차 : · 펄이로다 : · 분쇄기 : · 원료혼합기 : · 지게차 : · 동력설비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 천원 국고 :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3. 연도별 생산 및 판매실적

년도별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평균 판매가격
		톤	톤	원/kg

4. 특기사항

객 토 사 업 (자 율)

1. 목 적

- 모래는, 습한논등 생산력이 떨어지는 농경지와 토양오염지역에 객토를 실시함으로써 지력을 증진시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객토사업자금을 농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임.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지속적인 객토사업 추진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임으로서 토양환경의 유지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나.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4	'95	'96	'97	'98
사업면적(천ha)	22	19	25	25	25
용 자 액	20,000	22,000	35,950	35,950	35,950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대상지 및 대상자

- 집단객토 : 생산력이 낮은 농경지중 10년이내 객토 미실시 지역
- 일반객토 : 병해충및 재해상습지역등 객토를 희망하는 농가
- 합배미식 객토 : 높은지역의 토양개량및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합배미식 객토희망농가
- 발객토 : 채소.원예연작지역, 모래발증 객토를 희망하는 농가.

나.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다. '95사업비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면적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19,214 ^{ha}	22,000			22,000	

라. 지원조건

- 재 원 : 영농자금에서 용자 대출
- 용자조건 : 대출기간 1년, 년리 5%
- 지원기준
 - 일반, 집단객토 : 1,200천원/ha
 - 합배미식 객토 : 2,200천원/ha

4. 객토사업추진방법

가. 신청방법

- 집단객토 : 집단지역 농민공동신청(추진위원회구성)
 - 행정 및 지도기관에서 대상지에 대한 사전 합동조사 실시
- 일반객토, 발객토, 합배미식객토 : 희망농가 개별 신청
 - 지도기관에서 토양검정의뢰 농가대상으로 검정 실시
- 별첨 사업계획서 서식에 따라 읍.면에 신청

나. 객토원 선정

- 농촌지도소장은 객토대상지에 가까운 우량객토원을 선정하여 시장, 군수에 통보
- 시장, 군수는 농촌지도소장이 통보한 지역을 객토원으로 고지

다. 객토사업추진

- 객토사업실시기간 : 1/4분기, 4/4분기 (추수후부터 해빙기전까지 완료)
- 시장, 군수는 객토지역 및 객토원의 질과 양을 수시확인(불량객토원 사용방지)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추진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산국 자재과
 - 도 : 농정국 농산과
 - 군 : 산업과, 읍.면, 농촌지도소, 단위농협

6. '95객토면적및 자금용자계획

(단위 : 백만원)

	면 적	용 자 액
	ha	
계	19,214	22,000
광 주	18	20
경 기	2,022	2,463
강 원	4,422	4,257
충 북	1,008	1,148
충 남	1,249	1,626
전 북	2,678	3,559
전 남	2,121	2,593
경 북	4,865	5,301
경 남	831	1,033

<종합지침상의 사업계획 및 신청서의 별첨서식임>

【 별 첨 】: 사업계획서

1. 집단객토 대상지역

객토종류	대상지명	농가수	필지수	객토대상 면 적	사업시기 및 사업비(용자액)	
					1/4 분기	4/4 분기
		호		ha	백만원	

※대상지명 :○○ 읍.면 ○○리동 및 들판이름

2. 농가희망객토

객토종류	농 가 명	지 번	면 적	객토희망 면 적	사업시기 및 사업비(용자액)	
					1/4 분기	4/4분기
			ha	ha	백만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자율)

1. 목 적

농약중독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소형 동력방제기와 방제복을 구입하는 농민에게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임.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1) 재래식 수동 분무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농약중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하기 편리한 소형 동력방제기를 지원 공급하여 농약을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방제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처
- (2) 농약살포시 피부접촉을 통한 중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제복을 공급하여 농민의 건강보호

나. 장기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4	'95	'96	'97	'98
사업량(대/천착)	6,000/110	6,000/100	10,000/130	12,000/130	12,000/133
총 사업비	4,418	4,100	6,870	7,912	8,230
- 국 고	1,567	1,440	2,347	2,660	2,758
- 지방비	1,568	1,440	2,347	2,660	2,758
- 자부담	1,283	1,220	2,176	2,592	2,714

※ 연차별 지원계획중 '96년이후의 사업량, 금액등은 변동될 수 있음

3. 공급 대상자선정

가. 공급대상자 선정은 지역실정을 감안 사업목적에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책임하에 선정

나. 공급 신청자격

(1) 소형 동력방제기

- 노약자 또는 부녀자 농가
-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산간 농가로써 경운기 또는 동력 방제기 사용이 어려운 농가
- 경운기 또는 동력방제기가 없는 영세농가로서 재래식 수동 분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농가
- 기타 농약안전 사용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방제 취약농가

(2) 방제복

- 최근 4년간 공급받지 않은 농가
- 노약자 또는 부녀자로서 영세한 농가
- 기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농약안전 사용 취약농가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시. 도지사(시장. 군수)

나. 사업내용

(1) '95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담
계		4,100	1,440	1,440	1,220
소형방제기	6,004대	2,000	600	600	800
방제복	100,000착	2,100	840	840	420

(2) 공급규격

○ 소형 동력방제기

- 엔진과 분무기가 부착된 동력분무기로서 총무게가 20kg 내외로 이동이 편리한것
- 국산으로써 사후봉사 및 부품공급이 원활한것
- 국정검사에 합격한것

○ 방제복

- 농림수산부 공고 제87-7호 규격에 적합한 제품

(3) 사업실시 방법

- 시장. 군수는 신청자격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엄선하고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농가에 공급
- 시달된 단가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는 계약체결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의 예정가격 산정등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업체의 참가유도를 통해 경쟁에 의한 적정가격으로 구매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시장. 군수는 구매가 이루어지면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조작기술 및 정비점검 능력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민교육(설명회) 실시
- 구매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지역실정에 따라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장. 군수가 결정시행

(4) 지원기준

- 재 원 : 일반회계
- 소형 동력방제기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방제복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5) 사업 실시기간

- 시장. 군수는 농약중독 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을 가장 많이 살포하는 시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여야 함

5.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 안내기관

- (1) 중앙 : 농림수산부 농산국 식물방역과
- (2) 시도 : 농정국 농산과
- (3) 시군 : 산 업 과

6. 시·도별 지원 규모

가. 총괄(소형동력방제기, 방제복)

시·도	사업량	예산 단가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계			4,099,500	1,439,850	1,439,850	1,219,800
서울			-	-	-	-
부산			6,300	2,520	2,520	1,260
대구			2,100	840	840	420
인천			6,300	2,520	2,520	1,260
광주			4,200	1,680	1,680	840
대전			-	-	-	-
경기			299,730	106,089	106,089	87,552
강원			288,540	106,092	106,092	76,356
충북			267,300	90,270	90,270	86,760
충남			705,120	244,086	244,086	216,948
전북			556,260	191,868	191,868	172,524
전남			635,220	209,466	209,466	216,288
경북			604,800	218,610	218,610	167,580
경남			503,130	177,609	177,609	147,912
제주			220,500	88,200	88,200	44,100

(1) 소형 동력방제기

시도	사업량	예산 단가	사 업 비			
			계	국 고(30%)	지방비(30%)	자 담(40%)
계	대 6,004	원 333,000	1,999,500	599,850	599,850	799,800
서울	-		-	-	-	-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		-	-	-	-
대전	-		-	-	-	-
경기	414		138,030	41,409	41,409	55,212
강원	280		93,240	27,972	27,972	37,296
충북	500		166,500	49,950	49,950	66,600
충남	1,140		379,620	113,886	113,886	151,848
전북	920		306,360	91,908	91,908	122,544
전남	1,340		446,220	133,866	133,866	178,488
경북	700		233,100	69,930	69,930	93,240
경남	710		236,430	70,929	70,929	94,572
제주	-		-	-	-	-

(2) 방 제 복

시 도	사 업 량	예 산 단 가	사 업 비			
			합 계	국 고(30%)	지방비(30%)	자부담(40%)
합 계	착 100,000	원 21,000	2,100,000	840,000	840,000	420,000
서 울	-		-	-	-	-
부 산	300		6,300	2,520	2,520	1,260
대 구	100		2,100	840	840	420
인 천	300		6,300	2,520	2,520	1,260
광 주	200		4,200	1,680	1,680	840
대 전	-		-	-	-	-
경 기	7,700		161,700	64,680	64,680	32,340
강 원	9,300		195,300	78,120	78,120	39,060
충 북	4,800		100,800	40,320	40,320	20,160
충 남	15,500		325,500	130,200	130,200	65,100
전 북	11,900		249,900	99,960	99,960	49,980
전 남	9,000		189,000	75,600	75,600	37,800
경 북	17,700		371,700	148,680	148,680	74,340
경 남	12,700		266,700	106,680	106,680	53,340
제 주	10,500		220,500	88,200	88,200	44,100

감 자원종 망실재배(자율)

1. 목 적

- 감자원종장에서 직접 망실재배를 할수없는 원종재배면적에 대하여 보급종 채종농가가 감자망실을 설치할수 있도록 정부가 용자로 지원하는 것임

2. 추진방향

- 가. 현재 감자원종장 직영포장에서 일부 노지재배되고 있는 원종생산방법을 점차적으로 전면적 망실재배로 전환
- 나. 예산, 인력 포장여건등을 감안 원종장 직영포장중 망실설치가 가능한 면적에 대하여는 감자원종장이 점차적으로 망실재배 추진
- 다. 원종장에서 직접 망실재배할 수 없는 원종재배면적에 대하여는 보급종 채종농가가 망실설치 및 원종생산하여 차년도 보급종 생산용 종서로 사용

3. 사업신청자격

- 대관령지구 감자보급종 채종농가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가. 사업시행주체 : 강원도 감자원종장
-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감자원종망실재배	ha 10 (300 동)	백만원 360 (100%)	-	-	252 (70)	108 (30)

다. 분기별 자원계획

(단위: 백만원)

분기별	주요사업 추진계획	지원계획		
		보조	용자	계
1 / 4	감자 원종 망실재배	-	252	252
2 / 4				
3 / 4				
4 / 4				
계		-	252	252

라.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0% 용자지원
- 용자조건 : 년이자율 5%,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마. 자금용도 : 우량원종 씨감자 생산을 위한 망실설치용 시설자금

바. 장기지원계획

- '96(10ha), '97(10), '98(10), '99(10), '2000(10)

5.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

가. 사업계획 수립

- 강원도(감자원종장)의 사업계획안 보고를 받아 농림수산부장관이 감자 종자 생산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계획 수립

나.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할 주요사항

- 익년도 감자보급종 생산계획
- 강원도 감자원종장의 망실재배 능력
- 보급종 채종농가의 채종능력등
- 보급종 채종농가의 기존망실 설치 현황
- 원종망실재배의 집단화 유도

다. 사업신청

- 신청기관 : 강원도 감자원종장
- 신청방법 : 대관령지역 보급종 채종능가가 별지 양식에 의거 신청

6.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가. 선정권자 : 강원도 감자원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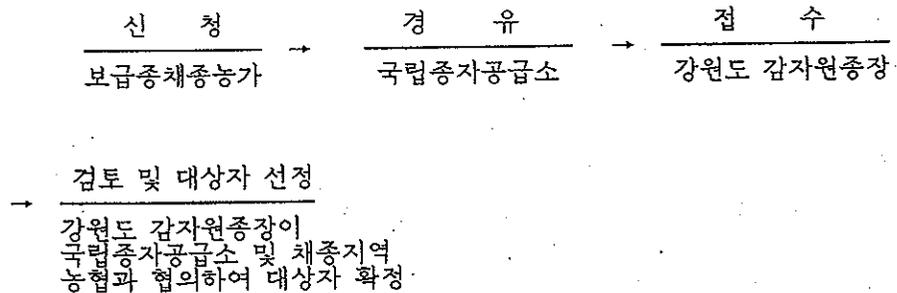
나. 선정기준 : 대관령지역 보급종 채종능가중 희망농가로서 감자원종장이 제시하는 계약조건에 응하고 채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가

다. 사업계획 심사 : 강원도지사

라. 대상자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신청자의 씨감자 채종능력
- 익년도 보급종 채종계획, 기존망실설치현황 및 망실설치능력
- 원종망실재배의 집단화

마. 사업신청후 대상자 확정까지 절차



7.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방침

농 립 수 산 부

-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사업 총괄 지도감독

강 원 도

- 사업계획 수립 검토 및 조정
- 사업시행
- 사업추진 지도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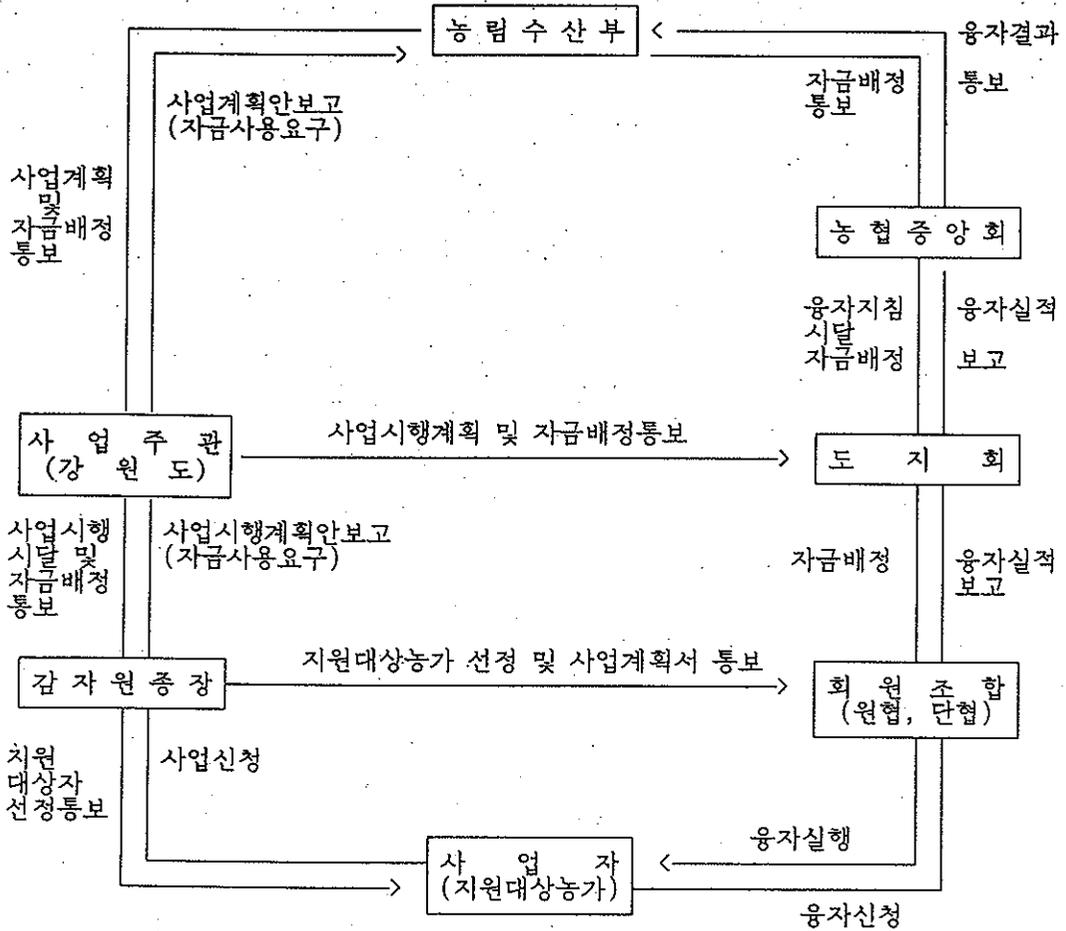
강원도 감자원총장

- 세부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농가선정 및 계약
- 세부사업추진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용자 취급기관에 지원 대상자, 지원액 및 사업계획서등 통보

농 협

- 사업자금 용자지원
- 용자금의 사후관리

나. 사업추진 체계도



8. 행정

- 원종 망실설치능가 선정 및 농자배정 요청 보고
 - 감자원총 설치능가 선정과 동시에 보고서식 1호에 의거 계통보고
- 원종망실 설치 완료보고
 - 원종 망실설치 완료와 동시에 보고서식 2에 의거 계통보고

9. 시설물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강원도 감자원총장

- 사후관리 책임자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휴경기간중 고냉지 화훼, 채소류 재배등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익년도 감자원총망실 재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강원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된때부터 3년간 매년도별로 지원사업 운용상황을 평가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문의기관

○ 중 양 : 농림수산부 농산국 자재과

○ 도 : 강원도 농산과

○ 사업소 : 강원도 감자원총장

11. 참고사항

○ '90년도이전까지는 감자원종을 강원도 감자원총장에서 노지재배로 생산하였으나 대관령지역의 환경악화로 바이러스 이병율이 증가함에 따라 '91년부터 점차적으로 감자원종재배를 망실재배로 전환하고 있음.

○ 강원도 감자원총장의 포장조건 및 인력등 제반여건이 일시에 전면적을 망실재배로 추진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 강원도 대관령지역 감자 보급종 채종농가중에서 희망농가에 한하여 망실설치자금의 70%를 융자지원으로 원종을 자체 생산하여 익년도 보급종 생산에 사용하고 있음.

12. '95 원종 망실설치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 업 비 내 역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 담
계	300 동	360 백만원	-	-	252	108
서울	-	-	-	-	-	-
부산	-	-	-	-	-	-
대구	-	-	-	-	-	-
인천	-	-	-	-	-	-
광주	-	-	-	-	-	-
대전	-	-	-	-	-	-
경기	-	-	-	-	-	-
강원	300	360	-	-	252	108
충북	-	-	-	-	-	-
충남	-	-	-	-	-	-
전북	-	-	-	-	-	-
전남	-	-	-	-	-	-
경북	-	-	-	-	-	-
경남	-	-	-	-	-	-
제주	-	-	-	-	-	-

< 서 식 >

(보고서식1)

○ 원종망실능가 선정보고

구 분	단 지 명	농 가 수	면 적	동 수	비 고
		호	ha	동	-100평형 동수로 기재 -기타 특기사항 기재

- 주 1) 망실 설치대상 포장 약도 별첨
- 2) 구분란에는 농가 설치분과 원종장 직영 설치분으로 구분 기재
- 3) 농가별 명세서 별첨

○ 용자금 배정 요청

구 분	계 획	실 적	용자금 배정 요청	
			금 회	누 계
	동	동		

(보고서식2)

○ 망실설치 추진상황 보고

	단 지 명	망 실 설 치 상 황						용 자 상 황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농가수	면적	동수	농가수	면적	동수	농가수	금액	농가수	금액
합	계										
농	소계										
	단지별										
원	소계										
	단지별										

- 농협의 용자 확인서 첨부
- 완료 보고시는 농가별 명세서 별첨
- 기자재 구입상황등 기타사항은 별도 첨부 보고

생산비 절감 및 농산시책 종합시상(공공계획)

1. 목 적

생산비 절감과 재배면적 확보에 공헌한 생산능가·단지 및 기관에 시상을 하여 능가간·지역간에 자발적인 경쟁심을 고취시켜, 획기적인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 및 재배면적 확보로 쌀수급 안정에 기여코자 함.

2. 추진방향

- 15개 품목 시상을 식량수급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식량 생산분야에 집중 시상
-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벼재배면적 확보 등을 평가하여 우수능가 및 단지에 시상
- 경쟁력 제고대책, 재배면적 확보등 시책추진 상황을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에 시상

3. 심사항목

- 능가·단지시상
 - 생산비절감·품질향상 및 단위수량 증대, 재배면적 확보, 농산시책추진 등 평가
- 기관시상
 - 경지정리·규모확대·기계화·생력재배·수확후 관리등 생산비 절감, 단위수량증대, 휴경농지면적 감소, 농지전용억제, 논에 타작물 재배면적 감소 등 벼재배면적 확보 등 쌀 생산시책 추진상황을 종합 평가

4. 시상금

시상항목	시상점수	시 상 금	시 상 내 역
계	19 점	180백만원	
능가시상	8	55	전국최우수 15백만원 (1점), 전국우수 10(1), 도우수 30 (6점×5백만원)
단지시상	8	65	전국최우수 20 (1), 전국우수 15(1), 도우수 30 (6점×5백만원)
기관시상	3	60	최우수도 30 (1), 우수도 20(1), 장려도 10 (1)

5. 심사요령 (안)

농가 및 단지시상

○ 심사대상 추천

- 각 시도지사가 심사대상 농가와 단지를 선정하여 농림수산부에 추천
- 생산비절감 심사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농가·단지중에서 농촌진흥청(진흥원)이 생산비절감 심사 실시

○ 심사기관

생 산 비 절 감 심 사		품 질 향 상 등 평 가
평 가 분 석	생 산 비 조 사	
농촌 진흥청	해당도 농촌진흥원	농 립 수 산 부

- 심사시간 : 생산비조사(파종~수확·건조), 품질향상 등 평가(수확기)

○ 심사배점

계	생 산 비 절 감 심 사		품 질 향 상 등 평 가
	생 산 비 (원/kg)	노 동 시 간 (시간/10a)	
100 점	40	30	30

○ 심사방법

- 생산비조사 : 농촌진흥청(진흥원)이 심사표에 의거 조사하여 농림수산부에 보고
- 품질향상 등 평가 : 품종선택, 재배기술개선, 수확후 관리상황 등 평가

○ 시상대상 확정

- 시도지사가 추천한 심사대상 농가 및 단지중에서 생산비 절감심사, 품질향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전국 최우수, 우수, 도우수 농가(단지)를 시상대상자로 확정하여 소정의 훈격으로 시상

기관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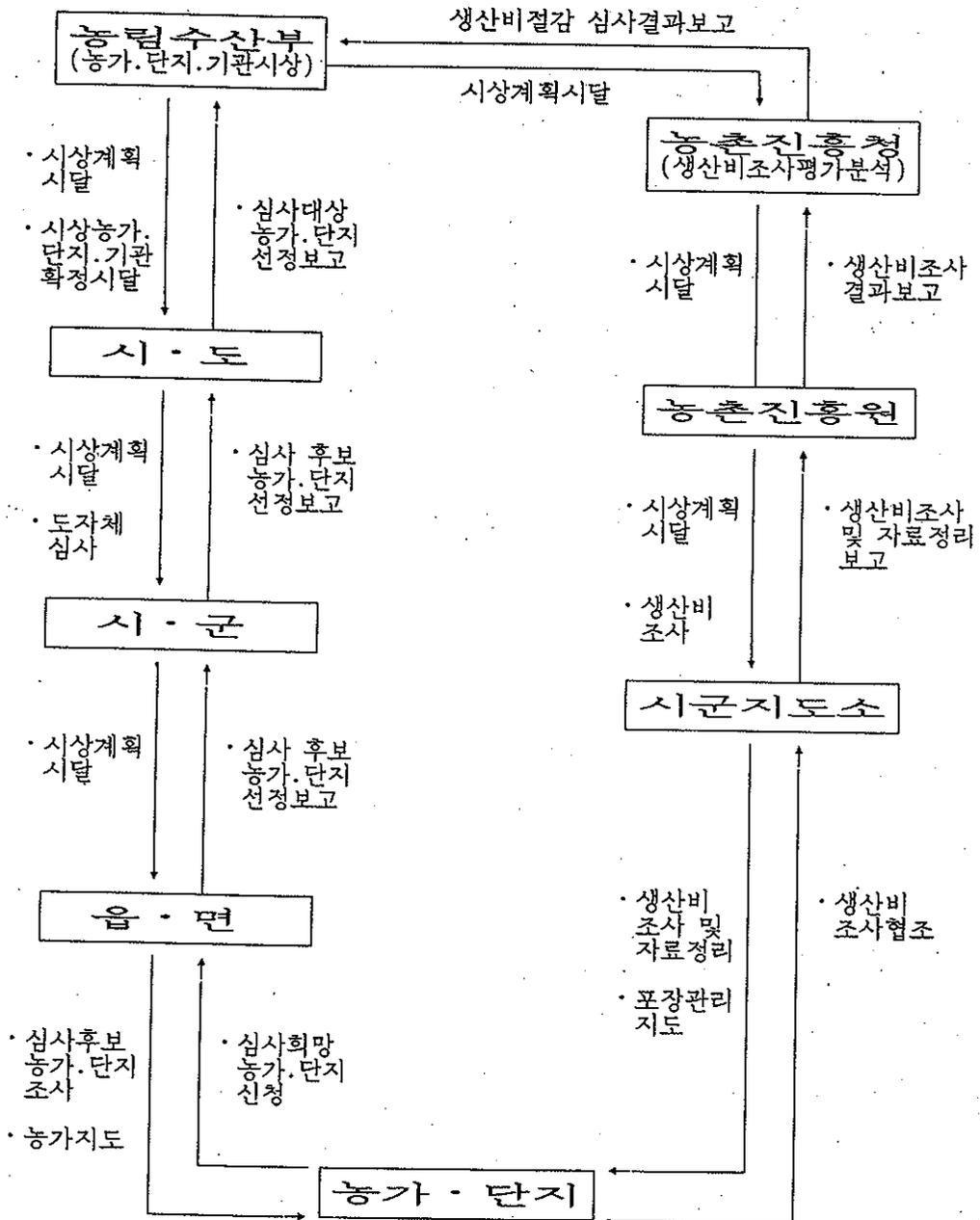
○ 심사기관 및 배점

계	벼 재배면적 확보	단위수량 증대	생산시책
100 점	40	30	30
심사기관	농림수산부		

* 생산시책은 경지정리, 전업농육성, 기계화사업, 직파등 생력기술보급, 공동퇴비 제조장, 중소농고품질 농업지원등 환경보전농업, 고도기술벼농사시범사업 등을 평가

※ 세부심사요령은 별도 시달

6. 쌀생산비 절감 종합시상 추진체계도



7. '95 생산비 절감 및 농산시책추진 종합시상 도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사업비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전국계	19	180,000	180,000	-	-	-
경 기	-	-	-	-	-	-
강 원	-	-	-	-	-	-
충 북	-	-	-	-	-	-
충 남	-	-	-	-	-	-
전 북	-	-	-	-	-	-
전 남	-	-	-	-	-	-
경 북	-	-	-	-	-	-
경 남	-	-	-	-	-	-
제 추	-	-	-	-	-	-

(사)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 지원(공공계획)

1. 목적

- (사)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로 하여금 밀의 생산에서부터 수매,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무공해 건강식품을 공급하고 나아가서는 농가소득증대와 겨울철 환경보전 기능을 수행하고자함.

2. 추진방향

- 정부에서는 밀생산 권장 및 수매를 지양하고 민간단체인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서 전담 추진토록 홍보 교육비 등 국고지원

3. 사업신청자격

- (사)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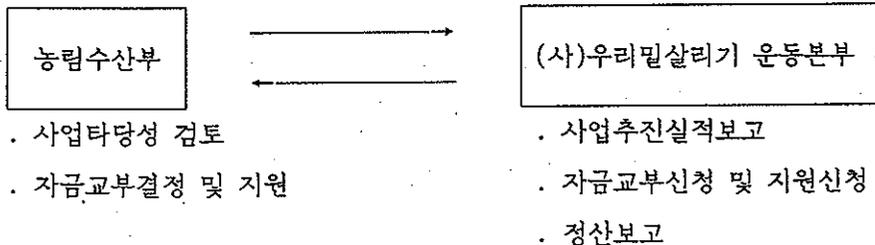
가. 사업시행주체 : (사)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사업내용 : (사)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에 교육홍보비 등 지원
- 지원규모 : 100백만원

다. 지원조건 : 국고 100%지원

라. 사업추진체계



5. 시·도별 자금배정 내역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용 자	자 담
전 국		100 백만원	100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공 동 · 항 공 방 제 (공공계획)

1. 목 적

- 가. 개별농가는 돌발 병해충이 만연되거나, 외래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피해 및 확산 방지가 어렵기 때문에 부락별 공동방제 또는 대단위 평야지 항공방제를 추진하여 노동력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 함
- 나. 농약을 덜쓰는 경제적인 병해충 방제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안정적 식량 공급을 도모함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1) 돌발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시군별 병해충 방제 협의회에서 발생(예상)동향, 이병성품종 재배상황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결정, 부락 및 들녘 단위로 공동방제 실시
- (2) 대상지중에서 대단위 평야지는 항공방제 추진으로 방제효과 제고

나. 장기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4	'95	'96	'97	'98
사 업 량(ha)	210	210	810	810	868
총 사 업 비	5,200	5,560	25,020	25,020	26,770
- 국 고	2,600	2,780	12,510	12,510	13,385
- 지 방 비	2,600	2,780	12,510	12,510	13,385

※ 연차별 지원계획중 '96년이후의 사업량, 금액등은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지역(대상자) 선정

가. 대상지역(대상자) 선정은 지역실정을 감안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시장·군수 책임하에 선정

나. 우선순위

- (1) 돌발, 외래병해충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어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 (2) 농업진흥지역
- (3)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지역
- (4) 대단위 평야지 지역

4. 사업내용 및 자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시, 도지사(시장, 군수)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95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담
계	210천ha	5,560	2,780	2,780	-
공동방제	170	4,760	2,380	2,380	-
항공방제	40	800	400	400	-

(2) 사업실시 방법

○ 공동방제

- 지역별. 병해충 예찰결과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으로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에 농약대를 지원,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농약을 덜 쓰고도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제적 방제실시
- 농촌 노동력의 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방제소홀에 대비하여 들녘 중심으로 위탁영농회사 및 협동에 의한 공동방제단을 조직하여 방제를 추진함으로써 병해충 피해 최소화
- 벼물바구미를 비롯한 외래 병해충의 발생 및 발생 예상지역에 공동방제 실시로 피해방지 및 확산억제
- 지원 대상지역은 정밀 예찰결과에 따라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지역 및 농업진흥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
- 약종은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결정하며 소요농약을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집행

○ 항공방제

- 병해충이 발생, 급속한 확산으로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대단위 지역에 항공기 용역대를 지원하여 적기에 동시 방제실시
- 방제대상 지역은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을 우선하여 선정
- 방제일정 수립은 입지조건, 농가의 의견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고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함
- 항공기사정, 강우등 일기불순으로 적기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상공동방제로 전환 가능

(3) 지원기준 및 내용

- 재 원 : 농어촌 발전 특별회계
- 공동방제(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 국고 50%, 지방비 50%
- 항공방제(항공기 용역대 지원) : 국고 50%, 지방비 50%

(4) 사업실시 기간 : 사업년도 5. 1 ~ 9. 30

(5) 농약안전 사용지도 강화

- 공동·항공방제시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종선택과 대농민 지도에 철저를 기함
- 특히 항공방제시 약제 살포로 인하여 상수원, 양식(어)장등을 오염 시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관계기관 및 해당농가와 긴밀한 협조하에 신중히 추진하여 환경오염 사전 방지
- 항공방제 실시전 항공방제 실시계획(일시, 지역등)을 인근 주민에게 사전 고지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5.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 안내기관

- (1) 중앙 : 농림수산부 농산국 식물방역과
- (2) 시도 : 농정국 농산과
- (3) 시군 : 산업과

6. 시도별 지원 규모

가. 총 괄(공동. 항공방제)

시도	사업량	예산 단가	사업비		
			합계	국고(50%)	지방비(50%)
합계	210,000 ^{ha}		5,560,0000	2,780,0000	2,780,000
서울	-		-	-	-
부산	4,300		91,600	45,800	45,800
대구	300		8,400	4,200	4,200
인천	500		14,000	7,000	7,000
광주	1,500		42,000	21,000	21,000
대전	500		14,000	7,000	7,000
경기	38,800		968,000	484,000	484,000
강원	10,300		268,400	134,200	134,200
충북	10,800		295,200	147,600	147,600
충남	30,300		817,200	408,600	408,600
전북	26,400		730,400	365,200	365,200
전남	33,200		904,800	452,400	452,400
경북	28,800		762,400	381,200	381,200
경남	24,100		638,000	319,000	319,000
제주	200		5,600	2,800	2,800

(1) 공동방제

시도	사업량	예산 단가	사업비		
			합계	국고 (50%)	지방비(50%)
합계	170,000 ha	28,000 원	4,760,0000	2,380,0000	2,380,000
서울	-		-	-	-
부산	700		19,600	9,800	9,800
대구	300		8,400	4,200	4,200
인천	500		14,000	7,000	7,000
광주	1,500		42,000	21,000	21,000
대전	500		14,000	7,000	7,000
경기	24,000		672,000	336,000	336,000
강원	7,800		218,400	109,200	109,200
충북	9,900		277,200	138,600	138,600
충남	26,400		739,200	369,600	369,600
전북	25,300		708,400	354,200	354,200
전남	30,100		842,800	421,400	421,400
경북	23,300		652,400	326,200	326,200
경남	19,500		546,000	273,000	273,000
제주	200		5,600	2,800	2,800

(2) 항공방제

시도	사업량	예산 단가	사업비		
			합계	국고(50%)	지방비(50%)
합계	40,000 ^{ha}	20,000 ^원	800,000	400,000	400,000
서울	-		-	-	-
부산	3,600		72,000	36,000	36,000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경기	14,800		296,000	148,000	148,000
강원	2,500		50,000	25,000	25,000
충북	900		18,000	9,000	9,000
충남	3,900		78,000	39,000	39,000
전북	1,100		22,000	11,000	11,000
전남	3,100		62,000	31,000	31,000
경북	5,500		110,000	55,000	55,000
경남	4,600		92,000	46,000	46,000
제주	-		-	-	-

※ 단가 20,000원중 5% 범위내에서 경운기 동원, 농약물타기등 부대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음

유채차액보상 (공공계획)

1. 목 적

- 유채수입개방 보완대책으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함으로써 유채 재배
능가 보호

2. 추진 방향

- 유채는 국내가가 수입가 보다 3 - 4배 비싸고 품질이 떨어져 가공업체가 인수를 기피
하고 있어 유채를 기름 생산용으로 생산을 장려하기는 곤란
- 제주도에서 유채를 관광용이나 밀원식물로 재배하는 경향이 있고 기름을 잔후 나온
유채 깻묵은 감귤밭 비료로 사용할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제주도에서 수매하여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국고에 의한 차액보상은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97년까지만 실시하고 이후에는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

<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

	'95 계획 (A)	'96~'97(B)			합 계 (A + B)
		'96	'97	소 계	
○ 사업량	2,200톤	1,700	1,400	3,100	5,300
○ 국고지원	1,421백만원	1,200	1,000	2,200	3,621

※사업량 및 국고지원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내용 및 지원절차

가. 사업내용

- 정부에서 농협을 통하여 농가생산유채를 수매하여 가공업체에 판매
- 수매원가와 판매가격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보상

나.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부

- 수매 및 처분업무는 제주도지사가 수행
 - 차액보상액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
- 제주도 이외 지역은 해당도지사가 제주도지사와 협의
- 수매 및 판매업무 대행 : 농협중앙회

다. 지원기준 : 국고 100%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추진 주관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산국 잠업특작과
 - 도 : 제주도 감귤특작국 특작과

5. '95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도 별	사업량 (톤)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응 자	자 담
계	2,200	1,421,200	1,421,200	-	-	-
경 기	-	-	-	-	-	-
강 원	-	-	-	-	-	-
충 북	-	-	-	-	-	-
충 남	-	-	-	-	-	-
전 북	-	-	-	-	-	-
전 남	-	-	-	-	-	-
경 북	-	-	-	-	-	-
경 남	-	-	-	-	-	-
제 주	-	-	-	-	-	-

잠업종합단지 조성(자율)

1. 목 적

- 양잠농가 또는 양잠생산자단체가 양잠의 생산성향상 및 생산비절감을 통하여 경쟁력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정부가 양잠농가등의 생력기계획 및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임.

2. 추진 방향

- 잠업종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표준화하여 메뉴방식으로 지원
- 생산자 조직, 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하게 함으로써 지원 효과 제고

<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

	'95 계획 (A)	'96~'98(B)				합 계 (A + B)
		'96	'97	'98	소 계	
○ 사업량	25개소	33	34	87	154	179
(사업단가)	(71백만원)	(71)	(71)	(71)	(71)	(71)
○ 국고지원	1,065백만원	1,405	1,448	3,707	6,560	7,625

※ 지원액은 국고보조 및 융자이며, 지원액, 사업량, 사업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신청 자격

가. 신청자격

- 양잠농가 또는 양잠생산자 조직

나. 우선순위

(1) 지원대상지역

- 뽕밭이 대규모로 집단화된 주산지 마을
- 기타 양잠지역

(2) 지원대상자

- 연간 누에고치 생산량이 1톤을 초과하는 대규모 양잠농가
- 양잠생산자 조직
- 기타 양잠농가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지원규모 및 사업내용

(1) 사업비 내역

사업량	단가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25 개소	백만원 71	백만원 1,775	355	355	710	355

※ 단가는 기존시설등을 감안하여 개소당 표준사업비의 70%반영

(2)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애누에공동잠실, 초미립자동소독기, 뽕수확기, 자동수건기, 자동온풍기, 동력예취기, 일반잠실, 열풍기, 개량잠구

(3) 개소당 표준사업내역 (기준면적.: 뽕밭 10ha)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단 위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계			천원	102.0
○ 공동 시설 및 기계	-	-	-	18.0
- 애누에 공동잡실	30평/동	2	7,500	15.0
- 초미립자동소독기	대	2	1,500	3.0
○ 개별 시설 및 기계	-	-	-	84.0
- 뽕 수 확 기	대	1	3,500	3.5
- 자동 수건기	대	6	900	5.4
- 자동 온풍기	대	2	1,500	3.0
- 동력 예취기	대	12	350	4.2
- 열 풍 기	대	24	110	2.6
- 일 반 잡 실	20평/동	48	1,100	52.8
- 개 량 잡 구	조	192	65	12.5

(4) 지원방법

- 개소당 사업대상 범위는 시·군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양잠규모가 적어 시·군을 사업대상 범위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몇개의 시·군을 1개 단지로 통합하여 사업실시
- 개소당 사업비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주산지 마을 및 농가를 선정하여 지원
- 지원대상사업은 표준사업 내역에 제시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단가는 표준사업내역의 사업단가 적용

다. 지원조건

- 재 원 : 농어촌발전특별회계
- 지원비율 :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 지원대상사업을 보조사업과 용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비율 설정
 - 보조사업 : 애누에공동잡실, 초미립 자동소독기, 뽕수확기, 자동수건기, 자동온풍기, 동력예취기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40%)
 - 용자사업 : 일반잡실, 열풍기, 개량잡구 (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년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라. 단위사업별 지원대상자

- 애누에 공동잡실·초미립자동소독기 : 애누에 공동사육 및 공동소독을 희망하는 뽕밭 50a 이상 소유농가, 생산자조직 또는 연간 50상자이상 사육마을
- 뽕수확기, 자동수건기, 일반잡실등 : 양잠농가, 생산자조직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추진 주관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산국 잠업특작과
 - 도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유통특작과
 - 군 : 산업과 (협조기관 : 농촌지도소, 농협군지부)

6. '95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도 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25	1,775,000	355,000	355,000	710,000	355,000
경 기	-	-	-	-	-	-
강 원	1	71,000	14,200	14,200	28,400	14,200
충 북	1	71,000	14,200	14,200	28,400	14,200
충 남	2	142,000	28,400	28,400	56,800	28,400
전 북	10	710,000	142,000	142,000	284,000	142,000
전 남	4	284,000	56,800	56,800	113,600	56,800
경 북	3	213,000	42,600	42,600	85,200	42,600
경 남	4	284,000	56,800	56,800	113,600	56,800

잠종생산(자율)

1. 목 적

- 누에씨생산업자가 우량누에씨를 생산하여 양잠농가에게 보급하도록 하여 누에고치의 품질향상과 생산성증대를 기하는 한편 누에씨수출확대를 도모코자 정부과 누에씨 생산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임

2. 추진 방향

- 누에씨 생산에는 일정한 시설과 기술이 필요하며, 생산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 보급용 우량누에씨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생산비 일부지원

<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

	'95 계획	'96~'98(B)				합 계
	(A)	'96	'97	'98	소 계	(A + B)
○ 사업 량	155천상자	98	96	78	272	427
(사업단가)	(9천원/상자)	(9)	(9)	(9)	(9)	(9)
○ 국고지원	977백만원	620	608	492	1,720	2,697

※ 국고지원액은 융자임.

3. 사업신청자격

- 한국잠종협회에 가입한 누에씨 생산업자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사업계획(총괄)

사업량	단가	사업비		
		계	용자	자담
155천 상자	9천원/상자	1,395백만원	977	418

(2)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보급누에씨 생산비 일부용자
- 지원한도 : 누에씨 생산업자당 150백만원

(3) 사업기간 : '95.1.1 ~ 12월말 (1년간)

다. 지원조건

- 재원 : 농어촌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생산비의 70%이내용자
- 용자조건 : 년리 5%, 2년거치 3년상환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추진 주관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산국 잠업특작과
 - 도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유통특작과

6. '95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도 별	사업량 (천상자)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155	1,395,000	-	-	976,500	418,500
경 기	-	-	-	-	-	-
강 원	-	-	-	-	-	-
충 북	10	90,000	-	-	63,000	27,000
충 남	20	180,000	-	-	126,000	54,000
전 북	40	360,000	-	-	252,000	108,000
전 남	15	135,000	-	-	94,500	40,500
경 북	40	360,000	-	-	252,000	108,000
경 남	30	270,000	-	-	189,000	81,000

특작생산·유통사업지원 (자율)

1. 목 적

- 특용작물(버섯, 생약, 차)생산농민 또는 생산자 조직에게 특용작물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과 시설확충자금등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공확대를 통한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정부가 지원하는 것임.

2. 추진방향

- 분산개별 지원을 지양하고 집단화, 규모화가 가능토록 Package화하여 집중지원
- 농민 또는 생산자 조직이 자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작목별 사업메뉴 제시

<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

(단위 : 백만원)

	'95 계획 (A)	'96 ~ '98 (B)				합 계 (A + B)
		'96	'97	'98	소 계	
사업량(개소)	64	150	150	150	450	514
(사업단가)	(437)	(628)	(628)	(628)	(628)	(604)
국고지원액	19,595	65,905	65,905	65,905	197,715	217,310

※ 지원액은 국고보조 및 융자이며, 지원액, 사업량, 사업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신청자격

가. 특용작물(버섯, 생약, 차) 재배 또는 신규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또는 생산자조직중 생산, 유통(가공)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

나. 우선순위

- (1) 생산자조직이 조성된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가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
- (2) 주산단지료 지정고시 지역 또는 집단재배단지 조성지역에서 사업을 희망하는자
- (3) 상기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해당작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95 사업비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업 단 가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64개소		27,993	2,799	2,799	16,796	5,599
버 섯	31	564	17,484	1,748	1,748	10,491	3,497
생 약	30	315	9,450	945	945	5,670	1,890
차	3	353	1,059	106	106	635	212

※ 사업단가는 기존시설등을 감안하여 개소당 표준사업비의 70%반영

(2) 사업내용

- 버섯사업 : 버섯종균 및 배지생산시설, 버섯첨단재배사시설, 버섯균상재배시설, 저온저장고, 냉동차량
- 생약사업 : 우량종묘공동생산, 생약재배시설, 생약조제시설, 생약집하장
- 차 사업 : 다원조성, 생산기반시설, 가공시설

(3) 개소당 표준사업내용 (메뉴)

○ 버섯 (기준면적 : 1,200평)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단 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시 설 내 용
< 계 >				805	
○ 종균 배지생산 시설	50평/동	1	85	85	○ 건축물(전기, 수도 등 부대시설 포함) ○ 시설기기(탈병기, 보일러, 살균기, 콘베어, 냉동시설, 크린룸, 배합기, 입병기 등 기자재)
○ 첨단재배시설	150평/동	1	200	200	○ 건축물(전기, 수도, 실험실, 무균실 등 부대시설 포함) ○ 기기(톱밥제조기, 톱밥채, 혼합기, 콘베어, 입병기, 고압살균기, 자동집종기, 균류기기, 억제기, 탈병기, 가습기, 냉동기, 온습도 자동제어장치, 진공포장기 등)
○ 균상재배시설	35평/동	30	15	450	○ 건축물(전기, 수도, 난방, 온습도 조절시설 등 부대시설 포함)
○ 냉동운반차량	대	1	20	20	○ 2.5톤 이상
○ 저온저장고	20평/동	1	50	50	○ 건 축(부대기자재 포함)

※ 개소당 사업단가는 564백만원 (표준사업단가 805백만원의 70% 적용)

○ 생 약 (기준면적 : 20ha)

세부사업명	단 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시 설 내 용
< 계 >				450	
○ 공동육묘포 설치	ha	1	30	30	○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토지 임차료, 고용노력비 등
○ 생약재배시설	ha	20	5	100	○ 증묘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등
○ 생약조제시설	100평/동	1	200	200	○ 건축물 (전기, 수도 등 부대 시설 포함) ○ 기기 : (선별기, 탈피기, 세척기, 탈수이송콘베어, 절단기, 건조기, 상송콘베어, 계측기, 자동포장기, 운반차, 운반탱크 등)
○ 생약집하장	150평/동	1	120	120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개소당 사업단가 315백만원 (표준사업단가 450백만원의 70% 적용)

○ 차 (기준면적 : 20ha)

세부사업명	단 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시 설 내 용
< 계 >				505	
○ 다원조성	ha	1	14.4	14.4	○ 개간비, 묘목대, 식재대등
○ 생산기반조성	ha	20	281.0	281.0	○ 관수시설(관정, 스프링쿨러), 방상기, 전정기, 자동채엽기등)
○ 제다시설	50평/동	1	209.6	209.6	○ 건축 (전기, 수도등 부대시설 포함) ○ 기기 : 급엽기, 증기, 냉각기, 증엽기(증엽콘베어, 증엽투입, 증엽계량) 조유기, 유념기, 증유기, 건조기, 포장기등 ○ 저온저장창고 30평 1동

※ 개소당 사업단가 353백만원 (표준사업단가 505백만원의 70%적용)

(4) 지원방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3)항 품목별 (버섯·생약·차) 개소당 표준사업내용 (Package)에 제시된 세부사업 (menu)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 (menu)내의 시설내용도 현지여건에 맞도록 필요한 시설및 기종을 선택
- 하나의 Package는 1개의 재배단지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따라 대규모단지에는 2개이상의 Package를 지원 하거나 1개의 Package를 2개단지 이상에 분리지원 가능
- 개소당 표준사업비는 버섯 805, 생약 450, 차 505백만원이나 중앙에서 적용한 사업비는 기존시설등을 감안하여 70% (버섯 564, 생약 315, 차 353백만원) 만 반영 되었음. 그러나 시·군에서 세부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세부사업별 표준단가를 그대로 적용

다. 지원조건

- (1) 재 원 : 농어촌발전특별회계
- (2) 재원비율 : 국고보조 10%, 용자 60%, 지방비보조 10%, 자담 10%
- (3) 용자조건 : 년리 5%, (생약 및 차 : 3년거치 7년상환, 버섯 : 3년거치 5년상환)

5. 사업대상자

사업명	대상자
<p>< 버섯 사업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종균·배지 생산시설 ○ 버섯첨단재배시설 ○ 버섯균상재배시설 ○ 냉동운반 차량 ○ 저온저장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종균·배지생산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종균생산업 허가업체, 생산자조직 또는 농가 ○ 버섯재배 경험이 풍부하고 주년생산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 (농가) ○ 일반버섯 재배사 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을 희망하는 농가 ○ 표준사업실시 지역에서 종균배지생산시설, 버섯첨단재배 시설, 버섯균상 재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 조직 (농가) ○ "
<p>< 생약 사업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묘포설치 ○ 생약재배시설 ○ 생약조제시설 ○ 생약집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ha이상 종묘를 생산공급하는 생산자 조직 (농가) ○ 생약재배 또는 재배희망농가 ○ 생산자조직 (농가), 생산자 단체 ○ 생산자 조직, 생산자 단체
<p>< 차(茶)사업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 조성 ○ 생산기반조성 ○ 제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신규조성농가 ○ 기존다원과 신규 조성다원의 기반시설 지원희망농가 ○ 차재배 생산자조직(농가), 차재배겸 가공업자

6. 기타참고사항

○ 사업추진 주관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산국 잠업특작과
- 도 : 농정국 유통과
- 군 : 산업과 (협조기관) : 농촌지도소, 농협군지부

7.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도 별	사 업 량	사 업 비 합 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64	27,993,000	2,799,300	2,799,300	16,795,800	5,598,600
서 울	-	-	-	-	-	-
부 산	-	-	-	-	-	-
대 구	-	-	-	-	-	-
인 천	-	-	-	-	-	-
광 주	1	353,000	35,300	35,300	211,800	70,600
대 전	-	-	-	-	-	-
경 기	8	3,765,000	376,500	376,500	2,259,000	753,000
강 원	8	3,267,000	326,700	326,700	1,960,200	653,400
충 북	5	2,322,000	232,200	232,200	1,393,200	464,400
충 남	9	4,329,000	432,900	432,900	2,597,400	865,800
전 북	8	3,516,000	351,600	351,600	2,109,600	703,200
전 남	8	3,305,000	330,500	330,500	1,983,000	661,000
경 북	10	4,146,000	414,600	414,600	2,487,600	829,200
경 남	7	2,990,000	299,000	299,000	1,794,000	599,000
제 주	-	-	-	-	-	-

(단위 : 개소, 천원)

도 별	사업량	비 섯 사 업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31	17,484,000	1,748,400	1,748,400	10,490,400	3,496,800
서 울	-	-	-	-	-	-
부 산	-	-	-	-	-	-
대 구	-	-	-	-	-	-
인 천	-	-	-	-	-	-
광 주	-	-	-	-	-	-
대 전	-	-	-	-	-	-
경 기	5	2,820,000	282,000	282,000	1,692,000	564,000
강 원	3	1,692,000	169,200	169,200	1,015,200	338,400
충 북	3	1,692,000	169,200	169,200	1,015,200	338,400
충 남	6	3,384,000	338,400	338,400	2,030,400	676,800
전 북	4	2,256,000	225,600	225,600	1,353,600	451,200
전 남	3	1,692,000	169,200	169,200	1,015,200	338,400
경 북	4	2,256,000	225,600	225,600	1,353,600	451,200
경 남	3	1,692,000	169,200	169,200	1,015,200	338,400
제 주	-	-	-	-	-	-

(단위 : 개소, 천원)

도 별	사 업 량	생 약 사 업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30개소	9,450,000	945,000	945,000	5,670,000	1,890,0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3	945,000	94,500	94,500	567,000	189,000
강원	5	1,575,000	157,500	157,500	945,000	315,000
충북	2	630,000	63,000	63,000	378,000	126,000
충남	3	945,000	94,500	94,500	567,000	189,000
전북	4	1,260,000	126,000	126,000	756,000	252,000
전남	4	1,260,000	126,000	126,000	756,000	252,000
경북	6	1,890,000	189,000	189,000	1,134,000	378,000
경남	3	945,000	94,500	94,500	567,000	189,000
제주	-	-	-	-	-	-

(단위 : 개소, 천원)

도 별	차 사 업					
	사 업 량	사업비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용자금	자부담기타
전국계	3 개소	1,059,000	105,900	105,900	635,400	211,800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1	353,000	35,300	35,300	211,800	70,600
대 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1	353,000	35,300	35,300	211,800	70,600
경 북						
경 남	1	353,000	35,300	35,300	211,800	70,600
제 주						

원잠종 생산 (공공계획)

1. 목 적

- 도잡업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원누에서 생산비의 일부를 보조지원함으로써 우량 원누에서 생산공급을 통한 농가보급용 누에서의 품질향상 및 수급안정도모

2. 추진 방향

- 원누에서 생산비 일부보조지원으로 우량원누에서 생산공급

<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

	'95 계획 (A)	'96~'98(B)				합 계 (A + B)
		'96	'97	'98	소 계	
○ 사업량	7,050매	6,400	5,800	4,400	16,600	23,650
(사업단가)	(18천원/매)	(18)	(18)	(18)	(18)	(18)
○ 국고지원	64백만원	58	52	40	150	214

※ 국고지원액은 보조이며, 지원액.사업량.사업단가는 변동될수 있음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사업계획(총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7,050매	18천원/매	128백만원	64	64

(2) 사업내용

- 각도 잠업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원누에서 생산비 일부보조지원

(3) 사업기간 : '95. 1. 1~12월말(1년간)

다. 지원조건

- 재 원 : 농어촌발전특별회계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4. 기타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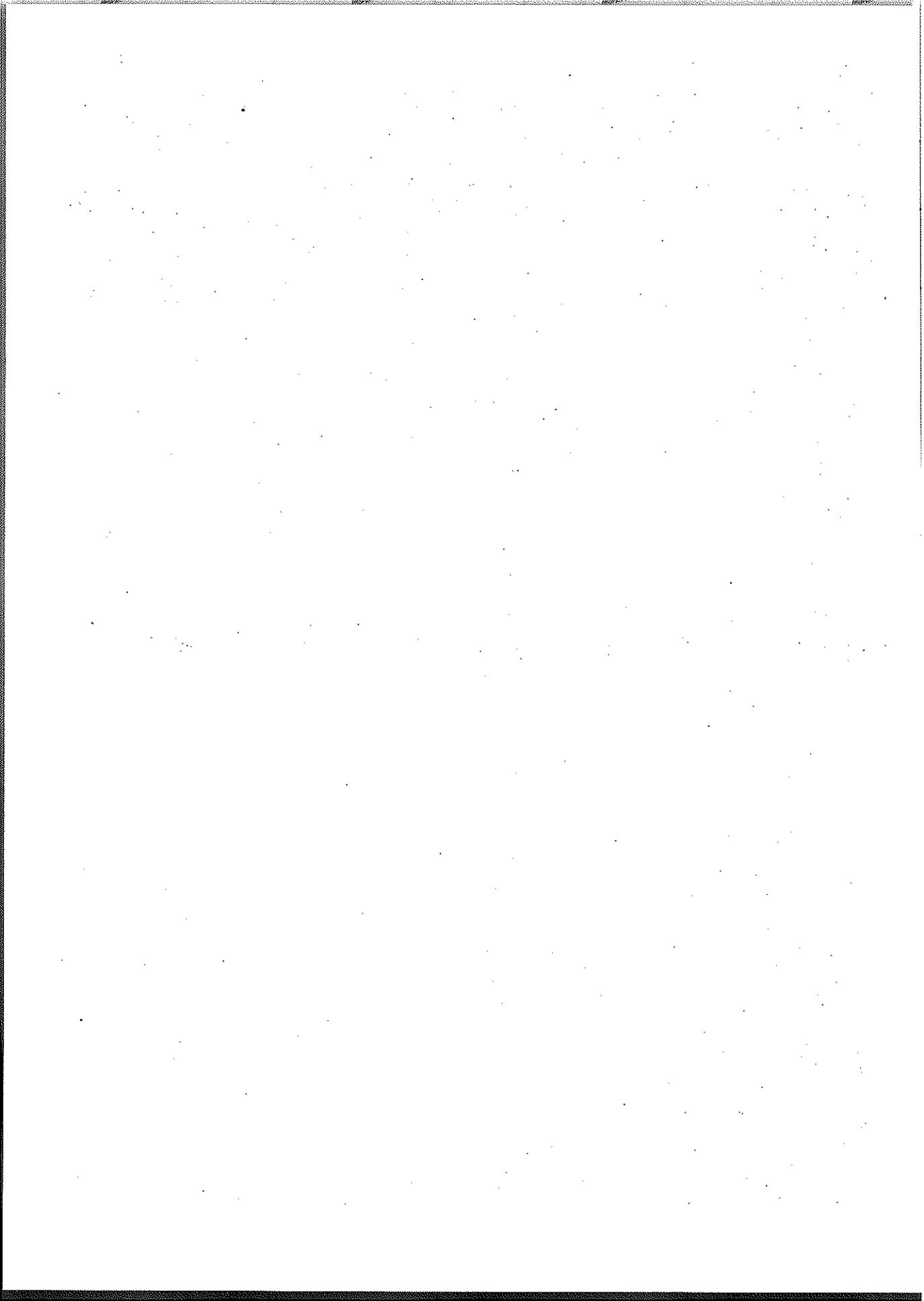
○ 사업추진 주관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산국 잠업특작과
- 도 : 농정국 농산물 유통과/유통특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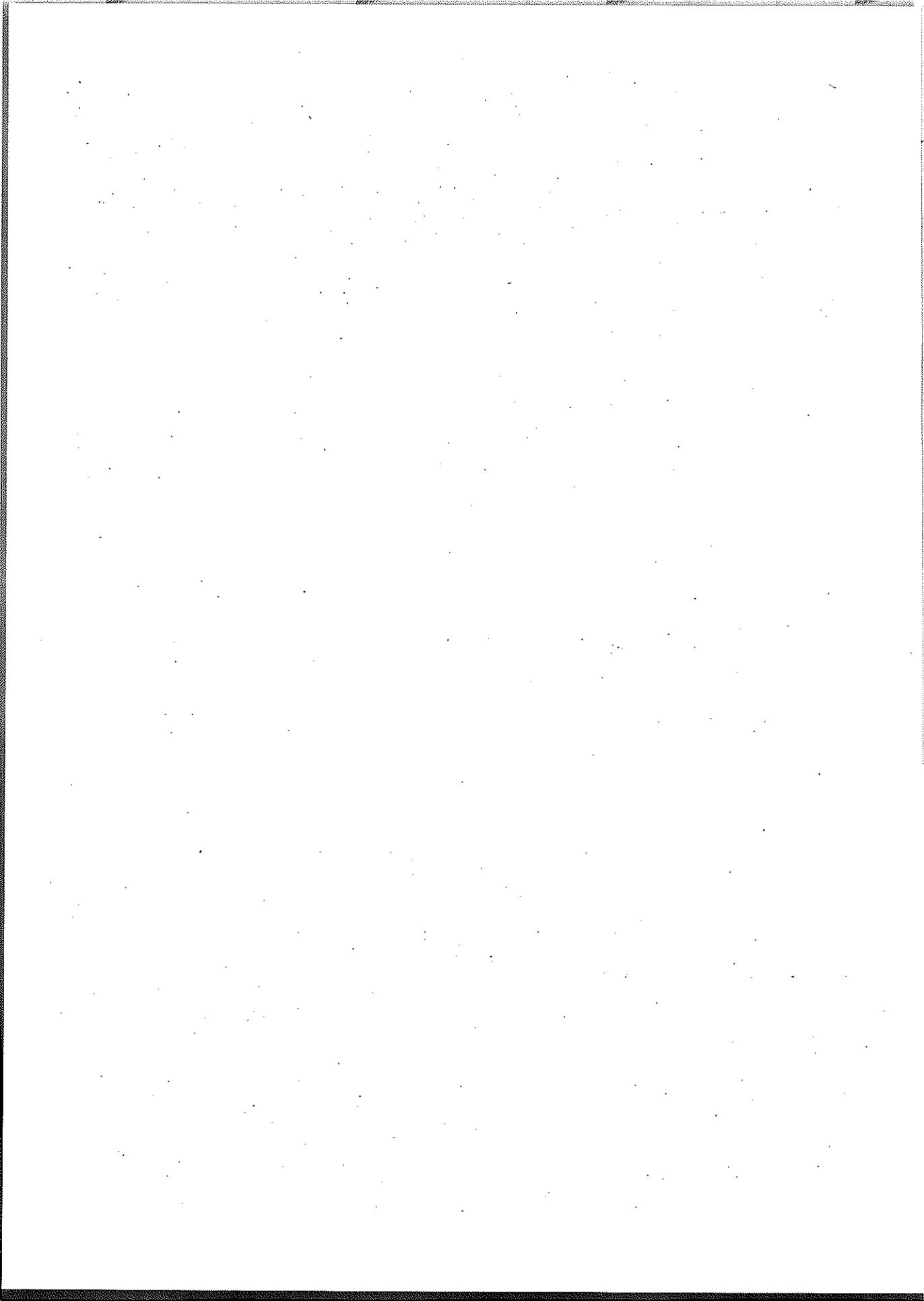
5. '95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도 별	사업량 (매)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응 자	자 담
계	7,050	126,900	63,450	63,450	-	-
경 기	100	1,800	900	900	-	-
강 원	150	2,700	1,350	1,350	-	-
충 북	600	10,800	5,400	5,400	-	-
충 남	600	10,800	5,400	5,400	-	-
전 북	1,300	23,400	11,700	11,700	-	-
전 남	800	14,400	7,200	7,200	-	-
경 북	2,000	36,000	18,000	18,000	-	-
경 남	1,500	27,000	13,500	13,500	-	-



6. 기술 개발 · 보급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공공계획)

1. 목 적

- 농어민들이 영농어 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대외경쟁력을 제고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농어민들이 영농어 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있는 기술개발사업을 산·학·관·연 협동방식에 의해 추진

나. 장기계획

(단위 : 억원)

	부 자 계 획					비 고
	총사업비	'94	'95	'96	'97이후	
현장애로기술개발	1,690	190	300	300	900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수산청장

나. 사업내용

○ 농림수산부

- 생산·기반, 유통·가공, 기계·시설, 생활·환경분야별로 과제를 공모한 후 선정된 과제와 용역계약 체결

○ 농촌진흥청

- 지역농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자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농촌지도소내 산·학·연으로 구성된 기술개발팀에 의해 사업추진(내고장새기술개발사업)

○ 산림청

- 산·학·연 및 임업경영자 공동 추진으로 현장성과 실용성에 중점을 둔 농산촌 소득증대 기술의 개발

○ 수산청

- 연구기관, 학계, 어촌지도소, 업계 공동으로 어민들이 영어활동 또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개발 사업 추진
- 매년 5개분야에서 60개과제를 선정·추진
: 증양식, 어구어법, 이용가공, 해양자원, 기타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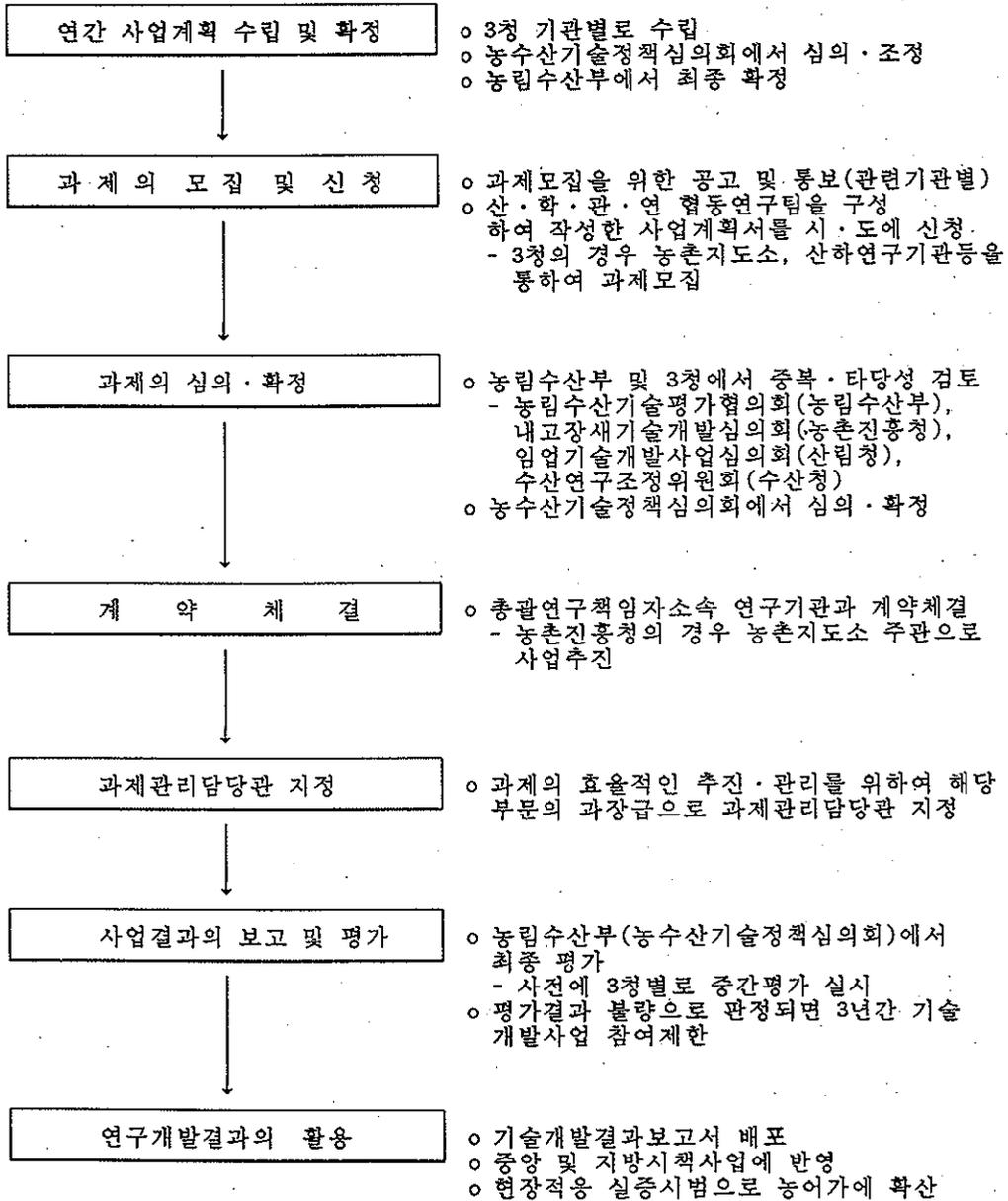
다. 지원조건

○ 전액 국고보조

○ 다만, 기업참여시 사업비의 일부 지원

- 대기업 : 총사업비의 50/100, 중소기업 : 80/100

라. 사업추진체계도



4.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선정기준

○ 중복성

-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추진중인 과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실용성(현장성)

- 사업추진을 통하여 곧바로 실용화·산업화가 가능한 과제를 우선선정
- 학술적인 성격의 과제이거나 기초연구과제는 제외하되 정책추진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개발, 특정사업부문의 표준화, 조사사업 등의 과제는 부분적으로 수용

○ 파급효과(범용성)

- 영농어분야 또는 관련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이거나 품목간의 호환성이 큰 과제를 우선 수용

○ 수용가능성

- 연구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지의 여부 및 연구과제의 기술수준
- 협동연구팀의 전문능력·경험
- 신청연구사업비의 규모 및 연구기관의 적절성 여부
- 연구수행의 난이도

나. 선정절차

- 연구사업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사업방향 설정
- 과제공모
- 각 시·도 및 3청을 통하여 과제접수
- 농림수산부 및 3청 등 관련부서에서 중복·타당성여부 검토
- 농수산기술정책심의회에서 사업대상과제 심의·확정

5. '95 지원계획 : 30,000백만원

- 기관별 지원규모 : 농림수산부 15,000, 농진청 9,000, 산림청 2,000, 수산청 4,000백만원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안내기관

	중 앙	시 · 도
전 반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과	농정과, 농수산유통과(서울시)
농 업	농촌진흥청 경제작물과	농촌진흥원지도국, 농촌지도소
임 업	임업연구원	산림환경연구소
수 산	국립수산진흥원	어촌지도소

첨단기술개발사업 (공공계획)

1. 목 적

- 생명공학, 신소재, 전자정보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수산 부문에 접목하여 고부가가치의 농수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대외경쟁력을 제고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농어업분야의 첨단기술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3,000억원을 투입하여 품종개량, 한국형시설자동화, 환경농업 등에 있어 기술도약의 계기 마련
- 첨단과학기술을 농수산기술혁신에 접합시킬 수 있도록 연관분야별로 산·학·관·연 협동연구팀 구축

나. 장기계획

(단위 : 억원)

	부 자 계 획					비 고
	총사업비	'95	'96	'97	'98이후	
첨단기술개발	3,000	313	300	300	2,087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수산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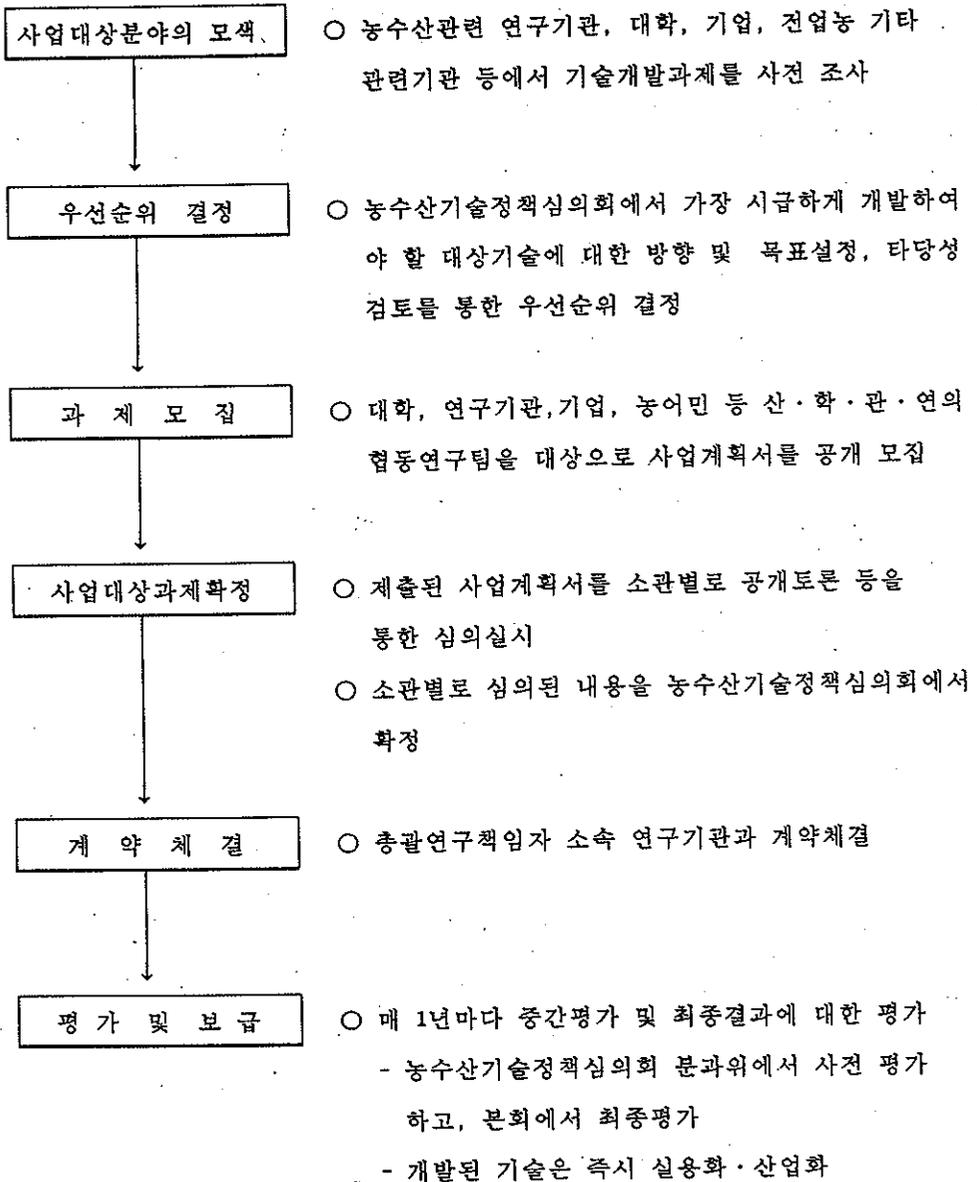
나. 사업내용

- 농림어업의 경쟁력강화를 지향한 첨단 농림어업 기술개발사업
- 이미 개발된 생명공학, 신소재 등 첨단산업기술을 농림어업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연구사업
- 환경보전형 농림어업기술개발 연구사업
- 첨단산업기술을 농수산업의 유통·저장·가공기술에 적용하는 농어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수출촉진에 관한 연구사업 등

다. 지원조건

- 전액 국고보조
- 다만 기업참여시 사업비의 일부 지원
 - 대기업 : 총사업비의 50/100, 중소기업 : 80/100

라. 사업추진체계도



4.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선정기준

- 사업대상을 품종개량, 시설자동화, 환경농업, 유통·가공 등의 분야로 분류하여 과제를 공개 모집한 후
-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과제의 중복성·타당성 검색
- 농수산기술정책심의회에서 각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한 후 과제확정

나. 선정절차

- 농수산관련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사전 조사
- 농수산기술정책심의회에서 기술개발추진사업 방향 설정
- 산·학·관·연의 협동연구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공개 모집
- 농수산기술정책심의회에서 심의·확정

5. '95 지원계획 : 31,255백만원

○ 기관별 지원규모 : 농촌진흥청 26,700, 산림청 1,955, 수산청 2,600백만원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농업구조정책과
농촌진흥청 시험국 연구관리과
산림청 자원조성국 기술지원과, 임업연구원
수산청 생산국 연근해과, 국립수산진흥원

농림수산물정보화사업(공공계획)

1. 목 적

- 농림수산업의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응키 위해 농림수산물관련 정책·생산·유통 등 각종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농어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어민 자율방식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경쟁력을 갖춘 자본·기술 집약적인 농림수산업을 조기에 정착하는데 기여코자 함.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통신망(VAN) 구축
 - '97년까지 농림수산물부를 비롯한 농림수산물관련 주요기관·단체 및 농어촌지역 마을을 연결하는 농림수산물부가가치통신망(VAN)을 구축함으로써
 - 농어민의 신속하고 편리한 농림수산물관련 정보 이용환경 조성
 - 농림수산물관련 기관·단체간 원활한 정보이용 및 교환을 통한 정보공유체계 확립
- 농어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개발·보급
 - 농어가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
 - 신기술 등 경쟁력을 높이는 정보
 - 농어민 복지와 직접 관련되는 정보 등 파급효과가 큰 정보의 개발·보급
- 농어촌지역 정보이용기반의 조기구축
 - 농어촌지역의 정보수요확충 및 농어민의 정보이용 기회확대를 위해
 - 농림수산업 관련 개인용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개발
 - 농어민 대상의 지속적 정보통신 이용교육
 - 농어민이 운영하는 전자게시판(BBS) 구축
 - 정보수요조사, PC이용실태 조사 등 조사·연구활동 추진

나. 장기계획

구 분	'92~'94	'95	'96	'97	'98
투자소요(백만원/A)	4,050	3,000	3,800	4,300	4,500
- 주전산기(조/누계)	2 (2)	1 (3)	2 (5)	2 (7)	2 (9)
- 전문인력(명/누계)	25(25)	5(30)	8(38)	7(45)	0(45)
운영수익(백만원/B)	-	-	400	2,600	4,500
정 부 지 원 (A - B)	4,050	3,000	3,400	1,700	-

※ '98년 총 이용자 10만명 목표

※ '95년 예산 2,500백만원 확보

< 연차별 추진내역 >

- '94년 : 농림수산부가가치통신망(VAN) 구축
 - 농림수산부 및 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망 구축
 - 농업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5종)
- '95년 : 농림수산 종합데이터베이스(DB) 구축
 - 행정·통계·기술·유통 등 망라하는 종합 DB 구축
- '96년 : 국내외 타산업분야 정보통신망과 연계
 - 금융·무역 등 국내 타산업분야 및 해외 농업정보망과 연계
- '97년 : 농어촌지역 고도정보이용 실현
 - 농림수산 정보통신망 이용자 60,000명 확보, 농림수산 데이터베이스 50종, 농업용 소프트웨어 35종 개발

3. '95 사업 추진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재단법인 농림수산정보센터

나. '95 사업 추진내용

- 농림수산 종합정보망 구축
 - 정보서비스용 장비도입 : 동시 이용자 840명(총이용자 1만7천명의 5%)처리를 위한 주전산기 1조 및 S/W·주변기기 등
 - 부가가치 통신망 구축 및 정보제공기관 연결(20개소)
 - D/B개발·보급 : 농어업 경영활용도가 높은 DB를 집중 개발·보급(4개)
-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PC용 S/W 개발(2종)
- 정보이용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실시 : 농어민 1,000명
- 시범지역운영 : 농어민·농어촌 지역간 정보교류 활성화(시범농가 300호)
- 시설·장비 등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지원 : 100평
- 전문인력 확보 :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21명 확보

다. 지원조건 : 국고보조(정액)

4. 사업효과

- 작물·가축의 생육정보, 기상·토양정보, 농산물 시황정보, 법·제도·정책정보 등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계획·실행·제어할 수 있는 농업경영 실현
- 개인용컴퓨터와 농업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기록·입수·축적된 정보를 분석·처리함으로써 스스로의 연구·노력과 계량화된 데이터에 의해 과학화·규모화된 농업경영 촉진
- 농어민 서로가 지식·의견·자료 등 정보를 교환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농어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율적 영농 구현
⇒ 궁극적으로 종합·체계화된 지식 즉, 정보(Software)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합리적 농업경영을 실현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을 수지맞는 농업·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임.

5. '95 지원계획 : 2,500백만원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업구조정책과
 - 관련기관 : 재단법인 농림수산정보센터
- 농림수산정보이용 문의 : 재단법인 농림수산정보센터(전화 02-589-2043)
- 농림수산정보서비스 매체
 - 천리안, 하이텔, 농림수산정보(AFFIS)

농지전산화사업(공공계획)

1. 사업목적

- 전국에 분산된 농지원부의 종합적 전산관리로 농지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 농지정책 입안에 필요한 농지정보를 신속 정확히 제공
-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농지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 공간통계분석기법등을 통한 지역 통계생산으로 농수산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전국 1,573개 시·구·읍·면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모든 농지원부 자료를 전산 관리화하여 민원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도모
 - 농지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 농지정보를 신속·정확, 적기 제공
 - 농어업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관리정보 제공
 - 농어촌구조개선 및 영농규모적정화사업수행의 효율적 활용
- 농어촌관련 각종자료의 분석 및 계획수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농업정책입안 및 개발계획수립시 기초자료 제공
 - 농어촌발전대책등 개발업무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자료 제공
- 농지전산시스템과 농어촌지형정보시스템(GIS)을 연계 운용하여 농지관련 정보의 효율성 제고

나.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3까지	'94계획	'95계획	'96이후
농지원부 전 산 화	7,221	4,453	685	687	1,396
농 어 촌 지형정보 (GIS)	6,644	1,224	429	1,458	3,533

3.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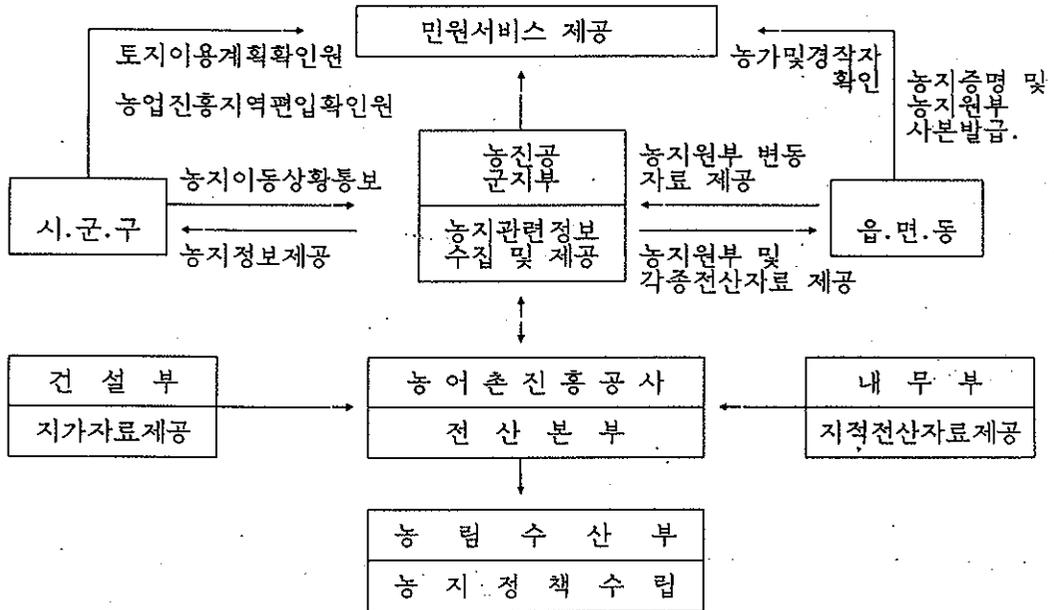
가. 사업시행 주체 : 농림수산부

- 사업시행자 : 농어촌진흥공사
- ※ 농어촌진흥공사 본사(전산실)와 군지부간 ON-LINE 설치 운용

나. 사업내용

- 각종 증명(사본) 발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농지원부, 농지매매, 농지조서, 토지가격, 농가 및 경작자 확인, 농지임대차 확인, 농업진흥지역 편입 확인등
- 농지관련 정보 제공
 - 농수산 정책동향, 유통시장, 농산물 작황관리, 농산물수급 조정관리, 농산물 및 농지가격 정보, 농어촌지형정보(GIS)등

다. 사업추진체계도



4.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책임자

- 시.군.구 : 산업과장
- 읍.면.동 : 읍.면.동장
- 농어촌진흥공사 : 군지부장

나. 자료관리 담당자

-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직원

다. 사후관리절차 및 방법

- 농지전산업무처리 요령 {농지51310-190('94. 3.14)}에 의함

5. 사업효과

가. 직접효과

- 농지원부 정확도 제고
-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능률 제고
- 농업진흥지역 및 정주생활권 개발 정보 제공
- 농어촌의 다양한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사업추진의 최적화 증진

나. 간접효과

- 농지의 부동산 투기화 방지 및 경자유전실현의 점검수단 제공
- 농업정책수립의 과학화로 선진화 유도
- 사업계획의 시가적 통계관리로 정확성 제고

6.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관리과
	(전화 : 02-503-7244)
	농어촌진흥공사 전산실

(전화 : 0343-20-3207)
- 시·군·구 : 시·군·구청장 및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 읍·면·동 : 읍·면·동사무소

농어촌개발시험연구사업(공공계획)

1.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 하되 연구사업의 특성에 따라 연구과제의 전부를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교 등에 위탁 시행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국고지원 연구사업뿐 아니라 용수개발계획을 비롯한 농어촌개발계획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체자금을 최대한 조성하여 공법개발과 운영자금등 연구사업에 투입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국고사업에 대한 연구사업별 종합계획(전체계획)과 당해년도에 시행할 세부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4. 사업시행자는 년도중 사업추진현황을 분기별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서식 2-2)
5. 사업시행자는 시험 및 연구과제별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함.
6. 국고지원사업비는 실비정산함.

[서식 2-2호]

조사(시험연구)사업추진상황보고

(년 월 일 현재) 금액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년중계획		추진상황			부진사유 및 대책	비고
		사업비	사업내용	계획	실적	비율		
				A	B	(A/B)%	%	

축산종합개발센터 건립(공공계획)

1. 목 적

- 축종별 행사 및 축산기자재 상설전시등을 위한 축산관련 행사장의 설치
 - 개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축산정보 교환의 구심적 장소 필요
- 축산관련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시설 병설

2. 추진방향

- 축산종합행사장 및 부대시설, 식육처리교육시설등은 기금사업으로 추진
- 축협임직원 연수원시설 및 기존의 낙농시설 이전사업은 축협 자체사업으로 추진

3. 주요시설별 지원계획

구 분		규 모	지 원 액		
			'95	'96	계
기금사업	축산종합행사장(Show Ground)	4,600 ^평	백만원 2,250	-	2,250
	행사관	1,500	5,250	-	5,250
	식육처리교육시설	300	1,050	-	1,050
	부대비용	-	1,100	-	1,100
	소 계		9,650	-	9,650
용자사업	축협임직원연수원시설	-	3,000	3,875	6,875
	낙농시설이전	800	2,000	-	2,000
	소 계		5,000	3,875	8,875
합 계			14,650	3,875	18,525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용자조건 : 3년거치 7년상환, 년리 5%

4. 세부사업 추진요령

-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
- 기금사업의 시설별 내역은 지원액 범위내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세부 설계 확정 이전에 농림수산부와 협의하여 확정
 - 축산종합행사장(Show Ground)은 한우경진대회, 고능력젖소 평가 경매대회등 축산관련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행사관은 축산종합행사장의 부대시설로 강당, 세미나실, 사무실, 전시실등을 마련 하여 축산관련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식육처리교육시설은 강의실, 실험실습실 및 냉장실등 최소한의 시설 설치
- 융자사업은 축협중앙회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5. 기 타

- 동시설의 설치 시공시에는 "각종 위험시설등 대형사고 예방대책 수립 지시(국무총리 지시 1944-25호)"에 의거 사고예방과 견고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축산사업 교육·홍보(공공계획)

1. 목 적

-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홍보강화로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
- 축산물의 적정생산을 유도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산·학·관·연 협동체계 구축
- 국내산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소비과정의 선진화를 통한 수입축산물과의 품질·시장 차별화 촉진

2. 추진방향

-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따라 축협중앙회등 생산자단체, 관련기관에서 홍보실시
 - 정책홍보는 농림수산부가 직접담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축협등 관련기관·단체 협조
- 다양한 교육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교육·홍보전략의 구현
 - 생산·도축·가공·유통·소비등 전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 팸플렛, 신문, TV, 월간지, 순회교육, 세미나 개최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3. '95주요 교육·홍보과제

- WTO체제 출범에 따른 축산업경쟁력 제고대책
 - UR타결 결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경쟁력 강화로 UR극복
- 한우고급육 생산기술등 양축농가 기술교육
 - 한우고급육 생산분위기 확산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
-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유통소비 홍보
 - 한우고기등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

- 사료품질 향상 및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
 - 사료비 절감등으로 경쟁력 제고
- 축산분뇨처리 및 가축방역
 -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방지
- 기타 축산관련 정책내용 교육·홍보

4. 사업내용

- '95년도 교육·홍보 내용

사 업 명	예 산 액	주 관 과
	백만원	
<홍보비>	1,198	
○ 축산시책을 위한 관계관회의	10	축정과
○ 축산시책홍보	60	"
○ 국내산 우유소비 홍보	300	축산경영과
○ 소비자대상 식육관련 홍보	400	축산물유통과
○ 돼지고기 해외 수출홍보	300	"
○ 축사환경개선운동	50	가축위생과
○ 가축방역홍보용 Video Tape제작	60	"
○ 국제수역사무국(OIE) 진단방법 Manual번역 배포	18	"
<교육비 등>	502	
○ 현장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산학협동 지원 및 세미나 개최 지원	60	축정과
○ 경주마 생산능가 기술교육	5	"
○ 축산단지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60	축산경영과
○ 낙농·한우(육우) 기술강습회	30	"
○ 원유 품질관리 교육 보조원 교육	5	"
○ 낙농산업발전 국제학술발표회 개최	20	"
○ 낙농헬퍼요원 교육	10	"
○ 한우고급육생 산기술 교육	30	"
○ 양계농가용, 유통개선 교육	20	축산물유통과
○ 식육유통, 한우 전문판매점 종사자 교육	50	과
○ 생산·가공·유통발전 국제심포지움	16	"
○ 돼지고기 수출단지 교육	20	"
○ 사료안정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	16	초지사료과
○ 조사료생산사업 지도 및 교육 홍보	35	"
○ 사료단기과정 교육	10	"
○ 원유 위생관리 및 유질개선 지도	40	가축위생과
○ 가축배설물 자원화 교육	35	"
○ 양돈농가 홍보교육	20	"
○ 축산물 검역 절차 제도 홍보교육	20	"
합 계	1,700	

* '95교육·홍보내용은 축산물 생산 및 수급동향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사업시행 방법

- 홍보 주관과에서 주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 홍보 실시
 - 홍보효과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매체 선택등에 활용
- 사업비는 개산급으로 지급후, 사후 정산 실시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농림수산부 축정과(전화 02-500-2672-73, 503-7281)
 - 축협중앙회 기금관리부(전화 02-485-3141)

축산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사업(공공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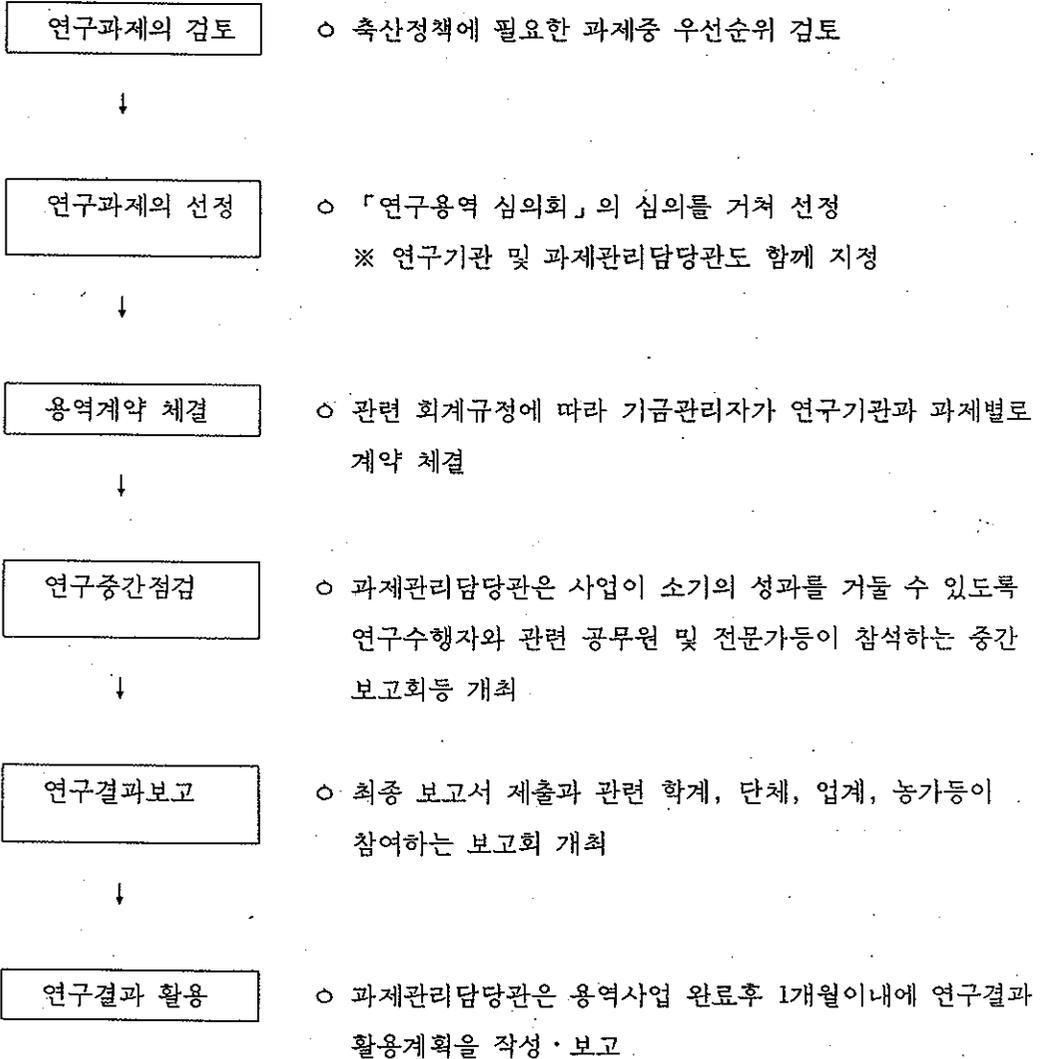
1. 목적

- 축산관련 생산성향상, 가격안정,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등 축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개발
- 축산관련 학계, 연구기관들의 산학협동 촉진

2. 기본방향

- 연구용역과제는 정책결정 및 제도개선등에 필요한 정책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함.
- 산·학·연·관 협동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동 연구조직등의 연구활동에 우선지원
-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연구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심의회」구성, 운영
-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과제관리담당관(축산국내 과장)을 지정하여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계획 및 사후관리 강화

3. 사업 추진체계



4. 사업의 세부추진 및 관리요령

가. 연구용역사업의 범위

- UR 협상타결에 따른 국내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 축산분뇨의 경제적 효율적 처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 및 장비의 개발
 - 축산물 수급 및 유통개선을 위한 연구
 - 새로운 사료자원의 개발등 사료비의 절감을 위한 연구
 - 기타 축산정책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
- * 현장애로 기술개발 관련 연구과제는 제외(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나. 연구용역 수행대상자

-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축산관련 연구기관
- 축산관련 대학, 대학연구소 및 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에 5년이상 종사경력이 있는 축산전문가
- 기타 연구용역 사업수행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전문가

다. 연구용역비의 산정

- 용역비는 인건비, 여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 제작비, 수용비 및 수수료등으로 구분
- 인건비는 연구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의 급료로써 단가는 『예산회계예규』에 따름
- 여비(국내,국외),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등 기타 비용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하여 실비를 인정(사후 정산실시)
 - 국외여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용역비의 산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등 예산회계 관계법령 및 예규에 의함

라.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 연구과제 관리담당관은 별첨 연구계획 요약서 및 연구용역비 소요명세를 작성하여 연구용역 심의회에 상정
 - 계속사업의 경우도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분석, 평가하고 연구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심의회에 상정 심의
 - * 필요시 측정과에서 취합하여 일괄상정·심의
- 필요한 경우, 기존 연구와의 중복여부 및 필요성의 검토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축사등)에 의견 조회
- 『연구용역 심의회』의 구성
 -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4~6인으로 구성(간사는 측정과장)
 - 축산국장, 축산시험장장, 축협 관련이사, 종축개량협회장, 과제 검토시 필요한 외부전문가 1~2인
- 과제선정의 심의기준
 - 연구의 필요성, 시의성, 신규성, 활용성, 기술의 첨단성
 - 연구목표의 명확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 참여연구원의 연구실적, 연구소요경비, 연구기간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 기대되는 효과등

마. 계약체결

- 연구용역과제 및 대상자가 확정되면, 과제관리 담당관은 과제별로 별첨 연구계획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후, 기금관리자에게 계약체결 요청
- 기금관리자는 소요경비가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관리 담당관에게 통보
- 계약체결은 원칙적으로 1년단위로 함.

바. 연구 중간점검

- 과제관리 담당관은 연구용역과제별로 사후관리를 위한 담당사무관을 지정
- 과제관리 담당관은 과제별로 연구내용에 따라 1회이상 연구진과 관련공무원 또는 전문가등이 참석한 간담회 또는 중간발표회를 개최하는등 연구결과가 축산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사. 연구결과 보고

- 연구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후 20일 이내에 과제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양측능가, 학계, 관련단체, 업계등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 설명
 - 축산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음
 - * 연구결과가 과거 연구결과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등 연구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 연구자는 향후 연구용역 선정대상에서 제외

아. 연구결과 활용

- 과제관리담당관은 연구용역보고서 접수후 1개월이내에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용역보고서의 보관관리 및 이용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배포

5. '95 예산

- '95 사업비 : 500백만원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농림수산부 축정과(전화 02-500-2672~73, 503-7281)
 - 축협중앙회 기금관리부(전화 485-3141, 교3911)

연구 계획서

*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항목을 가감할 수 있음.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및 내용
 - 가. 연구목표
 - 나. 연구범위
 - 다. 연구내용
3. 연구 추진방법 및 체계
4. 국내외 연구동향
5. 기대효과
 - 가. 기술적 측면
 - 나. 경제·산업적 측면
6. 활용방안
7. 연구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8. 연구원 편성표

가. 연구책임자 (해당 항목만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국문	(한문)	직위(급)	
	영문			
주 소	주택	(전화 :)		
	직장	(전화 :)		
주민등록번호	(만 세)			

2) 학 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3)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학 위

4) 주요 연구업적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년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 고

※ 비고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만한 사항을 기술함.

5) 연구논문 발표실적등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년도순으로 작성함)

- 가) 저 서
- 나) 국내전문학술지
- 다) 국외전문학술지
- 라) 대학 학술지
- 마) 학술회의 발표
- 바) 특 허
- 사) 기 타

6) 연구지도 및 참여실적

가) 석·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19 년도 학기지도 현황	배출실적	비 고
석 사	명	명	
박 사	명	명	

나) 타 연구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다)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과 제 명	신청대상 기 관	신 청 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연구책임 자 또는 연구원)	비 고

9. 연구 추진계획

연구내용	연구 담당	추진 일정												연구비 (천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연구비(천원)																

10.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가. 총괄표 (해당 항목만 기재)

(단위 : 천원)

비목번호	비 목	금 액	비율(%)	비 고
1	○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2	○ 여 비 - 국 내 - 국 외			
3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기자재비 - 시설비			
4	○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시약 및 재료비 - 전산 처리비 - 시험 분석료			
5	시작품 제작비			
6	수용비 및 수수료 - 유인물비 - 공공요금 - 수수료 및 제사공과금			
7	기 타			
연구사업비총액				

나. 비목별 연구비 세부소요명세

세계축산학회 개최지원(공공계획)

1. 목 적

- 축산관련 새로운 학문과 기술에 관한 국제정보 교류 및 습득의 기회 제공
- 세계축산학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국축산 및 세계축산업 발전 도모
- 한국축산에 관한 국제위상 제고로 동물약품, 사료 및 축산물의 수출촉진에 기여

2. 세계축산학회(World Association for Animal Production) 연혁

- 창 립 : 1963. 6월, 이태리 Rome
- 회 원 국 : 73개국
- 한국축산학회는 1981. 9월 가입
- 주요사업 : 매 5년마다 학술회의 및 총회 개최

3. 제 8회 세계축산학회 개최계획

- 일시 및 장소 : '98.6.22~26(5일간), 서울
- 예상참가국 및 인원 : 약 100개국으로부터 2,000명
(국내학자 1,000명, 외국인사 1,000명)
- 주 제 : 인류복지를 위한 2천년대 세계축산의 기능과 역할(Animal Production for Human Welfare at the Wake of the Third Millennium)
- 주요행사
 - 학 술 : 특강, 심포지움, 학술발표회, 간행물발간(국·영문 "한국의 축산")
 - 비학술 : 대학, 연구기관 및 목장등 견학, 축산박람회등

4.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	'95	'96	'97	'98	계
○ 사업비	65	72	80	110	558	885
- 촉발기금	25	30	40	60	90	245
- 자 부 담	40	42	40	50	468	640

5. '95 지원계획

- 사업주관 : 농림수산부(축정과)
- '95 예산 : 30백만원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사용자 : 제 8회 세계축산학회 서울대회 조직위원회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농림수산부 축정과(02-500-2672~73, 503-7281)

양계 박람회 개최 (공공계획)

1. 목적

- 닭고기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신기술 보급
- 국내외 양계관련 기자재의 비교전시를 통한 상호기술 및 정보교환
- 양계산물의 품질고급화로 양계산물의 홍보 및 소비촉진

2. 사업내용

가. 시행주체 : (사)대한양계협회

나. 시행기간 : '95.8(격년제로 시행)

다. 사업내용

- 전시행사 : 기자재 및 시설전시, 양계사육시설, 닭 및 양계산물(닭고기,계란류)등
- 홍보행사 : 양계산물, 전시판매 및 시식회, 양계산물 소비홍보 포스터 공모, 우수양계인선발대회 개최, 어린이, 주부 글짓기 대회, 다산계 심사대회, 투계시범대회
- 양계인대회, 양계관련 기술세미나 개최

라. 지원내용 : 행사비의 일부 보조

마. 지원금액 : 90백만원(축산발전기금)

3. 기타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02-500-2674, 503-7282)

양돈박람회(공공계획)

1. 목적

우량종돈의 선발을 통한 종돈개량과 양돈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교류를 통한 양돈업의 생산성향상 도모

2. 사업내용

가. 시행주체 : 축협중앙회

나. 시행기간 : '95(격년제로 시행)

다. 사업내용

- 돼지 품평대회(순종, 모든, 비육돈, 도체성적등)
- 출품돼지 경매행사(순종, 모든)
- 돼지고기 가공품, 양돈기자재 전시 및 판매행사
- 돼지고기요리 경진대회 개최

라. 지원내용 : 행사비의 일부 보조

마. 지원금액 : 90백만원(축산발전기금)

3. 기타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02-500-2674, 503-7282)

축사설계도 개발보급(공공계획)

1. 목적

건축법 규정에 의한 축사건축신고대상 면적의 상향조정(200→400㎡)에 따라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실용적인 다양한 축사설계도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양축농가 편의 제공

2. 사업내용

가. 시행주체 : 축협중앙회

나. 시행기간 : '95

다. 사업내용

- 축종별 축사설계도 제작, 배포
- 축사설계도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라. 지원내용 : 축사설계비, 설계도제작비, 홍보 및 교육비

마. 지원금액 : 150백만원(축산발전기금)

3.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02-500-2674, 503-7282)

한우능력검정사업 (공공계획)

1. 목적

-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보증종모우 선발
- 한우능력향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한우의 당대 및 후대검정 실시
- 한우개량관련기관의 유기적인 연계 추진
- 한우개량단지 생산 우량우를 검정축으로 활용

3. 사업계획

-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
- 대상 : 국립종축원(남원지원), 농진청(고령지시험장), 독립종축장, 한우개량사업소
- 사업기간 : '83 - 영구
- 사업량
 - 당대검정 : 300두(후보종모우 선발 40두)
 - 후대검정 : 420두(보증종모우 선발 20두)
- 기타 : 점진적으로 가축개량종합대책에서 제시한 개량체계로 전환
 - 국립종축원 : 후대검정축사 건설
 - 한우개량사업소 : 우량 증빈우 확보
 - 당.후대검정기관의 시설 및 가축등 완비시까지의 현행체계 유지

1. 세부추진요령

가. 당대검정(후보종모우 선발)

- : 당대검정기관(11개소) 및 한우경진대회에서 40두 선발

(1) 검정축의 확보

- 국립종축원, 고령지시험장 및 한우개량사업소는 자체생산우에서 확보
- 도립종축장은 한우개량단지에서 매입 또는 자체생산우중 확보
 - 매입가격 : 산지평균 시세의 130% 수준
 - 검정축은 시. 군, 지역축협, 양축가 대표등으로 검정대상우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

(2) 검정개시 시기

- 도종축장

검정개시시기	해 당 도
3-4 월 (1차)	경 기 , 강 원 , 충 북 , 충 남
9-10월 (2차)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국립종축원, 고령지시험장, 한우개량사업소는 도종축장의 개시시기에 준함
- ※ 검정개시시기는 후보종모우 매입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3) 검정계획의 수립 및 통보

- 검정기관은 검정개시일, 검정기간, 검정두수, 사료소요량 등을 포함한 검정 계획을 축협중앙회(한우개량사업소)에 통보('95.2.20일한)

(4) 검정사료의 생산

- 축협 청주배합사료공장에서 일괄 생산
 - 한우검정요령중 농후사료 배합비율 및 영양성분기준 준수
 - 검정기관은 매월 25일까지 익월분 소요량을 동 사료공장에 통보

(5) 검정방법

- 한우검정 요령에 의함(농림수산부 고시 제92-24, '92. 6. 5)

(6) 후보종모우의 선발 및 검정성적의 통보

- 검정기관에서는 검정종료후 30일 이내에 종합평가하여 후보종모우를 선발하고 후보종모우의 검정성적을 축협중앙회(한우개량사업소)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통보

(7) 후보종모우의 처리

- 당대검정기관은 축협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축협중앙회에 매도
- 매도가격기준 : 산지평균 시세의 150% 수준

(8) 보고등

- 후보종모우 선발 및 매입결과 보고
 - 축협중앙회는 매입완료후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보고

(9) 기타

- 당대검정 일정표 : <참고 1>
- 단계별 기관별 업무체계 : <참고 2>

나. 후대검정(보증종모우 선발)

: 후보종모우 40두의 후손을 검정하여 20두의 보증종모우를 선발

(1) 후대검정용 숫송아지(검정대상우) 확보

- 한우개량사업소는 자체생산우, 한우개량단지등에서 확보

(2) 검정방법

- 한우검정 요령에 의함(농림수산부 고시 제92-24, '92. 6. 5)

(3) 평가 및 보증종모우 선발

- 축협중앙회(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검정대상우의 성적을 후보종모우별로 종합 정리 분석
- 가축개량협의회 한육우분과에서 심의 평가하여 후보종모우중 보증종모우를 선발

(4) 보고

- 한우보증종모우 선발 결과 보고
 - 보증종모우 선발결과를 완료후 20일 이내에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보고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02-503-7282, 500-2674)
국립종축원 종축관리과 (0417-581-2081)
축협중앙회 한우사업부(02-485-3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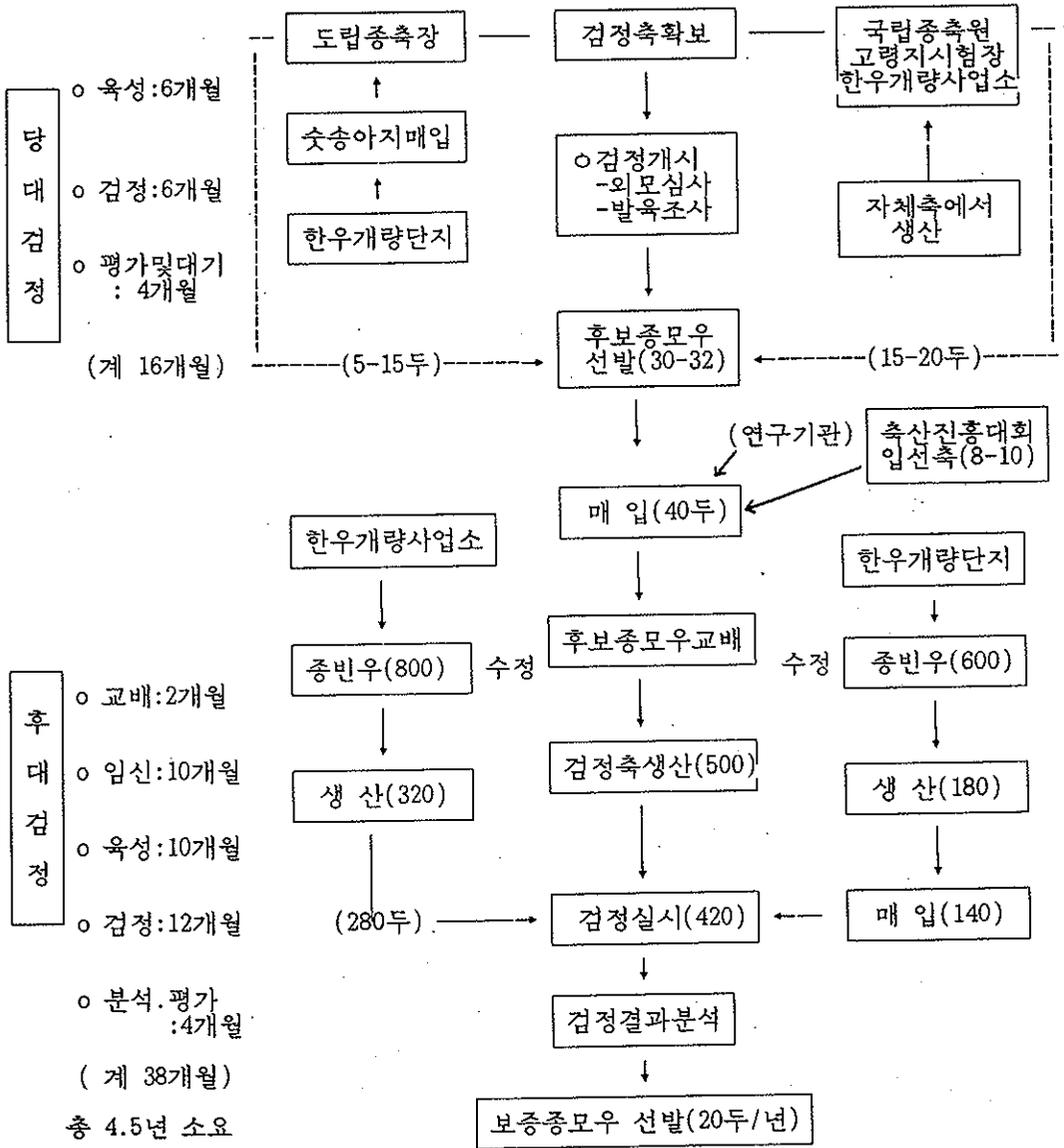
<참고 1>

당대검정 일정표

구 분	일 정		검정우령	당대기관
	1 차	2 차		
○ 당대검정우 선발	2 - 3월	8-9월	4 - 5	당대검정기관
○ 검정실시				
- 예비검정 : 생후 150-180일령 사이에 최소 20일이상 실시	3 - 4월	9-10월	5 - 6	
- 본검정 : 예비검정이 끝난후 180일간 실시(가급적 180일령에 개시)	4-10월	10-4월	7 -12	
○ 평가				
- 검정기관평가 : 검정 종료후 30일이내	10-11월	4-5월		당대검정기관
- 종합평가 및 선발	11월	5월	13 -14	축협자체회의
○ 후보종모우 매입	11-12월	5-6월		한우개량사업소

<참고 2>

단계별, 기관별 업무체계



※ 상기 기간 및 두수는 현지사정에 의거 조정 가능

한우고급육 생산기술 개발시험 (공공계획)

1. 목적

-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개발
- 한우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2. 추진방향

- 한우의 비육생리 구명
- 개발된 비육기술의 농가보급

3.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축산시험장
- 대 상 : 한우개량단지 생산 송아지
- 사업기간 : '90 - 영구
- 사업비 : 594백만원(축산발전기금 보조)
 - 지원내역 : 시험축구입비, 사료비, 기타 재료비등
- 사업량

시 험 제 목	공시두수	사업기간	비고
암소비육시 비육기간이 육질에 미치는 영향	31두	'93 - '95	
거세비육시 비육촉진제의 주요효과 구명	24두	"	
거세한우 비육후기 영양소급여수준이 육질에 미치는 영향	38두	"	
보리 Whole Crop Silage와 Pellet 급여에 의한 한우육질 개선효과	55두	'94 - '96	
방목육성이 한우비육우의 육질 변화와 생산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	50두	"	
한우고급육생산을 위한 성장단계별 육질변화 구명	220두	"	
미량광물질 첨가급여에 의한 한우육질개선 연구	50두	'95 - '97	
계	458두		

4. 세부실시요령

가. 시험축 구입

- 생년월일등 농가기록이 확실한 한우개량단지내 송아지 구입

나. 시험축 관리

- 시험설계 내용에 의거 축산시험장장 책임하에 관리

다. 사업비지원

- 축협중앙회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축산시험장장의 요구에 의거 지원

라. 시험완료축 처리

- 육질조사등 시험이 완료된 가축 또는 축산물은 판매하여 축산진흥기금에 납입

마. 시험결과 활용

- 시험결과는 한우고급육생산 기술교재에 반영하여 농가에 보급
 - 농진청 지도계통과 축협 지도직원을 활용

바. 보고등(축산시험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고급육생산기술개발시험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95.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보고(분기 익월 20일까지)
- 시험결과 보고서(시험완료후 2개월 이내)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02-500-2674, 503-7282)

국립종축원 종축관리과(0417-581-2081)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0331-292-4511)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사후관리(공공계획)

1. 목적

- 한우고급육생산사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관리
- 비육방법등 사양관리기술 지도

2. 주관 : 도지사

- 도지사 : 사업계획에 의한 가축, 시설, 장비등의 합리적활용 여부
- 농촌지도소장 : 비육방법등 사양관리기술 지도
- 용자실행조합 : 비육완료우 판로확보 및 용자금 관리

3. 관리대상 : '92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용자지원 농가 및 지역축협

4. 관리기간 : 용자실행일로 부터 5년간 ('92 - '97)

5. 관리방침

- 도지사는 관리대상에 대한 정기실태 조사를 년 2회(6월, 12월)실시
- 조사결과 부실농가 또는 축협(비육두수 부족, 부적격우 사육등)이 발생시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보완토록 조치
- 기한내 완료하지 않을 시는 용자실행조합에 통보하여 용자금을 회수토록 조치
- 도지사의 회수통보를 받은 용자실행조합은 축협 여신관리 규정에 의거 용자금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함
- 도지사는 사후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정기실태조사 결과등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함

6. 보고

- 도지사는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익월 15일까지 다음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02-500-2674, 503-7182)
 - 도 : 농정국 축산과

'92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사후관리 실태조사결과 보고

구분	당초입식		조사시까지 상환두수		관리대상		조 사 결 과			당초입식일 이후부터 조사시까지 출하누계 두수
	농가 수	두수 (A)	농가 수	두수 (B)	농가 수	두수 (C=A-B)	적격우 사육	부적격우 사육	미사육	
농가분										
축협분										
계										

- 상환두수라 함은 사업부실로 전액 강제상환 또는 전액 자진상환하고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당초 입식한 두수를 말함
- 부적격우라 함은 압소, 육우, 젖소, 교잡우를 말함
- 적격우사육, 부적격우사육, 미사육두수 합계는 관리대상두수와 같아야 함

한우개량추세조사 (공공계획)

1. 목적

- 농가상태에서의 한우개량추세 조사
- 한우개량 시책자료 발굴

2. 추진방향

- 매 3년마다 조사
- 한우다두출장 100개 주요가축시장 조사

3.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
- 사업기간 : '83 - 영구
- 사업대상 및 지원규모
 - 대상 : 가축시장에 출장된 한우
 - 사업량 : 10천두
 - 사업비 : 12백만원(축산발전기금)

4. 세부추진요령

- 조사대상 가축선정
 - 축협중앙회장이 가축시장별 출하동향을 감안하여 선정
- 조사시기 : 축협중앙회장이 결정
- 조사방법
 - 조사자 : 가축시장관리 조합직원
 - 조사내용 : 체중 및 11개 주요부위 체척(이모색, 영양상태 포함)
- 보고등
 - 축협중앙회장은 한우개량추세조사 및 분석결과를 가축개량총괄기관장에게 보고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02-500-2674, 503-7282)
국립종축원 종축관리과(0417-581-2081)
축협중앙회 한우사업부(02-485-3141)

젖소 후대검정 사업 (공공계획)

1. 목적

-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종모우 선발
- 젖소 능력향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국내 우량종빈우의 최대활용
- 젖소 개량관련기관의 유기적인 연계추진

3. 사업계획

- 사업주체 : 국립종축원, 유우개량사업소
- 사업기간 : '88 - 영구
- 사업량
 - 당대검정 : 20두(후보종모우 선발 15두)
 - 후대검정 : 300두 이상(보증종모우 선발 3두)
- ※ 점진적으로 가축개량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체계로 전환

4. 세부추진요령

가. 당대검정 : 후보종모우 15두 선발

(1) 당대검정우 확보

- 고능력 정액에 의한 국내생산과 Young Bull 도입에 의한 확보

(2) 후보종모우 선발

- 당대검정기록, 선대능력, 외모심사점수 등을 감안하여 가축개량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발

(3) 후보종모우 관리

- 선발된 후보종모우는 축협이 매입하여 유우개량사업소에서 관리
- 후보종모우 관리는 젖소 검정요령(농림수산부고시 제92-25호, '92.6.5)에 의함

나. 후대검정 : 보증종모우 3두 선발

(1) 검정기관(국립종축원이 총괄)

- 국립종축원, 독립종축장, 유우개량사업소
- 국립종축원과 독립종축장(5개소)은 각각 독립된 축군(Herd)으로 간주처리

(2) 검정요령

- 젖소검정요령에의함(농림수산부고시 제92-25호, '92.6.5)

(3) 보증종모우 선발

- 후대검정기록 및 외모심사점수 등을 감안하여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선발

(4) 보고(검정기관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사업추진현황보고(분기 익월말까지)

(5) 젖소 후대검정사업추진 체계 :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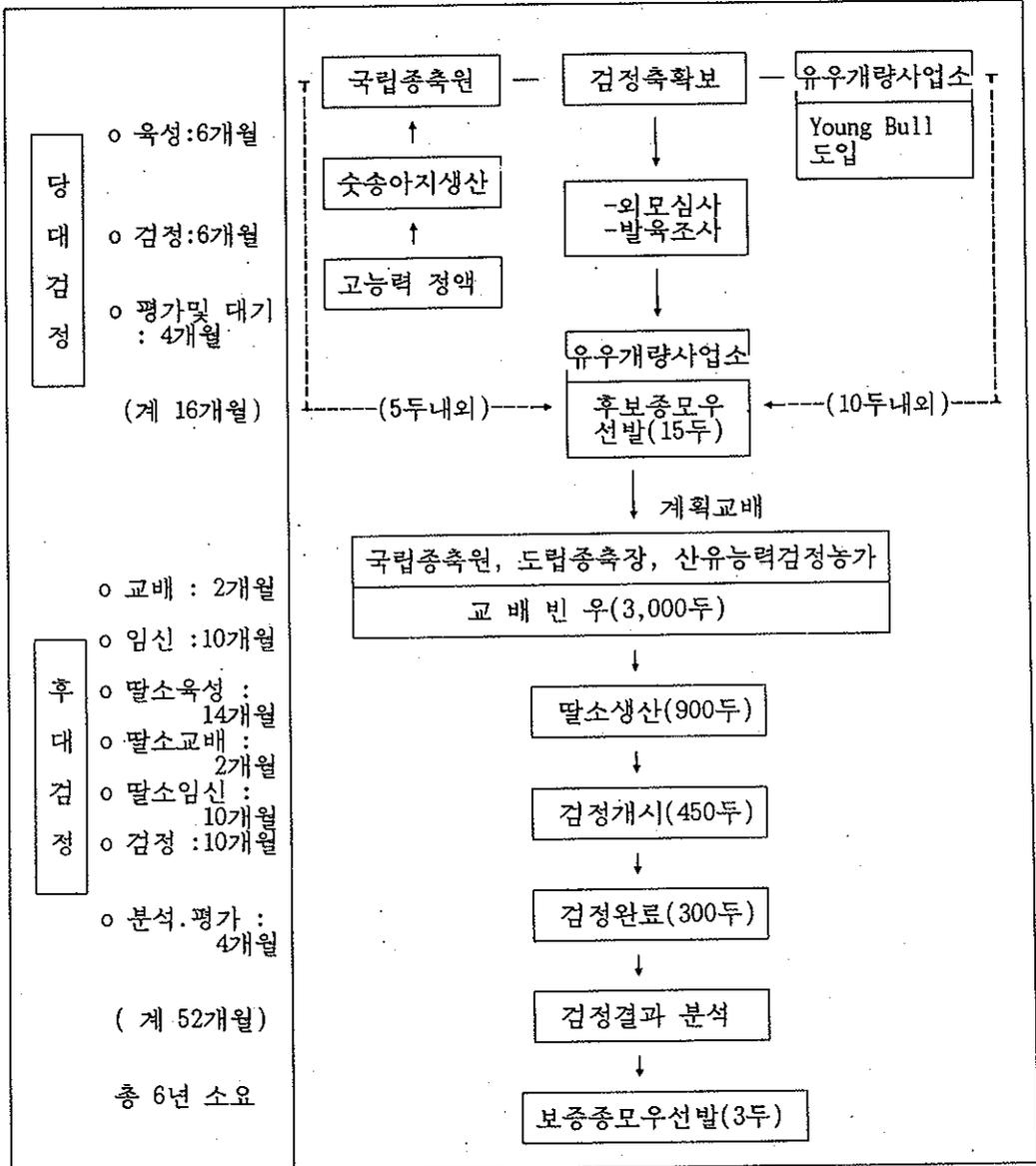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02-500-2674, 503-7282)
- 국립종축원 종축관리과(0417-581-2081)
- 축협중앙회 유우개량사업소(02-359-9285)

<참고 1>

젖소 후대검정사업추진체계



※ 상기 기간 및 두수는 현지사정에 의거 조정 가능

젓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공공계획)

1. 목적

- 젓소 자질개량 및 능력향상
- 젓소 개량을 위한 기반확충 및 인식도 제고
- 낙농경영 합리화 유도

2. 추진방향

- 축협중앙회와 한국종축개량협회 병행 추진
- 젓소 후대검정사업과 연계추진
- 축협의 경우 도당 1개단지는 시범단지로 운용하고 기타는 조합자체사업으로 추진
- 검정두수 확대를 위한 축탁검정원제 병행실시(유료검정)
- ※ 집유일원화시 가축개량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체계로 전환

3. 사업계획

-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유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
- 대 상 : 단지관리조합 및 참여농가
- 사업기간 : '78 - 영구
- 사업량 : 26천두
 - 축협중앙회 : 21천두
 - 한국종축개량협회 : 5천두
- 사업비(축협중앙회) : 452백만원(축산발전기금보조)

4. 세부추진요령

가. 신규농가 선정

- 검정기관은 검정희망 농가증에서 개량의욕과 검정 편의성을 감안 선정

나. 검정방법 및 항목

- 젖소 검정요령에 의함(농림수산부 고시 제92-25호, '92.6.5)

다. 사양관리 및 경영개선 지도

- 검정기관은 검정결과 및 경영참고사항을 당해 농가에 신속히 통보

라. 보고등(검정기관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젖소 산육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 계획보고('95.2.15까지)
- 사업추진현황보고(매분기 익월 20일까지)
- 검정기관은 연간검정성적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각도 및 개량관련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익년 상반기중 합동발표회 개최
- 양단체장은 각종보고시 관련도지사에게도 통보

마. 기타

- 축협 젖소 개량단지 현황 : <참고 1>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674, 503-7282)
국립종축원 종축관리과(0417-581-2081)
축협중앙회 우수개량사업소(02-359-9285)
종축개량협회(02-588-9301)

<참고 >

○ 축협 젖소 개량단지 현황

조성년도	단지수	단 지 명	검 정 대 상 지 역	비고
'79	5개소	평택축협 천안축협 나주축협 부산경남우유 (양산) 서울우유	○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안성군 ○ 천안시, 천안군, 아산군 ○ 광주직할시, 나주시, 나주군, 함평군, 영암군 ○ 부산직할시, 김해시, 양산군, 울주군, 김해군 ○ 서울, 인천, 경기도 일원21개 시·군	
'88	2	원주축협 고창축협	○ 원주시, 원주군 ○ 고창군	
'89	5	청주우유 상주축협 제주낙협 서산축협 지리산낙협	○ 청주시, 청원군 ○ 상주시, 상주군 ○ 제주도일원 ○ 서산시, 서산군, 태안군 ○ 남원시, 남원군	
'90	2	경북우유 천안낙협	○ 달성군, 칠곡군 ○ 천안군, 아산군	
'91	3	광주축협 (경기) 음성축협 부산경남우유 (창원)	○ 광주군, 하남시 ○ 음성군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창원군, 함안군	
'92	2	홍성낙협 경남낙협	○ 홍성군 ○ 진주시, 진양군, 사천군, 산청군, 남해군, 함양군, 함안군, 거창군, 의령군, 창원군 하동군, 고성군	
'93	2	공주낙협 전남동부낙협	○ 공주시, 공주군 ○ 순천시, 승주군, 고흥군, 광양군, 구례군	
'94	2	경북중앙낙협 경북낙협	○ 대구시, 경산군, 청도군, 청송군 ○ 경주군	
계	23		88개 시·군	

돼지 능력검정사업(공공계획)

1. 목적

- 종돈자질개량 및 능력향상
-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검정요원의 전문화
- 검정방법의 공정화
- 검정결과와 공표
- 검정장비 완비

3. 사업내용

- 사업주체 : 대한양돈협회
- 대 상 : 대한양돈협회 능력 검정소
- 사업기간 : '83 - 영구
- 사업량

검 정 소 검 정	농 장 검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검정소(이천) : 1,800두 ○ 제2검정소(하동) : 1,440두 	참여 희망농장 및 물량

- 사업비 : 134백만원(축산발전기금 보조)
 - 총사업비(191,000천원)의 70% 지원
 - 지원내역 : 교류발전기(2대), 대형환풍기(20대), 암반관정(2개소)

4. 세부추진요령

가. 검정요령

- 돼지 검정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92-26호, '92.6.5)에 의함

※ 일반검정은 폐지함

나. 증돈검정위원회 운영

- 농장검정 능가 심사 선정
- 검정기록의 분석·평가
- 검정지도 및 개선방안 도출

다. 검정성적 공표 및 보존

- 축산전문지 등을 통한 검정성적 공표
- 검정성적의 한국종축개량협회 통보
-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등록증에 기록보존하고 필요시 성적증명서 발급

라. 자금지원

- 신속한 장비구입으로 검정에 활용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지원

마. 보고등(협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5돼지능력검정 세부계획보고('95. 2월말까지)
- 사업 추진실적보고(매분기 익월 20일까지)
- 대한양돈협회장은 실적보고시 관련도지사에게도 보고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674, 503-7282)
국립종축원 종축관리과(0417-581-2081)
대한양돈협회(02-553-3942)

닭 능력검정 사업 (공공계획)

1. 목적

- 종계자질개량 및 능력향상
- 우량종계 도입유도 및 양계농가에 계종선택지표 제공
-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검정요원의 전문화
- 검정방법의 공정화
- 검정결과의 공표
- 검정시설의 현대화 및 장비의 자동화

3. 사업계획

- 사업주체 : 대한양계협회
- 대 상 : 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소
- 사업기간 : '66 - 영구
- 사업량

검 정 소 검 정	일 반 검 정
28 천수 (산란 16 , 육용 12)	도입 및 국내분양 종계

- 사업비 : 498백만원(축산발전기금 보조)
 - 지원내역
 - 사료비 : 100백만원
 - 시설 및 장비 : 398백만원(성계사, 관리사, 집수시설, 계란선별기, 발전기)

4. 세부추진요령

가. 검정요령

- 닭 능력검정요령(농림수산부 고시 제87-42호 '87. 8. 21)에 의함

나. 닭 검정위원회 운영

- 검정란의 선발 및 배치
- 검정기록의 분석 평가
- 검정지도 및 개선방안 도출

다. 검정성적 공표등

- 신계종을 수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거 수입여부 결정
- 검정소검정 결과는 축산관계 전문지등에 공표
- 일반검정결과는 신청자 및 시도(시군)에 통보하여 종계장관리에 협조

라. 검정시설 현대화 및 장비 자동화

- 설계, 입찰, 정지등 조속한 공사착수로 년내 완료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실적 및 공정에 따라 자금지원

마. 보고등(협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5 닭 능력검정 세부계획 보고 ('95. 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보고(매분기 익월20일까지)
- 대한양계협회장은 각종보고시 관련도지사에게도 보고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674, 503-7282)
- 국립종축원 종축관리과(0417-581-2081)
- 대한양계협회(02-788-7651-5)

재래닭의 고품질 육용화사업 (공공계획)

1. 목적

-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 및 농가소득 증대
- 재래닭의 고유 유전자원 보전

2. 추진방향

- 재래닭 고유의 육질을 유지하면서 생산능력 향상
-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의 공동참여로 조속한 성과 가시화
- 개발된 재래닭 종계의 농가보급

3. 사업계획

- 사업주체 : 대한양계협회
- 사업협조 : 국립종축원, 축산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 가금학회 및 재래닭 보존연구회등
- 사업기간 : '94 - '97
- 사업량

사 업 내 용	기 간
재래닭의 유전적 생산능력 평가 및 가계조성	'94 - '95
우량교배조합선발 및 사료급여기준 설정	'95 - '96
실용계 사양관리체계 확립 및 육질평가기준 설정	'96 - '97

- 사업비 : 255백만원(축산발전기금 보조)
 - 지원내역 : 가축구입비, 시설비, 재료비, 인건비등

4. 세부추진요령

- 가. 대한양계협회장은 사업협조기관과 협의하여 년차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시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분담
- 나. 시험축확보
 - 국내 연구기관, 민간업체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래계 확보
- 다. 사업비 지원
 - 축협중앙회장은 대한양계협회장의 요구와 추진실적에 의거 자금 지원
- 라. 사업관리
 - 대한양계협회장이 사업계획에 의한 자금지원 및 추진상황등을 지도, 감독
 - 시험기간중 생산물은 판매하여 축산발전기금에 납입
- 마. 보고등(협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년도별 사업세부추진계획 보고('95.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보고(분기 익월 20일까지)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674, 503-7282)
 - 국립축육원 종축관리과(0417-581-2081)
 - 대한양계협회(02-788-7651-5)

국산종계 개발지원사업 사후관리(공공계획)

1. 목적

- 국제경쟁력 있는 국산종계개발 유지
- 국산종계개발유지사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관리

2. 주관 : 대한양계협회장

-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사업평가단 구성운영
- 사업계획에 의한 시설의 합리적 활용여부

3. 관리대상 : 미원 마니커 주식회사(대표 서형교)

4. 관리기간 : 용자 실행일로 부터 10년간('94 ~ 2003)

5. 관리방침

- 대한양계협회장은 관리대상에 대한 추진상황을 년2회(6월, 12월) 조사
- 사업평가단으로 하여금 년 1회이상 추진상황 평가
- 관리대상은 용도별(산란 1, 육용 1)로 1계종이상 국산종계 개발유지
- 관리대상은 대한양계협회에서 실시하는 닭경제능력검정에 개발된 계종의 실용계를 매년 출품하여 외국계종과 능력을 비교하여야 함
- 관리대상은 자금지원 5년 이내에 개발된 국산종계가 닭경제능력검정 출품계종 평균 수익성(초생추 판매가격기준)의 90%수준이상 도달하여야 함
- 의무사항 이행이 안될 경우 대한양계협회장은 축협중앙회에 통보하여 용자금을 회수토록 조치

6. 보고

- 대한양계협회장은 추진상황 조사결과를 익월 15일까지 가축개량총괄기관장에게 보고
- 사업평가단 평가결과 1회 포함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02-500-2674, 503-7182)
 - 국립종축원 증축관리과(0417-581-0417)
 - 대한양계협회(02-588-7651)

종축등록사업(공공계획)

1. 목적

- 우량가축의 혈통보전 및 활용도 제고
- 가축개량에 대한 농가 인식도 제고

2. 추진방향

- 등록사업비의 일부지원
- 등록농가에 대한 교육, 지도 강화
- 한우 발육 조사 분석으로 개량방향 제시

3. 사업계획

- 사업주체 : (사) 한국종축개량협회
- 대 상 : 등록희망농가
- 사업기간 : '66 - 영구
- 사업량

한 우	젖 소	돼 지	계
천두 146	22	36	204

- 사업비 : 681백만원(축산발전기금 보조)
-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비 포함

4. 세부추진요령

가. 등록요령

-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규정에 의함
- 한우는 한우개량단지 및 규모화된 한우번식농가 중심으로 등록추진

나. 등록요원 확보

- 한국중축개량협회 등록직원
- 등록몰량 확대에 필요한 위촉등록요원 확보
- 위촉등록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 및 등록 실무 교육

다. 등록축 관리

- 등록능가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교육으로 등록축 활용도 제고
 - 혈통관리의 중요성
 - 계획교배 방법 및 필요성
 - 이동신고 및 이동시 등록증의 인계인수등

라 보고등(협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세부추진계획 보고('95.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매분기 익월 20일까지)
- 한국중축개량협회장은 각종보고시 관련도지사에게도 보고

5. 사업 안내기관

○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674, 503-7282)
국립중축원 중축관리과(0417-581-2081)
한국중축개량협회(02-588-9301)
- 도 : 농정국 축산과
- 시·군 : 산업(축산)과

가축개량 신기술보급사업(공공계획)

1. 목적

- 가축개량 신기술 보급을 통한 가축개량 촉진
- 가축개량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2. 추진방향

- 가축인공수정 기술향상을 위한 수정사 보수교육 실시
- 수정란 제조 및 이식기술 교육
- 돼지인공수정교육 실시 및 시범센터 설치
- 실습위주의 교육실시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 - 영구
- 사업량

	수정사 보수교육	수정란 제조·이식	돼지인공수정교육
인원	1,000 명	(제조) 10 명 (이식) 100 명	100 명
회수	9 회	(제조) 2 회 (이식) 10 회	10 회

-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 : 1개소

- 사업비 : 607백만원

- 지원내역

- 교육 : 교육장비, 여비, 도서인쇄비등(축산발전기금 보조)
- 돼지인공수정센터 : 시설 및 장비(축산발전기금 용자)

- 지원조건 : 년리 5%, 3년거치7년 균분상환

(단위 : 백만원)

구 분		촉 발 기 금			자 담	합 계
		보 조	응 자	계		
수정사 보수교육	소계	50	-	50	-	50
	자산비	20	-	20	-	20
	사업비	30	-	30	-	30
수정란 제조·이식	소계	90	-	90	-	90
	자산비	35	-	35	-	35
	사업비	55	-	55	-	55
돼지인공수정교육	소계	117	-	117	-	117
	자산비	80	-	80	-	80
	사업비	37	-	37	-	37
돼지인공수정센타 설치	소계	-	350	350	150	500
	자산비	-	350	350	150	500
	사업비	-	-	-	-	-
합 계		257	350	607	150	757

4. 세부추진요령

가.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공동
- 교육대상
 - 축산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체 소속 수정사
 - 축산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소 소속 수정사
- 교육시간 : 1회 8시간 이상
- 교육내용, 장소등은 축협중앙회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협의결정

○ 교육대상자 사후관리

- 교육대상자는 매 2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단 부득이한 자는 1년 연기 가능함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은 교육과정, 교육이수증, 관련서식등 교육실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함
- 수정사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소, 시간등 교육이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시행일 이전 1개월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함
-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은 교육이수자가 소속된 정액등 처리업 및 가축인공수정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교육이수자 명단을 통보 하여야 한다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은 보수교육대상자 명단(대상자의 최근 2년간 교육 이수 및 연기여부가 표시되어야 함), 교육이수증 발급대상등 교육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고등(협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세부추진계획 보고('95.2월말까지)
- 가축인공수정사교육실적보고(교육완료후 10일 이내)

나. 수정란 제조 및 이식 교육

-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협조 : 국립종축원, 축산시험장,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 대 상 : 양축농가, 가축인공수정사, 수의사등 희망자
- 교육기간
 - 수정란 제조교육반 : 1회 30일 이상(2회 10명)
 - 수정란 이식교육반 : 1회 5일 이상(10회 100명)
- 교육내용, 시기 및 장소등은 협조기관과 협의결정
- 기 타
 - 교재제작 및 교육강사 확보
 - 교육장비의 조속한 확보로 교육에 활용
 - 교육계획 홍보로 대상자 확보에 철저

○ 보고등(축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세부추진계획 보고('95.2월말까지)
- 교육결과 보고 (교육완료후 10일 이내)

다. 돼지냉동정액 제조 및 인공수정 교육

○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협조 : 국립종축원, 축산시험장,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 대 상 : 양돈농가, 가축인공수정사, 수의사등 희망자

○ 교육기간 : 1회 6일 이상(10회 100명)

○ 교육내용, 시기 및 장소등은 협조기관과 협의 결정

○ 기 타

- 교육장비의 조속한 확보로 교육에 활용
- 교육계획 홍보로 대상자 확보에 철저

○ 보고등(축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세부추진계획 보고('95.2월말까지)
- 교육실적보고(교육완료후 10일 이내)

라. 돼지인공수정 시범센터 설치

○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

○ 대 상 : 양돈조합

○ 사업량 : 1개소

○ 사업비 : 500백만원(축진기금 용자350, 자담150)

- 지원내역 : 제조실, 채취실, 검사실, 종돈사, 제조 및 수정관련 장비

○ 지원대상자 요건 및 선정

- 축협중앙회장은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득할수 있는 양돈조합중에서
- 시설·인력확보 및 인공수정 보급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적합한 조합 선정

○ 기 타

- 시범센터로 선정된 양돈조합은 소속수정사를 국립종축원등에 의뢰하여 인공수정기술연수를 받아야 한다

○ 보고등(축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대상자선정 결과 보고('94.2월말까지)
- 돼지인공수정 시범센터 설치 추진상황 보고(매분기 익월 10일이내)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02-500-2674, 503-7182)
- 국립종축원 증축관리과(0417-581-2081)
- 축협중앙회 중소가축부(02-485-3141)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02-586-9408)

가축개량 협의회 운영(공공계획)

1. 목적

- 가축개량 전문가 활용으로 가축개량 촉진
- 가축개량 시책자문

2. 추진방향

- 전체회의 및 축종별(한육우, 젖소, 돼지, 닭)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 개량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업체전문가등로 구성
- 협의회위원 임기는 2년

3. 사업계획

-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장
- 대 상 : 협의회 위원
- 사업기간 : '85 - 영구
- 사업비 : 23백만원(축산발전기금보조)
 - 지원내역 : 여비, 자료유인비, 위원수당등

4. 세부추진요령

- 가. 협의회 개최
 - 협의안건, 개최시기 및 장소등은 가축개량총괄기관장과 협의 결정
- 나. 기 타
 - 축협중앙회장은 협의회 위원 선정시 가축개량총괄기관장과 협의
 - 기타 사항은 가축개량협의회운영요강('91.2.20)에 의한다
- 다. 보고등(중앙회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협의회 개최결과 : 10일 이내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02-500-2674, 503-7182)
 - 국립종축원 종축관리과(0417-581-2081)
 - 축협중앙회 한우사업부(02-485-3141)

가축개량기관 전산망구축사업(공공계획)

1. 목적

- 국내외 가축개량 정보의 수집·분석
- 가축개량업무의 효율적 추진

2. 추진방향

- 가축개량기관간의 전산망 구축
- 2개년사업으로 추진('95 ~ '96)

3. 사업내용

- 사업주체 : 가축개량총괄기관(국립종축원)
- 대 상 : 축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등급판정소, 양돈협회, 양계협회등 개량관련기관
- 사업기간 : '95 - '96
- 사업량
 - 축협중앙회(한우사업부, 유우개량사업소,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종축개량협회 전산시스템 구축
- 사업비(1차년도) : 800백만원(축산발전기금 보조)
 - 지원내역

기 관 명	품 목
축협중앙회 한우사업부	○ 주전산기, 프로그램언어, DBMS등
축협중앙회 유우개량사업소	○ 주전산기, 통신장비, 부정전전원장치, 단말기, 프로그램언어등
축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 주전산기, 통신장비, 단말기, 프로그램언어등
한국종축개량협회	○ 주전산기, 통신장비, 단말기, DBMS등

4. 세부추진요령

가. 사업관리

-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사업계획의 총괄추진 및 지도
- 개량관련기관은 전산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양성등 사전준비

나. 장비구입

- 축협중앙회장은 각 기관별 장비를 통합하여 경쟁입찰 구입후 해당기관에 인계

다. 사업비

- 축협중앙회장은 예산범위내에서 낙찰결과에 의거 집행 및 정산

라. 기타

- 축협중앙회장은 입찰, 낙찰 및 인계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가축개량총괄기관장과 사전 협의

마. 보고등(축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전산장비구입결과 및 정산내역(완료후 10일 이내)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674, 503-7282)
- 국립종축원 종축관리과(0417-581-20815)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 지원(공공계획)

1. 목 적

-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잔류물질 검사체제 구축
 - 잔류검사 실시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 도모
- 유해잔류물질 검사의 신속·정확성 유지 및 신뢰도 제고

2. 추진방향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본소)의 유해잔류물질 정밀검사기능 강화
 - 효율적인 검사체제 구축을 위해 본소에 GC등 검사장비 증점 설치 운용

3.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시·도지사
- 지원대상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본소)
 - * 직할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도는 축산진흥원
- '95(계획) :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8개도)
- 사업실시기간 : 연중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계
CHARM 잔류물질검사 장비(부속장비 포함) 구입지원	8대 (8개 도×1대)	40	160 (50%)	160 (50)	320 (100)

- 기 타
 -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국비예산은 조기배정 계획인 바, 각 시·도에서는 검사장비 조기구입 및 설치완료등 동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시·도지사는 동 사업완료 후 당부에 결과보고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총 양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02-503-7285, 500-2677)
 - 시·도 : 농림수산국 축산과

축산물검사원 교육(공공계획)

1. 목 적

-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해잔류물질검사 기술훈련등을 통한 축산물검사원의 자질향상 도모
 - 양축능가 계도등을 위한 잔류방지대책 교육 병행
-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검사능력 배양
 - 도축검사 및 원유검사 관련 기술교육 실시

2. 사업내용

- 사업주체 : 농림수산부
 - 교육실시기관 :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 실시기간
 - '95 상반기중 년1회 실시, 교육기간 2주
- 교육대상

대 상	인 원	비 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요원 (연구직, 수의직) ※ 서울시, 직할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도는 축산진흥원	30명 (30명×1회)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및 제주도는 각 1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은 각 3명, 기타 시·도는 각 2명 : 계 30명

- 교육내용
 - 유해잔류물질 검사방법 및 장비활용기술
 -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 교육병행
 - 도축검사요령
 - 원유검사요령

○ 사업비

구분	예산내역(국비보조)	비고
수용비 및 수수료	교육교재비 2,850 천원	* 교육교재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제작

○ 기타 : 세부사항은 교육시기 확정후 시달계획

3.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02-503-7285, 500-2677)
- 시·도 : 농림수산국 축산과

원유검사장비(세균수·체세포수검사기) 지원(공공계획)

1. 목 적

- 원유검사의 공정성 유지 및 신속·정확한 검사업무 수행으로 유대차등 가격제의 원활한 수행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공급 도모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원유검사장비(세균수·체세포수검사장비) 구입지원

2.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시·도지사
- 지원대상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본소)
 - ※ 서울시, 직할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도는 축산진흥원
 - '95(계획)
 - 세균수검사장비 :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5개도)
 - 체세포수검사장비 :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제주(5개도)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			비고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계	
세균수검사장비 구입지원	5대 (5개도 ×1대)	80	200 (50%)	200 (50%)	400 (100)	
체세포수검사장비 구입지원	5대 (5개도 ×1대)	70	175 (50%)	175 (50%)	350 (100)	

3. 기타 참고사항

- 각 시·도에서는 검사장비 조기구입 및 설치완료 등 동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동사업 완료후 우리부에 결과보고
-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02-503-7285, 500-2677)
 - 시·도 : 농림수산국 축산과

원유검사장비 검증(공공계획)

1. 목 적

- 각 집유장에서 실시하는 원유중 세균수 및 체세포수 검사를 위한 자동측정기기별 사용실태에 대하여 공정성 있는 기관에서 주기적인 검증을 통하여 표준화등 편차가 없도록 관리함으로써 원유검사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사업추진기관 : 가축위생연구소(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사업기간 : '95. 1 - '95. 12
- 자동검사장비 검증대상 : 집유장의 원유중 세균수 및 체세포수 자동검사측정기기
 - ※ 세균수 측정기기 : Bactoscan, Bactometer, Malthus
 - 체세포수 측정기기 : Fosomatic, Somacount
- 검증회수 : 정기검증 - 년 2회
수시검증 - 필요시
- 검증방법

세균수 검증

- 지정 Sample(10개이상)에 대한 각 기기의 표준곡선(standard Curve)을 이용한 세균수 측정값과 표준평판배양법에 의한 세균수 측정값의 비교
- ※ 세균수 기기별 표준곡선(Standard Curve)사용상 전제조건
 - 원유검사에 전문성(연구소 또는 대학등)이 있는 연구실에서 다음 조건을 갖춘 표준곡선이 설정된 세균수측정기기
 - ① 표준곡선은 100개이상의 Bulk milk Sample을 기초로 작성된 것.
 - ② 표준곡선은 1.0×10^8 - 1.0×10^2 의 범위의 Bulk Milk Sample이 골고루 포함되어 작성된 것.
 - ③ 표준곡선은 1.0×10^7 - 1.0×10^3 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④ 표준곡선은 국제낙농기구 표준평판배양법(Standard Plate Count, IDF : 30°C 72hr)과 비교하여 정확성(Correlation)이 95%이상인 것.
- ⑤ 자료가 제공되는 기기별 보정계수 산정근거가 수록된 디스켓 Copy가 제공될 것(Standard Curve 포함)

체세포수 검증

- 각 기기는 체세포수 표준용액 4종(High A,B, Low A,B) 에 대한 10회 반복 측정시 정확도가 95% 이상

※ 체세포수 측정기기 사용상 전제조건

- 각 집유장에서 원유중 체세포수 검사를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갖춘 체세포 측정기기

- 각 기기는 체세포 표준용액 4종(High A,B, Low A,B) 에 대한 10회 반복측정시 정확도가 95%이상 표준화 된것.

- 체세포수 측정기기 표준화용 세포표준용액(Standard Cell Solution)제조

- 체세포 측정기기별 대상 분기별 1회 생산 및 공급 표준화

※ 기기당 표준용액 4종×40종×4분기=640(표준용액)

○ 소요예산

- 재원 : 유방염 방제사업비 10,000천원

3. 기타 참고사항

- 기타의 세균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유대지급을 위한 원유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집유장에서 보정계수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부령을 통해 가축위생연구소로 부터 검증을 받아 사용가능

○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02-503-7285, 500-2677)
가축위생연구소 세균과
- 시·도 : 농림수산국 축산과, 가축위생시험소

수의사 연수교육(공공계획)

1. 목 적

- 선진 수의기술 보급으로 수의사의 자질향상 및 수의업무 발전도모
- 새로운 가축전염병에 대한 진료기술습득으로 축산소득증대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주체 : 대한수의사회
- 대한수의사회장은 '95.2월말까지 교육세부추진계획 수립·보고

<수의사 보수교육>

- 교육내용 : 가축질병에 대한 임상이론 및 실기교육
- 교육기간 : 3일 × 6기
- 교육인원 : 180명
- 교육대상 : 공개업수의사 또는 일반수의사로서 희망자
- 사업비 : 국비 25,000천원
- 세부추진계획 : 추후시달

<수의사 임상강습회>

- 교육내용 : 가축위생정책 및 임상교육
- 교육기간 : 1일 × 2회
- 교육인원 : 800명
- 교육대상 : 공개업수의사, 행정·연구 및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 사업비 : 15,000천원
- 세부추진계획 : 추후시달

3. 안내기관 : 대한수의사회(02-392-2526)

사료기술연구소지원(공공계획)

1. 목적

- 수입사료 검정기관의 검정기능 강화로 수입사료에 대한 안전성확보 및 불량사료 유통방지

2. 추진방향

- 수입사료 검정기관의 사료검정장비지원(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도입)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부
- 자금 수요자 : (사)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
-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사 업 내 역		비 고
	사 업 량	사 업 비	
사료검정장비지원	5 종	245백만원	

- 지원조건 : 보조(100%)

4. 기타 참고사항

- (사)한국사료협회장은 장비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입

지역특화작목시험장 설치 (공공계획)

1. 목 적

-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지역별 대응능력 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
- 지역특산물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2. 필요성

- 개방화에 대응 지역별로 특색있는 작목에 대한 품종, 재배법 및 저장·가공에 대한 일관화된 기술개발체제로 전환이 필요
- 생산의 지역특화 및 전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기술 개발 미흡
 - 농민의 시대적 욕구변화에 대응한 기술수요 충족 미흡
 - 지역편중 농산물에 대한 품목별 기술개발 보급 미약

3. 설치 기본방침

가. 소속 및 연구인력

- 도농촌진흥원에 지역특화작목시험장 설치
- 연구인력
 - 소요연구인력 : 연구소당 9명 내외의 국가직 연구직공무원
 - ※ 행정직, 기능직은 지방직으로 배정(시험장당 4 - 6명)

나. 특화대상작목 선정기준

- 규모가 비교적 작은 지역소득작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요청하는

다음 각호의 작목

- 해당지역의 농가소득 비중이 크거나 특화작목으로 정착 가능한 작목
- 소규모의 연구인력과 장비로 지역특성에 맞는 실용기술개발이 가능한 작목
- 한국 고유농산물이거나 금후 수출전망이 있는 작목
- 국내수요가 안정되어 있거나 금후 수요확대가 전망되는 작목

※ 벼, 사과, 배 등 전국 재배 또는 농가소득 비중이 높은 작목은 중앙연구기관이 집중 연구

다. 설립지역

- 작목주산지에 설립(주산지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하여 설립지역을 선정(주산지 중복시 지역안배)
 - 국가는 설립여부를 판단하고 설치장소 및 시기 등은 자치단체가 결정

라. 설립소요예산 지원

- 국가는 자본형성적경비(연구시설, 장비 구입비)의 일부(50%)를 지원
 - 연구시설운영, 기술개발사업비,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시험포장 및 대지구입 정지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확인후 실시하고 시험장별 2~3년간의 연차사업으로 추진

4. 설치 추진현황

가. 지역별 연도별 설치추진현황

도명	개소수	'92	'94	'94 이후
경기	3	광주 버섯	연천 울무	고양 선인장
강원	4	평창 산채	홍천 옥수수 철원 특작	강릉 근채
충북	3	옥천 시설포도	단양 마늘	음성 시설채소
충남	5	청양 구기자 태안 백합	논산 딸기 부여 토마토 예산 국화	
전북	3	남원 고냉지화훼	진안 속근약초	고창 수박
전남	4	보성 차	고흥 유자 해남 난지과수	구례 오이
경북	6	의성 작약	청도 복숭아 성주 과채류	상주 감 영양 고추 봉화 고냉지약초
경남	4	함양 약초 창녕 양파	김해 단감	창원 시설화훼
계	32	10	13	9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도명	개소수	연 차 별				계
		'91~'93	'94	'95	'96	
경 기	3	2,596	1,776	1,541	1,040	6,953
강 원	4	3,052	2,150	1,918	2,202	9,322
충 북	3	2,454	1,427	1,050	985	5,916
충 남	5	9,419	1,144	-	-	10,563
전 북	3	2,851	1,442	1,122	1,123	6,538
전 남	4	3,196	2,695	1,483	763	8,137
경 북	6	5,455	3,337	5,616	995	15,403
경 남	4	3,762	1,470	2,179	620	8,031
계	32	32,785	15,441	14,909	7,728	70,863

다. 금후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작목시험장 추가설치 수요조사
- 기설립 특화작목시험장의 연구성과를 분석 추가설치 여부 결정

5. 기대효과

- 주산단지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설립으로 지역특화작목 관련기술 개발 및 농가에 신속히 보급
- 주산단지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함으로써 특산물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가능
- 중앙과 지방간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성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지역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역할 분담체계 구축
 - 기초연구 : 중앙연구기관
 - 응용연구 : 도농촌진흥원 시험국
 - 실증적 실용화연구 : 지역별 특화작목시험장

농업특정연구개발사업 (공공계획)

1. 목 적

- UR대응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생산기술 개발
- 첨단농업기술의 실용화 촉진으로 부가가치 향상기술개발
- 농축산물 안정성 향상과 농업환경보전 기술개발
- 지역특산작목의 생산성증대 및 상품화 기술개발
- 농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생산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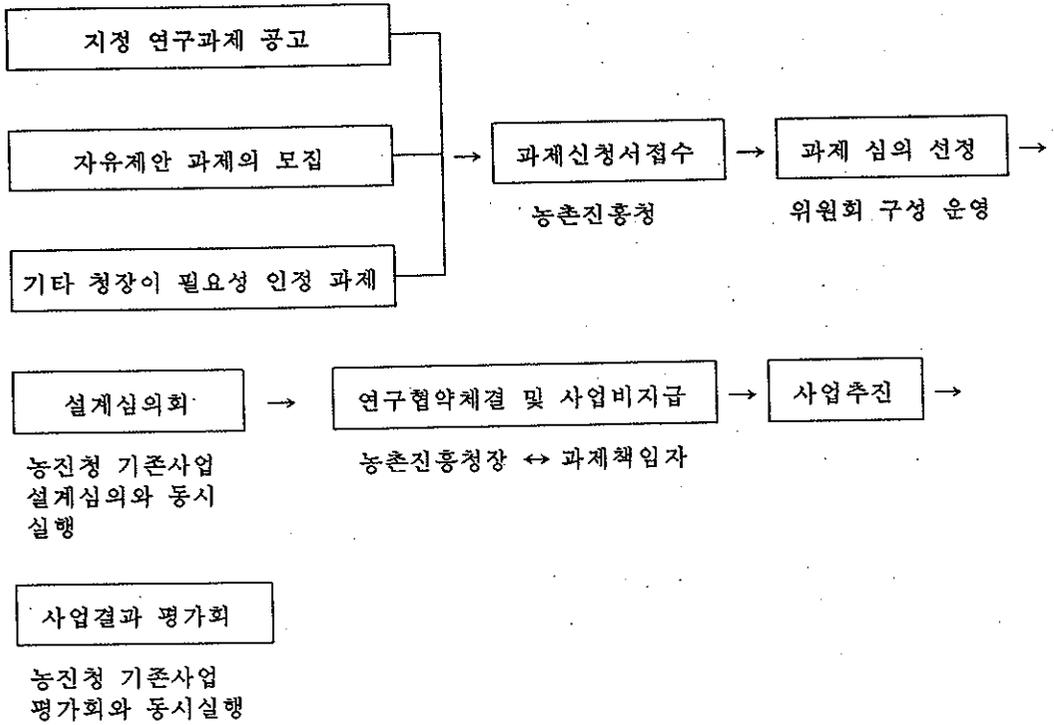
2. 추진방향

- 산·학·관·연 공동연구체제 구축으로 농업과학기술 조기혁신 과제
- 총화(package)형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종합적 연구과제
- 중단기(약3년)내에 문제해결이나 기술개발이 가능한 연구과제
- 우리청 단일연구기관의 조직 및 예산으로 추진이 곤란한 연구과제

3. 과제 선정기준

- UR대응 국제경쟁력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과제
- 우리청 외부연구인력(산·학) 적극활용으로 국가기술력 증진과제
 - 특수분야전공자, 첨단기술보유자, 우수연구경력자 등
- 농업주변과학기술 도입으로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가능과제
- 우리청 기본 경상연구사업과 상호보완 연계추진 과제

4. 과제선정 및 사업추진체계



5. 사업추진효과

- 농업생산기술의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 첨단농업기술의 조기 실용화로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농축산물 안전관리 및 환경보전형 농업육성
- 지역특산작목의 고품질 상품화기술 개발로 수출 촉진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공공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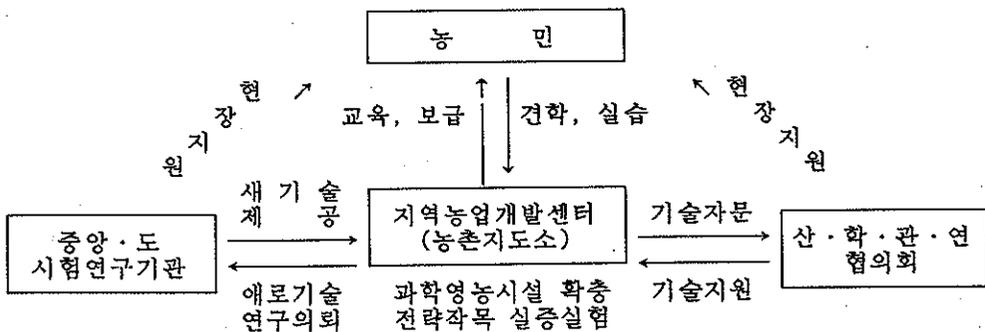
1. 목 적

- 농촌지도소에 조사·분석·시험·상담기능을 보강하여 농민의 현장애로기술 해결과 지역농업개발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기관으로 육성
 - 농민이 직접 보고 배워갈 수 있는 실증시험 교육장 조성
 - 영농상 문제점을 과학영농시설을 이용 현장에서 직접처방

2. 추진방향

- 여건변화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방향 전환
 - 생산기술 중심의 지도에서 기술, 경영, 유통 등 종합지도
 - 농민들이 실용기술을 직접보고 배워가는 지도기능으로 전환
- 농촌지도과정에 농업연구를 결합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고도기술 농업실현
 - 지도사의 전문자질 향상과 산·학·관·연 협력지도 체제구축
- 새로운 기술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 교육강화
 - 농민의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하게 진단·분석하여 처방지도

3. 추진체계



4.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 분	계	'94	'95	금후계획
○ 사업량	136 개군	9	9	118
○ 소요예산	297 억원	46	54	197
- 새기술실증포	202 "	14	13	175
- 과학영농시설	95 "	32	41	22

5. 사업내용

가.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 (2ha내외) → 새기술 현장 교육화

- 자동화온실(비닐, PET, 유리) : 시설재배기술정립 보급
- 채소시범포 : 관배수시설, 비닐, 터널, 비가림재배
- 과수시범포 : 관배수시설재배, 교육용 과원조성
- 특화작목시범포 : 관배수시설, 품종, 재배법 비교전시, 작형조절
- 개량축사 : 자동화돈사, 개량우사, 희귀가축사육

나. 우량종묘 생산보급시설 확충

-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증식망사시설 등
- 감자, 마늘 등 종묘전염이 심한 작목의 증식보급

다. 과학영농 진단·분석시설 확충 (5종) → 현장애로기술 신속 해결

- 종합검정실 : 정밀토양검정, 식물체분석, 생리장해 구명
- 가축질병진단실 : 질병조기진단처방, 기생충 검사
- 작물병해예찰실 : 병해충 조기진단 및 감별, 사전방제 홍보
- 농기계공작실 : 농기계조작, 정비, 수리 및 부품센터 운영
- 생활과학실습실 : 식품가공, 농촌생활기술 실습교육

라. 농촌지도소 청사 증개축

- 청사는 과학영농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험포의 설치와 농민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 확보
- 생활과학실습실은 필수적으로 설치

마. 산·학·관·연 협의회 구성 운영 : 15명 내외

- 지역연고교수, 연구관 등 영농현장 연구 참여

6.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주요역할

- 농민상담 기능강화 → 150만 전농가 경영실태조사 상담
- 도시소비자 서비스질 향상 → 도농통합에 따른 농산물직판장 설치
-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 → 2,000개 (1읍면 1품목)
- 농민의 현장애로기술 해결 → 880건 (시군당 4~5건)
- 천연자원 보존강화 → 지속적 환경농업 추진 (GR 대비)
- 품목별 특화지도소로 육성 → 지역특화작목 개발 체제로 전환
- 농업전문인력 육성 → 매년 1만명의 후계영농주 육성
- 농촌지도공무원의 정예화 → 12개분야 42전공별 인사관리

7. 사업효과

-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새기술·정보의 신속한 제공
- 현장애로기술 개발보급으로 지역농업문제 해결
- 농민들이 와서 보고 배워가는 농민교육장으로 활용
- 산·학·관·연 협력으로 가용한 자원의 효율적 운영
- 지역특화작목 개발로 지역별, 지대별로 특색있는 한국형 농업 정착

8. 기타 참고사항

- 사업추진
 - 중앙 : 농촌진흥청 지도국 지도개발과
 - 도 : 도농촌진흥원 지도국 사회지도과
 - 군 : 군농촌지도소 지도기획계

지역특화 시범사업 (공공계획)

1. 목 적

- 농축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보급과 시험연구 결과 정립된 새기술의 실용화 촉진
- '97년까지 읍면당 2 ~ 3개 특화작목 개발보급

2. 추진방향

- 새로 개발된 기술의 종합투입으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 협업경영, 시설 현대화 및 기계화 작업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
- 농촌 부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새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 생산물의 저장, 가공, 공동판매로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
- 우리 농축산물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농업 육성
- 연차별 사업계획

구 분	계	'89~'93	'94	'95	'96	'97
사 업 량	개소 2,748	1,115	288	241	544	560
사 업 비	억원 3,822	605	190	215	1,372	1,440

※ '96년, '97년 사업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신청 자격

- 시범사업 기준에 의거 농촌지도소에서 대상농가를 직접 선발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농촌지도소장 주관하에 지역협의체 중심으로 대상
농민선정 추진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사업내용

- 하우스자동화 시범
-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 새로운 버섯 협업경영시범
- 약초 생산가공시범
- 낙농, 양돈 등 축산 협업단지 시범
- 수출전문 생산단지 육성시범
- 벼 자동화 육묘시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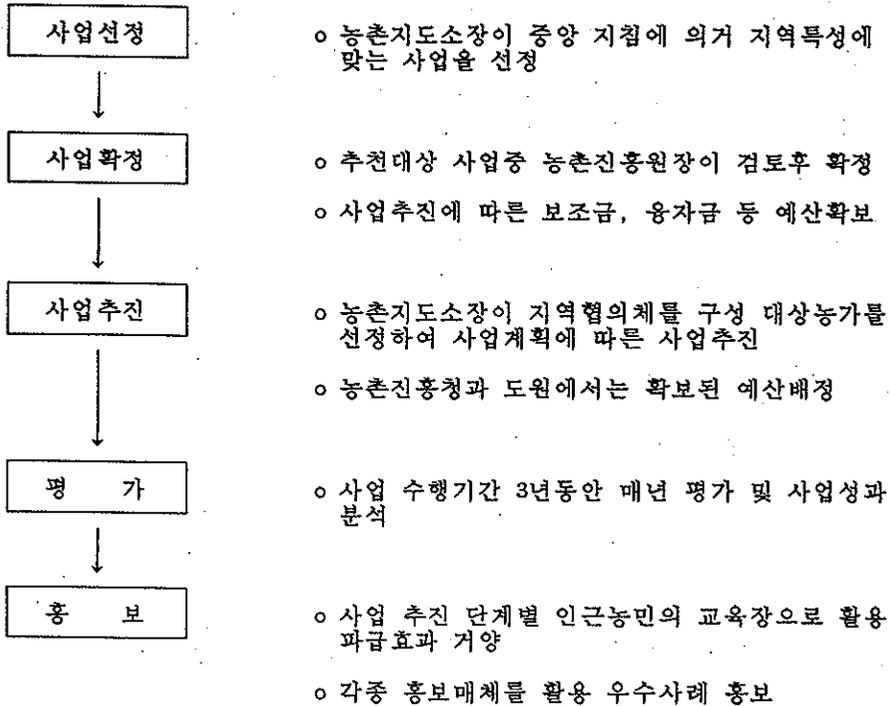
○ 지원규모 : 개소당 사업비 58 ~ 500백만원

다. 지원조건 : 보조 40%, 용자 40%, 자부담 20%

○ 보조금 : 국비, 지방비 지원

○ 용자금 : 농어촌발전기금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5%

라. 사업추진 체계도



5.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농촌지도소장이 중앙의 시범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협의체의 의결을 거친후 사업추진

6.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농촌지도소장이 사업추진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사업 수행능력, 시범사업 추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지역협의체에서 결정

7. 담보문제

- 사업비중 용자금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의거 신용담보 또는 담보제공이 필요함

8. 사후관리

- 사업 시행기간은 3년간으로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소득 성과 분석

9. 사업효과

- 지역특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 추진으로 농산물 상품화 촉진
- 저비용,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으로 대내외 경쟁력 확대
- 현장연구와 농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지역영농 발전을 선도

10.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개소 241	21,500	4,300	4,300	8,600	4,300
경 기	30	2,634	527	527	1,053	527
강 원	12	1,712	342	342	685	343
충 북	21	2,154	431	431	861	431
충 남	33	2,644	529	529	1,057	529
전 북	28	3,230	646	646	1,292	646
전 남	35	2,548	510	509	1,019	510
경 북	36	2,608	521	522	1,043	522
경 남	34	2,874	574	574	1,151	575
제 주	8	888	178	178	355	177
광 주	2	134	27	27	54	26
대 전	2	74	15	15	30	14

11. 기타 참고사항

- 사업추진 기관
 - 중 앙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국 경제작물과
 - 도 : 도농촌진흥원 지도국
 - 시·군 : 시·군 농촌지도소

지도시설·장비 지원 (공공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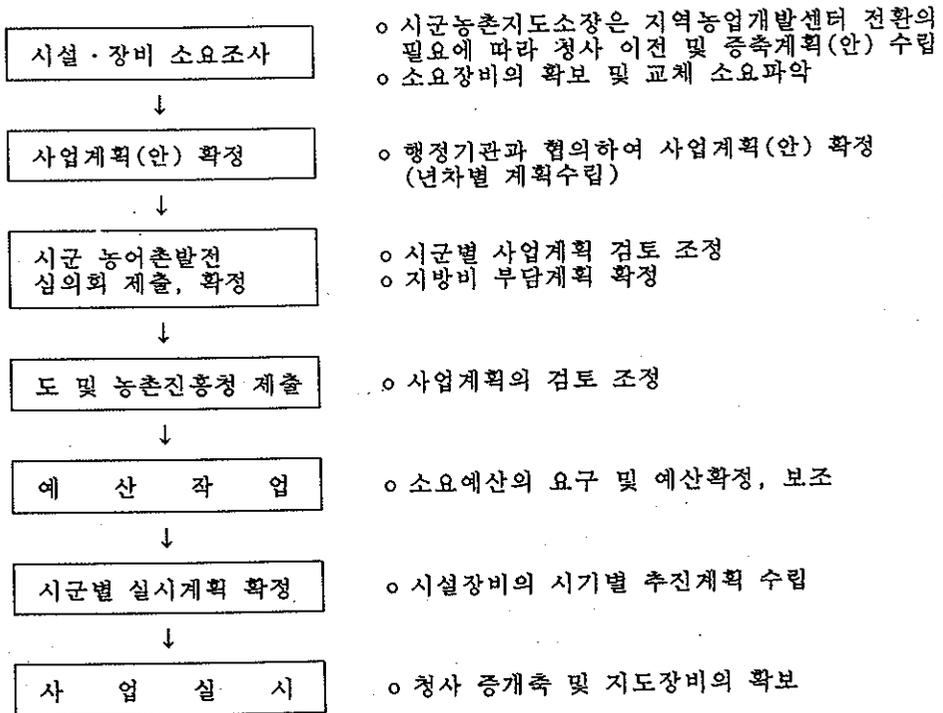
1. 목 적

- 농업기술 혁신을 위한 지도 시설·장비의 현대화
- 계절없이 상시 현장지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동장비 확보

2. 추진방향

- 농촌지도소 청사의 증·개축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화 촉진
- 현장 지도장비 현대화로 계절없는 지도활동 전개
- 전산장비 및 시청각 교육 기자재 보강으로 기술·정보의 신속제공

3. 추진체계



4. '95 사업계획

가. 사업량

(단위 : 백만원)

계	청사증개축	이 료 차	순회차량	시청각기재	전산단말기
사업량	10개소	560대	20 대	30대	50대
예산액	882	205	80	48	94

나. 사업대상

- 청 사 :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이전이나 증축이 필요한 군
- 이 료 차 : 노후기대 정기교체분 보유 시군
- 순회차량 : 이동교육 및 장비운송용 차량 부족 시군
- 시청각기자재 : VTR 촬영기 등 농민교육용 장비부족 시군
- 전산단말기 : 농업기술정보 및 사무자동화 장비 부족 시군

다. 사업내용

- 청사 증개축 : 10개군
 - 사전설계도 작성으로 조기착공과 연내 완공추진
 -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경영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면적확보
 - 대상시군 : 화성, 양구, 옥천, 금산, 남원, 함평, 신안, 영양, 창녕, 밀양
- 지도장비 : 660대
 - 이 료 차 : 100cc 이상 기종 구입
 - 순회차량 : 소형 승합 및 승합용 화물차 구입
 - 시청각기자재 : VTR 촬영기 등 농민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필요장비
 - 전산단말기 : AT486 급 이상 PC와 레이저 프린터

5.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책임자 : 시군농촌지도소장

나. 점검 및 정비

- 농촌지도소장은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활용 이행여부 확인
- 정기적인 점검 정비로 시설 장비의 활용도 제고

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5	'96	'97	'98	'99~2004
사 업 량	6,850	670	675	675	690	4,140
계	46,622	2,618	3,142	3,770	4,524	32,568
국 비	23,311	1,309	1,571	1,885	2,262	16,284
지방비	23,311	1,309	1,571	1,885	2,262	16,284

7. 기대효과

- 청사 증개축으로 대농민 한자리종합상담 기능 확대
- 지도장비의 현대화로 기술·정보의 신속확산

8. '95 시도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채 정 용자금	자부담 기 타
계	670	2,620	1,310	1,310	-	-
서울	1	4	2	2	-	-
부산	1	4	2	2	-	-
대구	1	4	2	2	-	-
인천	1	4	2	2	-	-
광주	1	4	2	2	-	-
대전	1	4	2	2	-	-
경기	38	246	123	123	-	-
강원	77	270	135	135	-	-
충북	65	252	126	126	-	-
충남	92	278	139	139	-	-
전북	86	272	136	136	-	-
전남	124	494	247	247	-	-
경북	55	274	137	137	-	-
경남	112	486	243	243	-	-
제주	15	24	12	12	-	-

9. 기타 참고사항

○ 사업기관 안내

- 중앙 : 농촌진흥청 지도국 지도개발과
- 도 : 도 농촌진흥원 지도국 사회지도과
- 시군 : 시군농촌지도소 지도과(사회지도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공공계획)

1. 목 적

- 새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농업기술 조기혁신
 - 새기술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새기술 파급효과 제고
- 경쟁력과 자생력 갖춘 기술농업육성
 - 기초농산물의 기술향상으로 내수기반 구축
 - 수출유망작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로 수출농업 기반조성

2. 추진방향

-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기술 확대 보급
- 첨단기술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 수출전문생산단지 및 전업농가 육성
- 양축협업단지 육성 및 축산 폐수정화 시설 보급
- 버섯, 약초재배기술 및 경영개선
- 환경보전 농업기반 조성

3. 사업 신청자격

- 시범사업 기준에 의거 농촌지도소에서 대상농가를 직접 선발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농촌지도소장 주관하에 대상 농민선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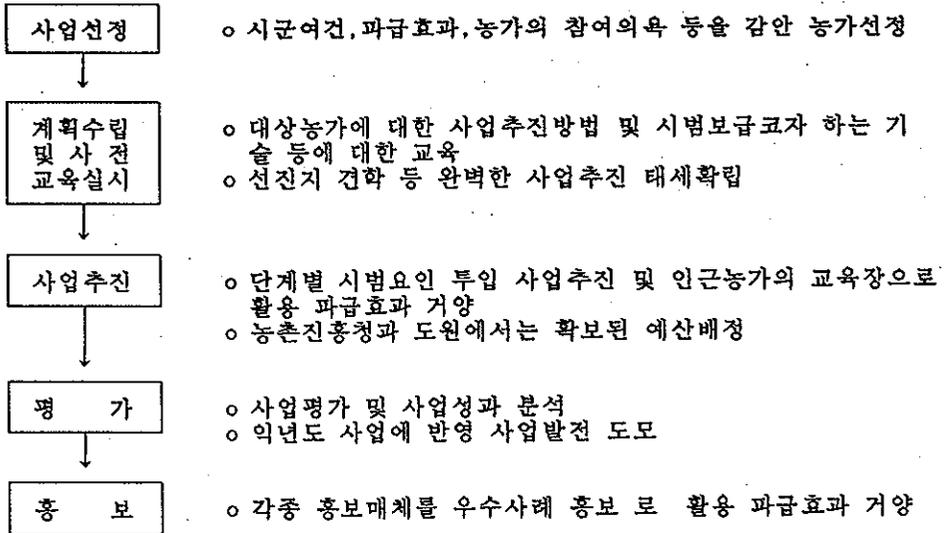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개소	백만원
계	1,087	4,290
○ 식량작물 품종비교시험	136	68
○ 벼 직파재배 실증시험	136	566
○ 무경운 벼 생력재배 실증시험	18	38
○ 토양검정 (천점)	(42.8)	86
○ 밭 생력기계화 종합시험	1	48
○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찰포 운영	150	264
○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소 설치운영	50	94
○ 채소 신기술 시험	63	283
○ 과원 토양개량 안정생산 시험	30	120
○ 우량꽃 생력생산시험	4	25
○ 양잠 전업농가 육성시험	46	164
○ 구근 종구생산시험	5	70
○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시험	8	320
○ 축산폐수 정화시설	420	1,764
○ 병해충 예찰장비 현대화	20	380

다. 지원조건 : 전액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 단, 축산폐수정화시설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라. 사업추진 체계도



5.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농촌지도소장이 중앙의 시범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6.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농촌지도소장이 사업추진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사업 수행능력, 시범사업 추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

7. 사후관리

- 재배기술 협약, 농기계 및 자재구입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
- 직파재배 기술지도 지침에 의거 새기술 집중 투입
- 생육중기 및 수확기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미흡한 기술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 표찰수립 (규격 및 내용은 도원에서 자체결정)

8. 사업효과

- 생력기계화 기술확대 → 생산비 절감
- 양질품종 보급과 시설현대화 → 품질 고급화
- 기술과 경영개선 → 생산성 향상
- 수출 유망작목 전업화 → 상품성 제고
- 농업환경보전 → 안전농산물 생산

9.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1,087	4,290	1,969	1,968	-	353
경	150	557	248	248	-	61
강	84	314	148	149	-	17
충	85	365	169	169	-	27
청	130	534	245	245	-	44
전	119	485	223	223	-	39
남	157	607	279	279	-	49
북	181	720	330	330	-	60
경	152	599	274	274	-	51
제	15	59	27	27	-	5
서	2	7	3	4	-	
부	2	7	4	3	-	
울	2	7	3	4	-	
산	3	11	6	5	-	
구	3	11	6	5	-	
천	3	11	6	5	-	
주	2	7	4	3	-	
전						

10. 기타 참고사항

- 사업추진기관
 - 중 양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국 미산지도과
 - 도 : 도농촌진흥원 지도국
 - 시·군 : 시·군 농촌지도소

주요농작물 원원종 생산 (공공계획)

1. 목 적

주요농작물에 대하여 순도높은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차하급 단계 생산용 종자로 공급

2. 추진방향

- 주요농작물 종자생산 경종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거 무병건전 종자생산
- 순도높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원원종 생산포장의 포장검사 및 합동진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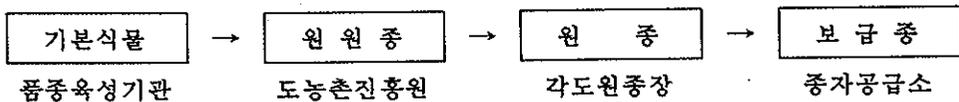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도 농촌진흥원)

나.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주요작물 원원종 생산
 - 대상작물 : 벼, 콩, 팥, 녹두, 감자, 고구마, 옥수수, 참깨, 들깨, 땅콩, 맥류
 - 대상기관 : 각도농촌진흥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100%)

다. 사업추진 체계도



4. 사후관리

- 원원종 종자생산 포장 포장검사 및 합동진단 실시
 - 포장검사 : 감자 3회, 옥수수 2회, 벼 등은 1회
 - 합동진단 : 감자, 옥수수 2회, 벼, 콩 등 1회
- 원원종 종자 파종 및 생산실적 보고(농림수산부)
 - 하계작물 : 6월, 11월
 - 동계작물 : 11월, 7월

5. 사업효과

- 순도높은 우량종자를 생산보급하여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6.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도별)	사 업 량 (a)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보조	용 자	자부담
계	1,704	122	122	-	-	-
경 기	112	8	8	-	-	-
강 원	115	18	18	-	-	-
충 북	127	9	9	-	-	-
충 남	136	9	9	-	-	-
전 북	141	9	9	-	-	-
전 남	504	32	32	-	-	-
경 북	202	13	13	-	-	-
경 남	256	17	17	-	-	-
계 주	111	7	7	-	-	-

7. 보조사업 추진기관 : 농촌진흥청 (시험국)

잠상지역적응시험 (공공계획)

1. 목 적

- 새로 육성한 뽕나무 및 누에의 우량계통에 대하여 전국에서 지역적응성을 검증하여 적지에 적품종 보급
- 지방화시대에 따른 각도잠업사업소와 시험연구사업 연계유지

2. 추진방향

- 뽕 나 무 : 병과 추위에 강하고 생산비절감을 위한 기계화적응성 품종육성
- 누 에 : 실용형질이 우수하고 인공사료육에 적합한 누에 품종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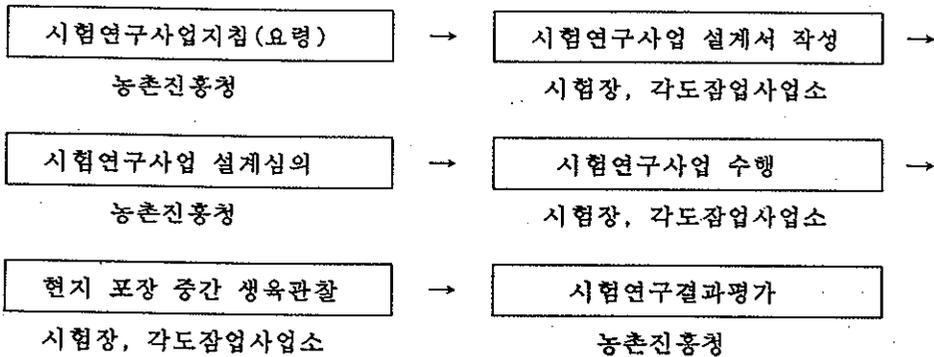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도 잠업사업소)

나.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대상작목 : 뽕나무, 누에
- 대상기관 : 각도 잠업사업소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100%)

다. 사업추진체계도



4. 사후관리

- 지역적응시험 현지포장 중간 생육관찰
- 결과활용 : 농정시책건의 (장려품종 지정등), 지도사업 반영

5. 사업효과

- 뽕나무 및 누에의 우량품종개발 보급으로 잠견제품에 대한 국제경쟁력 제고
- 잠상의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6.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도별)	사 업 량 (계통, a)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보조	용 차	자부담
계	112(210a)	31	31	-	-	-
경 기	14(30)	4	4	-	-	-
강 원	14(60)	6	6	-	-	-
충 북	14(60)	6	6	-	-	-
충 남	14(30)	4	4	-	-	-
전 북	14	2	2	-	-	-
전 남	14	2	2	-	-	-
경 북	14(30)	4	4	-	-	-
경 남	14	3	3	-	-	-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추진 : 농촌진흥청 시험국

도농촌진흥원 연구기반조성 (공공계획)

1. 목 적

- 도농촌진흥원의 연구기능, 기구 및 인력 확대개편으로 증가된 연구원이 시험연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험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보강으로 첨단농업기술 개발 촉진
- UR 협상타결 및 WTO 체제의 세계 질서속에서 지역별 대응능력을 보장하고 농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술수요에 적극 대처.

2. 추진방향

-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이용기술 개발시설 보강
-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우량종묘 대량생산체계 확립
- 지역 특산작목 관련기술 집중개발을 위한 첨단연구 기반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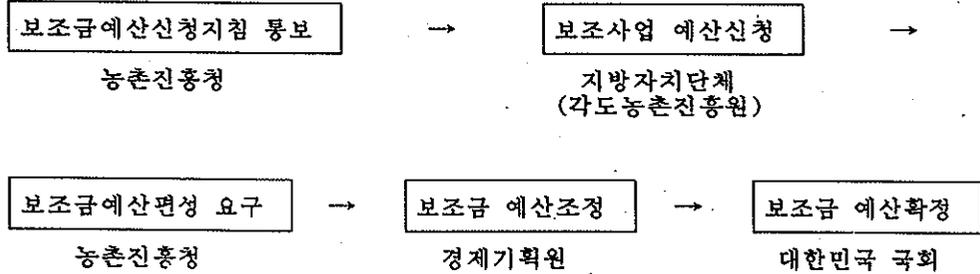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농산물 저장가공센터 설치
 - 대상기관 : 경상남도 (농촌진흥원)
 - 지원예산 : 405백만원
 - 우량종묘 대량증식시설
 - 대상기관 : 전라남도 (농촌진흥원)
 - 지원예산 : 181백만원
- ※ 지원조건 : 기준보조율 50%

다. 사업추진체계도



4. 사업효과

-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지역별 대응능력 향상 및 첨단농업 기술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 연구조직 및 연구인력에 적정한 연구시설기반 확립으로 연구활성화 촉진 및 농민의 다양한 기술수요에 충족

5.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도별)	사 업 량 (개 소)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보조	용 자	자부담
계	2	1,172	586	586	-	-
전 남	1	362	181	181	-	-
경 남	1	810	405	405	-	-

6. 보조사업 추진기관 : 농촌진흥청 (시험국)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 사업 (공공계획)

1. 목 적

- 농산물 규격 출하의 조기 정착
- 규격포장, 포장재질 및 외부표시 사항의 개선
- 지역 특산품의 상표화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의 개발로 부가가치 제고

2. 추진방향

- 규격 출하가 미진한 품목 우선 지원 → 시범 지역 육성
-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대상지역 및 작목 집중지원
- 포장개선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는 포장재는 표준출하규격으로 제작
- 기술지도를 병행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생산과 판매의 일관성있는 지도 사업전개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시·군 농촌지도소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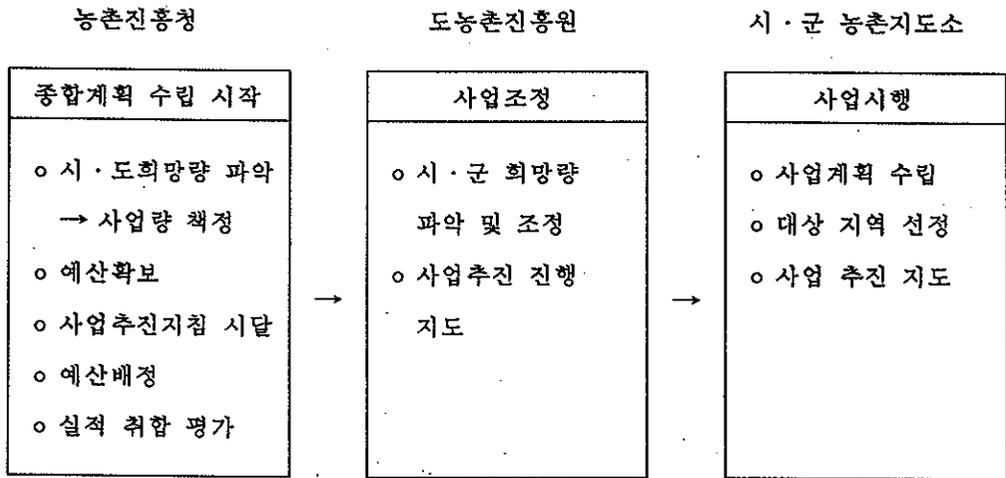
- 사업내용 : 규격포장재, 소포장재, 스티카, 속포장재 제작 지원
- 지원규모 : 개소당 268만원(보조)

다. 지원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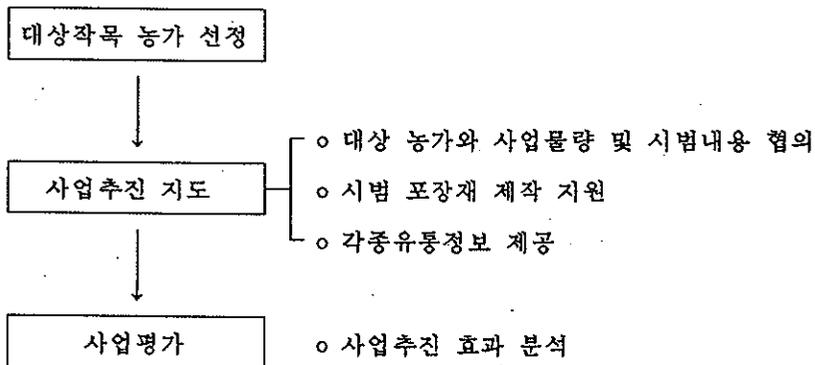
- 시·군 농촌지도소장이 포장재를 제작하여 선정된 생산자 조직이나 시범농가에 지원

4.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가. 사업계획 수립



나. 시·군 농촌지도소의 사업 추진 과정



다. 사업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진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 희망농가 신청접수												
· 농가선정 심사 통보												
· 사업추진												
· 사업평가												

5. 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가. 대상 지역 및 농가 선정

- 해당 시군별 사업추진의 자체 효과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조직 또는 동일작목 재배농가 5호이상으로 대상선정

나. 선정절차

- 선정권자 : 시·군농촌지도소장
- 선정절차
 - 규격출하를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 또는 농가로부터 신청접수
 - 농촌지도소장은 신청 농가중 해당시군의 특산품 또는 주요품목으로, 포장재질 개선, 포장크기, 외부표시내용, 소포장 등 규격출하가 시급한 품목을 우선 선정

다.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시·군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규격출하 보조금 수혜자와의 중복회피

6.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책임자 : 시·군 농촌지도소장

나. 점검·평가

- 시·군농촌지도소장은 사업추진 내용을 파악 농가 시행여부 확인
- 시범사업 전·후비교 평가 후 우수사례는 인근 농가에 홍보

다. 사업추진시 고려 할 사항

- 시범 사업으로 지원되는 중·대포장재는 단량과 치수 규격을 표준출하규격으로 제작
- 소포장재 시범은 출하 시장조사 및 판로개척 선행후 추진
- 시범농가는 가급적 품질인증을 받도록 조치

7. 연차별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5	'96	'97	'98
사업량(개소)	192	48	96	182	182
사 업 비	3,808	128	520	1,040	2,120

8. 사업효과

- 농산물 규격 출하의 조기 정착유도
- 지역 특산품의 상표화로 농가수취 가격 제고
- 외부표시 사항의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재의 개발 보급

9. '95 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도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48지역	128	64	64	-	-
경 기	7	18	9	9	-	-
강 원	5	14	7	7	-	-
충 북	4	10	5	5	-	-
충 남	4	10	5	5	-	-
전 북	4	10	5	5	-	-
전 남	7	20	10	10	-	-
경 북	8	22	11	11	-	-
경 남	7	18	9	9	-	-
제 주	2	6	3	3	-	-

10. 기타 참고 사항

- 사업 안내 기관
 - 중 앙 :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 도 : 도 농촌진흥원 시험국 경영과
 - 시·군 : 시·군농촌지도소 농업경영계